

# 2005 간추린 改正稅法

2006

財 政 經 濟 部

## 머 리 말

지난해의 세제개편은 경제활력의 조기회복과 성장잠재력 확충을 뒷받침하면서 늘어나는 재정수요의 안정적인 조달을 위하여 실효성이 낮은 비과세·감면을 축소하는 등 세입기반을 확대하고, 고령화·양극화에 대응한 세제의 보완과 세제 간소화를 통한 납세편의 제고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경제활력회복 및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하여 기업구조조정 세제를 정비하고 기업과세 제도를 선진화·합리화하였습니다. 우선 기업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해 합병·분할시 평가차익에 대한 과세 이연 대상 확대,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 처분시 법인세 분할과세 제도 및 중소기업자의 사업전환시 조세지원제도 등을 신설하였고, 창업자금 사전상속제도 신설,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제도 일몰연장 등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개편도 추진하였습니다.

둘째, 기업어음세액공제제도,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제도,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 등 국제기준에 맞지 않고, 감면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된 비과세·감면 등을 축소·폐지하였습니다.

셋째, 고령화·양극화에 대응하여 노후소득보장수단인 퇴직연금 제도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퇴직연금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고 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도 개선하였으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율을 하향 조정하여 영세자영업자의 세부담을 경감하는 등 중소기업·자영업자의 경영안정을 지원 하였습니다.

넷째, 근로소득세 연말정산과정에서 소득공제를 받기위해 근로자가 직접 제출하던 의료비·교육비 등 주요 증빙자료를 의료기관 등 증빙서류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개선하여 근로자의 납세 협력비용을 줄이고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기간을 연장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도 강화하였습니다.

이와함께 저소득 근로자의 최저생계를 보장하기 위하여 급여총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에는 압류를 금지하는 등 급여에 대한 압류 범위도 조정하는 한편 소득과약 인프라 구축을 위해 비과세·분리과세 되는 이자·배당소득 지급조서 및 일용근로자 지급조서 제출도 의무화 하였습니다.

다섯째, 천연가스(LNG)의 세율을 조정하여 난방용 연료인 등유와 천연가스(LNG) 간 세부담의 형평을 제고하였으며, 조세조약을 악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원천징수절차 특례제도를 신설하고, 국제거래를 함에 있어 실질귀속자를 기준으로 조세조약 및 세법이 적용됨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여섯째, 부동산 보유에 따른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방식을 종전의 인별합산에서 세대별 합산으로 전환하여 부부간, 세대원간 분산등기를 통한 조세회피를 실질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과세기준금액의 하향조정, 과표적용율의 단계적 인상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혼인 및 노부모 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치는 경우 2년간 세대별 합산을 유예하고 어린이 놀이방 등 가정 보육시설용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부동산 보유와 관련된 세부담을 합리화하였습니다.

끝으로, 관세분야에 있어서는 고액·상습 관세 체납자에 대해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세관장이 항공사 등으로부터 승객예약 자료를 열람하거나 제출받을 수 있도록 여행자 통관체계도 개선 하였습니다.

또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FTA협정에 따라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계약 상대국 물품의 수입급증으로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는 경우 관세인하정지 또는 세율인상 등 긴급관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관세법의 특례를 마련하였습니다.

『2006 간추린 개정세법』은 이와 같은 지난해의 세계개편 내용과 취지를 일반 납세자와 세무업무 종사자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하여 올바르게 적용하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하여 발간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자가 새로 개편되는 조세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널리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2006년 6월

재정경제부 세제실장

# 目 次

## [국세기본법 · 시행령]

I. 납세절차 개선 .....	26
1. 토요일 및 근로자의 날에 대한 신고기한 연장 .....	26
2. 우편에 의한 경정청구시 청구일 기준 명확 .....	27
3. 전자송달 수령자 확대 .....	28
II. 납세자 권리 보호 .....	29
1. 과세전적부심사 제도 개선 .....	29
2. 불복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 규정 .....	33
3. 이의신청심의위원회 외부위원 증원 .....	35
4. 실지조사의 범위 명확화 .....	36
III. 조세채권 확보 .....	37
1. 신회사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부여 .....	37
2.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 제도 도입 .....	39
3. 이자·배당 지급조서자료 활용범위 확대 .....	42
4.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도 개선 .....	43

## [국세징수법 시행령 · 시행규칙]

1. 급여수준에 따른 압류범위 조정 .....	48
2. 압류한 상장주식은 세무서장이 증권시장에서 직접 매각 가능 .....	49
3. 공매보증금 납부수단에 보증보험증권 추가 .....	50
4. 기간입찰 등을 반영하여 공매시 공고할 사항 보완 .....	51

5. 배분금전의 범위에 매각대금의 예치이자 포함 .....	52
6. 배분금전 배분요구권자 명확화 .....	53
7. 권리이전등기 촉탁시 첨부서류 간소화 .....	54
8. 공매대행 수수료 개선 .....	55
9. 납세고지서 등 일부서식 개정 .....	56

## [소득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b>I. 연말정산 간소화 .....</b>	<b>62</b>
1. 연말정산 간소화 .....	62
2.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기간 조정 .....	63
3. 연말정산 전산화대상 자료제출 의무부여 등 .....	64
4. 소득공제 증빙서류인 의료비영수증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행하는 의료비부담내역서 포함 .....	66
<b>II.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방안 .....</b>	<b>67</b>
1. 퇴직연금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허용 .....	67
2. 퇴직연금 및 퇴직일시금 수령시 소득공제 한도 조정 .....	68
3. 퇴직연금 수령시 연금소득 과세방법 .....	69
4. 퇴직연금 중도 인출시 과세방법 .....	70
5. 퇴직연금 이전시 과세 방법 .....	71
6. 퇴직연금 이전시 근속연수 계산방법 .....	72
7. 퇴직연금 불입액에 대해 필요경비산입 허용 .....	73
8. 퇴직급여충당금 필요경비산입 한도 축소 .....	74
<b>III. 과세기반 확대 및 과세인프라 구축 .....</b>	<b>75</b>
1. 지급조서 제출시기 차등 .....	75
2. 지급조서 제출수단 간소화 .....	76
3. 타 공공기관이 보유한 근로소득자료 수집근거 마련 .....	77

4. 인적용역 소득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 .....	78
5.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대상 확대 .....	79
6. 영수증수취명세서 작성범위 확대 .....	80
7.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 적용범위 확대 .....	81
8. 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 제출대상에 추가 .....	82
9. 비과세·분리과세 이자·배당소득 지급조서 제출 .....	83
<b>IV. 납세편의 제고 .....</b>	<b>84</b>
1. 접대비 증빙요건 완화 .....	84
2. 지급조서 등의 지연제출에 대한 가산세 경감 .....	85
3. 수입계산서 제출의무 면제 .....	86
4.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상한 적용기간 연장 .....	87
5. 중도매인에 대한 계산서 보고불성실가산세제도 보완 .....	88
6. 보고불성실 가산세 적용기준 명확화 .....	89
<b>V. 기부금공제대상 범위 확대 및 관리강화 .....</b>	<b>90</b>
1. 기부금 공제대상 확대 .....	90
2. 人災로 생긴 이재민 구호금품을 법정기부금에 포함 .....	91
3. 지정기부금 대상 비영리민간단체 추가 .....	92
4. 기부금 영수증 허위발급에 대한 가산세 신설 .....	94
5. 기부금 조문 정리 .....	95
<b>VI. 기 타 .....</b>	<b>96</b>
1. 귀환 국군포로의 급여 등에 대한 비과세 .....	96
2. 주택자금 소득공제 대상 범위 축소 .....	97
3. 주택자금 소득공제 신청시 주택 기준시가 확인서 제출 ..	99
4. 주택분양권 주택가격기준 명시 .....	100
5.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채무상환요건 변경시 주택자금 소득공제 요건 강화 .....	101

6. 소득공제대상이 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주택 양수인이 인수한 경우 소득공제 요건 강화 .....	102
7. 조정계산서 작성근거 규정 명확화 .....	103
8.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기준 보완 .....	104
9.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범위 축소 .....	105
10. 국채 원금이자분리 제도 도입에 따른 과세근거 마련 .....	106
11. 파생결합증권의 과세소득 구분 명확화 .....	107
12. 재임용 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소득 계산방법 보완 .....	108
13. 연말정산 소득공제 인터넷 증빙서류 범위를 국세청고시로 규정 .....	109
14. 기타 조문정리 .....	110

## [법인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I. 기업구조조정 관련세제 보완 .....	116
1. 합병평가차익 과세이연 대상 자산 확대 .....	116
2. 합병시 이월결손금 승계요건 완화 .....	117
3. 역합병시 이월결손금 공제요건 강화 .....	120
4. 증권거래법에 의한 합병시 부당행위계산부인 배제 .....	122
5. 분할평가차익에 대한 과세이연 대상자산 확대 .....	123
6. 분할시 이월결손금 승계 제도 도입 .....	124
7. 자산교환시 과세이연 요건 완화 .....	125
8. 자본거래 발생 소득의 범위 보완 .....	126
9. 채무의 출자전환 지원 .....	127
10. 지주회사 설립 · 운영에 대한 지원 확대 .....	130
가. 자회사의 재출자에 대한 익금불산입 배제 규정 보완 .....	130
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대상 보완 .....	132
다.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대상 주식수 계산방법 보완 .....	133

<b>II. 규제적 기업과세제도 정비</b> .....	134
1. 보험사에 대한 사업비 규제 폐지 .....	134
2. 비상위험준비금 손금산입기준 변경 .....	137
3. 접대비 증빙요건 완화 .....	139
4. 지급조서등의 지연제출에 대한 가산세 경감 .....	140
5. 부득이한 사유로 공사부담금 미사용시 예외 .....	142
<b>III. 기업과세제도의 선진화</b> .....	143
1. 기부금 제도 개선 .....	143
가. 기부금 손비인정한도 조정 .....	143
나. 기부금 영수증 불성실발급 가산세 신설 .....	145
다. 현물 기부자산 평가방법 보완 .....	146
라. 지정기부금 대상단체 확대 .....	147
2. 경비 등 기업과세제도의 합리화 .....	149
가. 맞춤형 교육을 위한 지출비용 손비인정 .....	149
나. 대손의 범위 조정 .....	150
3. 퇴직연금제도 도입에 따른 퇴직금제도 개선 .....	153
가. 퇴직연금 불입액에 대해 손금산입 허용 .....	153
나. 퇴직급여 충당금 손금산입 한도 축소 .....	157
4. 건축물부속설비에 대한 기준내용연수 단축 .....	158
5.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조화 .....	160
가. 통화스왑계약 평가대상 법인의 범위 확대 .....	160
나. 유형자산 취득시 강제매입한 국·공채 처리방법 보완 .....	161
다. 감액평가손실이 인정되는 주식의 범위 확대 .....	162
라. 지급이자로 구분계상 가능한 연지급수입의 범위 확대 .....	164
<b>IV. 납세편의 제고 등</b> .....	166
1. 원천징수세액의 본점 일괄 납부 허용 .....	166
2. 수입업자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 폐지 .....	167

- 3. 감가상각 내용연수 특례신청 및 승인 일원화 ..... 168
- 4. 지출증빙서류의 수취대상 사업자 범위 보완 ..... 169
- 5. 외국법인의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기한 연장 ..... 170

**V. 기타 미비점 보완** ..... 171

- 1. 비영리법인의 범위에 조합공동사업법인 추가 ..... 171
- 2. 유치원의 설립근거법 조문정리 ..... 172
- 3. 명목회사의 지급배당 소득공제제도 보완 ..... 173
- 4.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발기인에 신탁회사 추가 ..... 175
- 5. 자본거래를 통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명확화 ..... 177
- 6. 중간예납 자기계산시 기한내 신고의무 부여 ..... 179
- 7. 금융기관의 채권 이자소득에 대해서도 원천징수 ..... 180
- 8. 금융기관의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재시행에 따른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조정 ..... 181
- 9.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기준 보완 ..... 183
- 10.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 확대 ..... 185
- 11. 연금 및 공제업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한도  
명확화 ..... 189
- 12. 한국투자공사를 금융기관에 추가 ..... 190
- 13. 과세이연대상 국고보조금의 범위 확대 ..... 191
- 14. 배드뱅크로부터 받는 배당금 귀속시기 특례 허용 ..... 192
- 15. 분식회계법인의 합병시 환급세액 승계 명확화 ..... 193
- 16. 해산시 청산소득금액 계산방법 명확화 ..... 194
- 17. 중도매인에 대한 계산서 불성실가산세제도 보완 ..... 195
- 18.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특례 범위 보완 ..... 196
- 19. 당좌대출이자율 근거기준 조정 ..... 197

## [조세특례제한법 · 시행령 · 시행규칙]

<b>I. 성장잠재력 확충 및 투자활성화 지원</b> .....	205
1.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	205
2. 중소기업 생산자금 선지원을 위한 네트워크론 활성화 ..	207
3.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제도 일몰 연장 .....	209
4. 사회간접투자준비금 적용대상 확대 .....	210
5. 한국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주식·출자지분의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 .....	211
6. 개인투자자의 한국벤처투자조합 출자금에 대한 소득공제 .....	212
7. 개인투자자의 배당소득·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특례 .....	213
8.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벤처기업에 대한 사업손실준비금 제도 도입 .....	214
9. 한국벤처투자조합 출자자에 대한 지원 .....	215
10. 기업구조조정조합 등에의 출자 지원 시한 연장 .....	216
11. 10년이상 장기임대주택에 투자하는 부동산 간접투자기구 배당소득 분리과세 .....	217
12.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의 배당소득에 대한 저율분리과세 ..	218
13. 사립대 민자 학교시설 운영사업에 대한 부가세 면제 ..	219
14. 투자자산 처분시 감면세액 추징 요건 완화 .....	220
<b>II.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세제지원</b> .....	221
1. 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연장 .....	221
2. 기업의 단계적 지방이전에 대한 지원 확대 및 일몰기한 연장 .....	222
3.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 연장 .....	224
<b>III. 구조조정 지원세제</b> .....	226
1.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	226

2. 중소기업 금융부채상환등에 대한 과세특례 .....	230
3. 중소기업 주주등의 자산증여에 대한 법인세등 과세특례 ..	234
4.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	237
5. 현물출자를 통한 자회사 설립요건 완화 .....	240
6. 금융지주회사 설립에 대한 지원시한 연장 등 .....	241
7. 채무의 출자전환에 대한 지원 확충 .....	242
<b>IV. 기업과세제도의 선진화·합리화 및 제도 정비 .....</b>	<b>244</b>
1. 기부금 손비인정한도 조정 .....	244
2. 조합공동사업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	246
3. 해운기업에 대한 톤세제도 보완 .....	247
4. 타법인주식 취득 규제제도 폐지 .....	252
5. 소비성 서비스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 완화 .....	253
6. 세제지원대상 스톡옵션 요건 보완 .....	255
<b>V. 중소기업 지원세제 보완 .....</b>	<b>256</b>
1. 중소기업 졸업기준 보완 .....	256
2. 중소기업 유예기간 인정 제외사유 추가 .....	257
3. 중소기업 유예기간 예외적 적용기준 명확화 .....	258
<b>VI. 비과세·감면축소 .....</b>	<b>259</b>
1.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폐지 .....	259
2. 해외파견비용 임시세액공제제도 폐지 .....	260
3. 고용중대특별세액공제제도 폐지 .....	261
4. 기업어음 세액공제제도 개선 .....	262
5.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인하 .....	263
6. 국제선박 양도차익 손금산입 제도 일몰규정 도입등 .....	264
7. 상장·등록기업의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제도 폐지 .....	265
8. 세금우대종합저축 대상 축소 등 .....	266

9. 장기주택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대상 축소 .....	267
10. 장기주식형 저축에 대한 비과세 폐지 .....	268
11. 선박투자회사 출자주식 양도시 비과세 폐지 .....	269
12. 준비금 중복지원 적용 배제 .....	270
13. 한국농촌공사 일부 면세사업 과세전환 .....	271
14. 농협 일부 면세사업 과세전환 .....	272
15. 산림조합중앙회 일부 면세사업 과세전환 .....	273
16. 한국조폐공사 일부 면세사업 과세전환 .....	274
17. 별정우체국·우편취급소 일부 면세사업 과세전환 .....	275
18. 농수산물유통공사 면세사업 범위 조정 .....	276

**VII. 농·어업 지원 .....** 277

1.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 .....	277
2. 농·어업용기자재 수입분에 대한 부가세 면제 .....	278
3. 농협조합 등 종업원 자사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	279

**VIII. 기타 미비점 보완 및 개선 .....** 280

1. 지급조서 전자제출세액 공제대상 확대 .....	280
2. 전자신고세액 제출세액 공제대상 확대 .....	281
3. 내국인 면세점 면세물품 구입한도 조정 .....	282
4. 세금우대자료 미제출가산세 보완 .....	283
5. 개인연금저축 등 특별해지신고 기한 신설 .....	284
6. 세금우대 투자신탁의 합병시 조세특례의 유지 .....	285
7. 투자회사에 대한 과세제도 보완 .....	286
8. 부동산 중개업소의 수입금액 노출에 따른 세부담 경감 .....	287
9. 특정성 있는 관세감면제도에 대한 일몰 .....	288
10. 국민주택규모 초과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경비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기한 연장 .....	289

- 11. 고속철도 운영자산 매입세액공제 특례 ..... 290
- 12. 정부업무대행단체 삭제 및 주차장운영업·자동차견인업  
면세사업에서 배제 ..... 291
- 13. 농협 일부사업 과세전환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정부업무대행단체에 추가 ..... 292
- 14.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수상오락서비스업 과세전환 ..... 293
- 15. 국민주택 리모델링용역 면세범위 확대 ..... 294
- 16. 소비성서비스업 관련 조문정리 ..... 295
- 17. 의료기기 사업용자산 범위 보완 ..... 297
- 18. ‘의제제조업’ 범위 명확화 ..... 298
- 19. 한국농촌공사 일부 면세사업 과세전환 ..... 299

**[양도소득관련]**

**<소득세법>**

- I. 부동산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제도로 전환 ..... 307**
  - 1.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범위 확대 ..... 307
  - 2. 전 소유자의 양도가액을 현 소유자의 취득가액으로 의제 .. 309
  - 3.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서류 조정 ..... 310
  
- II.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강화 ..... 311**
  - 1. 1세대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강화 ..... 311
  - 2. 탄력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 가능한 1세대 2주택 이상의  
범위 조정 ..... 320
  - 3. 1세대 3주택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조정 .. 322
  - 4. 주택과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입주권 보유세대에 대한  
양도세 강화 ..... 323

5.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보유세대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신설 .....	326
가.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요건 .....	326
나. 상속시 양도세 비과세 요건 .....	329
다. 동거분양 합가시 양도세 비과세 요건 .....	331
라. 혼인시 양도세 비과세 요건 .....	335
마. 지정문화재주택 보유시 양도세 비과세 요건 .....	338
바. 이농주택 보유시 양도세 비과세 요건 .....	339
사. 귀농주택 보유시 양도세 비과세 요건 .....	340
아.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양도세 비과세 요건 .....	341
6. 1세대 2 「주택+입주권」 과 1세대 3 「주택+입주권」 양도세 중과대상 주택의 범위 .....	342
가. 보유주택수 계산 .....	342
나.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 .....	344
7.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제도 개선 .....	345

### Ⅲ.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강화 .....

1.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강화 .....	347
2.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신설 .....	348
가. 기간기준 .....	348
나. 대상토지 .....	352
다. 연간수입금액/토지가액 기준 적용방법 .....	367
라. 기 타 .....	368
3. 양도세 중과대상인 부동산법인 주식의 기준 신설 .....	370
4. 농지대토를 비과세제도에서 감면제도로 전환 및 감면요건 조정 .....	372

### Ⅳ. 기타 개정사항 .....

1.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보완 .....	373
-------------------------------	-----

2. 중형 이하 건설임대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	374
3. 국외이주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기준 조정 .....	375
4. 지방이전공공기관과 기업의 종업원에 대한 지원 .....	377
5. 1세대 다주택자 실거래가 과세시 주택수 계산 명확화 ..	378
6. 토지 투기지역 조기지정 .....	379
7. 공시주택가격이 없는 주택·토지가격 산정 방법 .....	380
8. 가격공시 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당시 공시가격 산정 ..	382
9. 코스닥·프리보드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축소 .....	383
10. 중소기업 최대주주의 보유지분 양도에 대한 부당행위 계산규정 보완 .....	384
11. 세대의 개념 보완 .....	386

### <법인세법>

1.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과세 강화 .....	388
2.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신설 .....	390
가. 기간기준 .....	390
나. 대상토지 .....	394
다. 연간수입금액/토지가액 기준 적용방법 .....	408
라. 기 타 .....	409
3. 임대주택 법인세 추가과세 제외 .....	411
4. 주식양도명세서 제출의무 개선 .....	413
5. 주택 부수토지의 범위 조정 .....	414
6. 법인세 추가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조정 ..	415

## <조세특례제한법>

1. 농지대토 감면제도로 전환 및 감면요건 조정 ..... 416
2. 농어촌주택 취득자 양도세 과세특례 연장 ..... 417
3.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제도 개선 ..... 418
4.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세 이월과세 요건 완화 ..... 420
5. 프리보드\*에서 거래되는 벤처기업 소액주주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 421

## <상속세 및 증여세관련>

1. 창업자금 사전상속제도 신설 ..... 422
  - 가. 증여대상재산 제외 범위 ..... 425
  - 나. 창업으로 보지 않는 범위 ..... 426
  - 다. 창업자금 사용내역서 제출 ..... 427
  - 라. 창업자금 사후관리 ..... 428
  - 마. 기타 절차규정 신설 ..... 430
2. 지방청 단위의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 설치 ..... 431
3. 감정평가수수료 공제확대 ..... 432
4. 경매·공매시 시가로 인정되는 범위 개선 ..... 433

## [국제조세(비거주자·외국법인) 관련]

- I. 소득세법·법인세법 중 국제조세 관련 ..... 439
  1. 간주배당금액을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명확화 ..... 439
  2.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범위 명확화 ..... 440
  3. 전문인적용역에 대한 과세제도의 개선 ..... 441
  4.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면제 ..... 442
  5. 비거주자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방법 보완 ..... 443

6. 조세회피지역에 소재하는 펀드 등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규정 .....	444
7. 소득세법 관련 기타사항 .....	449
8. 내국법인 판정기준 보완 .....	454
9. 국내간접투자기구를 통한 해외투자시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의 개선 .....	455
10. 법인세법 관련 기타사항 .....	460

**II. 조세특례제한법 중 국제조세 관련** ..... 466

1. 외화표시채권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대상 범위 조정 .....	466
2. 증자에 대한 조세감면 신청절차 간소화 .....	468
3.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대상업종 추가 .....	469
4.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추징제도 개선 .....	470
가. 감면세액 추징방법 개선 .....	470
나. 법인세등의 추징방법 추가 .....	472
다. 감면세액 추징 면제대상 추가 .....	473
라. 감면세액 추징 면제절차 명시 .....	474
5. 조세감면기간 조문 명확화 .....	475

**[부가가치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b>I. 자영업자 등의 세부담 경감</b> .....	481
1.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율 조정 .....	481
2. 경매·공매에 의한 재화의 공급 과세대상 제외 .....	482
3. 사업양수도 요건 개선 .....	483
4. 대손세액공제 범위 확대 .....	484

<b>II. 부가가치세 비과세 · 감면 축소</b> .....	485
1. 국가 등의 부동산 임대업 등 수익사업 과세전환	485
2. 외화획득용역 영세율범위 조정	486
3. 내국신용장에 의해 공급하는 금지금 수출범위 제외	487
<b>III. 부가가치세 면세범위 조정</b> .....	489
1. 채권추심업 일몰시한 연장	489
2. 창업투자조합 등의 자산관리 · 운용용역 면세	490
3.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 면세	491
<b>IV. 납세편의 제고 및 미비점 보완</b> .....	492
1. 국내에서 런던금속거래소 지정창고에 반출한 재화를 국내로 반입시 관련 규정 보완	492
2. 전기사업자의 납세 · 신고지 간소화	494
3. 과세유형 전환시기 보완	495
4. 간이과세 배제기준 보완	497
5.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 지정절차 근거 신설	498
6. 부가세 영세율 첨부서류 전자신고 확대	499
7.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한 매입세액공제 범위 확대	500
8. 토지 · 건물 감정가액 명확화	501
9.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범위 정비	502
10. 전기통신사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 특례 보완	503
11. 영수증 교부 특례 규정 보완	505
12.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신설	507
13. 산학협력단이 학술연구용 등으로 수입하는 기자재 면세	508
14. 전기판매사업자의 전기요금통합청구방법 정의	509
15. 창업투자회사 ·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자산관리 · 운용용역 중 과세되는 용역	510
16. 국가 등이 공급하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511

V. 서식개정 및 신설 .....	512
1. 사업자등록신청서 서식 개정(별지 제3호 서식) .....	512
2. 수입금액명세서(번호사용) 서식 개정 .....	516
3.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 서식 신설 .....	518
4.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서식 신설 .....	520

**[교통세법 · 시행령]**

I. 제2차 에너지세제개편 .....	526
1. 휘발유 · 경유에 대한 교통세 탄력세율 적용 .....	526
2. 건설기계 계약금액에 경유세율 인상분 반영 .....	527

**[특별소비세법 · 시행령]**

I. 제2차 에너지세제개편 및 세부담 형평성 제고 .....	532
1. LPG 부탄에 대한 탄력세율 조정 .....	532
2. LNG 및 등유 · 부생연료유 세율 조정 .....	533
II. 기타 미비점 보완 .....	534
1. 장애인에 대한 승용차 면세특례시 첨부서류 현실화 .....	534
2. 미납세반출제도 적용범위 확대 .....	535

**[주세법 · 시행령]**

I. 가산세 제도 정비 .....	540
1. 납부불성실가산세 규정 보완 .....	540
II. 납세편의 제고 .....	541

1. 의제 주류판매업 폐지신고 통합 ..... 541

**Ⅲ. 기타 미비점 보완 ..... 542**

1. 수입주류 환입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제도 보완 ..... 542  
2. 납세증지 첩부 주류 대상 확대 ..... 543  
3. 서식개정 ..... 544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I. 영세율·사후환급 사항 ..... 550**

1. 일부 농약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제외 ..... 550  
2. 축산계열화사업자 사료 영세율 적용 범위 조정 ..... 551  
3. 농업용기자재 영세율 적용대상 축소 ..... 552  
4. 축산업용 기자재 영세율 적용 범위 확대 ..... 553  
5. 친환경농업용 자재 사후환급 범위 확대 ..... 554  
6. 영세율 적용 일부 품목 사후환급 전환 ..... 555

**Ⅱ. 면세유제도 개선 ..... 557**

1. 농업용 면세유 구매전용카드 대상 확대 ..... 557  
2. 면세유류구입권 발급시기 및 사용시한 조정 ..... 558

**[제주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규정]**

**I. 법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 ..... 562**

1. 내국인 면세점 면세물품 구입한도 및 판매한도 규정 .. 562  
2. 면세물품의 범위 조정 및 통보조항 규정 ..... 564

##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1. 농지대토 양도소득 감면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 568
2. 중소기업의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 569
3. 산학협력단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 570

## [종합부동산세법 · 시행령]

- I. 세대별 합산과세 ..... 574
  1. 세대 정의 및 세대원의 범위 신설 ..... 574
  2. 주된 납세의무자 ..... 576
  3. 혼인 및 노부모 봉양에 대한 세대별 합산유예 ..... 577
- II. 주택분 종부세 세부담 강화 ..... 578
  1. 공시가격의 정의 신설 및 재산세 과세표준 정의 삭제 .. 578
  2. 주택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자 확대 ..... 579
  3. 주택분 종부세 과세표준 산정방식 변경 ..... 580
  4. 주택분 세율체계 조정 및 과표적용율 인상 및 세율체계 조정 ..... 581
  5. 재산세 공제 방식 변경 ..... 582
  6. 주택 및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세부담 상한 확대 ..... 585
- III. 토지분 종부세 세부담 강화 ..... 586
  1. 비사업용 토지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자 확대 ..... 586
  2. 토지분 종부세 과세표준 산정방식 변경 ..... 587
  3. 토지분 세율체계 및 과표현실화를 조정 ..... 588
- IV. 기타개정사항 ..... 590

1. 어린이 놀이방 종부세 합산 배제 ..... 590
2. 과세자료 제공 범위 확대 ..... 591

### [관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1. 과오납금 환급청구권 소멸시효 연장 ..... 596
2. 확정가격에 대한 세관장의 직권 결정절차 마련 ..... 597
3. 관세 가산세 부과체계 개선 ..... 598
4. 품목분류 변경의 효력 규정 ..... 599
5. 항공기 항행 안전용품에 대한 관세감면기간 위임근거  
신설 ..... 600
6. 재수출 감면세율 규정 ..... 601
7. 고액상습채납자 명단공개 근거 마련 ..... 602
8. 세관장의 승객예약자료 열람·제출요구권 신설 ..... 603
9. 업무정지 명령의 정지기간 상한선 설정 ..... 604
10. 보세창고 장치기간 단축을 통한 물류원활화 ..... 605
11. 통관단일창구 운영 법적근거 마련 ..... 606
12. 관세포탈죄·허위신고죄·과태료 조항 개정 ..... 607
13. 징수금액의 최저한 상향 조정 ..... 608
14. 간이세율표 개정 ..... 609
15. 특정물품 관세감면대상에 종마의 수말·피조개 종묘  
추가 ..... 610
16. 관세감면의 일몰기한 도입 및 일부 품목 감면율 축소 ... 611

### 【조정·할당관세 규정】

1. 조정관세 적용품목 및 적용관세율 조정 ..... 616
2. 할당관세 적용품목 및 적용관세율 조정 ..... 618

#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시행령】

##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

I. 제정배경 .....	631
II. 주요내용 .....	632
III. 조문별 세부내용 .....	634
1. 목적(§1) .....	634
2. 정의(§2) .....	637
3. 다른 법률과의 관계(§3) .....	639
4. 협정관세(§4) .....	640
5. 세율적용의 우선순위(§5) .....	643
6. 긴급관세조치(§6) .....	646
7. 잠정긴급관세조치(§7) .....	649
8. 일시수입물품 면세(§8) .....	650
9. 원산지결정기준(§9) .....	652
10. 협정관세의 적용신청(§10) .....	654
11. 원산지증빙서류의 수정통보(§11) .....	656
12. 자료보관 및 제출요구(§12) .....	657
13. 원산지조사(§13) .....	658
14. 원산지사전심사(§14) .....	660
15. 사전심사서 내용의 변경(§15) .....	662
16. 협정관세의 적용배제(§16) .....	663
17. 협정관세의 적용보류(§17) .....	666
18. 상호협력(§18) .....	667
19. 관세상호협의절차(§19) .....	668
20. 과세자료 비밀유지의무(§20) .....	669

21. 권한의 위임 및 위탁(§21) .....	670
22. 벌칙(§22) .....	671
23. 양벌규정(§23) .....	676
24. 과태료(§24) .....	677
25. 협정의 시행(§25) .....	682
26. 부칙 .....	683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 시행령>**

1. 원산지증빙서류(제2조) .....	685
2. 협정관세율(제3조) .....	687
3. 수량별 차등협정관세의 적용(제4조) .....	688
4. 긴급관세조치의 절차(제5조) .....	689
5. 잠정긴급관세조치절차(제6조) .....	691
6. 긴급관세조치의 재심사절차(제7조) .....	693
7. 싱가포르와의 협정에 의한 긴급관세조치의 특례(제8조) ..	694
8. 일시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면제(제9조) .....	696
9. 협정관세 적용신청(제10조) .....	698
10. 협정관세 사후적용신청(제11조) .....	700
11. 원산지증빙서류 수정통보(제12조) .....	702
12. 보관대상 원산지증빙서류(제13조) .....	703
13. 계약상대국에 대한 원산지확인요청(제14조) .....	705
14. 수출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조사(제15조) .....	707
15. 수입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조사(제16조) .....	708
16. 원산지에 관한 조사의 연기신청(제17조) .....	710
17. 원산지에 관한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제18조) .....	712
18. 원산지 등에 관한 사전심사(제19조) .....	714
19. 사전심사서 내용의 변경(제20조) .....	716

20. 싱가포르와의 협정에 따른 사전심사서 변경효력의 특례(제21조) .....	718
21. 협정관세의 적용제한(제22조) .....	719
22. 관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제23조) .....	722
23. 협정관세의 적용제한자의 지정 등(제24조) .....	723
24. 협정관세의 적용제한자 지정의 해제(제25조) .....	725
25. 협정관세의 적용보류(제26조) .....	726
26. 상호협력절차(제27조) .....	728
27. 관세상호협의절차(제28조) .....	730
28.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제29조) .....	732
29. 관세법령과의 관계(제30조) .....	733
30. 서식의 제정(제31조) .....	734
31. 부칙 .....	735

# 국제기본법 · 시행령

# [국세기본법 · 시행령]

## 【개정된 주요내용】

### I. 납세절차 개선

1. 토요일 및 근로자의 날에 대한 신고기한 연장
2. 우편에 의한 경정청구시 청구일 기준 명확
3. 전자송달 수령자 확대

### II. 납세자 권리 보호

1. 과세전적부심사 제도 개선
2. 불복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 규정
3. 이의신청심의회위원회 외부위원 증원
4. 실지조사의 범위 명확화

### III. 조세채권 확보

1. 신회사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부여
2.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
3. 지급조서자료 활용범위 확대
4.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도 개선

## 【법 · 시행령 개정일자】

- 법 률 : 제7930호(2006. 4.28)
- 대통령령 : 제19461호(2006. 4.28)

# I. 납세절차 개선

## 1. 토요일·근로자의 날에 대한 신고기한 연장 (법 §5)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신고·납부기한이 다음날로 연장되는 경우 ○ 신고·납부기한 연장 : - 공휴일 (법 §5 ①) - 금융기관 휴무일 (토요일) (영 §2 ① 3의 3) ○ 납부기한 연장 : - 근로자의 날(법 §5 ①)	○ 신고·납부기한 연장대상에 토요일과 근로자의 날 추가

### (2) 개정이유

- 2005.7월부터 관공서 주5일 근무제에 따라 토요일날 휴무이고, 대부분의 직장이 근로자의 날에 휴무인 점을 고려하여
  - 신고·납부기한의 말일이 토요일 및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휴일과 같이 그 다음날로 연장
-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토요일은 공휴일에 해당하지 않음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 4. 28 이후 신고·납부하는 분부터 적용

## 2. 우편에 의한 경정청구시 청구일 기준 명확(법 §5의2①)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다음 서류를 우편으로 제출시 통 신일부인 소인일이 신고일임  ○ 과세표준 신고서 ○ 과세표준 수정 신고서 ○ 상기 신고와 관련된 서류 <신 설>	○ 경정청구서

### (2) 개정이유

- 우편에 의한 경정청구서의 청구일은 우편에 의한 과세표준 신고서의 신고일에 준하여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
- 현재 예규로 운영중인 사항을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기 위함

※ 예규(국세청 서삼 46019-11746, 2003.11.7)  
경정청구서를 우편으로 제출한 경우, 통신일부인이 찍힌 날에 경정청구한 것으로 보는 것임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4.28부터 적용

### 3. 전자송달 수령자 확대(법 §10 ⑧)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세법이 규정하는 서류를 송부시 전자송달이 가능  <input type="radio"/> 전자송달은 납세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input type="radio"/> 납세자 외의 서류를 송달받을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자송달 가능

#### (2) 개정이유

- 국세기본법상으로는 납세자가 전자송달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전자송달이 가능
- 납세자 외의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상속재산관리인, 압류통지서 수령자)도 전자송달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자송달이 가능토록 허용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4.28부터 적용

## II. 납세자 권리 보호

### 1. 과세전적부심사 제도 개선

#### 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한 연장 (법 §81의10)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한  ○ 세무조사 결과 또는 과세 예고 통지 후 20일내 적부심사 청구	○ 30일로 10일 연장

##### (2) 개정이유

- 현재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한(20일)은
  - 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준비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부족하므로 추가 연장하여 납세자의 사전 권리구제를 확대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4.28 전에 통지를 받은 자에 대하여 개정규정 적용

나.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운영방식 개선(영 §63의 9)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회의 <input type="checkbox"/> 위원회 회의 공개 (비공개 규정 없음)	<input type="checkbox"/> 위원회 회의에 대한 비공개 규정 신설
<input type="checkbox"/> 적부심사위원회 위원 구성 <input type="checkbox"/> 국세청에 설치 - 위원장 : 차장 - 위원 : 내부 4인, 외부 5인	<input type="checkbox"/> 외부 6인으로 1명 확대
<input type="checkbox"/> 지방청에 설치 - 위원장 : 지방청장 - 위원 : 내부 3인, 외부 4인	<input type="checkbox"/> 외부 5인으로 1명 확대
<input type="checkbox"/> 세무서에 설치 - 위원장 : 세무서장 - 위원 : 내부 3인, 외부 4인	<input type="checkbox"/> 내부 2인으로 1명 축소

(2) 개정이유

-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도 위원이 독립적으로 자유심증주의에 따라 청구인 등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진술할 수 있도록 회의를 비공개하기 위함

\* 국세심판관회의 및 국세심사위원회도 회의가 비공개됨 (원칙)

- 국세청에 설치되는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에 외부위원을 더욱 확충하여
  - 민간의 전문성을 세정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적부심사 결과에 대한 납세자의 순응도 제고
  - 국세청에 설치되는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 수를 국세심사위원회 위원수(11명) 수준으로 높여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고 위원회간 균형을 유지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위원회 회의 비공개 : 2006. 4. 28 부터 적용
- 위원회 위원 구성 : 2006. 6. 1부터 시행

다.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대상 확대(영 §63의8)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input type="checkbox"/> 과세전 적부심사 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무조사 결과통지</li> <li>○ 감사결과예고통지</li> <li>○ 실지조사 파생자료</li> <li>○ 감사현지시정 자료</li> </ul> <p style="text-align: center;">&lt;신 설&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5백만원 이상인 과세예고통지</li> </ul>

(2) 개정이유

- 고지세액이 5백만원 이상인 과세자료의 과세예고통지까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대상으로 확대하여
  - 사전권리구제를 활성화하고 부실과세를 방지할 필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4.28 전에 과세예고 통지를 받은 자에 대하여도 개정규정 적용

## 2. 불복청구 이해관계인의 범위를 법률로 규정 (법 §55 ②)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심판 등 불복청구 대상자 ○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 ○ 제2차 납세의무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해관계인	○ 이해관계인의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

### (2) 개정이유

- 불복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는 중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법률로 직접 규정하기 위함

\* 이해관계인 범위 : 제2차 납세의무자, 물적납세의무자, 납세보증인 등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4.28일부터 적용

**【참고】 불복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

이해 관계인	세 부 내 용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를 받은 자	<p>□ 제2차 납세의무자</p> <p>○ 개념 :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납세자에 갈음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자</p> <p>○ 종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법 §38) (법인이 체납하고 잔여재산을 분배한 경우 청산인 등에 제2차 납세의무)</li> <li>-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법 §39) (법인의 재산으로도 부족한 경우 무한책임사원 및 과점주주에 제2차 납세의무)</li> <li>-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법 §40) (무한책임사원 및 과점주주의 재산으로도 부족한 경우 법인에 제2차 납세의무)</li> <li>-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법§41) (사업양도인의 재산으로 부족한 경우 사업양수인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li> </ul>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를 받은 자	<p>-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법 §42) 체납자에게 채권담보목적으로 제공한 양도담보재산이 있는 경우 그 양도담보재산으로 체납자의 세금 등을 징수할 수 있음</p>
납세보증인	<p>- 납세자의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납부를 보증한 자</p>

### 3. 이의신청심의위원회 외부위원 증원 (영 §54의2)

#### (1)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input type="checkbox"/> 이의신청 심의위원회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무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원장 : 세무서장</li> <li>- 내부위원 : 2인</li> <li>- 외부위원 : 3인</li> </ul> </li> <li>○ 지방국세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원장 : 지방국세청장</li> <li>- 내부위원 : 3인</li> <li>- 외부위원 : 4인</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부위원 : 4인</li> <li>- 외부위원 : 5인</li> </ul>

#### (2) 개정이유

- 이의신청심의위원회에 민간전문가를 더욱 참여시켜 이의 신청 결과에 따른 납세자의 순응도 제고 및 납세자 권리구제 확충
- 이의신청 단계부터 민간의 전문성을 국세행정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함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6.1부터 시행

#### 4.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실지조사의 범위 명확화 (영 §63의3)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실지조사의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범칙사건의 조사</li> <li>○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의 결정 또는 경정조사</li> <li>○ 상속세 및 증여세 조사</li> </ul>	<p style="text-align: center;">(좌 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한 조사</li> </ul>

##### (2) 개정이유

- 국세기본법 제7장의2【납세자의 권리】\*규정이 적용되는 세무조사의 범위에 증권거래세·교통세·특별소비세 등에 대한 세무조사는 제외되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어 그 외의 세목도 포함됨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함

\*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 관련 납세자의 권리  
 중복조사를 받지 않은 권리, 사전통지를 받을 권리,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 결과통지를 받을 권리,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 등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4.28부터 시행

### Ⅲ. 조세채권 확보

#### 1. 신회사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부여 (법§25 ④)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 연대납세의무자</p> <p>○ 분할·분할합병되는 경우, 분할법인에 대한 국세 등에 대하여 분할법인, 분할신설법인 등</p> <p style="text-align: center;">&lt;신 설&gt;</p>	<p>○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5조에 의해 법인이 회생절차로 신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당해 법인과 신회사</p>

##### (2) 개정이유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중전 회사정리법」 제 215조에 의한 신회사 설립은
  - 실질적으로 분할에 의한 분할신설법인 설립과 동일하므로 분할과 같이 연대납세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규정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4.1이후 설립되는 신회사 부터 적용

<참고> 분할과 신회사 설립의 차이

- 분할에 의한 신회사 설립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5조에 의한 신회사 설립 비교
  - 분할의 경우는 신설되는 회사의 주식을 기존 분할법인(물적 분할) 또는 기존 분할법인의 주주(인적분할)에게 부여
  - 신회사 설립의 경우는 신설되는 회사의 주식을 회생채권자 등에게 부여

2.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제도 도입  
(법 §84의2, 영 §65의4)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p><input type="checkbox"/>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제도 도입</p> <p>○ 포상금 지급 (1억원 한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급기준 : 은닉재산 신고로 징수된 금액기준</li> <li>· 2천만원이상 2억원 이하 : 5%</li> <li>· 2억원초과 5억원이하 : 1천만원 + 2억원 초과금액의 3%</li> <li>· 5억원 초과 : 1900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2%</li> </ul> <p>○ 포상금 지급이 제외되는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고를 통해 징수된 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li> <li>- 체납자 본인명의로登記되어 있는 국내소재부동산</li> </ul>

(2) 개정이유

- 체납자 명단공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재산이 있으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는 체납자에 대한 시민감시시스템 마련
- \* 체납 발생일부터 2년이 경과한 국세가 10억원 이상인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그 인적사항, 체납액 등을 공개 (기본법 §85의5)
- 불납결손을 축소하고 성실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체납

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해서도 포상금을 지급

※ 국세청은 「체납자 은닉재산신고센터」를 설치·운영 중

○ 포상금 지급액 관련

-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게도 탈세제보와 동일한 수준으로 포상금을 지급해 주기 위함
- 적은 금액(2억원 이하)은 높은 지급율(5%), 큰 금액(5억원 초과)은 낮은 지급율(2%)로 포상금 차등 지급
- \* 탈세제보의 경우에도 탈세금액의 2~5%를 포상금으로 지급

○ 포상금 지급이 제외되는 경우

- 2천만원 이하의 소액제보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 제보에 따른 조사에 상당한 행정력이 소요되어 효율적 업무처리를 위해 적정금액 결정 필요
- 소액제보까지 포상금 지급시 사회불신 풍조가 만연될 우려가 있어 도입초기인 점을 고려 2000만원으로 책정
- \* 2천만원 은닉 재산 신고시 100만원(5%)을 포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어 지급액이 100만원 이상되는 경우에만 포상금 지급
- 부동산 등기자료는 전량 세무서로 통보되고, 또한 본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 은닉혐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본인 명의로 등기된 국내소재 부동산은 제외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4.28이후 은닉재산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참고> 체납자 은닉재산신고 센터운영현황

### □ 설 치

- 본 청 : 홈페이지(신고센터)를 통한 접수 및 운영총괄
- 지방청 : 자체접수, 추적조사, 압류 및 사해행위취소소송 등
- 세무서 : 접수만 담당, 접수시 지방청에 이첩

### □ 신고대상 자산

- 사실상 또는 실질적인 체납자의 재산으로서 국내 또는 해외에 은닉한 예금·부동산·동산 등 일체의 재산

\* 다만, 체납자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 제외

### <신고정보 처리절차>

#### 신 고 접 수



- 인터넷, 우편, FAX, 방문에 의한 실명신고
- 실명확인을 위해 전화신고는 받지 않음(상담은 가능)
- 인터넷은 지방청 및 관할 세무서 홈페이지의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센터』 창을 이용

#### 조 사 및 회 수

- 신고재산에 대한 정밀조사후 법적절차 등을 통한 조세채권 회수
- 체납자 재산으로 확인시 압류, 사해행위취소 소송등 제기

### 3. 이자·배당 지급조서자료 활용 확대(법§85의2)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금융거래정보는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불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input type="checkbox"/> 금융실명법에 불구하고 지급조서를 채납자의 재산조회에 활용가능 (국세징수법 제7조의3)	<input type="checkbox"/> 금융실명법에 불구하고 지급조서를 채납자 재산조회 외에 다음 용도로 활용가능 <input type="checkbox"/> 상속·증여재산의 확인 <input type="checkbox"/>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

#### (2) 개정이유

- 지급조서자료를 이자·배당소득 과세 외에 상속·증여재산의 확인이나 탈세혐의 자료확인을 위해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국세 징수의 실효성 확보위함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4.28일 부터 적용

#### 4. 고액·상습채납자 명단공개 제도 개선 (영§66)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 명단공개 제외 사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의신청 등 불복 중</li> <li>○ 채납액의 30%이상 납부</li> </ul> <p style="text-align: center;">&lt;신 설&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산상황 및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시 공개위원회가 공개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li> </ul>	<p>□ 공개 제외 사유 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에 따라 채납세금의 징수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거나 회생계획상의 납부일정에 따라 납부하고 있는 채무자</li> <li>○ 재산상황, 미성년자 해당여부 및 그 밖의 사정 등으로 공개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li> </ul>

## (2) 개정이유

- 회생기업(중전 회사정리기업)을 채납자로 공개할 경우 당해 영업 및 금융이용에 어려움을 초래하여 회생을 더욱 어렵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채납자 명단공개대상에서 제외
  - 명단공개대상에서 제외되는 채납자는
    - 회생기업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인가(징수유예내용이 포함됨)의 결정을 받아 유예받은 납부일정에 따라 채납세금을 납부하는 있는 채무자로 함
-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후일 성년이 되어서도 사회생활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미성년자를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
  - 다만, 은닉재산이 있을 수 있는 미성년자는 명단공개실효성 확보를 위해 공개 필요
- 공개의 실익이 없는 경우 외에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공개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를 공개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함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4.28부터 적용  
중전의 「회사정리법」에 따른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으로 보아 개정규정 적용

# 국세징수법 시행령 · 시행규칙

## [국세징수법 시행령·시행규칙]

### 【개정된 주요내용】

1. 급여수준에 따른 압류범위 조정
2. 압류한 상장주식은 세무서장이 증권시장에서 직접 매각 가능
3. 공매보증금 납부수단에 보증보험증권 추가
4. 기간입찰 등을 반영하여 공매시 공고할 사항 보완
5. 배분금전의 범위에 매각대금의 예치이자 포함
6. 배분금전 배분요구권자 명확화
7. 권리이전등기 촉탁시 첨부서류 간소화
8. 공매대행 수수료 개선
9. 납세고지서 등 일부서식 개정

### 【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일자】

- 법 률 : 제7931호(2006.4.28)
- 대통령령 : 제19460호(2006.4.28)
- 재정경제부령 : 제485호(2006.2.9)

# 1. 급여수준에 따른 압류범위 조정(법§33, 영§37)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급여의 압류제한 ○ 금액에 관계없이 급여의 1/2까지 압류 금지 <단서 신설>	○ 최저생계비 수준인 120만원까지는 무조건 압류금지 ○ 월급여 600만원을 초과하는 급여부분에 대하여는 초과되는 급여의 1/4까지 압류금지 예) 월급여가 1,000만원인 경우 압류금지금액 · 현행(500만원) → 개정(400만원*) * 600만원×1/2+(1,000만원-600만원)×1/4

## (2) 개정이유

- 저임금 근로자 등의 최저생계비는 보장하고
- 고소득 근로자에 대하여 1/2까지만 압류를 금지하는 것은 지나친 혜택이므로 추가압류 가능하도록 함
  - \* 민사집행법의 규정과 일치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법 공포일 이후 압류하는 분부터 적용

2. 압류한 상장주식은 세무서장이 증권시장에서 직접 매각 가능 (법§61)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input type="checkbox"/> 압류한 동산·유가증권·부동산·무체재산권 등은 공매에 의하여 매각</p> <p style="text-align: center;">&lt;단서 신설&gt;</p>	<p>○ 유가증권중 상장주식 및 코스닥상장주식은 증권시장에서 세무서장이 직접 매각 가능</p>

(2) 개정이유

- 상장주식 및 협회등록주식의 경우 시세가 형성되어 있어 증권시장에서 직접매각이 가능함에도 일반적인 공매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
-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되고, 불필요한 공매행정비용(감정료, 대행수수료)이 발생하는 등 불합리 초래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법 공포일 이후 최초 매각분부터 적용

### 3. 공매보증금 납부수단에 보증보험증권 추가(법§65)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공매보증금 납부수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금</li> <li>○ 국·공채</li> <li>○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증권</li> <li>○ 증권업협회에 등록된 증권</li> </ul> <p style="text-align: center;">&lt;신 설&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 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 권</li> </ul>

#### (2) 개정이유

- 공매보증금 납부방법에 보증보험증권을 추가하는 경우
  - 공매참가시점에 거액의 현금을 조달해야하는 부담이 경감되  
고 국민의 참여 기회가 확대되어 공매가 활성화
  - 유찰율 감소 및 압류재산의 고가매각이 유도되어 체납국세  
에 대한 징수율 제고
- 또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매시 전자보증서 발급을 통한 공매  
보증금 납부절차 간소화로 국민의 편의 도모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법 공포일 이후 납부하는 공매보증금부터 적용

#### 4. 기간입찰 등을 반영하여 공매시 공고할 사항 보완(법§67)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공매시 공고할 사항(§6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수대금의 납부기한</li> <li>○ 공매재산의 명칭·소재 등</li> <li>○ <u>입찰 또는 경매의 장소와 일시</u></li> <li>○ 개찰의 장소와 일시</li> <li>○ 보증금 금액</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기일입찰 또는 경매의 경우 장소와 일시, 기간입찰의 경우 장소와 입찰기간</u></li> </ul>

##### (2) 개정내용

- 법 §67는 공매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의한 방식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 경우 기간입찰을 하게 됨
  - 다만, 공고사항에 입찰기일과 장소만 명시되어 있으므로 기간입찰에 필요한 입찰기간을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
- 민사집행법도 기간입찰 제도를 도입하고 기간입찰 시 공고사항에 입찰기간을 명시하고 있음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법 공포일 이후 최초 공매공고 분부터 적용

## 5. 배분금전의 범위에 매각대금의 예치이자 포함(법§80)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배분금전의 범위 ○ 압류한 금전 ○ 채권·유가증권 등 ○ <u>압류재산의 매각대금</u> ○ 교부청구에 의해 받은 금전	○ <u>압류재산의 매각대금 및 매각대금의 예치이자</u>

### (2) 개정이유

-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를 대행하여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을 배분하는 경우
  - 매각대금의 예치이자를 배분금전의 범위에서 제외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자체수입으로 처리하고 있어
    - 국가 기타 채권자에 배분될 금액이 감소되는 문제가 있는 바, 예치이자를 배분금전에 포함시킬 필요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법 공포 이후 최초 배분금전부터 적용

## 6. 배분금전 배분요구권자 명확화(법§83)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배분요구권자 ○ 매각대금의 배분대상자는 배분을 요구해야 함	○ 배분대상자는 배분을 요구해야 함

### (2) 개정이유

- 배분에는 압류재산의 매각대금 외에 압류한 금전,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받은 금전 및 교부청구에 의하여 받은 금전이 포함되는 점을 감안하여
  - 배분요구권자를 현행 ‘매각대금의 배분대상자’에서 ‘배분대상자’로 변경할 필요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법 공포일 이후 부터 적용

## 7. 권리이전등기 촉탁시 첨부서류 간소화(영 §77)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압류재산 매각 후 세무서장이 법원에 매각재산의 권리이전 촉탁시(매각에 수반하여 소멸되는 저당권, 임차권 등 권리의 말소등기 촉탁 포함) 아래의 서류를 첨부  ① 권리말소 등기·등록촉탁서 ② 매수인의 등기청구서 ③ 매각결정통지서 또는 그 등본이나 배분계산서의 등본 ④ 재산압류통지서의 등본	<삭 제>

### (2) 개정이유

- 저당권 등의 등기말소의 촉탁시 재산압류통지서의 등본을 첨부해야 할 실익이 없으므로 제외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영 공포 이후 촉탁하는 말소등기부터 적용

## 8. 공매대행 수수료 개선(규칙 §45조의6)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대행 수수료  ○ 매각한 경우 : - 매각금액의 <u>2%</u>	<input type="checkbox"/>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대행 수수료  ○ 매각한 경우 : - 매각금액의 <u>2.8%</u>  ※ 매년 실적을 평가하여 다음연 도 수수료를 정함

### (2) 개정이유

- 매각수수료가 '97년 매각금액의 2%로 조정된 이후 지금까지 변동이 없어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경영수지가 악화됨에 따라 적정 수수료율로 인상 조정할 필요
- 공매대행업무의 공공성을 감안, 손익분기점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의 이익을 시현하는 수수료율이 바람직한 바,
  - 매각수수료율을 현행 2%에서 2.8%로 인상
    - \* 매년말 다음연도 수수료율을 정함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공포일 이후 매각분부터 적용

9. 납세고지서 등 일부서식 개정(규칙)

서 식 명	구분	개정내용
납세고지서 [별지 제10호 서식]	개정	i) 부가가치세 예정분, 소득세 중간 예납분 등 고지목적에 맞는 산출 근거가 표시되도록 일부란을 공란 으로 두고, ii) 세액기재란이 협소하여 금액이 단위 구분선에 걸치거나 밀려 인쇄됨으 로써 금액단위가 오인되는 사례가 있어 금액의 단위구분선을 없애고, 콤마로 구분하도록 개정
독촉장 [별지 제17호 서식]	개정	납세고지서와 동일하게 금액을 표시 함에 있어 단위구분선을 없애고, 콤마로 구분하도록 개정
납부통지서 [별지 제12호 서식]	개정	납부할 세액을 통지하는 서식임에도 해당서식으로는 납부가 불가능하므로 서식을 일원화하여 납부통지 및 수납이 동시에 가능하도록 함
납부최고서 [별지 제18호 서식]	개정	납부최고서에 의해서도 수납이 가능 하도록 서식을 개선

## 소득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소득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개정된 주요내용】

### I. 연말정산 간소화

1. 연말정산 간소화
2.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기간 조정
3. 연말정산 전산화대상 자료제출 의무부여 등
4. 소득공제 증빙서류인 의료비영수증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행하는 의료비부담내역서 포함

### II.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방안

1. 퇴직연금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허용
2. 퇴직연금 및 퇴직일시금 수령시 소득공제 한도 조정
3. 퇴직연금 수령시 연금소득 과세방법
4. 퇴직연금 중도 인출시 과세방법
5. 퇴직연금 이전시 과세 방법
6. 퇴직연금 이전시 근속연수 계산방법
7. 퇴직연금 불입액에 대해 필요경비산입 허용
8. 퇴직급여충당금 필요경비산입 한도 축소

### III. 과세기반 확대 및 과세인프라 구축

1. 지급조서 제출시기 차등
2. 지급조서 제출수단 간소화
3. 타 공공기관이 보유한 근로소득자료 수집근거 마련
4. 인적용역 소득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
5.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대상 확대

6. 영수증수취명세서 작성범위 확대
7.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 적용범위 확대
8. 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 제출대상에 추가
9. 비과세 및 분리과세 이자·배당소득 지급조서 제출

#### IV. 납세편의 제고

1. 접대비 증빙요건 완화
2. 지급조서 등의 지연제출에 따른 가산세 경감
3. 수입계산서 제출의무 면제
4.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상한 적용기간 연장
5. 중도매인에 대한 계산서 보고불성실가산세제도 보완
6. 보고불성실 가산세 적용기준 명확화

#### V. 기부금공제대상 범위 확대 및 관리강화

1. 기부금 공제대상 확대
2. 人災로 생긴 이재민 구호금품을 법정기부금에 포함
3. 지정기부금 대상 비영리민간단체 추가
4. 기부금 영수증 허위발급에 대한 가산세 신설
5. 기부금 조문 정리

#### VI. 기 타

1. 귀환 국군포로의 급여 등에 대한 비과세
2. 주택자금 소득공제 대상 범위 축소
3. 주택자금 소득공제 신청시 주택 기준시가 확인서 제출
4. 주택분양권 주택가격기준 명시
5.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채무상환요건 변경시 주택자금 소득공제 요건 강화

6. 소득공제대상이 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주택 양수인이 인수한 경우 소득공제 요건 강화
7. 조정계산서 작성근거 규정 명확화
8.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기준 보완
9.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범위 축소
10. 국채 원금이자분리 제도 도입에 따른 과세근거 마련
11. 파생결합증권의 과세소득 구분 명확화
12. 재임용 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소득 계산방법 보완
13. 연말정산 소득공제 인터넷 증빙서류 범위를 국세청고시로 규정
14. 기타 조문정리

#### **【법 · 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일자】**

- 법 률 : 제7837호(2005.12.31)
- 대통령령 : 제19327호(2006.2.9)
- 재정경제부령 : 제503호(2006.4.10)

# I. 연말정산 간소화

## 1. 연말정산 간소화(법§165·규칙§58⑤)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위해 의료비·교육비 등 각종 증빙서류*를 제출  *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신용카드 공제 등	<input type="checkbox"/> 연말정산서류를 전산화  ○ 근로자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국세청에서 일괄조회*하여 연말정산 신청  *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연금저축 등에 대하여 국세청홈페이지에서 일괄조회  ○ 국세청은 전산으로 부당공제여부 확인

### (2) 개정이유

-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과정에서 수반되는 불편을 해소하고
- 사업자의 부담(서류 송달·보관비용) 등 사회적 비용 절감 도모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1.1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 2.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기간 조정(법§52①)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의료비의 소득공제 대상기간 조정 ○ 매년 1월~12월 지출분 * 신용카드사용액 소득공제 대상기간 : 전년 12월 ~ 금년 11월 지출분	○ 전년 12월~금년 11월 지출분

### (2) 개정이유

- 의료비의 경우 국세청의 전산처리에 따른 구축 기간(약30~40일)이 소요됨을 감안하여
  -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기간을 전년 12월~금년 11월 지출분으로 조정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1.1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3. 연말정산 전산화대상 자료제출 의무부여 등(법§165·영§216의 3)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lt;신 설&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checkbox"/> 영수증 발급기관에게 연말정산 전산화대상 자료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회, 여성가족부 등을 통하여 국세청에 제출토록 의무화</li> <li>○ 구체적인 제출시기 등은 국세청장이 정함</li> </ul> </li> <li><input type="checkbox"/> 국세청이 영수증발급기관에 대하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말정산자료 제출에 대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함</li> </ul> </li> <li><input type="checkbox"/> 연말정산자료의 비밀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료를 집중하는 협회 등은 과세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음</li> </ul> </li> <li><input type="checkbox"/> 의료비에 대하여는 납세자가 증빙서류 제출 거부의를 표명하는 경우 국세청장에게 제출 생략</li> </ul>

## (2) 개정이유

- 전산화가 가능한 연말정산자료\*는 발급기관이 협회, 등을 통하여 국세청에 제출토록 의무화

\* 퇴직연금,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직업훈련비, 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 신용카드사용액

- 연말정산자료 발급기관(금융기관, 교육기관, 의료기관 등)이 정당한 사유없이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자료제출을 독려할 수 있도록 함
- 연말정산자료를 집중하는 협회 등은 과세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이를 제공할 수 없음
-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을 적용

\* 국세기본법(§81의8) :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제공받아 알게된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자는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1.1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4. 소득공제 증빙서류인 의료비영수증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행하는 의료비부담내역서 포함(규칙§58)

(1) 개정이유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소득공제 증빙서류 중 의료비영수증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규칙」의 의료비영수증 <신 설>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행한 의료비부담내역서*

\*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되는 의료비 지출내역을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c.or.kr)에서 발급

(2) 개정내용

- 의료비지출액에 대하여는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없이 전산으로 자동처리 되더라도
- 전산처리과정에서의 오류 등으로 증빙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비영수증 또는 의료비부담내역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의료비영수증 발급에 따르는 불편을 해소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1.1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 II.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방안

### 1. 퇴직연금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허용(법§51의3)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근로자의 연금저축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 연간 240만원한도 ※ 국민연금, 공무원·군인연금 등 공적연금은 공제한도 없이 전액 공제 (연금수령단계에서 전액과세)	<input type="checkbox"/> 퇴직연금불입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추가 허용 ○ 기존 연금저축불입액과 통합하여 연간 3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

#### (2) 개정이유

- 퇴직연금제도의 시행('05.12)에 맞추어 근로자가 추가불입하는 퇴직연금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허용하여 퇴직연금제도의 활성화 유도

#### ※ 퇴직연금제도의 활성화 필요성

- 국민연금제도의 보완을 통해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가재정의 장기적인 안정 도모
- 기업도산시 근로자의 수급권을 보장하는 한편, 기업의 일시 퇴직금지급에 따른 자금부담 해소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5.12.1이후 퇴직연금 가입분부터 적용

2. 퇴직연금 및 퇴직일시금 수령시 소득공제 한도 조정 (법§47의 2·§48)

(1) 개정내용

총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연금수령시 일정액을 연금소득에서 공제  ○ 과표구간별 공제금액 - 250만원 이하 : 전액 공제 - 250~500만원 : 250만원 + 250만원 초과금액의 40% - 500~900만원 : 350만원 + 500만원 초과금액의 20% - 900만원 초과 : 430만원 + 900만원 초과금액의 10%  ○ 공제한도 : 600만원	<input type="checkbox"/> 연금수령시 소득공제금액 확대  ○ 과표구간별 공제금액 - 350만원이하 : 전액 공제 - 350~700만원 : 350만원 + 350만원 초과금액의 40% - 700~1,400만원 : 490만원 + 700만원 초과금액의 20% - 1400만원 초과 : 630만원 + 1400만원 초과금액의 10%  ○ 공제한도 : 900만원
<input type="checkbox"/> 퇴직금 수령시 퇴직급여액의 50%를 소득공제	<input type="checkbox"/> 퇴직금 수령시 퇴직급여액의 45%를 소득공제

(2) 개정이유

- 퇴직연금과 퇴직일시금간에 소득세 부담이 적정하게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 퇴직금제도를 퇴직연금으로 전환 유도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1.1일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3. 퇴직연금 수령시 연금소득 과세방법(영§42의2④)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input type="checkbox"/> 퇴직연금 수령시 과세대상 연금소득*은 연금 수령액에서 「본인 불입분중 소득공제 초과분」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math display="block">\text{연금수령액} \times [1 - (\text{근로자가 소득공제 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 \div (\text{총연금지급액**})]</math> </div> <p>* 현행 연금저축과 동일한 과세방식                      ** 연금지급개시일 현재의 원리금 합계액</p> <input type="checkbox"/> 일시금으로 수령시 퇴직소득으로 과세하되 연금과 동일한 계산방법으로 과세

#### (2) 개정이유

- 연금불입시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불입한 부분에 대해연금 수령시 비과세함으로써 이중과세 방지

#### <과세대상 연금소득 계산>

	불입단계	수령단계
· 소득공제분*	비과세	과 세
· 소득공제초과분	과 세	비과세

\* 현행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의 경우 불입단계에서 근로자 불입분 전액 공제 퇴직연금의 경우 불입단계에서 연금저축과 통합하여 300만원 한도 소득공제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4. 퇴직연금 중도 인출시 과세방법(영§42의2①)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input type="checkbox"/> 연금불입도중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허용하는 사유*로 중도인출시에는 인출금액을 퇴직소득으로 과세  * 「가입자 주택구입」,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6월 이상의 요양」, 「천재지변의 발생」 등

##### (2) 개정이유

- 확정기여형 상품\*이나 개인퇴직계좌\*\*(IRA: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의 경우 주택구입 등 일정 사유 발생시 중도인출이 허용되며
- 중도인출은 실질적으로 퇴직급여의 감소를 가져오는 급여 지급 성격이므로 퇴직소득세 과세
- \* 확정기여형 상품 : 불입액은 확정되어 있으나 수령액은 운영성과에 따라 달라지는 상품
- \*\* 개인퇴직계좌(IRA) : 근로자의 직장이동시 일시금이 수령·소진되지 않고 은퇴시까지 계속 적립될 수 있도록 하는 연금통산장치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5. 퇴직연금 이전시 과세 방법(영§42의2⑤)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p><input type="checkbox"/> 퇴직연금 이전시 과세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퇴직시 일시금을 수령한 후 60일이 내에 DC형 퇴직연금 및 IRA로 이전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미 납부한 퇴직소득세를 환급하고, 연금수령시 일괄하여 과세</li> </ul> </li> <li>○ 일시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적립된 자산을 금융기관간의 이전을 통해 IRA, DC형으로 직접 이전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세이연후 연금수령시 일괄하여 과세</li> </ul> </li> </ul>

### (2) 개정이유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근로자가 퇴직 및 직장이동시 받은 퇴직일시금을 연금간 또는 개인퇴직계좌(IRA)로 이전할 수 있어 이에 대한 과세방법 규정

\* 퇴직일시금(DB, DC, 퇴직금) → DC형, IRA로 이전 가능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5.12.1이후 이체 또는 입금하는 분부터 적용

## 6. 퇴직연금 이전시 근속연수 계산방법(영§105③)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퇴직소득에 대하여는 근속연수에 따라 퇴직소득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년이하 : 30만원×근속연수</li> <li>○ 5년초과 10년이하 : 150만원+50만원×(근속연수 - 5년)</li> <li>○ 10년초과 20년이하 : 400만원+80만원×(근속연수 - 10년)</li> <li>○ 20년초과 : 1,200만원+120만원×(근속연수 - 20년)</li> </ul>	<input type="checkbox"/> 직장이전 등으로 퇴직연금을 이전*후 퇴직금 수령시 근속연수 계산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퇴직금·퇴직연금(종전 직장) → DC형 퇴직연금·개인퇴직계좌(이전후 직장)</li> <li>○ 이전하기 전 근무기간과 이전 후 근무기간을 합산</li> <li>○ 개인퇴직계좌의 경우는 실제 이전된 퇴직연금액에 한하여 근속연수 합산</li> </ul>

### (2) 개정이유

- 직장이전으로 퇴직연금을 이전하고, 이전 후의 직장에서 퇴직금을 수령하는 경우 근속연수의 계산방법 규정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7. 퇴직연금 불입액에 대해 필요경비산입 허용(영§55①·③)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input type="checkbox"/> 사용자가 사용인 등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p> <p>○ 사외에 실제 적립하는 보험료등*은 필요경비 산입</p> <p>* 보험료등 : 퇴직보험료, 신탁부금</p> <p>○ 필요경비산입 한도액 : (퇴직금추계액에서 퇴직 급여충당금을 공제한 금액에 상당하는 보험료 등 - 직전 연도까지 지급한 보험료 등)</p>	<p>○ 보험료등에 사용자가 부담하는 퇴직연금 부담금 추가</p> <p>- 확정기여형(DC)의 경우 : 별도 전액 필요경비 산입</p> <p>- 확정급여형(DB)의 경우 : 퇴직보험료와 동일하게 필요경비 산입</p>

(2) 개정이유

- 2005.12월부터 퇴직연금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 노사합의에 의해 사용자가 부담하는 퇴직연금 부담금을 사업자의 필요경비로 인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2.9 이후 신고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 8. 퇴직급여충당금 필요경비산입 한도 축소(영§57①·②)

### (1)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안
<p><input type="checkbox"/> 사내유보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한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기한도 : 1년이상 근속한 사용인등의 총급여액의 10%</li> <li>○ 누적한도 : 퇴직금추계액의 40%</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년 미만인 경우에도 퇴직금지급규정이 있는 경우 인정하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급여액의 5%로 축소</li> </ul> </li> <li>○ 누적 한도액 단계적 축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계액의 30%('07~'08년은 35%)로 축소</li> </ul> </li> </ul> <p>* DC형 퇴직연금제도를 적용받는 근로자분은 제외</p>

### (2) 개정이유

- 퇴직금의 사외적립을 유도하기 위해 사내유보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손비인정 범위 축소
- 1년미만 근무시에도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고 있는 기업회계기준과 일치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7.1.1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분부터 적용

### Ⅲ. 과세기반 확대 및 과세인프라 구축

#### 1. 지급조서 제출시기 차등(법§164①)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근로소득 지급조서 제출시기  ○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말일	○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 고용관계 종료일이 속하는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

##### (2) 개정이유

- 상시근로자와 달리 이직이 빈번한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지급조서를 분기별로 제출토록 하여 일용근로자 개인별 소득 자료 관리를 강화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2. 지급조서 제출수단 간소화(법§164③·영§213의2)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지급조서 제출수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서, 정보통신망, 전산테이프(디스켓)</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한 지급조서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용근로소득</li> <li>- 과세미달자의 근로소득</li> </ul> </li> </ul>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10px;">* 제출내용 : 급여의 귀속시기·주민등록번호·급여액·결정세액</p>

### (2) 개정이유

- 지급조서 제출범위가 일용근로자 등으로 확대됨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용주의 납세절차상 부담을 덜어줌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3. 타 공공기관이 보유한 근로소득자료 수집근거 마련(법§17 2·영§223)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lt;신 설&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의 재산상태와 소득과약을 위하여 국세청의 자료열람 허용</li> <li>○ 주택·토지 및 자동차 등 등기·등록 자산의 매각·등기·등록자료</li> <li>○ 국민기초생활보장법·국민연금법 등에 따른 수급자 등의 소득·재산 및 급여자료 등</li> <li>○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 등에 의해 지급하는 연금소득자료</li> <li>○ 직장공제회의 납입공제료를 바탕으로 지급하는 반환금자료</li> </ul>

(2) 개정이유

- EITC(Earned Income Tax Credit) 도입 및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에 필요한 개인의 재산상태와 소득과약을 위해
  - 각종 행정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소득자료에 대한 국세청의 자료 열람을 허용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1.1이후 조회·열람하는 분부터 적용

#### 4. 인적용역 소득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법§173·영§224)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input type="checkbox"/> 사업자의 과세자료 제출 협조의무 신설 ○ 용역제공과 관련한 사업장 제공자 * 골프장경기보조용역·간병용역 등 ○ 용역을 중개·알선하는 사업자 * 대리운전·소포배달·파출용역 등

##### (2) 개정이유

- 소득·고용과 관련된 자료(근무일수·의뢰건수 등)를 다양하게 수집하여 납세자의 소득과약을 위한 자료로 활용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5.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대상 확대(영§8의2)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 3주택 이상 소유자 * 예외 : 기준시가 6억원초과 주택은 주택수에 상관없이 임대소득 과세	○ 2주택 이상 소유자

### (2) 개정이유

- 주택임대소득 과세강화를 통해 다주택 보유자의 투기심리 억제에 따른 주택 가격안정 효과와 과세형평 제고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6. 영수증수취명세서 작성범위 확대(영§132③)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영수증수취명세서 제출대상금액 ○ 10만원 초과분 *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가산세 1% 부과 * 영수증수취명세서 : 영수증을 수취한 거래 내역(공급자·거래금액·거래일자 등)을 기재한 명세서	○ 5만원 초과분

### (2) 개정이유

- '04년부터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대상이 되는 거래금액이 10만원에서 5만원 초과분으로 개정되었으나
  - \* 계산서·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직불카드·선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 영수증수취명세서의 작성대상은 10만원으로 규정되어 있어 서로 일치하지 않는 점을 보완
- 영수증수취명세서 제출대상 금액기준을 낮춤으로써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5~10만원사이의 지출에 대해서도 증빙관리를 강화
  - \*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 증빙불비가산세 2%를 부과받음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1.1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 7.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 적용범위 확대(영§147⑥)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 적용 대상자 <input type="radio"/> 복식부기의무자	<input type="radio"/> 모든 사업자에게 확대 적용

### (2) 개정이유

- 과세인프라 구축을 위해 간편장부대상자를 포함한 모든 사업자에게 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 부과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1.1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 [참고] 간편장부대상자 기준금액

업 종	수입금액
1. 농업, 수렵업 및 임업(산림소득 포함),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 매매업, 기타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	3억원 미만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자용품 수리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1억5천만원 미만
3.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7천5백만원 미만

## 8. 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 제출대상에 추가(영§213)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지급조서 제출대상 <input type="checkbox"/>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소득자	<input type="checkbox"/>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를 포함)

### (2) 개정이유

- 소득과약인프라 구축을 위해 일용근로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고용주에게 지급조서 제출의무 부여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2.9이후 발생하여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 다만, 일용근로자에 대한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의 경우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할 자(법인 포함)가 2007.1.1이후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9. 비과세·분리과세 이자·배당소득 지급조서 제출(영§214)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지급조서 제출의무 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과세 이자·배당·기타소득 등</li> <li>○ 분리과세 이자·배당소득</li> <li>○ 소액의 이자·배당·기타소득</li> <li>○ 소액의 강연료 소득</li> <li>○ 복권·경품권 기타 추첨권 기타소득</li> <li>○ 승마·경륜·경정 투표권 슬러트머신 당첨금품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출(비과세 기타소득* 제외) * 국가 등이 지급하는 상금 등</li> <li>○ 제출</li> <li>○ 제출</li> <li>○ 제출</li> <li>○ 10만원 초과분은 제출</li> <li>○ 과세최저한* 초과금액은 제출</li> </ul>

\* 과세최저한: · 승마투표권 또는 경륜·경정 승자투표권의 권면표시금액의 합계액이 10만원 이하이고 환급금이 단위투표금액의 100배 이하인 때  
 · 슬러트머신 당첨금품이 건당 500만원 미만인 때  
 · 기타 소득금액 매건마다 5만원 이하인 때

### (2) 개정이유

- 과세인프라 구축을 위해 제출의무가 면제되었던 지급조서 등에 대해서도 제출의무 부여
- 다만, 기타소득 중 지급조서 제출의 실익이 크지 않은 소득은 현재와 같이 지급조서 제출의무 면제
  - 복권 등 기타소득(10만원 이하), 경마투표권 등 기타소득(과세최저한금액 이하) 및 비과세되는 기타소득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2.9이후 발생하여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 기타소득은 2007.1.1이후 발생하여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 IV. 납세편의 제고

### 1. 접대비 증빙요건 완화(법§35·영§84)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 접대비 관련 증빙서류 수취의무</p> <p>○ 5만원초과 접대비는 법정증빙서류* 미수취시 한도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손금불산입</p> <p>* 법정증빙서류 : 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직불카드·기명식 선불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p>	<p>○ 현금 외의 다른 수단이 없어서 법정증빙 수취의무이행이 어려운 국외지역에 대하여는 예외 인정</p> <p>○ 경조사비의 경우 법정증빙서류 수취의무 대상금액을 10만원으로 인상</p>

#### (2) 개정이유

- 현실적으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증빙수취가 곤란한 경우를 고려하여 증빙수취 예외 범위 확대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1.1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 2. 지급조서 등의 지연제출에 따른 가산세 경감(법 §81⑤·⑦)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기한내 미제출시 가산세 부과 ○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 (익년 2월말 제출) : 미제출·불분명 금액 × 2% ○ 계산서 합계표 미제출가산세 (익년 1월말 제출) : 미제출 가액 × 1%	<input type="checkbox"/> 제출기한 경과 후 1월이내 제출시 50% 경감

### (2) 개정이유

- 지급조서·계산서 합계표 제출에 대한 납세자의 기한내 협력 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도한 부담을 완화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1.1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 3. 수입계산서 제출의무 면제(법§163⑤ · 영§212의2)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물품 수입시 세관장은 계산서 교부 생략 가능  <input type="checkbox"/> 단, 수입자가 요구시 교부  <input type="checkbox"/> 사업자는 교부받은 계산서의 합계표 제출의무  * 세관장과 사업자 모두 수입계산서 합계표 제출의무	<input type="checkbox"/> 세관장은 계산서 교부 및 계산서합계표 제출 의무화  <input type="checkbox"/> 사업자는 계산서 합계표 제출의무 면제

#### (2) 개정이유

- 수입물품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고 있어 거래자료가 투명하게 노출되므로 사업자의 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를 면제
- 동시에, 세관장의 계산서 교부를 의무화함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1.1이후 교부하는 분부터 적용

#### 4.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상한 적용기간 연장(영§143)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추계결정 소득금액의 상한선 설정 ○ 기준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의 일정배율(1.5배) 범위 한도에서 결정 *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및 배율은 국세청장이 기준경비율심의회 의 심의를 거쳐 결정	<input type="checkbox"/> 적용기간 연장 ○ 3년 연장 ('07년 귀속분까지)

##### (2) 개정이유

- 기준경비율제도 시행으로 사업자의 소득세부담이 단기간에 대폭 늘어나는 것을 완화하여 기준경비율제도가 원만하게 정착되도록 지원
- \* 소득령 부칙§2(2002.12.30 대통령령17825호)에서 3년간('02~'04) 한시적으로 운영토록 규정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2.9이후 신고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5. 중도매인에 대한 계산서 보고불성실가산세제도 보완  
(영147·영 제15969호 부칙§19)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중도매인중 복식부기의무자*는 일정비율이상으로 계산서 교부의무  ○ 연도별 의무교부비율 '02   '03   '04~'05   '06~'07 10%  20       40       80  * 연간 수입금액 3억원이상인 사업자 ** 계산서를 일정비율에 미달하여 교부하는 경우 미달금액에 대하여 가산세 (1%) 부과	<input type="checkbox"/> 중도매인에 대한 계산서 의 무교부비율 조정  ○ 연도별 의무교부비율 - 서울시 소재 중앙도매시장의 중도매인 '05   '06   '07   '08   '09   '10 40%  40   45   50   55   60  - 그 외 중도매인 '05   '06   '07   '08   '09   '10 20%  20   25   30   35   40

(2) 개정이유

- 중도매인의 경우 계산서 교부에 어려움이 크고 특히, 지방지역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교부의 어려움을 감안
  - 계산서 제도가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 보완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2.9이후 신고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 6. 보고불성실 가산세 적용기준 명확화(영§147⑥)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보고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인 복식부기의무자를 판정시  <input type="checkbox"/>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간이과세자에 대하여는 수입금액을 합계하여 복식부기의무자여부 판단  * 계산서 미교부, 합계표 미제출시 미교부·미제출금액의 1% 가산세 부과	<input type="checkbox"/> 간이과세자의 복식부기의무자 판정시  <input type="checkbox"/> 면세사업 외에 과세사업을 영위하거나 2이상 사업장을 가진 경우에도 모든 수입금액을 합계하여 판단

### (2) 개정이유

- 보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복식부기의무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 간이과세자가 2이상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경우에도 수입금액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규정을 명확화
- \* 수입금액 합계액 계산 산식
  - 주업종(수입금액 가장 큰 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 외의 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에 대한 업종별 기준금액/주업종 외의 업종에 대한 업종별 기준금액)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V. 기부금공제대상 범위 확대 및 관리강화

### 1. 기부금 공제대상 확대(법§34②6호)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법정기부금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립학교, 기능대학, 국립 대학병원 등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li> </ul>	<input type="checkbox"/> 법정기부금 대상기관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영리교육재단</li> <li>○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내 외국교육기관</li> <li>○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및 대구경북과학기술원</li> <li>○ 대한적십자사</li> </ul>

#### (2) 개정이유

- 외국교육기관 및 과학기술교육기관 등 교육기관을 법정기부금 단체로 추가하여 세제상 지원
- 대한적십자사가 수행하는 긴급구호·혈액사업 등의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한적십자사를 법정기부금 대상에 추가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1.1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2. 人災로 생긴 이재민 구호금품을 법정기부금에 포함(법§34②제3호·영§81⑦)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 법정기부금의 범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지자체에 기부</li> <li>○ 국방헌금과 위문금품</li> <li>○ 천재·지변으로 생긴 이재민 구호금품</li> </ul>	<p>(현행 유지)</p> <p>(현행 유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천재·지변 및 기타 재난으로 생긴 이재민 구호금품</li> </ul> <p>* 기타재해의 범위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상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재난으로 한정</p>

(2) 개정이유

- 人災 등 기타재해\*로 생기는 이재민에 대한 구호금품에 대해서도 법정기부금으로 인정하여 이재민 지원을 유도할 필요
- \* 예: 대구지하철 화재사고(종전에는 천재·지변으로 생긴 이재민이 아니므로 법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음)
- 다만, 기타재해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재난으로 한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1.1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 3. 지정기부금 대상 비영리민간단체 추가(영§80·규칙§44의2)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input type="checkbox"/> 지정기부금* 지정단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인세법에 의한 지정단체</li> <li>○ 노동조합비</li> <li>○ 교원단체 납부회비</li> <li>○ 공무원직협 납부회비</li> </ul> <p>* 소득금액의 10%범위내에서 비용으로 인정되는 기부금</p>	<p><input type="checkbox"/> 일정 요건을 갖춘 비영리민간단체를 지정기부금 대상에 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지정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li> <li>- 해산시 잔여재산 처분 제한*</li> </ul> </li> <li>* 잔여재산이 국가, 지자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단체에게 귀속되도록 규정</li> <li>- 자체재원조달비율*이 50% 이상 : 총수입중 개인의 회비·후원금이 차지하는 수입비율*이 50% 초과</li> <li>* 정부지원·기업협찬 및 자체 수입사업 등을 제외한 개인의 참여를 통한 자발적인 재원조달 비율</li> <li>** 개인회비와 개인후원금(예:특별회비 등)의 구분이 사실상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개인의 회비와 후원금을 모두 합산하여 수입비율을 계산</li> <li>○ 지정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자치부장관 추천</li> <li>- 재경부장관이 심사·지정</li> </ul> </li> <li>○ 사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산보고서 제출 및 공개</li> <li>- 5년마다 재지정</li> </ul> </li> </ul>

## (2) 개정이유

-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민간단체를 지정기부금 대상 단체로 지원
  - 다만, 기업 등에 대한 사회적 감시기능을 수행하는 비영리민간단체의 특성을 감안하여 개인기부금만 제한적으로 인정
- 지정기부금단체는 주무관청에 등록 및 감독을 받으나 비영리민간단체의 경우 사회적 감시기능을 담당하므로 감독을 면제하는 대신 결산보고서 공개 등 사후관리 장치를 마련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1.1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 4. 기부금 영수증 허위발급에 대한 가산세 신설(법§81⑤·⑦)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input type="checkbox"/> 개인으로부터 연간 100만원이상의 기부를 받은 단체는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장을 작성하고 5년간 보관의무</p> <p>&lt;신 설&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급대장 작성 불이행가산세 :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의 0.1%</li> <li>○ 허위 기부금영수증 발급 가산세 : 사실과 다른 금액의 1%</li> </ul>

##### (2) 개정이유

- 기부 및 기부금 수령과정에서의 투명성 제고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1.1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 5. 기부금 조문 정리(법§34 ②제3호의2)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자원봉사용역에 대한 기부금 공제 ○ 자원봉사지역 -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특별재해지역과 ‘재난관리법’에 의한 특별재난지역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특별재난지역

### (2) 개정이유

-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특별재해지역과 「재난관리법」에 의한 특별재난지역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특별재난지역으로 통합됨에 따른 조문 정리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1.1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 VI. 기 타

### 1. 귀환 국군포로의 급여 등에 대한 비과세(법§12)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귀환 국군포로가 받는 ○ 급여, 퇴직소득 및 보상금, 연 금소득은 과세	○ 비과세

#### (2) 개정이유

-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조속한 정착을 지원하고 유사한 사례들과의 형평차원에서 비과세

\* 유사한 비과세 규정

- 작전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외국에 주둔중인 군인·군무원의 급여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법」에 의하여 받는 정착금, 보조금 및 기타금품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1.1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 2. 주택자금 소득공제 대상 범위 축소(법§52)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input type="checkbox"/> 주택마련저축불입액 소득공제</p> <p>○ 공제대상자 : 무주택자, 국민주택이하 1주택 소유자</p>	<p>○ 공제대상자 : 무주택자, 국민주택이하 1주택 소유자로 서 가입당시 기준시가가 3억 원 이하</p>
<p><input type="checkbox"/>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p> <p>○ 공제대상자 : 세대주인 근로자</p> <p>- 국민주택이하 주택 취득</p> <p>* 분양권을 취득하고 완공시 모기지론 으로 전환하는 경우 포함</p> <p>- 취득주택을 포함한 2주택이 상 소유자는 거주하는 주택에 한하여 공제</p> <p>* 2이상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 하나만 적용</p>	<p>○ 공제대상자 : 세대주인 근로자</p> <p>- 국민주택이하로서 기준시가 3 억원 이하인 주택 취득</p> <p>* 분양가격이 3억원이하인 분양권 취득 하고 완공시 모기지론으로 전환</p> <p>- 2주택 이상 소유자는 소득공제 제외</p> <p>* 2이상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 소득공제 제외</p>

(2) 개정이유

- 주택 취득자금에 대한 소득공제 범위를 축소함으로써 부동산투기 억제 도모
- 1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하여 다른 주택의 취득을 지원하는 것은 부동산투기 자금을 정부가 지원하는 결과를 초래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1.1이후 신규로 가입하거나 대출받는 분부터 적용

3. 주택자금소득공제 신청시 주택 기준시가 확인서 제출  
(규칙§58①제4호)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lt; 신 설 &gt;</p>	<p><input type="checkbox"/> 주택가격 입증서류로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제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양계약서</li> <li>-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또는 공동주택가격 확인서</li> <li>- 기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서류</li> </ul>

(2) 개정이유

- 주택자금 소득공제 대상이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으로 제한됨에 따라 연말정산 신청시 주택공시가격을 입증할 서류를 첨부할 필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1.1이후 가입하거나 대출받는 분부터 적용

#### 4. 주택분양권 주택가격기준 명시 (영§112⑬신설)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주택분양권 및 입주권에 대한 평가방법 신설	<input type="checkbox"/> 주택분양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양가격</li> </ul> <input type="checkbox"/> 주택입주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건물과 부수토지 평가액 + 납부한 청산금</li> </ul> </li> <li>○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건물과 부수토지 평가액 - 지급받은 청산금</li> </ul> </li> </ul>

##### (2) 개정이유

- 분양권은 분양가격으로 평가하여 3억원이하인 경우 주택자금 소득 공제 허용
- 입주권은 기존건물과 부수토지 평가액 ± 납부한(지급받은) 청산금으로 평가한 금액이 3억원이하인 경우 공제 허용
  - \* 양도차익 산정에 있어서 기존 건물을 제공하고 입주권을 배정받은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과 동일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1.1이후 대출받는 분부터 적용

5.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채무상환요건 변경시 주택자금 소득공제 요건 강화(영§112①)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input type="checkbox"/> 소득공제대상이 아닌 15년 미만 주택저당차입금을</p> <p>○ 소득공제대상인 15년이상 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기존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 가능</p> <p>*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주택자금 소득공제 요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환기간이 15년이상</li> <li>- 주택소유권이전등기일부터 3개월 이내 차입</li> </ul>	<p><input type="checkbox"/> 소득공제 요건 보완</p> <p>○ 15년이상 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시 주택 기준시가가 3억원이하인 경우에만 소득공제</p>

(2) 개정이유

- 장기주택저당 차입금을 새로이 설정하는 경우에 주택기준시가 요건을 두고 있는 것과의 과세형평차원에서
- 소득공제대상이 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시에도 주택 기준시가를 소득공제요건에 포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1.1이후 전환 또는 상환하는 분부터 적용

6. 소득공제대상이 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주택 양수인이 인수한 경우 소득공제 요건 강화(영§112⑫)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주택 양수인이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인수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주택 양수인이 잔여 소득공제기간동안 소득공제 가능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주택자금 소득공제 요건 - 상환기간이 15년이상 - 주택소유권이전등기일부터 3개월 이내 차입	<input type="checkbox"/> 소득공제 요건 보완  <input type="checkbox"/> 주택 양수시 주택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소득공제

(2) 개정이유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새로이 설정하는 경우와 과세형평에 비추어
  - 기존 차입금을 양수하는 경우에도 주택 양수시점에서 주택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경우로 한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1.1이후 주택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 7. 조정계산서 작성근거 규정 명확화(법§70)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lt;신 설&gt;</p>	<p><input type="checkbox"/> 조정계산서 작성제출 위 임근거 명확화</p> <p>* 시행령에 조정계산서 내용 및 작성대상 등이 규정</p>

### (2) 개정이유

- 조정계산서를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 대차대조표, 손익  
계산서 등과 함께 제출토록 하고 있으나
  - 법률상 위임규정이 없어 작성제출에 따른 다툼의 소지가 있  
으므로 조정계산서 작성 근거규정 명확화
  - \* 법인세법(§60) 규정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조정  
계산서”로 조정계산서에 대한 위임근거를 명확히 규정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8.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기준 보완(법§81)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납부불성실 가산세  ○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 1일 1만분의 3	○ 환급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하여 초과 환급받은 경우에도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 (2) 개정이유

- 현재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만 가산세를 부과하고
- 기납부세액 또는 공제감면세액을 허위로 기재하여 과다 환급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이를 보완하여 명확화함

※ 2003.12.31 「부가가치세법」 §22⑤개정(납부불성실가산세 대상)

-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여 과다하게 환급된 경우 추가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1.1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9.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범위 축소(영§16)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범위  ○ 국외지역 근무자 - 월 150만원	○ 비과세 금액 축소 - 월 150만원 → 월 100만원 - 선원은 현행 유지 · 월 150만원

(2) 개정이유

-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제도('74년 도입)는 외화획득차원에서 국외 인력송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나
  - 인력송출이 고소득 전문직중심의 해외취업형태로 전환된 점을 감안하면 오히려 고소득자를 지원하게 되어 불합리
- 근무환경이 특별히 열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외근무를 선호하는 현실과 국내 근로자와의 과세불형평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감면 축소
- 다만, 외항선원과 원양어선원의 경우 열악한 근무환경과 해운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차원에서 선원의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금액은 현행 유지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10. 국채 원금이자분리 제도 도입에 따른 과세근거 마련(영§22의2)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국채의 이자와 할인액은 이자 소득으로 과세	<input type="checkbox"/> 국채의 원금과 이자가 분리 되는 경우* 원금분리채권 및 이자분리채권의 할인액은 이자소득으로 과세 * 국채의 STRIPS
<input type="checkbox"/> 다만, 통합발행을 위해 공개 시장에서 국채를 발행하는 경우 매각가액과 액면가액의 차액은 과세대상에서 제외	<input type="checkbox"/> 원금과 이자가 분리된 국채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 국채의 원금이자분리제도(STRIPS : Seperate Trading of Registered Interest and Principal of Securities) : 이표채의 원금과 이표를 분리하여 각각을 별개의 무이표 채권(zero coupon bond)으로 매매하는 제도

### (2) 개정이유

- 장기 채권시장 육성을 위해 도입되는 국채의 원금이자분리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 국채가 분리되는 경우 원금분리채권과 이자분리 채권의 할인액이 각각 과세대상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 \* 국채원금이자분리제도는 '06년 이후 발행되는 국채부터 적용
  - 통합발행되는 원금이자분리채권의 발행(분리)시점의 차이에 따른 매각가액과 액면가액과의 차액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11. 파생결합증권의 과세소득 구분 명확화(영§26의3)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input type="checkbox"/> 파생결합증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의 유형 : 배당소득 * 파생결합증권의 범위 :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3(유가 증권외의 지정) 7호(ELS), 8호에 규정하는 증권 또는 증서

※ 파생결합증권의 개념 : 주식(또는 주가지수), 금리, 환율, 상품, 신용 등의 기초자산 등의 변동에 따라 가치가 변동하는 증권 또는 증서

### (2) 개정이유

- 파생결합증권의 경우 기초자산의 수준에 의해서 수익 수준이 결정되는 실적배당 상품으로 수익분배의 성격
  - \* ELS의 경우 재경부 유권해석에 의해 배당소득으로 기규정
- 시행령에서 파생결합증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의 구분을 명확히 함으로써
  - 향후 다양한 파생결합증권\*이 출시될 경우 소득구분에서 발생하는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고 파생결합증권의 투자활성화를 유도
  - \* 이자율-주식 연계상품, 신용-주식 연계상품 등 두 종류 이상의 기초자산이 결합된 상품이 출시될 경우 현행법상 소득구분이 불명확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2.9 이후 최초로 발행하는 분부터 적용

12. 재임용 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소득 계산방법 보완  
(영§40의3·§42의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p><input type="checkbox"/> 재임용된 공무원 등이 퇴직시 받는 연금 및 퇴직일시금의 과세소득 계산방법</p> <p>○ 퇴직시 수령한 일시금* 중 재임용시 반납한 금액은 과세대상에서 제외</p> <p>* 퇴직금수령단계에서 퇴직소득세 기부담</p> <p>① 연금소득 = 연금수령액 × 재임용이후 기여금 불입월수 / 총기여금 불입월수</p> <p>② 퇴직일시금 = 총수령액 × 재임용이후 기여금 불입월수 / 총기여금 불입월수</p>

(2) 개정이유

- 퇴직한 공무원이 재임용되어 재직기간을 합산하고자 하는 경우 기수령한 퇴직금을 반납하여야 하는 바
- 반납한 퇴직금에 대해서는 당초 퇴직시 기과세된 소득이므로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하여 이중과세를 방지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13. 연말정산 소득공제 인터넷 증빙서류 범위를 국세청고시로 규정(규칙§58)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연말정산 증빙서류의 범위 <input type="checkbox"/> 위·변조장치를 갖추어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서류 포함 <input type="checkbox"/> 국세청장은 위·변조장치에 대해 고시	<input type="checkbox"/> 연말정산 증빙서류의 범위 <input type="checkbox"/> 국세청장은 인터넷발급서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고시

(2) 개정이유

- 인터넷 증빙서류의 위·변조장치와 인터넷 증빙서류 발급기관에 대한 인증절차를 국세청이 고시로 규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년 귀속 연말정산분부터 적용

## 14. 기타 조문정리

### 중간예납액 용어정리(법§65⑤)

- 반복된 내용을 정의규정에 의거 조문정리

###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경정절차 보완(법§69⑤)

-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자진납부와 관련 인용된 조문(제107조)의 삭제로 인한 결정·경정에 관하여 제114조를 적용토록 조문정리

### 비사업자에 대한 고유번호 부여(법§168)

-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있는 점을 감안 고유번호도 사업장소재지관할세무서장이 부여하도록 근거 명확화

### 농가부업소득의 범위(영§9)

- 농어촌정비법 개정에 따른 농어촌민박의 범위 개정

### 기부금전액이 공제되는 사회복지시설 등의 범위(영§79의2)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중전:윤락행위방지법)의 개정

## 법인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법인세법 · 시행령]

## 【개정된 주요내용】

### I. 기업구조조정 관련세제 보완

1. 합병평가차익 과세이연 대상 자산 확대
2. 합병시 이월결손금 승계요건 완화
3. 역합병시 이월결손금 공제요건 강화
4. 증권거래법에 의한 합병시 부당행위계산부인 배제
5. 분할평가차익에 대한 과세이연 대상자산 확대
6. 분할시 이월결손금 승계 제도 도입
7. 자산교환시 과세이연 요건 완화
8. 자본거래 발생 소득의 범위 보완
9. 채무의 출자전환 지원
10. 지주회사 설립·운영에 대한 지원 확대
  - 가. 자회사의 재출자에 대한 익금불산입 배제 규정 보완
  - 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대상 보완
  - 다.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대상 주식수 계산방법 보완

### II. 규제적 기업과세제도 정비

1. 보험사에 대한 사업비 규제 폐지
2. 비상위험준비금 손금산입기준 변경
3. 접대비 증빙요건 완화
4. 지급조서등의 지연제출에 대한 가산세 경감
5. 부득이한 사유로 공사부담금 미사용시 예외

### III. 기업과세제도의 선진화

1. 기부금 제도 개선
  - 가. 기부금 손비인정한도 조정

- 나. 기부금 영수증 불성실발급 가산세 신설
- 다. 현물 기부자산 평가방법 보완
- 라. 지정기부금 대상단체 확대
- 2. 경비 등 기업과세제도의 합리화
  - 가. 맞춤형 교육을 위한 지출비용 손비인정
  - 나. 대손의 범위 조정
- 3. 퇴직연금제도 도입에 따른 퇴직금제도 개선
  - 가. 퇴직연금 불입액에 대해 손금산입 허용
  - 나. 퇴직급여 충당금 손금산입 한도 축소
- 4. 건축물부속설비에 대한 기준내용연수 단축
- 5.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조화
  - 가. 통화스왑계약 평가대상 법인의 범위 확대
  - 나. 유형자산 취득시 강제매입한 국·공채 처리방법 보완
  - 다. 감액평가손실이 인정되는 주식의 범위 확대
  - 라. 지급이자로 구분계상 가능한 연지급수입의 범위 확대

#### IV. 납세편의 제고 등

- 1. 원천징수세액의 본점 일괄 납부 허용
- 2. 수입업자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 폐지
- 3. 감가상각 내용연수 특례신청 및 승인 일원화
- 4. 지출증빙서류의 수취대상 사업자 범위 보완
- 5. 외국법인의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기한 연장

#### V. 기타 미비점 보완

- 1. 비영리법인의 범위에 조합공동사업법인 추가
- 2. 유치원의 설립근거법 조문정리
- 3. 명목회사의 지급배당 소득공제제도 보완
- 4.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발기인에 신탁회사 추가
- 5. 자본거래를 통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명확화

6. 중간예납 자기계산서 기한내 신고의무 부여
7. 금융기관의 채권 이자소득에 대해서도 원천징수
8. 금융기관의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재시행에 따른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조정
9.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기준 보완
10.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 확대
11. 연금 및 공제업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한도 명확화
12. 한국투자공사를 금융기관에 추가
13. 과세이연대상 국고보조금의 범위 확대
14. 배드뱅크로부터 받는 배당금 귀속시기 특례 허용
15. 분식회계법인의 합병시 환급세액 승계 명확화
16. 해산시 청산소득금액 계산방법 명확화
17. 중도매인에 대한 계산서 불성실가산세제도 보완
18.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특례 범위 보완
19. 당좌대출이자율 근거기준 조정

**【법 · 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일자】**

- 법 률 : 제7838호(2005.12.31)
- 대통령령 : 제19328호(2006.2.9)
- 재정경제부령 : 제497호(2006.3.14)

# I. 기업구조조정 관련세제 보완

## 1. 합병평가차익 과세이연 대상 자산 확대(영§80)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시가로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 합병평가차익 발생 * 합병차익 = 승계한 순자산가액(시가) - 합병대가  <input type="checkbox"/> 요건 충족시 토지와 건축물의 평가차익은 과세이연 허용 * 추후 처분시점에서 과세되거나 감가상각비와 상계	<input type="checkbox"/> 과세이연 대상자산을 기계장치등 모든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으로 확대

### (2) 개정이유

- 합병법인의 평가차익은 대부분 토지·건물에서 발생하고, 기계장치등의 경우 평가의 복잡성등을 감안하여 과세이연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 업종에 따라 기계장치등 사업용자산의 평가차익이 크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 과세이연 대상 자산을 모든 유형고정자산으로 확대하여 합병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2.9이후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

## 2. 합병시 이월결손금 승계요건 완화(법§45)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합병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승계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합병법인 주주 등의 지분이 10%이상</li> <li>○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li> <li>○ 역합병이 아닐 것</li> <li>○ 합병법인이 승계받은 사업을 구분경리</li> </ul> <p>* 승계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범위내에서 공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일업종(세세분류 기준, 겸업의 경우 동일사업 고정자산의 비율이 70% 초과) 법인간 또는 중소기업간 합병시 안분계산* 허용</li> </ul> <p>* 안분계산기준 : 사업용자산 가액(각 사업연도말 계속 보유·사용, 대체취득 허용) 비율</p>

### (2) 개정이유

- 합병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승계를 허용하되,
  - 조세회피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합병법인이 승계사업을 구분경리토록 하여 승계사업 발생소득을 계산해내는 경우만 공제토록 하고 있으나
  - 동일업종 법인간 합병이나 중소기업의 경우 구분경리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승계사업 발생소득의 안분계산을 허용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1.1이후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

<구체적 적용요건>

□ 안분계산의 기준이 되는 자산가액비율

- 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과 피합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하되
  - 승계받은 피합법법인 자산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계속 보유·사용하는 고정자산에 한정
  - 처분후 대체취득한 고정자산의 경우 계속 보유·사용한 것으로 인정
- \*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경과시까지 사업용 고정자산은 구분 필요

□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판정방법

- 동일사업 판정기준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기준
  - \* 예) 보험 및 연금업의 경우
    - 생명보험업(66010) : 생명보험, 개인연금, 개인상해보험 등
    - 손해보험업(66031) : 화재해상보험, 자동차보험, 화물보험 등
    - 보증보험업(66032) : 재정보증보험, 신용보증업 등
    - 개인공제업(66021) : 군인공제, 교원공제
    - 사업공제업(66022) : 건설공제, 주택공제

- 2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동일사업 법인 판정기준
  - 합병법인 및 피합법법인 각각의 사업용고정자산가액 중 동일 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용고정자산가액의 비율이 각각 70%를 초과하는 경우

예)



· [갑] A·B부분의 사업용고정자산 비율 : 75%  
 · [을] A·B부분의 사업용고정자산 비율 : 73% ] ⇒ ∴ 동일사업  
 요건 충족

<사례> A법인(제조업)이 이월결손금이 있는 B법인(건설업)을 흡수합병  
 한후 10억원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

A법인(제조업) (자산 20억원)	+	B법인(건설업) (자산 10억원)	=	A법인(제조,건설) (자산 30억원)
		(소멸, 결손금 5억원)		* 소득 10억원 발생

□ 현재는 합병법인이 제조업과 건설업을 구분경리하여 승계받은 사업(건설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계산한 경우에 한하여 그 금액내에서 승계한 이월결손금의 공제를 허용

예) 구분경리 결과, 제조업 소득 8억원, 건설업 소득 2억원인 경우 승계한 이월결손금 5억원은 건설업 소득(2억원)에서만 공제

\* 나머지 3억원은 당초 발생시점부터 5년까지 이월공제 가능

□ 그러나, 현실적으로 중소기업의 경우 구분경리할 능력이 부족하고, 동일업종간 합병의 경우 구분경리가 쉽지 않음

□ 따라서, '06.1.1부터는 중소기업간 또는 동일업종간 합병의 경우에는 구분경리하지 않더라도

○ 전체 소득을 합병당시 두 법인의 사업용 자산가액비율로 안분하여 승계사업(건설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계산할 수 있도록 특별 허용

\* 제조업 소득 : 10억원 × 20억원/30억원 = 6.6억원  
 건설업 소득 : 10억원 × 10억원/30억원 = 3.3억원

⇒ 따라서, 구분경리하지 않더라도 승계한 이월결손금(5억원)중 3.3억원까지는 공제가 가능

### 3. 역합병시 이월결손금 공제요건 강화(영§81④)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 합병시 이월결손금 공제제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인이 이월결손금을 보유한 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 승계한 이월결손금의 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합병후 발생소득을 구분경리하여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서만 공제</li> </ul> </li> <li>○ 역합병(결손금이 많은 법인이 존속)으로서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조세회피목적의 합병으로 보아 합병법인이 본래 보유한 이월결손금의 공제를 배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합병후 2년내 소멸법인의 상호로 변경시</li> </ul> </li> <li>- 기타의 경우 : 제한없이 공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월결손금 공제가 배제되는 역합병의 범위를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합병후 5년내 소멸법인의 상호(또는 소멸법인의 상호만 포함된 다른 상호)로 변경시</li> </ul> </li> <li>- 존속법인이 다음 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합병계약 당시 주가가 소멸법인보다 낮은 경우</li> <li>· 소득금액 및 순자산가액이 소멸법인보다 적은 경우</li> <li>· 최근 3년간 결손금 합계액이 소득금액 합계액 초과시</li> <li>· 이월결손금 차이가 50%초과시</li> </ul> </li> </ul>

(2) 개정이유

- 이월결손금 공제를 통한 조세경감을 목적으로 결손법인이 우량 법인을 흡수합병하는 역합병에 대한 규제를 강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2.9이후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

#### 4. 증권거래법에 의한 합병시 부당행위계산부인 배제(영§88)

##### (1) 개정내용

증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간 주식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주주(법인)가 다른 법인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input type="checkbox"/> 증권거래법에 따라 합병비율을 산정하여 합병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배제

##### (2) 개정이유

- 특수관계있는 법인간 불공정합병에 있어서 주주간 이익분여에 대해 개인주주에게는 증여세를, 법인주주에게는 행위계산을 부인하고 법인세를 과세하고 있음
- 상증법에서는 증권거래법에 적합하게 합병한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법인세법에서도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에서 제외(우리부 예규 법인 2005-7, '05.7.2)를 명문화)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
- ※ 증권거래법상 합병비율 산정시 주식평가방법
  - 상장법인등 : 1개월·1주일·최근일 증가평균액과 최근일 증가중 낮은 가액. 다만, 자산가치보다 낮은 경우 자산가치
    - \* 세법 : 합병등기일 전·후 2월의 증가평균액
  - 비상장법인 : 자산가치(장부가액)와 수익가치(추정이익)를 2:3의 비율로 가중평균
    - \* 세법 : 자산가치(시가), 수익가치(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를 2:3의 비율로 가중평균

## 5. 분할평가차익에 대한 과세이연 대상자산 확대(영§82)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input type="checkbox"/> 분할신설법인, 불합합병상대방 법인이 분할법인의 자산을 시가로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 분할 평가차익 발생</p> <p>* 분할차익 = 승계한 순자산가액(시가) - 분할대가</p> <p>○ 요건 충족시</p> <p>- 물적분할 : 모든 자산에 대해 과세이연</p> <p>* 주식처분시 과세, 분할신설법인이 3년내 사업폐지시 과세</p> <p>- 인적분할 : 토지·건물에 대해 과세이연</p>	<p>- 모든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에 대해 과세이연 허용</p>

### (2) 개정이유

- 분할신설법인등의 평가차익은 대부분 토지·건물에서 발생하고 기계장치등의 경우 평가의 복잡성등을 감안하여 과세이연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 업종에 따라 기계장치 등 사업용자산의 평가차익이 크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 과세이연 대상 자산을 모든 유형고정자산으로 확대하여 분할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2.9이후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

## 6. 분할시 이월결손금 승계 제도 도입(법§48의2)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p><input type="checkbox"/>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분할법인의 이월결손금을 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상대방법인의 승계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서 공제 허용(합병과 동일하게 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할 것</li> <li>○ 분할합병의 경우 10%이상 지분요건 등 충족</li> <li>○ 분할법인이 분할·분할합병 후 소멸할 것</li> <li>○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li> <li>○ 이월결손금은 승계한 사업용자산가액 비율로 안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년내 승계사업 폐지(승계한 자산가액 2/3이상을 처분하거나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또는 6월이상 계속하여 휴·폐업한 경우 포함)시 공제결손금 익금산입 등 합병과 같이 사후관리</li> </ul> </li> </ul>

### (2) 개정이유

- 분할의 경우에도 합병과 같이 분할법인이 분할후 소멸하는 경우 이월결손금 승계를 허용
  - 분할법인의 이월결손금은 분할신설법인등이 승계한 사업용자산가액 기준으로 안분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1.1이후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

## 7. 자산교환시 과세이연 요건 완화(법§50)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대상 및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동산관련업(임대·중개·매매업)·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li> <li>○ 특수관계 없는 내국법인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년이상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 하던 동일 종류의 사업용 고정자 산을 교환하여</li> <li>-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교환 직전의 용도와 동일한 용도에 계속 사용</li> </ul> </li> <li>○ 대상자산 : 토지·건축물, 기타 사업용자산</li> </ul> <input type="checkbox"/>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세이연 : (교환취득자산의 시가 - 교환자산의 장부가액)</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일 용도제한을 폐지</li> <li>* 사업용으로 사용하면 과세이연 허용</li> </ul>

### (2) 개정이유

- 교환자산에 대한 용도제한을 폐지하여 구조조정 지원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1.1이후 자산을 교환하는 분부터 적용

## 8. 자본거래 발생 소득의 범위 보완(법§17)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input type="checkbox"/> 다음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금액(상법상 자본준비금)에 대하여는 익금불산입하고, 자본에 전입하여 무상주 분배시에도 배당으로 보지 아니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식발행액면초과액</li> <li>○ 감자차익</li> <li>○ 합병차익 (평가차익 제외)</li> <li>○ 분할차익 (평가차익 제외)</li> </ul> <p style="text-align: center;">&lt;신 설&gt;</p>	<p><input type="checkbox"/> 익금불산입 대상에 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채무의 출자전환시 주식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채무면제익) 제외 *시행령규정을 법으로 이관</li> <li>○ 주식의 포괄적 이전차익</li> <li>○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li> </ul> <p>* 주식의 포괄적 이전·교환에 따라 설립·전환된 완전모회사가 이전받은 완전 자회사의 주식가액(완전자회사의 순자산)과 증가한 자본금(교부주식의 액면가액)의 차이(상법§459① 1의2, 1의3)</p>

### (2) 개정이유

- 채무출자전환시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의 범위를 명확하게 보완
  - \* 현재는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 이상이고 발행가액 이하인 경우만 규정
- 상법개정(01.7)에 따라 도입된 주식의 포괄적 이전·교환을 익금불산입 대상 자본거래에 추가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9. 채무의 출자전환 지원(법§17, 영§72, 조특법§44②)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input type="checkbox"/>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채무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멸된 채무중 발행주식의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은 채무면제익</li> <li>- 다만, 정리계획인가, 화의인가, 부실징후기업의 경우 익금불산입후 결손금과 상계(05.12 종료)</li> <li>* 인가결정, 경영정상화계획 약정에 출자전환 포함시 적용</li> </ul> </li> <li>○ 채권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자전환된 채권가액중 취득한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은 기부금(손비부인) 또는 접대비</li> <li>-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손처리 인정(통칙 34-62...5)</li> <li>- 정리계획인가, 화의인가,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출자전환의 경우 손금산입(05.12 종료)</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영정상화계획을 작성한 모든 기업에 대해 출자전환 채무면제익을 익금불산입후 결손금과 상계</li> <li>&lt;채무면제익의 범위&g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생계획인가 결정 법인</li> <li>· 기촉법상 부실징후기업</li> <li>· 채권금융기관과 경영정상화 이행 협약을 체결한 법인</li> </ul> </li> <li>* 회생계획인가·경영정상화계획 이행 협약 채무출자 전환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li> <li>-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을 출자전환된 채권 가액*으로 변경</li> <li>* 회생계획인가, 부실징후기업, 경영정상화계획 이행협약 체결법인의 출자전환시 적용</li> <li>* 손실(주식시가-소멸채무) 인식시기를 주식처분시까지 이연</li> </ul>

### (2) 개정이유

- 채무의 출자전환을 통한 단순한 자본구조의 재편성에 대해 과세 문제가 없도록 일반 제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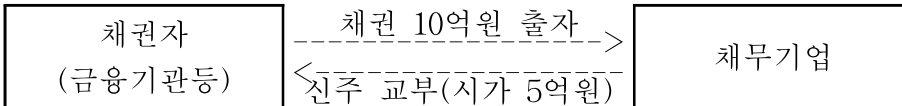
□ 출자전환에 따른 손익의 인식을 주식처분시까지 이연하여 출자 전환시점에서는 과세문제가 없도록 지원

- \*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을 출자 전환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의 공정가액 중 적은 가액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이익은 인식하지 않고, 손실만 대손으로 인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1.1(채권법인은 2006.2.9) 이후 출자전환하는 분부터 적용

<사 례>



□ 채무기업

- 현재 출자로 전환된 채무액(10억원)중 발행주식의 시가(5억원)를 초과하여 출자로 전환된 채무액(5억원)은 채무를 면제받은 것과 동일하므로 법인세 과세대상
- 다만, 정리계획인가·화의인가 기업 또는 부실징후기업에 대해서는 출자전환시점에서 동 채무면제익을 과세하지 아니하고
  - 향후 발생하는 결손금과 상계토록 하는 방법으로 지원
- \* 부실징후기업 :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여신금액이 500억원이상인 기업으로서 채권금융기관이 채무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한 기업
- '06.1.1부터는 채권금융기관과 체결한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협약에 따라 출자전환받는 기업등 사실상 출자전환하는 모든 기업으로 확대
  - \* 채권금융기관과 채무기업간 채무출자전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출자전환하는 경우

□ 채권금융기관 : 신주의 취득가액을 출자당시 신주의 시가(5억원)가 아닌 채권가액(10억원)으로 보도록 하여 향후 처분시 손익인식

## <참고1> 정리계획인가등

### □ 정리계획인가(회사정리법)

- 파산에 직면했으나 경제적으로 갱생의 가치가 있는 주식회사에 대하여 회사 또는 채권자, 주주등이 법원에 신청을 함으로써 진행되며 이해관계인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 정리회사의 조직변경에 관한 사항등을 이해관계인 집회에서 심리·의결을 통해 채권자, 주주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조정함으로써 그 사업의 정리 재건을 도모하는 제도로 법원이 인가를 함으로써 효력 발생

### □ 화의인가(화의법)

-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 또는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 정리위원, 화의관재인의 보조감독하에 파산적 청산의 예방을 목적으로 채무자 자신이 화의채권자만을 대상으로 채무변제 등에 대한 계획안 작성하여 법정다수의 동의·법원인가를 받음

### □ 강제화의인가(파산법)

- 판산선고후 파산절차 진행중에 파산적 청산을 회피하고 파산자의 경제적 회생을 위하여 파산절차를 종료시키는 제도

###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05.3.31 제정,'06.4.1 시행)

- 회사정리절차와 회의절차로 이원화되어 있는 회사정리법, 화의법, 파산법등 도산3법을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로 일원화하여 기업의 회생·파산에 관한 법률 체계를 정비함
-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 채권자, 주주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거나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배당하는 절차
  - 채무자가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때에는 법원은 회생개시 신청일부터 1월내 회생절차 개시여부를 결정하고 강제집행은 중지됨

## 10. 지주회사 설립·운영에 대한 지원 확대

### 가. 자회사의 재출자에 대한 익금불산입 배제 규정 보완(법§18의3)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해 일정율을 익금불산입하되, 다음의 경우 익금불산입 배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회사가 계열회사에 재출자</li> <li>○ 자회사가 계열회사 외의 타법인에 1%이상 재출자</li> <li>* 배제금액 = 수입배당금 × 익금불산입율 × (재출자기액 / 지주회사 출자기액)</li> <li>○ 다만, 사업관련손자회사에 재출자하거나 자회사가 기관 투자자인 경우 예외인정</li> </ul> <input type="checkbox"/> 지주회사가 아닌 일반법인의 경우 제한없음	<input type="checkbox"/> 일반법인과 동일하게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법인의 자회사가 계열회사에 재출자시에도 익금불산입 배제</li> </ul> <삭 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행 유지</li> </ul>

#### (2) 개정이유

- 일반법인의 경우에도 지주회사와 동일하게 자회사가 재출자하는 경우 익금불산입을 배제하여 연쇄출자를 통한 계열확장을 억제
- 다만, 공정거래법에서도 계열회사외의 타법인에 대한 재출자를 규제하고 있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익금불산입 허용
  - \*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행위 제한
    - 사업관련손자회사의 주식을 50%(상장 30%)이상 소유할 것
    - 사업관련손자회사외의 국내계열회사의 주식 소유금지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1.1이후 지급받는 배당분부터 적용

<구체적 적용요건>

□ 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 배제금액(영 17의3)

○ 계열회사에 출자한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 ①익금불산입률 및 ②(자회사의 계열회사에 대한 출자 주식등의 장부가액 / 당해 법인의 자회사에 대한 출자 주식등의 장부가액)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 익금불산입률

<u>자회사에 대한 지분비율</u>	<u>익금불산입률</u>
100%	100%
50%(상장법인 30%) 초과	50%
50%(상장법인 30%) 이하	30%

\* 자회사가 2이상인 경우 각 자회사도 그에 해당하는 율 적용

○ 주식등의 장부가액은 적수로 계산

○ 재출자 관련 익금불산입 배제금액이 있는 경우 차입금 관련 익금불산입 배제금액 계산시 익금불산입률

: 
$$\frac{(\text{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금액} - \text{재출자 관련 익금불산입 배제금액})}{\text{수입배당금 전액}}$$

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대상 보완(법§18의2, 영§18의3)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다음의 경우 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 적용을 배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당기준일전 3월이내 취득한 주식으로부터의 배당금</li> <li>○ 일반법인이 SPC등 지급배당에 대한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명목 회사등으로부터 받는 배당</li> <li>○ 90% 익금불산입이 적용되는 기관 투자자의 수취배당</li> </ul>	<input type="checkbox"/> 익금불산입 배제대상에 다음 배당을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주회사가 명목회사등으로부터 받는 배당</li> <li>○ 100% 감면이 적용되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예) 지방이전기업 세액감면 - 5년간 100%, 2년간 50%</li> </ul> </li> <li>○ 비과세가 적용되는 배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예) 창투사등이 창업자, 벤처기업등으로부터 받는 배당</li> </ul> </li> </ul>

(2) 개정이유

- 법인간 배당에 대한 익금불산입 제도는 법인세가 과세된 소득을 배당받는데 대한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100% 법인세를 감면받아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거나 당해 배당이 비과세 대상인 경우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배제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1.1이후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

다.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대상 주식수 계산방법 보완(영§17의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input type="checkbox"/>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대상이 되는 「배당기준일 현재 3월이상 계속 보유한 주식 수」의 계산방법</p> <p>○ 선입선출법에 의해 계산 (국세청 예규)</p>	<p>○ 선입선출법에 의해 계산</p>

(2) 개정이유

주식보유기간중 변동이 있는 경우 선입선출법에 의해 주식수 및 출자비율을 계산하도록 명문화

※ 국세청 예규(서면2팀-147, 2005.1.20) : 법인세법 제18조의3(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주식의 보유기간중에 동종 주식의 보유주식수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아 동 익금불산입 규정의 배제대상인 같은 조 제2항의 「배당기준일 전 3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 등」을 계산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2.9이후 최초로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

## II. 규제적 기업과세제도 정비

### 1. 보험사에 대한 사업비 규제 폐지(법§26)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보험업 법인이 지출한 사업비*중 예정사업비의 1.1배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 * 세법상 손비인정되는 비용에 대해 다시 총량한도를 두어 제한	<폐 지>

#### (2) 개정이유

- 당초 보험사의 과도한 사업비 지출을 방지하여 보험산업의 건전한  
 육성과 계약자 보호를 위한 취지에서 도입되었으나
  - 현재 사업비 집행에 대하여 보험업감독규정에 의한 직접적  
 규제와 지급여력관리 제도에 의한 간접적 규제가 이루어지  
 고 있고
  - 은행 등 타금융기관에는 이러한 규제가 없으며
  - 실제 초기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일부 신설 보험사만 적용되고 있고
  - 접대비등 한도초과금액을 제외한 사업비에 대해 다시 총량한  
 도를 두어 이중으로 규제하는 점을 감안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5.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참고1> 보험업감독규정에 의한 감독제도

### □ 제4-32조(사업비의 합리적 집행)

- 보험회사는 상품별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예정사업비 한도내에서 보험중개사, 보험대리점과 보험설계사에 대한 수수료·수당 등을 지급을 위한 자체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

### □ 제6-8조(업무보고서의 제출)

- 보험회사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내용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 업무보고서를 감독원장에게 제출

### □ 제7-80조(사업비의 계상 및 배분 등)

-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보고서 작성시 예정사업비의 계상 및 실제사업비 배분기준 등은 감독원장이 설정

### □ 제7-82조(보험상품의 심사)

- 금융감독원장은 신고한 보험상품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 등에 대해 심사를 한 후
- 공익 또는 보험계약자의 보호와 보험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보험상품의 변경 또는 판매중지를 명령

### □ 시행세칙 제5-15(사업비의 계상 및 배분)

- 감독규정 제7-80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사업비의 계상 및 실제사업비의 배분기준 등을 [별표17]에서 규정

## <참고2> 손해보험 지급여력제도

### □ 지급여력의 개념

- 보험회사의 예측하지 않은 손실의 발생과 자산가치가 하락하더라도 보험계약자에 대한 채무를 충분히 이행할 수 있는 재무적 지급능력

### □ 지급여력비율에 따른 제재

- 보험사업자는 지급여력 비율이 100%에 미달할 경우 그 정도에 따라 보험업감독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의 시정명령을 받음

비율	조치사항	비율	조치사항
100% 초과	정상	50~100%	경영개선 권고
0~50%	경영개선 요구	0% 미만	경영개선 명령

### □ 지급여력비율 : 지급여력 ÷ 지급여력기준

- 지급여력 : 납입자본금 등 - 신계약비 등
- 지급여력기준 : 1년간 보유보험료×보험료기준 비율(17.8%) 등

## 2. 비상위험준비금 손금산입기준 변경(영§57)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비상위험준비금(단기손해보험) 손금산입 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기적립한도 : 보유보험료의 합계액 × 당해 사업연도의 예정이익률</li> <li>○ 누적 적립한도 : 경과보험료의 합계액의 50%</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유보험료의 합계액 × 금감위가 정하는 보험종목별 적립기준율 (2~6%)</li> <li>○ 자동차보험의 경우 경과보험료의 40%</li> </ul>

### (2) 개정이유

보험업감독규정이 개정(2005.2.25)되어 비상위험준비금 적립에  
있어 보험종목별 위험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 보험종목별로 적립기준율을 차등화한 개정내용을 반영

\* 2005.2.25 금감위 의결, 2005사업연도 결산분부터 적용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2.9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하는 분부터 적용

## <참고> 비상위험준비금

### □ 개요

- 손익안정을 위해 매년 보험료수입중 일부를 총액으로 별도 적립하여 거대손실에 대비
- 적립대상 : 손해보험중 화재·해상·자동차·특종·보증·해외수재 및 원보험 등 6개

### □ 현행 적립기준

- 보험종목별 보유보험료에 예정이익률<sup>1)</sup>을 곱한 금액의 50%~100%를 경과보험료<sup>2)</sup>의 50%에 달할 때까지 매년 누적 적립

1) 예정이익률 : 기초서류에서 정한 율(5%, 다만 자동차보험과 해외수재 및 해외원보험은 2%)

2) 경과보험료(당해연도의 위험 담보에 소요되는 보험료 개념)\*  
= 보유보험료 + 전기이월분 - 차기이월분

\* 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료의 유효기간인 보험연도와 보험회사의 사업연도가 일치하지 않으므로 그 보험연도에 해당한 보험료 중 일부는 당해 사업연도에 해당하고 나머지 부분은 차기사업연도의 일부에 해당되는데, 이 때 차기사업연도의 보험기간에 속하게 되는 보험료를 미경과보험료라 하고 결산기일에 준비금으로 적립하게 되는 바 이에 대하여 이미 경과된 기간(보험책임이 경과된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가 경과보험료

### □ 비상위험준비금제도 개선내용

- 과거의 경험손해를 변동분석에 기초한 종목별 위험수준을 반영하여 보험종목별 적립기준을 차등화

(단위 : %)

보험종목	화재	해상	자동차 <sup>주1)</sup>	보증	특종	재보험
적립기준율 <sup>주2)</sup>	5	3	2	6	5	3

주1) 자동차보험은 책임보험(중전기준에서는 제외)까지 적립대상에 포함

주2) 적립기준율은 직전 1년간 보유보험료 기준임

- 누적적립한도는 현행대로 경과보험료의 50%로 하되 새로이 적립대상에 포함하는 자동차보험은 40%로 축소

(단위 : %)

보험종목	화재	해상	자동차 <sup>주1)</sup>	보증	특종	재보험
누적적립한도 <sup>주2)</sup>	50	50	40	50	50	50

주1) 자동차보험은 책임보험(현행기준에서는 제외)까지 적립대상에 포함

주2) 누적적립한도는 직전 1년간 경과보험료 기준임

### 3. 접대비 증빙요건 완화(법§25, 영§41)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input type="checkbox"/> 접대비 관련 증빙서류 수취의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만원초과 접대비는 법정증빙서류* 미수취시 한도초과여부와 관계없이 손금불산입</li> </ul> <p>* 법정증빙서류 : 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직불카드·기명식 선불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조사비는 10만원으로 인상</li> <li>○ 국외지역(예 : 아프리카)에서 지출하는 접대비에 대하여는 법정증빙 수취의무 예외 인정</li> </ul>

#### (2) 개정이유

- 현실적으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증빙수취가 곤란한 경우를 고려하여 증빙수취 예외 범위 확대
- 법정수취의무의 예외가 인정되는 국외지역의 범위는 해당 지역내 접대비가 지출된 장소와 동일·유사한 장소에서 현금외에 다른 지출수단이 없는 경우의 당해 국외지역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1.1(경조사비는 2006.2.9) 이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 4. 지급조서등의 지연제출에 대한 가산세 경감(법§76)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지급조서등을 기한내 미제출시 가산세 부과 <input type="checkbox"/>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 - 대상 : 지급조서 미제출 (익년 2월말까지 제출) - 가산세 : 미제출·불분명 지급 금액 × 2% <input type="checkbox"/> 계산서 교부 및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 대상 : 계산서 교부 및 합계표 미제출(익년 1월말까지 제출) - 가산세 : 계산서 미교부·불분명 또는 합계표 미제출·불명분 공급가액 × 1% <input type="checkbox"/>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 대상 :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과표신고시까지 제출) - 가산세 : 미제출주식 액면가액 × 2%	<input type="checkbox"/> 제출기한 경과후 1월이내 제출시 50% 경감

##### (2) 개정이유

- 지급조서등을 지연제출하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미제출과 동일하게 일률적으로 가산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납세협력의무 불이행에 대한 지나친 부담인 점을 감안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1.1이후 최초로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참고> 가산세 요약표

구 분		가 산 세
① 무기장·무신고 가산세	무신고소득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아래 중 큰 금액 · 산출세액 × 30% · 수입금액 × 0.1%
	위 이외의 경우	아래 중 큰 금액 · 산출세액 × 20% · 수입금액 × 0.07%
② 과소신고 가산세	과세표준의 1/3이상누락하고 부당과소신고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아래 중 큰 금액 · 산출세액×(과소신고금액/과세표준)×30% · 수입금액×0.1%
	위 이외의 경우	산출세액×(과소신고금액/과세표준)×10%(부당과소 20%)
③ 미납부가산세		미납부세액×일수×0.03%
④ 지급조서제출불성실가산세		미제출·불분명 지급금액×2%
⑤ 결합재무제표미제출가산세		아래 중 큰 금액 · 산출세액 × 2% · 수입금액 × 0.008%
⑥ 법정증빙서류미수취가산세		법정증빙서류미수취금액×2%
⑦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제출 불성실가산세		미제출·누락제출·불분명한 주식의 액면가액×2%
⑧ 계산서불성실가산세		미교부·불분명 또는 합계표미제출·부실기재공급가액×1%
⑨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		아래 중 큰 금액 · 미납부세액×일수×0.03%(미납부세액의 10% 한도) · 미달납부한 원천징수세액 ×5%

5. 부득이한 사유로 공사부담금 미사용시 예외(법 37, 영§65)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input type="checkbox"/> 전기, 가스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수요자 등으로부터 제공받는 공사부담금에 대해 과세이연 적용</p> <p>○ 공사부담금을 받은 다음 사업연도말까지 고정자산 취득에 사용한 경우에만 적용</p>	<p>○ 수요자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미사용액은 익금산입에서 제외</p> <p>* 부득이한 사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사의 허가·인가등 지연</li> <li>- 공사를 시행할 장소의 미확정등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li> <li>- 용지보상에 관한 소송 진행</li> <li>-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li> </ul>

(2) 개정이유

- 수요자로부터 제공받는 공사부담금의 특성상 반드시 용도대로 사용되어야 하므로
- 고객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공사부담금 미사용액에 대해서는 사용기한을 연장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1.1이후 제공받는 분부터 적용

### Ⅲ. 기업과세제도의 선진화

#### 1. 기부금 제도 개선

##### 가. 기부금 손비인정 한도 조정(법§24)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법정기부금 ○ 소득금액의 100% ○ 국가·지자체, 국방헌금 및 위문금품, 이재민 구호금품 ○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06)		<input type="checkbox"/> 손비인정범위 단계적 축소 ○ 소득금액의 50%로 축소 ※'08년까지 3년간(문예진흥기금 : '06년까지 1년간)은 소득 금액의 75%까지 인정 ○ 한도 초과액은 1년간 이월공제	
<input type="checkbox"/> 사립학교등에 대한 기부금 손비 인정 범위(소득의 50%)		<input type="checkbox"/> 손비인정 범위를 국공립학교 수준으로 조정 ○ 개인 : 현행유지 ○ 법인 : 5, 50% → 50% * 3년간 75% 인정 * 장학금을 시설비등과 같이 취급	
구 분	개인	법인	
· 사립학교·기능대학*의 시설비, 연구비, 교육비	100%	50%	
· 사립학교·기능대학에 대한 장학금	100%	5%	
* 비영리교육재단(사립학교 시설확충등 목적으로 설립된 경우에 한함), 평생 교육시설, 산학협력단		○ 경제자유구역내 외국교육 기관의 시설비등을 추가	

###### (2) 개정이유

- 영리기업이 소득의 전액을 기부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감안
  - 사실상 기업의 기부는 소득금액에서 강제적립금, 배당 및 채투자 재원을 제외한 만큼만 가능하고
  - 상장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법인이 실제 소득금액의 50%를 초과하여 기부한 사례도 없음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1.1 이후 개시사업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08년까지 3년간은 소득 금액의 75%까지 인정)

<참고> 기부금 요약(개정후)

개 인	종 류	법 인
법정기부금 (100%)	· 국가· 지자체 기증 금품, 국방헌금, 위문금품, 이재민 구호금품, 사립학교· 산학협력단· 외국 교육기관 등에 대한 시설비· 교육비· 연구비· 장학금, 문화예술진흥기금('06년 일몰)	법정기부금 (50%) *'08까지 75%
	· 사립학교병원· 국립대병원· 서울대병원· 대한 적십자병원등에 대한 시설비· 교육비· 연구비 ('06)	특례기부금 (50%)
	· 사회복지공동모금회('06)	
	· 사회복지시설, 대한적십자사, 불우이웃돕기 결연기관을 통한 기부	지정기부금 (5%)
	· 특별재난지역의 자원봉사용역, 정치자금	-
특례기부금	(개인· 법인 소득의 50%범위내에서 비용인정) · 사내근로복지기금, 독립기념관, 특정연구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과학기술), 교육방송공사, 국립암센터,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과학문화 재단 ※ 모두 '06년 일몰	특례기부금
	(개인 소득의 30%범위내에서 비용인정) ·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	
	(개인 소득의 10% 법인 소득의 8% 범위내에서 비용인정) · 비영리전문예술법인('06)	
지정기부금 (10%)	<p style="text-align: center;">&lt;지정기부금단체&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 기능대학, 학술· 장학· 기술진흥· 문화 예술· 환경단체, 종교, 의료법인</li> <li>- 한국보훈복지공단 등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단체</li> <li>- 주무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재경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05.12월말, 842개)</li> <li>- 비영리민간단체(개인만 적용)</li> </ul> <p style="text-align: center;">&lt;특정용도 지출 기부금&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립학교등의 장이 추천한 개인의 교육비등</li> <li>- 사업자단체에 대한 특별회비, 임의단체 회비</li> </ul>	지정기부금 (5%)
	· 노동조합비, 교원단체 회비, 직장협의회 회비	

나. 기부금 영수증 불성실발급 가산세 신설(법§24, §76)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input type="checkbox"/> 개인으로부터 기부받은 단체는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장 작성 및 5년간 보관의무 (소득세법 §160의3, 영§112의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간 100만원이상 기부</li> <li>- 과세관청 요구시 제출의무</li> </ul> <p style="text-align: center;"><u>&lt;신 설&gt;</u></p>	<p><input type="checkbox"/> 법인으로부터 기부받은 경우에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부금 영수증 발급대장 작성 및 5년간 보관의무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부법인별 발급내역</li> <li>- 기부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및 사업장소재지</li> <li>- 기부일자 및 기부금액</li> <li>- 기부금영수증 발급일자</li> </ul> </li> <li>○ 가산세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무불이행가산세 :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의 0.1%</li> <li>- 허위 기부금영수증 발급 가산세 : 사실과 다른 금액의 1%</li> </ul> </li> </ul>

(2) 개정이유

- 개인으로부터 100만원이상의 고액의 기부를 받은 경우 기부금영수증발급대장 작성·비치의무를 부여한 것과 동일하게
  - 법인으로부터 기부받은 경우에도 기부금영수증발급대장 작성·비치의무를 부여
- 기부금 공제를 이용한 가공의 기부를 방지하고 기부금 영수증발급대장 작성·비치의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가산세 부과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1.1이후 기부받는 분부터 적용

다. 현물 기부자산 평가방법 보완(영§37)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현물로 기부하는 재산가액의 평가  <input type="checkbox"/> 법정기부금 : 장부가액 <input type="checkbox"/> 특례기부금 : 시가 <input type="checkbox"/> 지정기부금 : 시가	<input type="checkbox"/> 장부가액  <input type="checkbox"/> 시가에 의하되,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 장부가액

(2) 개정이유

법정기부금의 손비인정한도를 축소(소득금액의 100%→50%)하여 특례기부금과 일치시킴에 따라 현물 기부자산의 평가방법도 일치

○ 법정·특례기부금의 경우 손비인정한도가 커 손비부인을 위한 시가평가의 실익이 적은 점을 감안

지정기부금에 대하여는 장부가액에 비해 시가가 하락한 경우 장부가액과 시가의 차액이 한도초과여부에 관계없이 전액 손금으로 인정되는 문제 보완

예) 부동산, 상장주식등을 기부하는 경우, 시가하락으로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 처분손실에 대한 처리 문제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2.9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라. 지정기부금 대상단체 확대(규칙 §18)

(1) 개정내용

증 전	개 정
<p><input type="checkbox"/> 다음 단체등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 소득금액의 5%내에서 손비인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갱생보호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에너지관리공단, 시설안전기술공단, 중소기업 정보화경영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관리공단(복지사업에 한정)</li> <li>○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추가</li> </ul>

(2) 개정이유

-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수행하는 노인복지, 장애인 재활 등을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사업 등을 지원
-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이 수행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등을 지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3.14이후 최초로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 <참고> 대·중소기업 협력재단

### 설립근거

-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제16조)

### 설립형태 : 재단법인

### 사업내용

-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력 사업의 알선 및 지원
- 협력관련 정보자료의 수집 및 보급
- 기업간 협력증진을 위한 학술연구
- 정부 등의 위탁 또는 용역사업 수행
- 수탁기업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지원
- 위탁기업체와 수탁기업체 사이의 분쟁의 자율적 조정지원

### 재산의 관리

- 이사회 의결을 거쳐 중소기업청장의 승인

### 해산절차 등

- 해산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중소기업청장의 승인
- 해산시 잔여 재산은 중소기업청장에게 인계

## 2. 경비 등 기업과세제도의 합리화

### 가. 맞춤형 교육을 위한 지출비용 손비인정(영§19)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교육훈련비의 손비인정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용인에 대한 교육훈련비 (임원, 사용인이 아닌 지배주주에 대한 교육훈련비 제외)</li> <li>○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또는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의 운영비</li> <li>○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법인이 자체기능공확보를 위해 부담하는 교육훈련비</li> <li>○ 업무와 관련이 있는 해외훈련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과 교육기관간 계약에 의해 채용을 조건으로 설치·운영되는 직업교육 훈련과정, 학과등의 운영비로 지출하는 금액을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추진에 관한 법률(§8)</li> </ul> </li> <li>○ 현장실습수업(인턴십)에 참여하는 학생에게 지급하는 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등교육법(§22)</li> </ul> </li> </ul>

#### (2) 개정이유

기업의 다양하고 특수한 인력수요에 교육기관이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의 활성화를 지원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2.9이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 나. 대손의 범위 조정(영§62)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input type="checkbox"/> 대손금의 범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등</li> <li>○ <u>물품의 수출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u>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계획인가 또는 변제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li> <li>* '06.3.31이전에는 회사정리법, 화의법, 개인채무자 회생법 적용</li> <li>○ 「<u>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u>」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한국은행총재등으로부터 채권회수를 면제받은 것을 추가</li> <li>* 채권회수면제절차 : 불가피하게 거래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채권금액을 감면하기로 한 경우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청하여 허가(외국환관리규정 §1-3②)</li> </ul>

### (2) 개정이유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개인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이행함으로써 법원이 잔여채무의 면책을 결정하는 경우
  - 잔여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므로 대손사유에 추가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른 조문 정리
  -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일명 '통합도산법'이라 함, '06.3.31 시행)

-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제도는 회생제도로 변경
- 화의법에 의한 화의제도는 폐지
- 개인채무자회생법에 의한 개인회생제도는 유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예, 건설용역등)은 물품의 수출과 동일하므로

-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채권회수의 면제를 받은 채권을 대손금의 범위에 추가하여 기업의 부담을 덜어줌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채무자회생법 관련 : 2006.2.9이후 최초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면책결정을 받는 분부터 적용(2006.3.31이전에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 또는 개인채무자회생법에 의한 변제계획인가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을 포함)

국외제공용역 관련 : 2006.2.9이후 신고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참고> 개인채무자회생법('04.3.22 법률 제7189호)

\* 「개인채무자 회생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일명 “통합도산법”, 05.3.31 제정, 06.3.31 시행)」의 시행으로 흡수·통합

### □ 제정이유

- 장래 계속적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

### □ 주요내용

- 개인회생절차에 관한 재판은 변론 없이 가능하고, 법원은 직권으로 개인회생사건에 대한 조사(법 제10조)
- 개인채무자로서 장래에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중 담보채무의 경우 10억원 이하인 자, 무담보채무의 경우 5억원 이하인 채무자는 법원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가능(법 제48조)
-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고,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8년을 초과할 수 없음(법 제70조 및 제71조)
- 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고 변제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할 것 등의 요건을 충족된 때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하여야 함(법 제74조)
-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면책결정을 하고,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채무의 변제책임이 면제(법 제83조 및 제84조)

#### ※ 면책결정사유

-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의 완료
- 미완료시에도 i)채무자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 ii) 변제액이 파산시 배당액보다 많고 iii)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

### 3. 퇴직연금제도 도입에 따른 퇴직금제도 보완

#### 가. 퇴직연금 불입액에 대해 손금산입 허용(영§44의2)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내국법인이 사용자 등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외에 실제 불입하는 보험료 등은 손금산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퇴직보험료, 퇴직일시금신탁</li> </ul> </li> <li>○ 손금산입 한도액 : [퇴직금추계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퇴직급여총당금 누계액(현재 추계액의 40% 한도)]에 상당하는 보험금에 대한 보험료</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인의 퇴직연금 분담금을 손금산입 대상에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확정기여형(DC)의 경우 : 별도 전액 손금산입</li> <li>- 확정급여형(DB)의 경우 : 퇴직보험료와 동일하게 손금산입</li> </ul> </li> <li>※ 퇴직연금으로 전환됨에 따라 전환전 근무기간에 대해 퇴직연금 분담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미 손금산입된 부분(퇴직급여총당금 또는 퇴직보험료)은 손금산입 제외</li> </ul>

##### (2) 개정이유

'05.12월부터 퇴직연금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 노사합의에 의해 기업이 부담하는 퇴직연금의 분담금을 기업의 손비로 인정
  - \* 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 : 근로자의 연금급여가 사전에 확정
  - \* 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 : 사용자의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2.9이후 신고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참고1> 확정기여형과 확정급여형 비교

구 분	확정기여형 (Defined Contribution)	확정급여형 (Defined Benefit)
개 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전에 부담할 기여금을 확정</li> <li>○ 적립금을 근로자가 자기 책임으로 운용</li> <li>○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에 달한 때에 그 운용 결과에 기초하여 급여를 지급(연금 55세 이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전에 급여의 수준·내용을 약정</li> <li>○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에 달한 때에 약정에 따른 급여를 지급(연금 55세 이상)</li> </ul>
기여금	확정	변동(운용수익률, 승급률 등 변경시)
기여금액	연간 급여총액의 1/12이상	퇴직급여예상액*의 60%이상 *Max[청산기준 추계액(현행 추계액 기준), 계속기준 추계액(예상근속기간등을 추정하여 계산)]
급 부	운영실적에 따름	확정(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 이상)
운용책임	개별 근로자 부담	회사부담
위험부담	물가, 이자율변동 근로자 부담	물가, 이자율변동 등 회사 부담
지급보장	운용방법에 원리금보장상품 포함 등 안정적 운영지도	의무적립금제도(퇴직부채 60%) 건전성 감독 등
기업부담	축소 불가	축소 가능(수익률이 높을 경우)
통산제도	용이	어려움(개인퇴직계좌를 통한 통산 가능)
연금수리	불필요	필요
선호계층	단기근속자 및 젊은 층	장기근속자
주요대상	연봉제, 중소기업	대기업, 기존 사외적립기업

## <참고2> 퇴직연금사업자(퇴직급여보장법 §14)

□ 대상 : 퇴직연금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다음 사업자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
-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
-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업 허가를 받은 주식회사
-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업 인가를 받은 자

□ 등록요건(시행령 제13조)

○ 재정건전성 요건

\* 금융권역별 재무건전성 감독기준(금감위) : 은행(BIS 자기 자본비율 8%이상), 증권사(영업용순자본비율 150%이상), 보험사(지급여력비율 100%이상), 투신사(위험대비자기자본비율 150%)

○ 인적요건 : 운용관리업무 또는 자산관리업무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산요원 등에 필요한 인력을 갖추는 것

○ 물적요건 : 운용관리업무 또는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전산설비·사무공간, 정전·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완설비 등을 갖추는 것

○ 참여 금융기관의 범위는 근로자의 수급권 보장과 선택의 범위 확대, 운용의 전문성을 조화

- 운용관리 : 보험·은행·자산운용사·증권사·기타
- 자산관리(보험계약 또는 신탁계약) : 보험사, 신탁업자

□ 기능 : 근로자 및 법인의 운용 지원

○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운용방법 제시

-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적금
-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가 취급하는 보험계약
- 신탁업법에 의한 특정금전신탁
-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사용자 또는 사용자와 이해관계인이 발행한 것이 아니어야 함)으로서 금감위가 정한 것

※ 금감위가 정한 유가증권의 종류

- 국채증권 및 지방채증권
- 투자적격 채권(신용평가등급 BBB-이상)
- 상장주식, 간접투자증권(수익증권, 투자회사의 주식)
- 외국의 유가증권은 OECD 회원국의 중앙정부, 지방정부 및 기업 등이 발행한 투자적격채권과 적격 해외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식(투자회사 주식은 국내에 판매된 것)으로 한정

※ 위험자산 투자한도(금감위 감독규정)

<확정급여형>

- 주식 및 주식형 간접투자증권(주식 60% 이상) 등에 대한 투자 30%이내
- 혼합형 간접투자증권(주식 40%초과 60% 미만) 등에 대한 투자 40%이내 등

<확정기여형>

- 주식, 주식형 및 혼합형 간접투자증권 등의 경우 직접투자 금지
- 외국의 투자적격 채권, 외국 간접투자증권(주식 40%이하)의 경우 투자한도 30%이내
- 동일기업이 발행한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한도는 30%이내 등

## 나. 퇴직급여 총당금 손금산입 한도 축소(영§60)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사내유보하는 퇴직급여총당금의 손금산입 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기한도 : 1년이상 근속한 사용인등의 총급여액의 10%</li> <li>○ 누적한도 : 퇴직금추계액의 40%* * ('67)100%→('73)50%→('99이후) 40%</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년 미만인 경우에도 퇴직금지급 규정이 있는 경우 인정하되 - 총급여액의 5%로 축소</li> <li>○ 누적한도액 단계적 축소 - 추계액의 30%('07~'08년은 35%)로 축소</li> </ul> <p style="text-align: center;">* DC형 퇴직연금제도를 적용받는 근로자분은 제외</p>

### (2) 개정이유

- 퇴직금의 사외적립을 유도하기 위해 사내유보하는 퇴직급여 총당금의 손비인정 범위 축소
- 1년미만 근무시에도 퇴직급여총당금을 설정하고 있는 기업 회계기준과 일치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2.9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07년)에 손금 산입하는 분 부터 적용(2년간은 35%)

#### 4. 건축물부속설비에 대한 기준내용연수 단축(규칙§15)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건축물부속설비* 기준내용연수 ○ 건물과 동일한 기준내용연수 (20년~40년)를 적용 * 냉난방 설비, 급배수 설비, 위생 설비, 가스설비, 전기설비 등	○ 건축물부속설비를 건축물과 별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는 경우 - 업종별자산(기계장치)의 내용연수(업종별 4~25년) 적용 허용

##### (2) 개정이유

- 건물 부속설비는 사실상 기계장치이며, 노후화 및 부품 단종 등의 사유로 단기간에 교체되는 점을 감안하여
- 기계장치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조기 감가상각 허용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3.14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참고>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구분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 (하한-상한)	구조 또는 자산명
1	20년(15년~25년)	연와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기타조와 모든 건물과 건축물
2	40년(30년~50년)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물과 건축물

<참고>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구분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 (하한-상한)	적용대상자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해당업종에 사용되는 자산)	
		대분류	중분류
1	5년(4년~6년)	농업 등 제조업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등	농업, 수렵업 및 관련서비스 출판, 인쇄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등 부동산업 등
2	8년(6년~10년)	제조업 숙박업 등	의복 및 모피제품 등 숙박 및 음식업
3	10년(8년~12년)	어업 광업 제조업 등	일반어업, 양식업 우라늄 및 토륨광업 음식료품제조업 등
4	12년(9년~15년)	제조업 운수업 등	담배제조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5	20년(15년~25년)	전기가스업	전기, 가스 및 증기업, 수도사업

## 5.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조화

### 가. 통화스왑계약 평가대상 법인의 범위 확대(영§73, §76)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checkbox"/> 법인이 외화차입금 등 화폐성 외화자산·부채를 보유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연도말 환율에 의해 외화자산·부채를 평가하여 손익을 계상(강제평가)</li> <li>○ 외화자산·부채에 대한 환율 변동위험 회피를 위해 통화스왑계약을 체결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동화전문회사를 제외한 일반 법인은 평가 불인정</li> </ul> </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화스왑계약의 평가대상을 모든 법인으로 확대(강제평가)</li> </ul>

#### (2) 개정이유

- 통화스왑계약을 체결하여 외화평가손익과 통화스왑계약의 손익이 상쇄되어 기업회계상 이익이 발생되지 아니한 경우 과세소득도 발생하지 않도록 일치

\* 통화스왑 : 환율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계약시점에 약정된 환율로 서로 다른 통화를 교환하고, 계약의 만기시점에는 계약시점에 약정된 환율로 서로 다른 통화를 반대로 교환하는 계약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2.9이후 최초로 통화스왑 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

나. 유형자산 취득시 강제매입한 국·공채 처리방법 보완(영§7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input type="checkbox"/> 유형자산 취득시 강제로 매입한 국·공채*의 매입가액</p> <p>○ 유형자산과는 별도로 전액 유가증권으로 계상(처분시에 손비 인정)</p> <p>* 강제매입 국·공채 예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동차 구입시 지역개발채권(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도시철도채권(도시철도법) 강제 매입</li> <li>- 주택 구입시 국민주택채권(주택법) 강제 매입</li> </ul>	<p>○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국·공채의 매입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유형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한 경우 인정</p> <p>* 감가상각비로 손비인정하는 효과</p>

(2) 개정이유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회계처리를 인정하여 세무조정 부담을 최소화

(사례)

현 행	개 정 안
유형자산 1,000	유형자산 1,050 ⇒ 감가상각
공 채 100	공 채 50
* 공채 현재가치 50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2.9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다. 감액평가손실이 인정되는 주식의 범위 확대(영§78)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주식발행법인에게 부도등이 발생한 경우 시가에 의한 감액평가손실이 인정되는 주식의 범위 <input type="checkbox"/> 창업자·신기술사업자 발행 주식으로서 <input type="checkbox"/> 창투자·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보유한 주식 * 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만 인정	<input type="checkbox"/> 상장주식으로서 <input type="checkbox"/> 모든 내국법인이 보유한 주식 추가 * 부도등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평가 * 발행법인이 부도, 회생계획인가, 부실징후기업이 된 경우 인정(법 §42③3호 개정)

(2) 개정이유

- 발행법인의 부도등으로 회수가능성이 희박해진 주식의 감액평가손실이 인정되는 주식의 범위를 확대하여
  - 기업회계기준과 세법간 차이를 축소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2.9이후 최초로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

<참고>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감액손실 처리(기준서 제8호)

□ 유가증권의 회수가능가액이 지분증권의 취득원가 또는 채무증권의 상각후 취득원가보다 작고, 감액이 불필요하다는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감액손실의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 감액손실을 인식하여 당기손익(영업외손익)에 반영(문단 33)

\* 감액손실 발생의 객관적 증거가 있는지 여부는 대차대조표일마다 평가

구 분	회수가능가액의 평가	감액손실의 인식액	감액손실의 회복
매도가능증권 (지분증권) * 취득원가법	지분증권 발행자의 자산을 자산별로 시가, 공시지가 또는 감정가액 등을 적용하여 평가한 공정가액	(장부가액-회수가능가액)	감액이 없었을 경우 회복일 현재 취득원가를 한도로 당기이익을 인식
매도가능증권 (지분증권) * 공정가액법	공정가액	(취득원가-공정가액-기인식한 감액손실)	기인식한 감액손실을 한도로 회복된 금액을 당기이익으로 인식, 그 외의 금액은 자본조정으로 처리
매도가능증권 (채무증권) * 공정가액법	기대현금흐름을 유사한 유가증권의 현행 시장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	(상각후취득원가-회수가능가액-기인식한 감액손실)	기인식한 감액손실액을 한도로 회복된 금액을 당기이익으로 인식, 그 외의 금액은 자본조정으로 처리
만기보유증권 * 상각후 취득원가법	기대현금흐름을 취득 당시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	(장부가액-회수가능가액)	감액이 없었을 경우 회복일 현재 상각후 취득원가를 한도로 당기이익을 인식

라. 지급이자로 구분계상 가능한 연지급수입의 범위 확대  
(규칙§37)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자산 수입시 부담한 이자를 취득 가액과 구분하여 지급이자로 계상할 수 있는 연지급수입의 범위  <input type="checkbox"/> 일람불 수입대금 결제를 위한 단기외화자금 차입방법에 의한 수입  - 원유·액화천연가스  * 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액에 대해서는 지급이자 부인 및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	<input type="checkbox"/> 연지급수입의 범위 확대  <input type="checkbox"/> 일람불 수입대금 방식, 수출자 신용방식, 사후송금방식 결제를 위한 단기외화자금 차입방법에 의한 수입  - 액화석유가스를 추가

(2) 개정이유

개정된 외국환거래법·외국환거래규정을 반영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3.14이후 최초로 수입하는 분부터 적용

## <참고1> 외국환거래규정

- 제10-39조(외국환은행의 장의 인증 : 1994. 6. 1 시행)
  - 정유회사, 원유 또는 액화천연가스 수입업자가 원유 또는 액화천연가스의 일람불수입 대금 결제를 위하여 제7-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지급수입기간 이내의 단기외화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 제10-39조(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 : 1997. 11. 1 시행)
  - 정유회사 및 원유, 액화천연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 수입업자가 원유, 액화천연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일람불수입 대금 결제를 위하여 제7-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지급수입기간 이내의 단기외화자금을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10-39조(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 : 1997. 11. 1 시행)
  - 정유회사 및 원유, 액화천연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 수입업자가 원유, 액화천연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일람불 방식, 수출자신용방식(Shippers Usance) 또는 사후송금방식수입 대금 결제를 위하여 1년 이하의 단기외화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거래 외국환은행의 장(L/C 방식인 경우에는 L/C 개설은행을 말하며, D/A방식인 경우에는 수입환어음 추심은행, 사후송금방식인 경우에는 수입대금 결제를 위한 송금은행을 말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7-15조①(정유회사 등 외국인투자기업의 단기외화자금차입 : 2002.7.1 시행)
  - 제7-14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유회사 및 원유, 액화천연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 수입업자가 원유, 액화천연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일람불방식, 수출자신용방식(Shippers Usance) 또는 사후송금방식 수입대금 결제를 위하여 상환기간이 1년 이하의 단기외화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거래 외국환은행의 장(L/C 방식인 경우에는 L/C 개설은행을 말하며, D/P·D/A방식인 경우에는 수입환어음 추심은행, 사후송금방식인 경우에는 수입대금 결제를 위한 송금은행을 말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IV. 납세편의 제고 등

##### 1. 원천징수세액의 본점 일괄 납부 허용(영§7)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input type="checkbox"/> 법인에게 이자소득 등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하는 원천징수 의무자(법인)의 납세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li> <li>○ 사업장별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li> </ul> <p>- 다만, 금융기관의 경우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본점 일괄 납부 가능</p> <p>※ 개인에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법인은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본점에서 일괄 납부 가능(소득세법시행령 '01.12.31 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법인의 경우에도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본점에서 일괄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li> </ul>

###### (2) 개정이유

- 세법간 원천징수 납세지를 통일하여 지급받는 자(개인, 법인)에 따라 납세지가 달라지는 불합리 해소
- \* 현재 법인이 원천징수의무자인 경우 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은 본점 일괄 납부가 가능하나 법인세는 불가능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2.9이후 최초로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

## 2. 수입업자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 폐지(법§121)

### (1) 개정내용

증 전	개 정
<p><input type="checkbox"/> 계산서를 교부받은 법인은 매년 1.31까지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가산세 부과</p> <p>*미제출·불명 가액 × 1%</p> <p>○ 수입 재화의 경우 세관장이 수입업자가 원하는 경우 계산서를 교부하고, 국세청에 전산 통보</p> <p>- 수입업자는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계산서의 합계표를 다시 세무서장에게 제출</p>	<p>- 계산서의 합계표 제출 면제</p>

### (2) 개정이유

- 세관장이 수입업자에게 교부한 계산서 자료는 세관에서 직접 국세청에 통보하는 점을 감안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 3. 감가상각 내용연수 특례신청 및 승인 일원화(영§29)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input type="checkbox"/> 감가상각 내용연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칙 : 업종별 기준내용연수 (5~20년)의 ±25%범위내에서 선택하여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li> <li>○ 특례 : 기준내용연수의 ±50% 범위내에서 사업장별로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은 내용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승인여부 통지는 관할세무서장함</li> <li>- 단축사유 : 지리·환경적 특성으로 자산의 부식·마모 및 훼손이 현저한 경우, 신기술·신제품개발로 기존 설비의 가속상각이 필요한 경우 등</li> <li>- 연장사유 : 경제적 여건의 변동으로 조업중단 또는 생산설비 가동률 감소</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례내용연수 승인신청서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승인여부는 현재와 동일하게 지방국세청장이 결정</li> </ul> </li> </ul>

#### (2) 개정이유

- 현재 대부분의 신고서 및 신청서 등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 제출하고 있음을 감안
- 감가상각 내용연수의 특례신청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납세자에게 혼란 초래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2.9이후 최초로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4. 지출증빙서류의 수취대상 사업자 범위 보완(영§158)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다음 사업자와의 거래시 지출증빙서류 수취·보관 <input type="checkbox"/> 법인(국가 및 지자체, 금융보험업 법인 등 제외) <input type="checkbox"/> 부가가치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사업자 <input type="checkbox"/> 소득세법 제28조 규정에 의한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는 제외) *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	<input type="checkbox"/>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추가

##### (2) 개정이유

-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의 경우 거주자와 동일하게 과세하고 있음에도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 사업자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문제점 보완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2.9이후 최초로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5. 외국법인의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기한 연장  
(영§164)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이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의 제출기한 ○ 매년 1월 31일	○ 외국법인의 경우 제출기한을 매년 2월 19일로 연장 * 외국법인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기한(2.19)에 일치

(2) 개정이유

- 외국법인의 경우 내국법인에 비해 계산서등 세무신고를 위한 자료의 취합이 어려워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을 내국법인보다 길게 허용하는 점을 감안하여
- 계산서합계표 제출기한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과 같이 연장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2.9이후 최초로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 V. 기타 미비점 보완

### 1. 비영리법인의 범위에 조합공동사업법인 추가(영§1)

#### (1) 개정내용

증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출자자에게 이익배당이 가능한 법인은 영리법인이나, 다음 조합 법인은 비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li> <li>○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li> <li>○ 산림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산림 조합과 중앙회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공동사업법인 추가</li> </ul>

#### (2) 개정이유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05.12.31)에 따라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에 추가된 조합공동사업법인에 대하여도 조합과 같이 비영리법인으로 인정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06.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 2. 유치원의 설립근거법 조문정리(영§36)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지정기부금 대상 ○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추가

### (2) 개정이유

유치원에 대한 설립근거법 변경으로 인한 조문정리 필요

### 3. 명목회사의 지급배당 소득공제제도 보완(법§51의2, 영 §86의2)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checkbox"/> 다음의 명목회사가 배당가능 이익의 90%이상을 배당하는 경우 지급배당에 대해 소득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동화전문회사, 투자회사, 사모투자전문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위탁관리 REITs 등 특별법상 명목회사</li> <li>○ 일정요건(자본 50억등)을 갖춘 법인세법상 투자회사</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checkbox"/> 지급배당 소득공제대상 명목회사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SPC</li> </ul> </li> <li><input type="checkbox"/> 다음의 배당에 대해서는 지급배당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실상 개인 1인회사로 운영되는 명목회사 등</li> <li>○ 비과세되는 배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예)선박투자회사 개인출자자 지급배당(액면 3억원이하)</li> </ul> </li> </ul> </li> </ul>

#### (2) 개정이유

- 임대주택 사업자의 연쇄부도 방지를 위해 사업장별로 모기업과 독립된 SPC의 설립을 통한 임대주택사업 시행을 지원
- SPC가 소수 개인투자자들의 조세회피수단으로 악용되지 소득공제 배제대상인 개인유사회사의 범위를 정함
- 배당지급 법인이 법인세가 100%가 면제되고 최저한세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경우 이중과세조정 필요성이 없음을 감안

- <적용례> ①임대사업 SPC : 2006.1.1이후 최초로 배당하는  
 분부터 적용  
 ②개인유사회사 : 2006.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의 이익(이월이익잉여금을 포함한다)을 최초로  
 배당하는 분부터 적용. 선박투자회사는 2009.1.1  
 이후 배당하는 분부터 적용.

### <구체적 적용요건>

#### □ 소득공제대상 임대주택법상 특수목적법인의 범위

- 임대주택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갖춘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회사」
  - 세법에서 자본금 요건(예:50억원이상), 금융기관 출자요건  
 (예: 5%이상)등 추가 요건은 규정하지 않음
- ※ 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사업 시행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으로  
 동법시행령(안)에서 부동산투자회사, 간접투자기구, 프로젝트금융  
 투자회사 및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회사를 규정
  - 이 중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회사를 제외하고는  
 현재도 법인세법상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

#### □ 소득공제 배제대상 개인유사회사(SPC)의 범위

- 사모방식으로 설립
  - \* 간투법상 사모투자회사(30인이하, Mutual fund, PEF), 유동화  
 전문회사, 부동산투자회사, 선박투자회사 등
- 개인 2인(또는 1인 및 그 친족)의 지분이 95%이상인 SPC
  - \* 조세회피사례
    - 개인이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고율의 양도소득세가 과세되  
 나 명목회사를 설립하여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배당소득으  
 로 소득종류가 변경되어 과세

#### 4.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발기인에 신탁회사 추가(영 §86의2)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input type="checkbox"/>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배당 가능이익의 90%이상 배당시 지급배당 소득공제</p> <p>&lt;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설립요건&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기인인 금융기관*이 5%이상 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농협·수협 중앙회, 증권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보험사업자, 여신전문금융회사, 새마을금고</li> </ul> </li> <li>○ 자본금 50억원 이상</li> <li>○ 자산관리·운영업무를 자산관리회사에 위탁</li> <li>○ 자금관리를 신탁업 영위 금융기관에 위탁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기관의 범위에 부동산 신탁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추가</li> </ul>

\* 부동산신탁업협회 건의

##### (2) 개정이유

- '04.3월 동제도 도입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의 감독에 관한 규정의 미비에 따른 PFV 난립이 우려되어
  - PFV의 발기인에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자금의 여·수신 및 투자활동을 본업으로 하는 금융기관이 5%이상 출자하여 참여하도록 하였으나
  - 신탁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은행, 증권사, 보험사, 부동산 신탁사)의 경우 부동산신탁만 제외되고 있어 형평을 감안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2.9이후 설립되는 분부터 적용

## <참고>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Project Financing Vehicle)

### 설립근거 : 법인세법 §51의2①

- 프로젝트금융기법을 이용하여 설비투자·사회간접자본시설투자·주택건설·자원개발 등 상당한 기간 및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을 운용하여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명목회사

### <법인세법 요건>

- 자산을 SOC건설 등 장기간 소요 투자사업에 운용
- 본점외 영업소가 없고, 직원·상근 임원이 없음(Paper Company)
-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 주식회사로서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
- 발기인·이사·감사가 책임능력과 업무수행능력 보유

### <법인세법시행령 요건>

- 금융기관이 발기인으로 5%이상 출자
- 자본금이 50억원 이상
- 자산관리업무를 출자법인 등 자산관리회사에 위탁
- 자금관리업무를 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에 위탁 등

### <세제지원내용>

### 지급배당 소득공제(법인세법§51의2)

- 투자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 배당하는 경우 그 배당금액을 소득금액에서 공제

### 차입금과다법인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배제(조특법§135)

### 등록세 50% 감면(조특법§119⑥)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

### 취득세 50% 감면(조특법§120④)

### 수도권 법인 설립등기시 등록세 3배중과 배제(조특법§119⑦)

## 5. 자본거래를 통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명확화(영§88)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 자산의 고·저가 양도, 금전의 무상·저리대부 등 ○ 자본거래를 통한 주주의 이익분여 행위 - 특수관계 법인간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 - 증자시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거나 고가로 인수하는 경우 - 감자시 불균등한 비율로 감자한 경우 ○ 이에 준하는 행위 기타 이익분여 행위	○ 자본거래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명확화 -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의 인수를 포기하거나 고가로 인수하는 경우를 추가

### (2) 개정이유

-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전환을 통한 이익분여에 대해서는 현재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가능한 바, 이를 명확화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2.9이후 최초로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참고> 유형별 증여세 과세요건과 법인세 부당행위계산부인

구 분	증여자	수증자	특수관계	30%rule	증여가액계산	부당행위계산
① 전환사채등을 저가 취득	양도자	취득자	최대주주	적용	(a)시가-(b)인수·취득가액	명확히 규정
②발행법인으로부터 주주 인수등	포기자	인수자	최대주주·그 특수관계자	적용	(a)시가-(b)인수·취득가액	"
③발행법인으로부터 제3자 인수등	포기자	인수자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자	적용	(a)시가-(b)인수·취득가액	"
④①~③의 자의 주식전환이익	양도자 포기자	취득자 인수자	최대주주	없음	(c)-(e)×교부주식수(지분초과주식수)-(f)	"
⑤고가 주식전환	취득자 인수자	포기자	최대주주	없음	(e)-(c)×증가주식수×특수관계자 전환등 전의 지분비율	"
⑥전환사채등 고가 양도	취득자	양도자	최대주주	적용	(양도가액-(a)전환사채등 시가)	"
⑦기타 유형의 전환사채등 인수·취득 및 주식전환등	인수·포기자	인수·포기자	최대주주	-	상기 계산방법 준용	"

ⓐ 전환사채등의 시가

ⓑ 전환사채등의 인수·취득가액

ⓒ 교부받은 주식가액

(전환등전의 1주당가액×발행주식총수+주식 1주당 전환가액등×전환등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발행주식총수+ 전환등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 교부받을 주식가액

(양도전의 1주당가액×발행주식총수+주식 1주당 전환가액등×전환등을 할 경우 증가하는 주식수)/(발행주식총수+ 전환등을 할 경우 증가하는 주식수)

ⓔ 주식 1주당 전환가액등

ⓕ 이자손실분

(전환사채등의 만기상환금액을 발행이율로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 - 전환사채등의 만기상환금액을 시중이자율로 할인한 금액)

## 6. 중간예납 자기계산시 기한내 신고의무 부여(법§63④)

### (1) 개정내용

증 전	개 정
<p>□ 법인은 중간예납기간 경과후 2월내에 다음방법중 선택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납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1/2</li> <li>○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에 따라 가결산한 세액</li> <li>* 직전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법인 등은 가결산 기준만 적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한내 미납부의 경우 가결산에 의한 중간예납 배제</li> <li>* 직전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법인등은 계속 허용</li> </ul>

### (2) 개정이유

- 법인이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세무서장이 전년도 법인세액의 1/2을 중간예납세액으로 고지한 경우에도
  - 법인이 중간예납기간의 실적(0)에 따라 가결산하여 다시 중간예납시 인정여부가 불명확
  - 따라서 이 경우에는 가결산기준으로 납부할 수 없도록 명확화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1.1이후 최초로 중간예납하는 분부터 적용

## 7. 금융기관의 채권 이자소득에 대해서도 원천징수(영§110)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input type="checkbox"/> 법인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14%)하되</p> <p>○ 다음 금융기관에게 이자소득 지급시 원천징수 면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은행, 보험, 증권, 상호저축은행, 수출입은행, 한국은행 등</li> <li>- 자산운용회사, 선물업자</li> <li>-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li> </ul> <p>* 신탁재산에 채권이자소득 지급 시에는 원천징수</p>	<p>○ 금융기관에게 채권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p> <p>* '05.7.1부터 원천징수를 면제토록 개정한 것을 환원</p>

\* '84.10.5 이전(금융보험업자 : 원천징수 면제, 영리법인·개인 : 원천징수), '84.10.5~'05.6.30(금융보험업자 : 원천징수), '05.7.1~(금융보험업자 : 원천징수 면제)

### (2) 개정이유

- 신탁, 일반법인 및 개인에게 지급하는 채권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하는 것과 형평을 감안
- \* '04.12 법인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05.7.1부터 금융기관의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를 면제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1.1이후 채권이자를 지급받거나 채권을 매매하는 분부터 적용

8. 금융기관의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재시행에 따른 이자 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조정(영§70①, 영부칙 신설)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input type="checkbox"/>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의 귀속시기는 실제로 수입된 날로 하되,</p> <p>○ 결산 확정시 기간경과분에 대한 미수이자에 대하여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 익금산입</p> <p>- 다만, 원천징수대상인 채권이자는 실제 이자지급시 원천징수되는 점을 감안하여 제외</p> <p>* 원천징수 업무의 효율성 제고</p> <p>※ 금융기관 채권이자 원천징수제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5.6.30 이전 : 원천징수</li> <li>· 2005.7.1 - 05.12.31 : 원천징수면제</li> <li>· 2006.1.1 이후 : 원천징수</li> </ul>	<p>○ 2005.12.31 현재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채권에 대하여도 기간경과분에 대한 미수이자 계상액을 익금불산입하도록 특례 허용</p> <p>* 2006.1.1 이후 실제 이자지급시 전액 원천징수되는 점을 감안</p>

(2) 개정이유

- 현재 금융기관(12월말 결산법인)이 2005.12.31 현재 보유하는 채권(원천징수 면제)에 대해 결산시 기간경과분 이자를 수익으로 계상하면 익금에 산입되고
- 2006.1.1이후 실제 이자지급시점에서는 결산시 미수수익으로 계상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원천징수하도록 되어 있으나
- 집행상 원천징수의무자(증권예탁결제원등)가 금융기관별, 채권종류별로 미수수익 계상여부를 일일이 확인하여 원천징수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2.9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 <참고> 금융기관의 원천징수방법

□ 결산시 미수수익을 계상하지 않는 경우

○ 2006. 1. 1이후 지급하는 총이자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

□ 결산시 미수수익 계상하고 각 사업연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경우

○ 2006. 1. 1이후 이자 지급시 총이자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면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므로, 2006. 1. 1이후 발생분에 대해서만 원천징수하여야 함

⇒ 금융기관은 업종별 회계처리기준에서 기간경과분이자분에 대하여 수익으로 계상하도록 규정

□ 현행 규정상 원천징수하는 경우 문제점

○ 원천징수의무자가 기간경과분 이자수익의 익금산입 및 익금 불산입한 금융기관의 구분관리가 곤란

○ 대량의 채권 및 다양한 채권에 대하여 소유자별 과세구간을 달리 적용할 수 있는 전산프로그램의 구축이 불가능

○ 금융기관이 익금산입한 경과이자분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경우 이중과세된 세금의 환급문제 발생 등

## 9.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기준 보완(법§76)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납부불성실 가산세 <input type="checkbox"/>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 1일 1만분의 3	<input type="checkbox"/> 환급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하여 초과 환급받은 경우에도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 (2) 개정이유

- 현재 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만 가산세를 부과하고
- 기납부세액 또는 공제감면세액을 허위로 기재하여 과다 환급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여 명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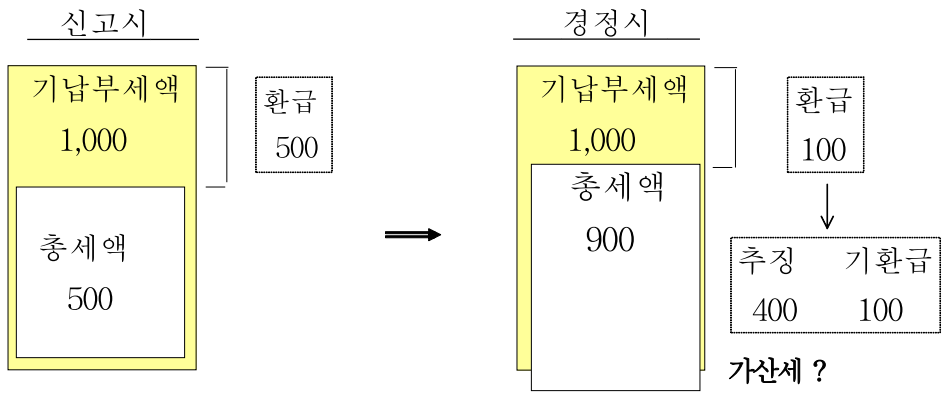
※ '03.12.31 부가가치세법 §22⑤개정(납부불성실가산세 대상)

-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여 과다하게 환급된 경우 추가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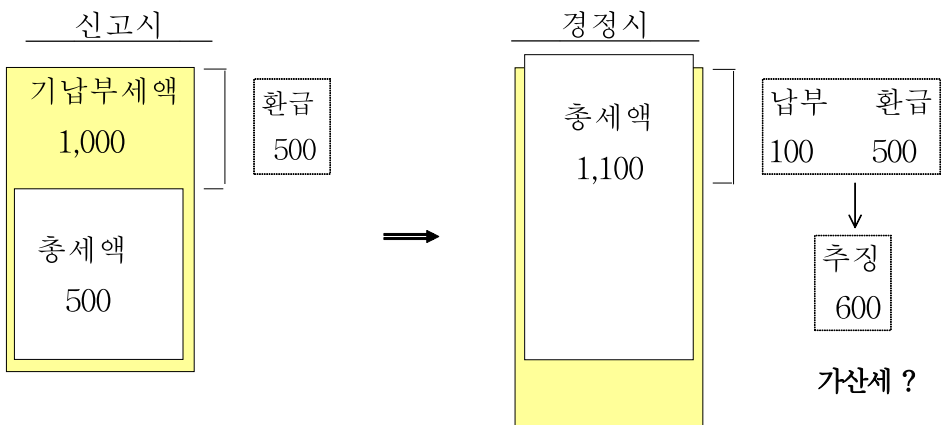
- 2006.1.1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사례 1]



(현행) 추징 400에 대하여 가산세 불가로 해석  
 (개정안) 추징 400에 대하여 가산세 가능

[사례 2]



(현행) 추징중 100에 대하여 가산세 가능  
 (개정안) 추징 600에 대하여 가산세 가능

## 10.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 확대(법§29)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준비금을 적립하는 경우 일정 한도내에서 손비 인정 <input type="checkbox"/> 이자소득 : 100% * 회원대부이자, 금융보험업의 일시적 금융기관 예금이자 포함 <input type="checkbox"/> 배당, 주식 양도차익, 수익용고정자산 처분이익, 채권 매매차익, 기타 사업소득 : 50% * 학교등 100%, 농협등 80%	<input type="checkbox"/> 배당수입도 100% 손금산입 - 다만, 상증법상 제한을 위반한 주식(5%초과 보유분) 관련 소득은 제외 <input type="checkbox"/> 조특법상의 감면(비과세·면제, 준비금, 소득공제, 세액감면)과 중복적용 배제(고유목적사업 준비금과 다른 감면 선택) ※ 세액공제(투자세액공제 등)는 허용

### (2) 개정이유

- 최소한의 수익창출활동과 관련한 배당소득에 대해 전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 비영리법인 지원
  - 다만, 공익법인을 통한 계열회사 지배방지를 위해 상증법상 보유를 제한하는 주식으로부터의 배당에 대해서는 적용 배제
-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하고 조특법상 세액감면을 받는 것은 이중혜택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 <참고1> 상증법상 공익법인을 통한 계열회사 지배방지 제도

### □ 의결권주식 보유제한

- 의결권있는 주식 5% 초과 보유금지(법§16②·§48①단서·§48②2호)
  - 다만,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집단과 특수관계가 없는 성실공익법인으로서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보유한 경우 예외
  - \* 성실공익법인 요건 : 운용소득의 90% 상당액이상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 사후관리 위배시(영§40①2호) : 증여세 과세
  - 초과보유분 또는 초과취득에 사용한 재산가액×증여세율

### □ 既 보유주식 처분의무

- '96.12.30 현재 보유기준(발행주식총수의 5%)을 초과한 분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처분의무 부여(법§50)
  - 5%초과~20%이하 보유 공익법인 : '99.12.31까지
  - 20%초과 보유 공익법인 : 2001.12.31까지
- 다만,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성실공익법인의 경우는 예외인정
- 사후관리 위배시 : 가산세 부과(법§78④)
  - 매년말 초과분의 시가 × 5%(10년간 부과)

### □ 계열사주식 보유제한

- 총재산가액중 계열사 주식보유비중을 30%이하로 제한(법§48⑨)
- 사후관리 위배시 : 가산세 부과(법§78⑦)
  - 매년말 초과보유분의 시가 × 5%(기간제한 없음)

<참고2>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특례 제도 개요

감면종류		감면율 및 감면기간
면 제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법인세 면제(§21)	
	해외자원개발투자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22)	
	영농·영어조합법인 법인세 면제(§66, §67)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121의6)	
준 비 금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9)	3% ~ 5%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28)	5%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투자손실준비금(§55)	투자금액 50%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투자손실준비금(§55의2)	투자금액 50%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104의3)	30%
	문화사업준비금(§104의9)	30%
세 액 감 면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6)	4년간 50%
	균형발전특별세액감면(§7)	20%~40%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12①항)	50%
	고용창출형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30조의2)	4년간 50% ~ 100%
	중소기업(공장)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지역 이전 세액감면(§63)	5년간 100%, 2년간 50%
	법인 공장 및 본사 수도권외지역 이전시 임시특별세액감면 (§63조의2)	5년간 100%, 2년간 50%
	지역균형발전세액감면(§63조의3)	20% ~ 40%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64)	4년간 50%
	농업회사법인(농업외소득) 법인세감면(§68)	면제, 4년간 50%
	산림개발소득 세액감면(§102)	50%
	외국인투자 법인세 감면(§121의2)	5년간 100, 2년간 50%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등 법인세 감면(§121의 8, 121의9)	3년간 100, 2년간 50%
	기업도시 세액감면(§121의17)	3년간 100, 2년간 50%

세 액 공 제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5)	3%
	중소기업의 경영컨설팅쿠폰 구매에 대한 세액공제(§5의3)	7%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7의2)	0.15% ~ 0.3%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10)	증가분 40%, 경상분 15%
	해외파견비에 대한 세액공제(§10의2)	7%
	연구인력개발 설비투자세액공제(§11)	7%
	기술취득비 세액공제(§12②)	3% ~ 7%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24)	3% ~ 7%
	환경안전설비 투자세액공제(§25)	3%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25의2)	10%
	임시투자세액공제(§26)	10%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30의4)	100만원, 50만원
	근로자복지증진설비 투자세액공제(§94)	7%
	공동전산망을 이용한 화물운송 위탁시 운송비에 대한 세액공제(§104)	0.3%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104의8)	1만원, 2만원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122)	50% 또는 5%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과세특례(§122의2)	첫해 100%, 다음해 50%	
소 득 공 제	기업구조조정증권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54)	명목회사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국민주택 임대소득(§55)	50%
	인적회사에 대한 소득공제(§104의11)	

## 11. 연금 및 공제업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한도 명확화 (영§56)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적립한도 ○ 이자소득 : 100% * 금융보험업의 일시적 자금예치에 따른 이자 포함 ○ 사업소득 : 50%	○ 특별법에 의하거나 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받아 설립된 연금 및 공제업의 채권투자등 금융자산 운용소득을 이자소득에 추가

### (2) 개정이유

- 연금 및 공제업 법인으로서 특별법에 의하거나 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의 경우
  - 주된 사업인 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이 법인세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므로
    - 연금 및 공제업의 모든 사업을 금융보험업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개별사업별로 구분함이 바람직
  - 따라서, 연금 및 공제업의 경우에도 금융보험업(예: 대금업)을 제외한 다른 사업부분은 금융보험업에서 제외하고
    - 채권등 금융자산에 투자하여 얻는 이자소득은 일반법인과 같이 100%설정 대상인 이자소득임을 명확화(재경부 법인-270, '05.4.25)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분부터 적용

## 12. 한국투자공사를 금융기관에 추가(영§61)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대손충당금 손금산입특례(채권액의 2%) 및 이자소득 원천징수 면제대상 금융기관의 범위 <input type="checkbox"/> 은행, 농·수협중앙회, 종금사, 증권회사, 보험사, 한국수출보험공사, 유동화전문회사, 선물거래소, 증권예탁원,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input type="checkbox"/> 한국투자공사 추가

### (2) 개정이유

- 한국투자공사는 외환보유액 등 공공부문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설립한 기관인 점을 감안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참고> 한국투자공사

- 근거 : 한국투자공사법('05.3.24일 공포)에 따라 '05.7.1일 설립
- 설립 목적 : 외환보유액 등 공공부문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함으로써 국내 자산운용업 활성화에 기여
- 자본금 : 수권자본금 1조원, 설립시 납입자본금 1천억원
- 자금 조달 : 외환보유액과 공공기금을 위탁받아 운용하며, 출범시에는 외환보유액 200억불을 위탁받아 시작
- 자산 운용
  - 외화표시 자산(채권·주식·파생상품, 외환 등)에만 투자하며, 국내 원화표시 금융상품은 투자대상에서 제외. 다만, 일시적으로 불가피한 경우 금융기관 예치, 국공채 매입은 가능
  - 국내외 자산운용사에 외부위탁(운용수수료 비용 발생)

### 13. 과세이연대상 국고보조금의 범위 확대(영§64)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input type="checkbox"/> 법인이 다음의 범률에 의하여 국가 등으로부터 보조금(금전외 자산 포함)을 지급받아 사업용 자산 취득에 사용한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해 사업용자산의 감가상각·양도시까지 법인세 과세이연</li> <li>○ 해당 범률 : 보고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채정법, 농어촌전환촉진법, 전기사업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한국철도공사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용대상 범률의 범위에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어촌정비법 추가</li> <li>-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li> </ul> </li> </ul>

#### (2) 개정이유

- 농어촌정비법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소유하는 농업기반 시설\*을 농업기반공사가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에
  - 농업기반공사가 무상 인수하여 농업용수의 원활한 공급 및 자연재해의 예방 등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과세이연대상에 추가
    - \* 농업생산에 이용되는 저수지, 양수장, 관정, 배수장, 배수로, 제방, 도로 등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해 대한주택공사 등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공유지를 무상으로 양여\* 받는 경우 과세이연대상에 추가
  - \* 주거환경개선사업중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 건설사업의 사업비로 사용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2.9이후 최초로 취득 또는 개량하는 분부터 적용

## 14. 배드뱅크로부터 받는 배당금 귀속시기 특례 허용(영§70)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input type="checkbox"/> 법인이 지급받는 배당금의 손익 귀속시기</p> <p>○ 배당 지급법인의 잉여금 처분 결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p> <p>* 배당을 지급한 유동화전문회사등 SPC는 소득공제</p>	<p>○ 개인신용회복 지원 및 금융기관 부실채권 회수를 위해 설립된 배드뱅크로부터 사원(금융기관)이 배당받는 경우</p> <p>- 실제 배당을 지급받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p> <p>* 배당을 지급한 유동화전문회사는 현재와 같이 잉여금처분 결의 시점에서 소득공제</p>

### (2) 개정이유

- 개인신용회복지원 및 금융기관 부실채권의 원활한 회수를 위하여 다수의 금융기관이 사원으로 참여하여 설립한 배드뱅크(희망모아 유동화전문회사등)의 경우
  - 부실채권 회수에 따른 이익에 대한 과세를 피하기 위하여 배당 처분 결의를 통해 지급배당 소득공제를 적용받게 되나
  - 실제 배당지급은 배당처분 결의일로부터 유동화증권의 선순위 및 후순위채권 원리금을 상환한 3~4년 후에야 가능하고
  - 경우에 따라서는 실제 배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 금융기관은 배당수입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선과세될 소지
- 따라서, 개인신용 회복지원 및 금융기관 부실채권의 원활한 회수를 지원하기 위해 실제 배당받는 시점에서 과세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2.9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15. 분식회계법인의 합병시 환급세액 승계 명확화(영§96)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input type="checkbox"/> 분식회계를 원인으로 과다납부한 세액을 경정청구시</p> <p>○ 5년간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한 후 잔액이 있는 경우에만 환급</p>	<p>○ 분식회계를 원인으로 경정청구한 법인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년경과 전에 흡수합병된 경우 합병시점에서 환급하지 아니하고 합병법인이 승계하여 5년경과후 잔액이 있는 경우에만 환급</li> <li>- 5년경과 전에 분할되어 해산하는 경우 해산시점에서 환급하지 아니하고 분할신설법인등이 승계하여 5년경과후 잔액이 있는 경우에만 환급</li> </ul>

### (2) 개정이유

- 분식회계로 인하여 증권거래법 및 외감법 규정에 의하여 시정조치를 받은 법인이 과다납부한 법인세액의 환급을 경정청구한 경우
  - 이를 즉시 환급하지 않고 향후 5년간 발생하는 법인세액에서 차감한 후 잔액에 대해서만 환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서 합병 또는 분할되는 경우에도 5년이 경과한 후에만 환급이 가능함을 명확화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2.9이후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

## 16. 해산시 청산소득금액 계산방법 명확화(영§121)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법인의 해산시 청산소득 과세 표준  <input type="checkbox"/>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가액(시가) - 해산등기일 현재 자기자본총액  <input type="checkbox"/>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 (잉여금을 한도로) 자기자본총액에서 차감하여 청산소득 과세표준을 증가  *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시 공제되지 아니한 결손금	<input type="checkbox"/> 세법상 공제된 결손금이 재차 차감되지 않도록 명확화

### (2) 개정이유

청산소득 계산시 이월결손금을 자기자본총액에서 차감하는 규정을 명확화하여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지 않도록 명확화

\* 청산소득금액계산명세서(별지 제59호서식 부표) 상 ①납입자본 및 ②잉여금을 기업회계상 자기자본을 기초로 하여 계산하는 경우 기업회계상 소멸된 이월결손금 금액이 다시 차감되는 문제 발생

<p style="text-align: center;"><u>세무상 이월결손금</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멸 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년 이월공제</li> <li>· 1년 소급공제(중소기업)</li> <li>· 자산수증익 · 채무면제익과 상계</li> </ul> </li> </ul>	<p style="text-align: center;"><u>기업회계상 이월결손금</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년경과 사업연도 발생 이익과도 상계 가능</li> <li>· 자본잉여금 · 이익잉여금으로 보전</li> </ul>
--	---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2.9이후 최초로 해산하는 분부터 적용

17. 중도매인에 대한 계산서 불성실가산세제도 보완  
(영§120⑨, 영 제15970호 부칙§14)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input type="checkbox"/> 계산서 불성실가산세 (미교부 공급가액의 1%)</p> <p>○ 복식부기의무자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상의 중도매인에 대하여는 교부비율에 의하여 가산세 부과여부 판정</p> <p>- 교부비율이 연도별 일정기준 초과시 가산세부과대상에서 제외</p> <p>&lt;연도별 교부비율 기준&gt;</p> <table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text-align: center;"><u>02</u></td> <td style="text-align: center;"><u>03</u></td> <td style="text-align: center;"><u>04~05</u></td> <td style="text-align: center;"><u>06~07</u></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0%</td> <td style="text-align: center;">20%</td> <td style="text-align: center;">40%</td> <td style="text-align: center;">80%</td> </tr> </table>	<u>02</u>	<u>03</u>	<u>04~05</u>	<u>06~07</u>	10%	20%	40%	80%	<p>○ 연도별로 교부비율 조정</p> <p>- 지방지역의 경우 현실적인 어려움을 감안</p> <p>&lt;연도별 교부비율 기준&gt;</p> <p>○ 서울특별시 소재 중앙도매시장의 중도매인</p> <table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text-align: center;"><u>2006</u></td> <td style="text-align: center;"><u>2007</u></td> <td style="text-align: center;"><u>2008</u></td> <td style="text-align: center;"><u>2009</u></td> <td style="text-align: center;"><u>2010</u></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40%</td> <td style="text-align: center;">45%</td> <td style="text-align: center;">50%</td> <td style="text-align: center;">55%</td> <td style="text-align: center;">60%</td> </tr> </table> <p>○ 그 외 중도매인</p> <table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text-align: center;"><u>2006</u></td> <td style="text-align: center;"><u>2007</u></td> <td style="text-align: center;"><u>2008</u></td> <td style="text-align: center;"><u>2009</u></td> <td style="text-align: center;"><u>2010</u></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0%</td> <td style="text-align: center;">25%</td> <td style="text-align: center;">30%</td> <td style="text-align: center;">35%</td> <td style="text-align: center;">40%</td> </tr> </table>	<u>2006</u>	<u>2007</u>	<u>2008</u>	<u>2009</u>	<u>2010</u>	40%	45%	50%	55%	60%	<u>2006</u>	<u>2007</u>	<u>2008</u>	<u>2009</u>	<u>2010</u>	20%	25%	30%	35%	40%
<u>02</u>	<u>03</u>	<u>04~05</u>	<u>06~07</u>																										
10%	20%	40%	80%																										
<u>2006</u>	<u>2007</u>	<u>2008</u>	<u>2009</u>	<u>2010</u>																									
40%	45%	50%	55%	60%																									
<u>2006</u>	<u>2007</u>	<u>2008</u>	<u>2009</u>	<u>2010</u>																									
20%	25%	30%	35%	40%																									

(2) 개정이유

- 중도매인의 경우 계산서 교부에 어려움이 크고 특히, 지방지역에 대한 현실적인 교부의 어려움을 감안
- 계산서 제도가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 보완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2.9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8.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특례 범위 보완(규칙§28·§44)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다음 가지급금에 대해서는 지급이자 손금 불산입 및 인정이자 계산이 모두 적용 배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지급소득에 대한 소득세 대납액</li> <li>○ 국외투자법인 종사자의 여비 등을 대신 부담한 금액</li> <li>○ 우리사주조합 주식취득자금 대여액 등</li> </ul>	<input type="checkbox"/> 다음 가지급금에 대해서는 지급이자 손금 불산입은 적용 배제 되나 인정이자 계산은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용인(자녀 포함)에 대한 학자금의 대여액</li> </ul>
<input type="checkbox"/> 다음 가지급금에 대해서는 지급이자 손금 불산입은 적용 배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정이자 계산 적용도 배제</li> </ul>	

(2) 개정이유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에서 예외가 인정되는 가지급금과 인정이자 계산을 하지 아니하는 가지급금의 범위를 일치

\* 국세청 예규 : 사용인(자녀 포함)에 대한 학자금의 대여액에 대해서는 가지급금의 인정이자 계산을 배제(서이46012-11321(2003.7.11), 서이 46012-10091(2001.9.4) 외 다수)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1.1이후 최초로 게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 19. 당좌대출이자율 근거기준 조정(규칙§43)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특수관계자간 금전 저리대여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기준이 되는 당좌대출이자율(9%)의 범위 <input type="checkbox"/>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이자율 * 금융기관 보증 3년만기 회사채 유통수익률 4.49%	<input type="checkbox"/> 금융기관의 당좌대출이자율*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이자율 * 한국은행에서 각 금융기관의 당좌대출이자율을 감안하여 매월 발표

### (2) 개정이유

- 현행 당좌대출이자율(9%)은 금융기관 보증 3년만기 회사채유통수익률(4.49%)과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 당좌대출이자율 근거기준을 금융기관의 당좌대출이자율(8.1%)로 변경
- \* 「금융기관 보증 회사채」는 현재 발행되지 않으며 한국증권협회에서 공표되는 3년만기 회사채 유통수익률은 추정수익률임(매일 공시)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 당좌대출이자율 고시내용

기 간	당좌대출이자율	고시일자
1991. 12. 6 이후	15%	1991.12. 6
1993. 2. 1 이후	12%	1993. 4. 7
1994. 2. 1 이후	13%	1994. 1.28
1996. 1. 1 이후	12%	1995.12.30
1998. 1. 1 이후	20%	1997.12.31
1998. 7. 1 이후	17%	1998. 7. 4
1998. 10. 1 이후	13%	1998. 9.30
1999. 7. 1 이후	11%	1999. 6.30
2002. 1. 1 이후	9%	2001.12.31

## 조세특례제한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시행규칙

## 【개정된 주요내용】

### I. 성장잠재력 확충 및 투자활성화 지원

1.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2. 중소기업 생산자금 선지원을 위한 네트워크론 활성화
3.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제도 일몰 연장
4. 사회간접투자준비금 적용대상 확대
5. 한국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주식·출자지분의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
6. 개인투자자의 한국벤처투자조합 출자금에 대한 소득공제
7. 개인투자자의 배당소득·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특례
8.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벤처기업에 대한 사업손실준비금 제도 도입
9. 한국벤처투자조합 출자자에 대한 지원
10. 기업구조조정조합 등에의 출자 지원 시한 연장
11. 10년이상 장기임대주택에 투자하는 부동산 간접투자기구 배당소득 분리과세
12.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의 배당소득에 대한 저율분리과세
13. 사립대 민자 학교시설 운영사업에 대한 부가세 면제
14. 투자자산 처분시 감면세액 추징 요건 완화

### II.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세제지원

1. 지방이전 기업의 법인세 과세이연제도 간소화 및 적용기한 연장
2. 기업의 단계적 지방이전에 대한 지원 확대 및 일몰기한 연장
3.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 연장

### III. 구조조정 지원세제

1.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2. 중소기업 금융부채상환등에 대한 과세특례

3. 중소기업 주주등의 자산증여에 대한 법인세등 과세특례
4.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5. 현물출자를 통한 자회사 설립요건 완화
6. 금융지주회사 설립에 대한 지원기한 연장 등
7. 채무의 출자전환에 대한 지원 확충

#### **IV. 기업과세제도의 선진화·합리화 및 제도 정비**

1. 기부금 손비인정한도 조정
2. 조합공동사업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3. 해운기업에 대한 둔세제도 보완
4. 타법인주식 취득 규제제도 폐지
5. 소비성 서비스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 완화
6. 세제지원대상 스톡옵션 요건 보완

#### **V. 중소기업 지원세제 보완**

1. 중소기업 졸업기준 보완
2. 중소기업 유예기간 인정 제외사유 추가
3. 중소기업 유예기간 예외적 적용기준 명확화

#### **VI. 비과세·감면축소**

1.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폐지
2. 해외파견비용 임시세액공제제도 폐지
3. 고용중대특별세액공제제도 폐지
4. 기업어음 세액공제제도 개선
5.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인하
6. 국제선박 양도차익 손금산입 제도 일몰규정 도입등
7. 상장·등록기업의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제도 폐지
8. 세금우대종합저축 대상 축소 등
9. 장기주택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대상 축소
10. 장기주식형 저축에 대한 비과세 폐지
11. 선박투자회사 출자주식 양도시 비과세 폐지
12. 준비금 중복지원 적용 배제
13. 한국농촌공사 일부 면세사업 과세전환

14. 농협 일부 면세사업 과세전환
15. 산림조합중앙회 일부 면세사업 과세전환
16. 한국조폐공사 일부 면세사업 과세전환
17. 별정우체국·우편취급소 일부 면세사업 과세전환
18. 농수산물유통공사 면세사업 범위 조정

## VII. 농·어업 지원

1.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
2. 농·어업용기자재 수입분에 대한 부가세 면제
3. 농협조합 등 종업원 자사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 VIII. 기타 미비점 보완 및 개선

1. 지급조서 전자제출세액 공제대상 확대
2. 전자신고세액 제출세액 공제대상 확대
3. 내국인 면세점 면세물품 구입한도 조정
4. 세금우대자료 미제출가산세 보완
5. 개인연금저축 등 특별해지신고 기한 신설
6. 세금우대 투자신탁의 합병시 조세특례의 유지
7. 투자회사에 대한 과세제도 보완
8. 부동산 중개업소의 수입금액 노출에 따른 세부담 경감
9. 특정성 있는 관세감면제도에 대한 일몰
10. 국민주택규모 초과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경비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기한 연장
11. 고속철도 운영자산 매입세액공제 특례
12. 정부업무대행단체 삭제 및 주차장운영업·자동차견인업 면세사업에서 배제
13. 농협 일부사업 과세전환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정부업무대행단체에 추가
14.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수상오락서비스업 과세전환
15. 국민주택 리모델링용역 면세범위 확대
16. 소비성서비스업 관련 조문정리
17. 의료기기 사업용자산 범위 보완

- 18. 의제제조업 범위 명확화
- 19. 한국농촌공사 일부 면세사업 과세전환

**【법 · 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일자】**

- 법 률 : 제7577호(2005. 7.13)  
제7839호(2005.12.31)
- 대통령령 : 제19329호(2006. 2. 9)
- 재정경제부령 : 제504호(2006. 4.17)

# I. 성장잠재력 확충 및 투자활성화 지원

## 1.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조특령§23)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용시한 : 2005.12.31</li> <li>○ 공제율 : 투자금액의 10%</li> <li>○ 공제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자한 각 과세연도 또는 투자를 완료한 과세연도이나</li> <li>- 부칙에서 임투적용기간 종료일 까지 투자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종료일을 투자완료일로 보아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공제받도록 규정</li> </ul> </li> <li>○ 적용업종 : 제조업, 건설업, 물류산업, 방송업 등 27개 업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6.12.31까지 1년 연장</li> <li>○ 공제율 인하(10% → 7%)</li> <li>○ 공제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로 명확히 규정</li> <li>- 부칙에서 의제종료일을 규정하지 않음</li> </ul> </li> <li>○ 좌 동</li> </ul>

### (2) 개정이유

기업의 신규 투자촉진을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1.1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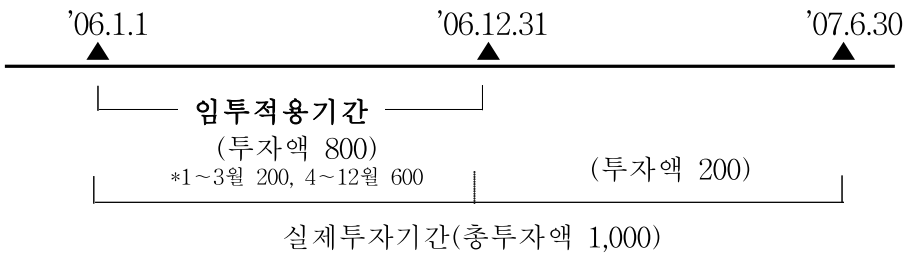
<공제시기 적용사례>

□ 투자가 일시에 완료되는 경우 : 투자한 과세연도에 일괄공제

○ '06년 3월중 기계를 구입·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7% 공제

□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장기간 진행되는 경우 : 각각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임시투자세액공제율에 따라 공제

\* '06년 1월에 발주하여 '07년 6월에 투자가 완료된 경우



① 사업연도종료일이 12.31인 법인 : 2006년 투자분(800)을 '07.3월 법인세 신고시 공제

\* 개인사업자 : 2006년 투자분(800)을 '07.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

② 사업연도종료일이 3.31인 법인 :  
 '06.1월~3월 투자분(200)은 '06.6월 법인세 신고시  
 '06.4월~12월 투자분(600)은 '07.6월 법인세 신고시 각각 공제

2. 중소기업 생산자금 선지원을 위한 네트워크론 활성화  
(법§7의2 및 영§6의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input type="checkbox"/> 네트워크론을 통하여 구매대금 결제시 세액공제</p> <p>○ 네트워크론 요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기관이 구매기업에게 상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대하여 세액공제 허용</li> </ul> <p>○ 결제대상거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기업간 결제만 배제</li> </ul> <p>○ 세액공제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0일 이내 : 0.3%</li> <li>- 31일~60일 : 0.15%</li> </ul> <p>&lt;신 설&gt;</p>	<p>○ 네트워크론 요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문받은 물품을 납품하기 전에는 판매기업에게 상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세액공제 허용</li> <li>- 판매기업이 대출받은 금액을 한도로 공제</li> </ul> <p>○ 결제대상거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기업에게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경우만 허용</li> </ul> <p>○ 좌 동</p> <p>○ 구매기업은 발주건별로 발주정보를 금융기관에 제공하고 금융기관은 대출정보를 구매기업에게 제공</p>

(2) 개정이유

네트워크론제도 요건을 완화하여 판매기업(중소기업)이 납품 전에 생산자금을 선대출 받을 수 있도록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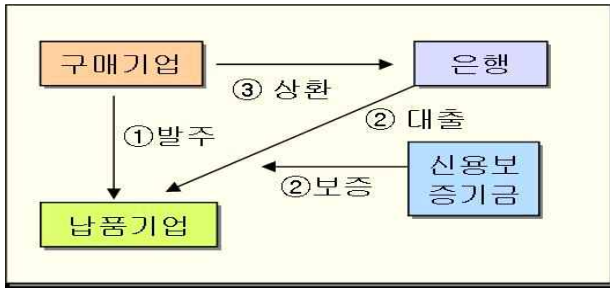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1.1이후 구매대금을 결제하는 분부터 적용

<참고> 네트워크론 제도 개요

- 구매기업의 추천을 받은 판매기업과 금융기관이 대출한도를 약정한 후 구매기업의 발주서를 근거로 생산자금을 판매기업에게 대출하고, 구매기업이 추후 전자결제방식으로 대출금을 금융기관에게 상환하는 대출제도

<Network Loan제도 운영방식>



- ① 사전에 구매기업과 금융기관간에 협약을 체결한 뒤 대기업(구매기업)이 협력 중소기업(판매기업)에 발주
- ② 구매기업은 발주와 동시에 금융기관에 발주정보를 제공하고 금융기관은 판매기업에게 대출
- ③ 판매기업은 생산자금으로 사용하고 구매기업에게 납품
- ③ 구매기업은 구매대금을 금융기관에 전자결제방식으로 결제하여 판매기업의 대출금을 상환

### 3.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제도 일몰 연장(법§25의2)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 공제  ○ 대상시설 - 에너지절약형시설, 중질유 재처리시설, 중수도시설,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등  ○ 세액공제 - 투자금액의 10%  ○ 일몰시한 : '05.12.31	○ 일몰연장 : '08.12.31

#### (2) 개정이유

- 에너지자원이 없고 고유가가 지속되는 현실을 감안하여 에너지 절약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촉진 유도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1.1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 4. 사회간접투자준비금 적용대상 확대(영§25①)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06.12말까지 도로·항만등 사회간접시설 건설법인이 사회간접자본시설에 투자하기 위해 준비금 적립시  <input type="checkbox"/> 당해 연도 투자금액의 5% 범위안에서 손금산입  <input type="checkbox"/> 대상법인 - 도공, 한전, 가스공, 철도공사, 통신공사, 수자원공사, 컨테이너 부두공단,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하여 지정된 사업시행자등	<input type="checkbox"/> 「항만공사법」에 의한 항만 공사를 추가

##### (2) 개정이유

항만공사(정부 100% 출자)의 항만시설 투자를 지원함으로써 사회  
간접자본시설(SOC) 확충을 도모

\* 항만공사법('03.5.29 공포)의 시행으로 부산항만공사('04.1월) 및 인천  
항만공사 설립('05.7월)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 2. 9 이후 최초로 손금산입하는 분부터 적용

5. 한국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주식·출자지분의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조특법 §13, §14)

(1) 개정내용

증 전	개 정
<p>□ 창업투자회사·신기술사업 금융업자, 거주자 및 기관투 자자가</p> <p>○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을 통하여 취득한 벤처기업 등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 비과세</p> <p>○ 일몰시한 : 없음</p>	<p>○ 『한국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벤처기업등의 주식에 대해서도 양도차익 비 과세</p>

(2) 개정이유

- 한국벤처투자조합을 통한 벤처기업 투자 지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5.7.13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6. 개인투자자의 한국벤처투자조합 출자금에 대한 소득공제,  
(조특법 §16)

(1) 개정내용

증 전	개 정
<p><input type="checkbox"/> 개인투자자가 중소기업창업 투자조합 등에 출자하는 경우 소득공제</p> <p>○ 출자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기업 구조조정조합, 부품·소재 전문투자조합, 벤처기업 투자신탁, 개인투자조합</li> <li>- 벤처기업에 대한 직접투자</li> </ul> <p>○ 공제율 : 출자금액의 15% (종합소득금액 50% 한도)</p> <p>○ 일몰시한 : '06.12.31까지 출자</p>	<p>○ 출자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벤처투자조합』 추가</li> </ul>

(2) 개정이유

- 한국벤처투자조합을 통한 벤처기업 투자 지원

※ 소득공제율 추이

'99.8.30이전	'01.12.31이전	'02.1.1이후
20%	30%	15%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5. 7. 13일 이후 최초로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 7. 개인투자자의 배당소득·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특례

(조특법 §14④,⑤)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u>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u> 등이 ○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여 발생한 배당소득·이자소득에 대하여는 ○ 벤처기업등이 원천징수하지 않고 조합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단계에서 원천징수	<input type="checkbox"/> 원천징수특례 대상에 『 <u>한국벤처투자조합</u> 』 추가

### (2) 개정이유

- 한국벤처투자조합에 대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과 동일하게 세제지원함으로써 창업자 및 벤처기업 활성화 지원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5.7.13일 이후 최초로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8.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벤처기업에 대한 사업손실준비금 제도 도입 (조특법 §8의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 사업손실준비금제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용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권상장 중소기업</li> <li>- 협회등록 중소기업</li> </ul> </li> <li>○ 감면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30% 범위내에서 손금산입</li> <li>- 준비금은 향후 결손금과 상계한후 나머지는 5년후 일시 환입(익금산입)</li> </ul> </li> <li>○ 2000. 1. 1 ~ 2002. 12. 31 시행후 일몰시한 종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용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스닥시장에 신규상장한 벤처(중소)기업</li> </ul> </li> <li>○ 감면내용 : 좌동</li> <li>○ 일몰시한 : 2006.12.31</li> </ul>

(2) 개정이유

-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위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도록 세제 지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5. 7. 13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상장하는 벤처기업부터 적용

## 9. 한국벤처투자조합 출자자에 대한 지원(법§13)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input type="checkbox"/> 한국벤처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p> <p>○ 한국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창업자·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 또는 투자하는 경우</p> <p>- 당해 출자 또는 투자로 취득한 주식의 양도차익 대하여 비과세</p> <p>- 창업자·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으로 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비과세</p> <p>○ 일몰기한 : '06.12.31</p>	<p>○ 한국벤처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에 새로이 추가된 상법상 유한회사*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지원</p> <p>* 조합결성금액의 1% 이상을 출자하고, 투자업무에 5년 이상 종사자 1인 및 3년 이상 종사자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유한책임조합원을 보유한 유한회사</p>

### (2) 개정이유

- 한국벤처투자조합의 결성주체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와 동일한 세제지원 부여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1.1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주식이나 출자지분 또는 지급받는 배당소득부터 적용

## 10. 기업구조조정조합등에의 출자 지원 시한 연장(법§14②)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input type="checkbox"/> 기관투자자*가 창투조합, 신기술 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 등을 통해 취득한</p> <p>* 기금관리, 공제사업영위법인</p> <p>○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구조조정대상기업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p> <p>○ 일몰시한 : 2005.12.31</p>	<p>○ 일몰연장 : 2007.12.31</p>

### (2) 개정이유

- 기업구조조정조합 등을 통한 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용시한 연장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1.1이후 최초로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11. 1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에 투자하는 부동산 간접투자기구  
 배당소득 분리과세(법§91의5)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input type="checkbox"/> 장기임대주택에 투자하는 부동산간접투자기구에 대한 세제지원  ○ 배당소득 14% 분리과세 - 지원요건 : 10년이상 장기임대주택에 90% 이상 투자  ※ 지원대상 간접투자기구 - 간자법상의 부동산간접투자기구 - 부동산투자회사법상의 위탁관리REITs

(2) 개정이유

장기자금운용이 가능한 재무적 투자자의 참여를 유도하여 장기 임대주택 건설의 활성화 도모

\* 부동산 간접투자기구 :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여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신탁과 투자회사

※ 현재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5호 이상, 10년 이상 임대시」 1세대 3주택에 대한 양도세 60% 중과 배제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1.1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12.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의 배당소득에 대한 저율분리과세  
(조특법 §91의4)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input type="checkbox"/>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당소득 분리과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자원금 3억원 이하 : 5% 분리과세</li> <li>- 투자원금 3억원 초과 : 14% 분리과세</li> </ul> </li> <li>○ 일몰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8.12.31까지 발생하는 소득분</li> </ul> </li> </ul> <p>*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인프라펀드)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민자사업에 투융자하여 그 수익을 펀드 출자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상법상 주식회사 (paper company)</p>

(2) 개정이유

- 인프라 펀드의 활성화를 통한 시중의 풍부한 여유자금이 민간투자 사업에 활용되도록 유도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5.7.13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13. 사립대 민자 학교시설 운영사업에 대한 부가세 면제(§106①)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input type="checkbox"/> 민자로 건설하는 사립대 학교 시설(예 : 기숙사) 운영사업*에 대한 부가세 면제  <input type="checkbox"/> '07년말까지 실시 협약이 체결된 분까지 적용  * BTO방식 : 건설 - 이전 - 운영 (불공제) (면세) (면세)

#### (2) 개정이유

사립대 학교시설 민자사업을 지원하고, 기숙사생 비용 경감을 위해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 면제

※ 사립학교 민자유치 4개 사업\*(총사업비 1,446억원) 추진

\* 건국대, 경희대, 한양대. 대전외국인유학생 기숙사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1.1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다만, 이 법 시행전에 실시협약이 체결된 분(건설이 완료되어 운영중인 것을 제외)에 대하여도 적용

## 14. 투자자산 처분시 감면세액 추징 요건 완화(§146)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감면세액의 추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자가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 당해 자산을 처분한 경우</li> <li>- 세액공제상당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징요건 완화</li> <li>- 투자완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 당해 자산을 처분한 경우</li> </ul>

### (2) 개정이유

투자완료시점에 따라 투자자산의 의무보유기간이 달리 적용되는 문제점 개선

⇒ 2년 경과여부 계산시 기산시점을 투자완료일로 변경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1.1이후 처분하는 분부터 적용

## II.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세제지원

### 1. 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연장 (§60·61)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도시외 지역 이전을 위해 대도시 공장 양도시 양도차익 3년거치 3년 분할 과세</li> <li>○ 일 몰 : '05.12.31</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몰연장 : '08.12.31</li> </ul>
<input type="checkbox"/> 법인 본사의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외 지역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6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이전을 위해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 본사의 대지·건물 양도시 양도차익 3년거치 3년 분할 과세</li> <li>○ 일 몰 : '05.12.31</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몰연장 : '08.12.31</li> </ul>

#### (2) 개정이유

- 수도권 과밀을 억제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지속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일몰연장

2. 기업의 단계적 지방이전에 대한 지원 확대 및 일몰기한 연장  
(§63·63의2)

(1) 개정내용

증 전	개 정
<p>□ 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6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면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 권역외로 지역이전</li> </ul> </li> <li>○ 감면내용 : 7년간 세액감면 (5년간 100%, 2년간 50%)</li> <li>○ 일 몰 : '05.12.31</li> </ul> <p>□ 법인 공장·본사 지방이전에 대한 세액 감면(§63의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면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이전일이 속하는 당해 연도에 본사 인원이 50%이상 이전한 경우 감면</li> </ul> </li> <li>○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토지, 건물의 양도차익</li> </ul> </li> <li>○ 감면내용 : 7년간 세액감면 (5년간 100%, 2년간 50%)</li> <li>○ 일 몰 : '05.12.31</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몰연장 : '08.12.31</li> <li>○ 단계적 지방이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이전일이 속하는 당해 연도를 포함하여 최근 3년간 이전한 인원이 50%이상인 경우 감면</li> <li>- 단계적 이전인원 정의규정 명확화</li> </ul> </li> <li>○ 감면대상에서 제외 소득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차익 포함</li> <li>* 분양권, 토지·주택상환채권 등</li> </ul> </li> <li>○ 일몰연장 : '08.12.31</li> </ul>

## (2) 개정이유

□ 수도권 과밀을 억제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지속

□ 지방이전 기업의 세액감면 요건 완화

○ 기업의 지방이전시 주거여건, 영업환경 적응 등을 위한 단계적인 이전이 불가피한 점을 감안하여

- 지방이전일이 속하는 당해연도를 포함하여 최근 3년간 이전한 인원이 50%이상 될 경우 세액감면 적용

○ 단계적 지방이전에 대한 인원정의 명확화

- 이전본사 근무인원은 수도권 본사에서 이전한 인원과 신규 채용한 인원을 포함

□ 지방이전 본사 감면대상 소득 계산방법 조정

○ 현재 지방이전 기업의 사업소득과 직접 관련 없는 토지·건물의 양도차익은 감면대상 소득에서 차감

- 토지·건물의 양도차익과 동일한 성격의 분양권 등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양도차익도 차감대상에 추가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1.1이후 최초로 지방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

### 3.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 연장 등(조특법§7, 영§6)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 대상업종 - 제조업 등 27개 업종  ○ 감면율 - 소기업(도·소매업 등) : 10% - 수도권 소기업(제조업등) : 20% - 수도권외 소기업(제조업등): 30% - 수도권외 중기업(도·소매업 등): 5% - 수도권 중기업(지식기반) : 10% - 수도권외 중기업(제조업등) : 15%  ○ 적용기간 : '05.12.31까지	○ 업종추가 - 건설폐기물처리업('05.7월) - 선박관리업, 분뇨처리업, 직업기술분야학원, 무역전시업, 광고업, 토양정화업('05.12월)  ○ 감면율 : 변동없음  ○ '08.12.31 (3년 연장)

#### (2) 개정이유

- 양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
- 적용대상 업종을 중소기업의 범위와 일치(업종추가)
- 새롭게 추가된 토양정화업을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토양정화업으로 환경부장관에게 토양정화업 등록\*을 한 자로 규정

\* 토양정화업 : 중소기업의 범위에도 추가(영§2)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건설폐기물처리업 : 2005. 7. 13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 선박관리업, 분뇨처리업, 직업기술분야학원, 무역전시업, 광고업, 토양정화업 : 2006.1.1이후 종료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 Ⅲ. 구조조정 지원세제

#### 1.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법§33, 영§30)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p><input type="checkbox"/> '08.12까지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이 업종을 전환하기 위해 사업용고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이연(개인), 법인세 분할과세(법인)</p> <p><input type="checkbox"/> 요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환전사업 : 업종제한 없음</li> <li>○ 전환후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조, 연구개발업, 부가통신업, 과학기술서비스업등 창업지원 대상 21개 업종</li> <li>* 전환전사업은 소재지역에 제한이 없으나 전환후사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소재 지역에서 개시한 경우만 적용</li> </ul> </li> <li>○ 전환기간 : 전환전 사업용자산 양도후 1년내 사업전환</li> <li>○ 사업전환의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환전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사업용고정자산을 사업장단위별로 양도할 것</li> </ul> </li> <li>○ 사업용고정자산의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유·무형고정자산</li> </ul> </li> </ul> <p><input type="checkbox"/> 지원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계장치등 취득분 양도세 50% 감면</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환전사업용고정자산 양도에 따른 양도세 산출세액× (전환사업용 기계장치 취득가액/전환전 사업용고정 자산 양도가액) × 50%</li> <li>* 양도세 감면한도 1억원(농특세 비과세)</li> <li>- 토지·건물취득분 양도세 과세이연</li> <li>• 전환전사업용고정자산 양도차익 × 전환사업용 토지· 건물 취득가액 / 전환전사업용고정자산 양도가액</li> <li>○ 법인 : 3년거치 3년분할 익금산입</li> <li>• 전환전사업용고정자산 양도차익 × 전환사업용고정 자산 취득가액 / 전환전사업용고정자산 양도가액</li> <li>*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장부가액 - 이월결손금</li> <li>○ 예정가액</li> <li>- 전환전사업용고정자산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음 사업연도에 전환사업용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위 산식중 전환사업용자산취득가액 대신 예정가액에 의함</li> <li>□ 사후관리</li> <li>○ 전환전 사업용고정자산 양도일부터 1년이내 사업 전환을 하지 아니하거나 전환사업 개시후 3년이내 폐지한 경우</li> <li>-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과세이연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세액, 양도세 감면세액 전액 추징</li> <li>○ 예정가액에 미달하게 전환사업용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li> </ul>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환 사업용고정자산을 실제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분할과세대상금액, 과세이연금액, 감면세액을 초과하는 금액 추징</li> <li>○ 이자상당가산액 : 미납기간 1일 1만분의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자율 : 1일 1만분의 3(연 10.95%)</li> <li>- 미납기간 :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감면 또는 과세이연을 받은 과세연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납부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li> </ul> </li> <li>□ 서류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도차익명세및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li> <li>- 사업전환(예정)명세서, 사업전환완료보고서</li> </ul> </li> <li>○ 개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액감면·과세이연신청서, 사업전환(예정)·완료명세서</li> </ul> </li> </ul> </li> </ul>
--	---

(2) 개정이유

- 중소기업이 사양산업으로부터 탈바꿈하여 지식 정보산업, 과학 기술서비스업등으로의 전환을 지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1.1이후 최초로 전환전사업의 사업용고정자산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사례>

-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공장부지(장부가액 15억원, 시가 30억원)를 처분하고
  - 물류산업으로 업종을 전환하기 위해 토지(20억원)와 기계장치(10억원)를 취득한 경우

### ① 개인 사업자인 경우

- 공장부지를 처분한 양도차익(15억원) 중
  - 토지 취득에 사용된 금액은 과세이연\*하여 당해 토지를 처분하는 시점에서 과세
    - \*  $15\text{억원} \times 20\text{억원(토지 취득가액)}/30\text{억원(공장 양도가액)}=10\text{억원}$   
→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은 실제 취득가액(20억원)에서 과세이연 금액(10억원)을 차감한 10억원이 되며, 추후 양도시 양도차익이 그만큼 커지게 되어 과세

- 기계장치 취득에 사용된 금액은 양도소득세 50%감면\*

- \*  $15\text{억원} \times 10\text{억원(기계 취득가액)}/30\text{억원(공장 양도가액)}=5\text{억원}$   
→ 5억원에 상당하는 양도세의 50% 감면

### ② 법인인 경우

- 공장부지를 처분한 양도차익(15억원)에 대해 3년거치 3년 분할 과세

- \*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후 3년째부터 매년 5억원씩 3년간 익금산입

## 2. 중소기업 금융부채상환등에 대한 과세특례(법§34, 영§31)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p><input type="checkbox"/> '07.12까지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이 채권금융기관과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일정요건 충족시 세제 지원</p> <p><input type="checkbox"/> 요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약서에 채무면제, 부동산처분에 따른 채무상환 계획이 포함되어 있을 것</li> <li>○ 금융기관과 특수관계가 없을 것</li> <li>○ 금융채무의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li> <li>- 사업과 관련하여 차입한 차입금(당좌차월 제외) 및 이자</li> <li>- 자금조달목적으로 발행한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으로서 채권금융기관이 매입하거나 보증한 것</li> </ul> </li> <li>○ 주채권금융기관과 체결한 경영정상화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채권금융기관별 금융부채 총액 및 내역</li> <li>- 부동산 보유명세</li> <li>- 양도부동산의 명세 및 양도예정가액</li> <li>- 채무면제·상환계획(양도일부터 3월내 채무상환 포함)</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채무상환기한의 판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용부동산의 양도일(소득세법상 양도일)부터 3월이내 채무를 상환</li> <li>- 다만,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각회 부불금 수입일부터 3월이내 채무상환한 분에 대해서만 적용</li> </ul> </li>   <li>○ 분할익금대상 채무면제익에서 차감하는 결손금의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손금(합병·분할에 의한 승계결손금 제외)으로서 그 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5년경과 결손금을 포함)</li> </ul> </li>   <li>□ 세제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채무재조정에 따라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 그 채무면제익에 대해 3년거치 3년분할 익금산입</li>   <li>○ 사업용부동산을 처분하여 금융부채를 상환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 : 50% 양도세 감면(한도 1억원, 농특세 비과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용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세 산출세액×부채(예정)상환액 / 사업용부동산 양도가액 × 50%</li> </ul> </li> <li>- 법인 : 양도차익 3년거치 3년분할 익금 산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용부동산 양도차익×부채(예정)상환액/사업용부동산 양도가액</li> </ul> </li> <li>*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장부가액 - 이월결손금</li> </ul> </li>   <li>- 채권금융기관 : 채무면제액 손금산입</li> </ul> </li> </ul>
--	---

	<p><input type="checkbox"/> 사후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채무를 상환 하지 아니하거나 채무상환후 3년내 폐지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양도세 감면세액 전액 추징</li> </ul> </li> <li>○ 부채상환예정액에 미달하게 상환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제 채무상환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분할과세 대상금액, 감면세액을 초과하는 금액 추징</li> </ul> </li> <li>○ 이자상당가산액 : 미납기간 1일 1만분의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자율 : 1일 1만분의 3(연 10.95%)</li> <li>- 미납기간 :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감면 받은 과세연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납부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li> </ul> </li> </ul> <p><input type="checkbox"/> 서류제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영정상화계획이행 협약서, 양도차익명세및분할 익금산입조정명세서, 부채상환(예정)명세서, 부채상환완료보고서, 채무면제명세서</li> </ul> </li> <li>○ 채권금융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영정상화계획이행 협약서 및 이행실적</li> </ul> </li> </ul>
--	---

(2) 개정이유

- 중소기업의 금융부채 상환을 통한 재무구조개선 지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1.1이후 최초로 사업용부동산을 양도 또는 채무를 면제받거나 면제하는 분부터 적용

<사례 ①> 사업용 부동산을 처분하여 금융부채 상환

○ 사업용 부동산(장부가액 5억원, 시가 10억원)을 처분하여 금융부채(8억원) 상환

○ 양도차익(5억원)중 금융부채 상환에 사용된 금액\*에 대하여

\* 5억원 × 8억원(부채상환액)/10억원(양도가액) = 4억원

- 법인 : 3년거치 3년분할 과세 ⇒ 3년후부터 매년 1.33억원씩  
3년간 익금산입

- 개인 : 양도세 감면 ⇒ 4억원에 상당하는 양도세의 50% 감면

<사례 ②> 채권금융기관이 채권재조정으로 일부 채무를 면제한 경우

○ 중소기업 : 채무면제익에 대해 3년거치 3년분할 과세

○ 채권금융기관 : 면제한 채무액을 손비로 인정

3. 중소기업 주주등의 자산증여에 대한 법인세등 과세특례  
(법 §41, 영§38)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lt;신 설&gt;</p>	<p><input type="checkbox"/> '07.12까지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이 채권 금융기관과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일정요건 충족시 세제지원</p> <p><input type="checkbox"/> 요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약서에 자산증여·부동산처분에 따른 채무상환 계획이 포함되어 있을 것</li> <li>○ 금융기관과 특수관계가 없을 것</li> <li>○ 분할익금산입대상 자산수증익에서 차감하는 결손금의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손금(합병·분할에 의한 승계결손금 제외)으로서 그 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서 공제 되지 아니한 금액(5년경과 결손금 포함)</li> </ul> </li> <li>○ 주주등의 범위(최대주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주1인(개인)과 그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주식 또는 지분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등</li> </ul> </li> </ul> <p>* 특수관계자의 범위(상증영 §19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친족, 사용인 및 사용인외의 자로서 생계유지자, 기업집단, 출연설립한 비영리법인, 기업집단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1차지배 30%, 2차지배 50%</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채권금융기관과 체결한 경영정상화계획에 포함 되어야 할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채권금융기관별 금융부채 총액 및 내역</li> <li>- 주주등 지분보유 내역</li> <li>- 주주등 증여자산의 명세 및 예정가액</li> <li>- 처분대금 증여시 양도일등으로부터 1월이내 증여</li> <li>- 채무상환계획</li> </ul> </li> </ul> <p>□ 세제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인이 최대주주로부터 자산을 증여받는 경우 그 수증익에 대해 3년거치 3년분할 익금산입, 등록세· 취득세 비과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할과세대상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증여받은 자산가액(결손금 초과액)중 채무(예정)상환액</li> </ul> </li> </ul> </li> <li>○ 최대주주가 부동산을 처분하여 처분대금 증여시 양도세 50% 감면(한도 1억원, 농특세 비과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주등 소유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세 산출세액 × 증여가액 / 주주등 소유 부동산 양도가액 × 50%</li> </ul> </li> <li>○ 결손법인에의 자산증여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 적용 배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대주주 : 특수관계자 포함하여 보유주식수 가장 많은 개인주주</li> </ul> </li> </ul> <p>□ 사후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채무를 상환하지 아니하거나 채무상환후 3년이내 폐지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양도세 감면세액 전액 추징</li> </ul> </li> </ul>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정상환액에 미달하게 상환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제 채무상환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분할과세대상금액, 감면세액을 초과하는 금액 추징</li> </ul> </li> <li>○ 이자상당가산액 : 미납기간 1일 1만분의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자율 : 1일 1만분의3(연 10.95%)</li> <li>- 미납기간 :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납부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li> </ul> </li> <li>□ 서류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영정상화계획이행 협약서, 수증자산명세및부채상환(예정)명세서, 부채상환완료보고서 제출</li> </ul> </li> <li>○ 주주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동산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서 세액감면신청서</li> </ul> </li> <li>○ 채권금융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영정상화계획이행 협약서 및 이행실적</li> </ul> </li> </ul> </li> </ul>
--	--

(2) 개정이유

- 기업회생을 위한 최대주주의 자구노력을 지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1.1이후 최초로 자산을 무상으로 받거나 부동산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4.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법§47의4, 영§44의4)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lt;신 설&gt;</p>	<p><input type="checkbox"/> '07.12까지 기업이 합병(분할합병 포함)함에 따라 중복자산이 발생한 경우로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합병법인이 중복자산을 처분하여 다른 자산을 대체 취득한 경우 분할과세</li> </ul> <p><input type="checkbox"/> 요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도대상 중복자산의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합병당사법인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던 자산으로서 용도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용 유형고정자산</li> </ul> </li> <li>○ 대체취득 대상 사업용고정자산의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건물등 유형고정자산</li> </ul> </li> <li>○ 대체취득기한 : 합병후 1년내 중복자산 양도 및 대체취득</li> </ul> <p><input type="checkbox"/> 분할과세 대상 금액 계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승계받은 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도차익 + 합병평가차익) × 대체취득 자산가액 / 양도가액</li> </ul> </li> <li>○ 합병법인 고유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도차익 × 대체취득 자산가액 / 양도가액</li> </ul> </li> </ul> <p><input type="checkbox"/> 분할과세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년거치후 3년간 균등 익금산입</li> </ul>

	<p><input type="checkbox"/> 사후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합병등기일부터 1년내 사업용고정자산을 대체취득하지 아니하거나 합병등기일부터 3년내 폐지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 익금산입</li> </ul> </li> <li>○ 예정취득가액에 미달하게 대체취득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제 대체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분할과세대상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익금 산입</li> </ul> </li> <li>○ 이자상당가산액 : 미납기간 1일 1만분의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자율 : 1일 1만분의3(연 10.95%)</li> <li>- 미납기간 :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과세연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납부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li> </ul> </li> </ul> <p><input type="checkbox"/> 서류제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도차익명세서및익금불산입조정명세서, 고정자산취득예정)명세서, 고정자산취득완료보고서 제출</li> </ul>
--	---

(2) 개정이유

- 합병, 분할합병에 따라 발생하는 중복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분할과세제도를 도입하여 기업의 투자촉진을 유도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1.1이후 최초로 합병(분할합병 포함)하는 분부터 적용

<사 례>

- 물류업을 영위하는 A법인이 동일 업종을 영위하는 B법인을 흡수합병하여 동일 지역에 2개의 물류센터를 보유하게 된 경우
  - 물류센터 1개를 처분(장부가액 5억원, 합병당시 시가 9억원, 처분가액 10억원)하고 1년내 물류센터가 없는 다른 지역에 새로운 물류센터를 취득(9억원)한 경우

□ 현재는 양도차익(5억원)을 전액 익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

□ 그러나, '06.1.1이후부터는 양도차익을 다음과 같이 3년거치 후 3년간 분할하여 과세

① 합병법인(A)이 당초 보유하던 물류센터를 처분한 경우

○ 양도차익(5억원) 중 대체취득한 자산가액 상당액을 분할과세

\* 분할과세 대상 : 양도차익(10억원 - 5억원) × (9억원/10억원) = 4.5억원  
→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후 3년째부터 1.5억원씩 3년간 분할하여 익금산입

② 피합병법인(B)으로부터 승계한 물류센터를 처분한 경우

○ 합병평가차익(4억원)과 양도차익(1억원)중 대체취득한 자산가액 상당액을 분할과세

\* 분할과세 대상 : [(9억원 - 5억원) + (10억원 - 9억원)]  
× (9억원/10억원) = 4.5억원  
→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후 3년째부터 1.5억원씩 3년간 분할하여 익금산입

## 5. 현물출자를 통한 자회사 설립 요건 완화(영§35)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input type="checkbox"/> 대상 및 요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동으로 현물출자시 출자법인간 특수관계가 없을 것</li> </ul> </li> <li>○ 대상자산 : 주식 또는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부동산 및 사업용고정자산</li> </ul> <p><input type="checkbox"/> 지원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물출자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이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물출자시 양도차익에 대해 손금산입(압축기장충당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도차익 : 취득주식 시가-현물출자자산의 장부가액</li> </ul> </li> <li>- 주식처분시 과세이연된 부분 익금 산입 법인세 과세</li> </ul> </li> <li>○ 신설법인이 3년내 사업폐지시 익금산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자산도 현물출자 허용</li> </ul>

### (2) 개정이유

- 유희자산을 이용한 자회사 설립을 지원하여 기업의 투자촉진을 유도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 2. 9 이후 최초로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 6. 금융지주회사 설립에 대한 지원시한 연장등(법§38의2, 법§52의2)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지주회사 설립(조특법§38의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식을 현물출자하여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기존법인이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이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해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포함</li> </ul> </li> <li>○ 법인 : 일몰시한 없음 개인 : 2006.12.31</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의한 지주회사 설립 추가</li> <li>* 특정기업의 주주들이 소유주식 전부를 이전하여 지주회사를 설립하고, 지주회사는 주주들에게 신주를 배정하여 자회사로 편입하는 방식</li> </ul>
<input type="checkbox"/> 금융지주회사 설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기관의 주주가 금융지주회사 주식과 포괄적으로 교환·이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이연</li> <li>○ 일몰시한 : '05.12.31</li> </ul>	

### (2) 개정이유

- 포괄적 이전에 의한 일반 지주회사 설립에 대해서도 과세이연을 허용
- 금융기관의 대형화와 겸업화를 통한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일몰시한 연장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1.1이후 최초로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의하여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분부터 적용

## 7. 채무의 출자전환에 대한 지원 확충(법§44②)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 채무법인 - 소멸된 채무중 발행주식의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은 채무면제 - 다만, 정리계획인가, 화의인가, 부실징후기업의 경우 익금불산입후 결손금과 상계(05.12 종료) * 인가결정, 경영정상화계획 약정에 출자전환 포함시 적용	-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협약에 따라 출자전환받는 기업등 모든 기업에 대해 출자전환 채무면제익을 익금불산입후 결손금과 상계(법인세법으로 이관) * 채무출자전환에 따른 익금불산입 대상 법인에 정리계획인가, 화의인가, 부실징후기업외 일반기업도 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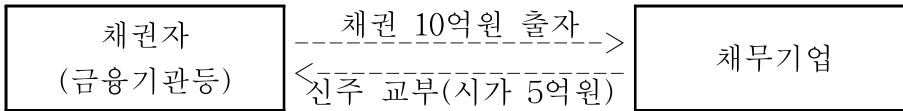
### (2) 개정이유

- 채무의 출자전환을 통한 단순한 자본구조의 재편성에 대해서는 과세문제가 없도록 일반 제도화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1.1이후 출자전환하는 분부터 적용

<사 례>



□ 채무기업

- 현재 출자로 전환된 채무액(10억원)중 발행주식의 시가(5억원)를 초과하여 출자로 전환된 채무액(5억원)은 채무를 면제받은 것과 동일하므로 법인세 과세대상
  - 다만, 정리계획인가·화의인가 기업 또는 부실정후기업에 대해서는 출자전환시점에서 동 채무면제익을 과세하지 아니하고
    - 향후 발생하는 결손금과 상계토록 하는 방법으로 지원
    - \* 부실정후기업 :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여신금액이 500억원이상인 기업으로서 채권금융기관이 채무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한 기업
  - '06.1.1부터는 채권금융기관과 체결한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협약에 따라 출자전환받는 기업등 사실상 출자전환하는 모든 기업으로 확대
    - \* 채권금융기관과 채무기업간 채무출자전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출자전환하는 경우
- 채권금융기관 : 신주의 취득가액을 출자당시 신주의 시가(5억원)가 아닌 채권가액(10억원)으로 보도록 하여 향후 처분시 손익인식

#### IV. 기업과세제도의 선진화·합리화 및 제도정비

##### 1. 기부금 손비인정 한도 조정(법§73, 법인세법§24)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법정기부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득금액의 100%</li> <li>○ 국가·지자체, 국방헌금 및 위문금품, 이재민 구호금품</li> <li>○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06)</li> </ul>	<input type="checkbox"/> 손비인정범위 단계적 축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득금액의 50%로 축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8년까지 3년간(문예진흥기금 : '06년까지 1년간)은 소득 금액의 75%까지 인정</li> </ul> </li> <li>○ 한도 초과액은 1년간 이월공제</li> </ul>	
<input type="checkbox"/> 사립학교등에 대한 기부금 손비 인정 범위(소득의 50%)	<input type="checkbox"/> 손비인정 범위를 국공립학교 수준으로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 : 현행유지</li> <li>○ 법인 : 5, 50% →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년간 75% 인정</li> <li>* 장학금을 시설비등과 같이 취급</li> </ul> </li> <li>○ 경제자유구역내 외국교육 기관의 시설비등을 추가</li> </ul>	
구 분	개인	법인
· 사립학교·기능대학등*의 시설비, 연구비, 교육비	100%	50%
· 사립학교·기능대학에 대한 장학금	100%	5%
* 비영리교육재단(사립학교 시설확충등 목적으로 설립된 경우에 한함), 평생 교육시설, 산학협력단		
<input type="checkbox"/> 특례기부금 대상 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립학교병원, 국공립병원의 시설비등</li> <li>○ 특정연구기관(공동관리기구 포함), 정부출연 연구기관</li> <li>○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독립 기념관등</li> <li>○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조직위</li> </ul>	<input type="checkbox"/> 특례기부금 대상 단체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한적십자사가 운영하는 병원의 시설비 등</li> <li>○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로 명칭 변경</li> <li>○ 한국과학문화재단, 한국국제 교류재단</li> </ul>	
	<삭 제>	

(2) 개정이유

- 영리기업이 소득의 전액을 기부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여 기부금제도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선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1.1 이후 개시사업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08년까지 3년간은 소득 금액의 75%까지 인정)<sup>주)</sup>

- 주) ○ 법정기부금은 소득금액의 50%('08년까지 3년간 75%)까지 인정  
다만, 문화예술진흥기금은 '06년까지 1년간 75%까지 인정
- 특례기부금의 손비인정 범위에 대한 개정사항 없음  
(종전과 같이 소득금액의 50%까지 인정)

## 2. 조합공동사업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법§72, §84)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당기순이익 과세(법§72) ○ 대상법인 : 농협 등 조합법인 ○ 과세방법 : 당기순이익에 대하여 12% 세율로 과세	<input type="checkbox"/> 조합공동사업법인 추가 *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
<input type="checkbox"/> 농협 등이 유통자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토지등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차익 과세이연(법§84)	<input type="checkbox"/> 조합공동사업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추가
<input type="checkbox"/>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는 조합법인의 범위(법인영 §1) ○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	<input type="checkbox"/> 조합공동사업법인을 추가

### (2) 개정이유

- 규모화·경영효율화를 위해 기존조합의 일정부문(유통등)을 분리하여 조합공동사업법인을 설립('05.7.1 시행)하는 것이므로 기존 조합등에 대한 수준과 같이 지원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조합공동사업법인 설립) : 2006.1.1 이후 최초로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 3. 해운기업에 대한 톤세제도 보완

#### 가. 요건을 위반한 해운기업에 대한 톤세 적용방법 보완(법 §104의10)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input type="checkbox"/> 톤세 적용기간(5사업연도) 중 2회 이상 적용요건* 위반시</p> <p>* 요건</p> <p>①외항운송사업 등 영위</p> <p>②2년미만 기간으로 용선한 외국선박의 연간운항 순톤수가 소유선박등의 연간운항 순톤수의 5배 이하 등</p> <p>○ 최초 요건을 위반한 사업연도에 소급하여</p> <p>- 잔여기간과 그후 5사업연도 동안 톤세적용을 배제하고</p> <p>- 법인세법에 의해 계산한 세액 납부</p>	<p>○ 2회째 요건을 위반한 사업연도부터</p> <p>- 잔여기간과 그 후 5사업연도 동안 톤세 적용 배제</p>

##### (2) 개정이유

- 제도를 단순화하고 톤세액이 법인세법에 의한 세액보다 큰 경우 환급을 위해 고의로 요건을 위반하는 사례 방지

##### ※ 톤세제도(Tonnage Tax System)

- 해운소득 : 실제 소득이 아닌 선박 순톤수와 운항일수에 의해 산출된 간주이익을 기준으로 법인세 과세
  - \* 간주이익 =  $\sum(\text{개별선박의 순톤수} \times \text{톤당이익} \times \text{운항일수})$
- 비해운소득 :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법인세 과세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1.1이후 최초로 2사업연도이상 위반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적용요건 위반 사례>

【사례】 A해운기업

- '06.3월에 「'05~'09사업연도」에 대하여 톤세적용 신청을 함
- 톤세적용 요건의 충족/위반 현황

사업연도	'05	'06	'07	'08	'09
요건충족	○	×	○	×	-

\* ○: 요건충족, ×: 요건위반

① 현행규정에 의하는 경우

- 최초 위반 사업연도부터 잔여 사업연도('06~'09) 및 다음 5사업연도('10~'14) 기간 동안 톤세적용 배제

사업연도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톤세적용	○	×	×	×	×	×	×	×	×	×

\* ○: 톤세적용, ×: 톤세적용 배제(법인세법 적용)

② 개정안에 의하는 경우

- 2회째 위반 사업연도부터 잔여 사업연도('08~'09) 및 다음 5사업연도('10~'14) 기간 동안 톤세적용 배제

사업연도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톤세적용	○	○	○	×	×	×	×	×	×	×

나. **톤세적용대상 법인의 범위 보완**(영§104의7)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해운기업의 법인세과세표준 계산 특례(톤세제도) 적용대상 법인 <input type="checkbox"/> 해운법상 외항정기·부정기 여객운송사업자 <input type="checkbox"/> 해운법상 외항정기·부정기 화물운송사업자	<input type="checkbox"/> 수산물운송사업자 제외

(2) 개정이유

- 톤세제도는 우리 해운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도입한 제도로서 외국의 경우 어선에 대해서는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 우리의 경우에도 외항화물운송사업자중 수산물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적용 배제
  - \* 외국사례(영국, 네덜란드, 노르웨이, 아일랜드 등)
    - 어선에 대해서는 톤세제도 적용 배제
  - \* 해운법상 외항화물운송사업자의 등록기준(해운법§26, 규칙§19①, 별표2)

구분	선박보유량	자본금	경영형태
수산물외의 화물운송	합계 5천톤이상	5억원 이상	상법상 주식회사
수산물의 운송	활선어 운송	20톤이상 선박 1척이상	-
	냉동어 운송	80톤이상 선박 1척이상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 2. 9 이후 최초로 과세표준계산특례 적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다. **톤세 적용기업의 중간예납방법 명확화**(영§104의8)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톤세를 적용받는 법인의 경우 ○ 전년도 납부세액의 1/2 또는 톤세 규정에 따른 가결산 방식(법인세법 §63④)에 의하여 중간예납 가능	<input type="checkbox"/> 톤세적용기간(5년)에 속하는 첫째 사업연도에 가결산 방식에 의하여 중간예납하는 경우에는 ○ 톤세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을 명확화

(2) 개정이유

- 톤세적용기간(5년)에 속하는 첫째 사업연도는 톤세 적용여부가 아직 미정이므로
  - 톤세규정에 따른 가결산 방식을 적용하여 중간예납할 수 없음을 명확화

\* 재법인세제과-525(2005.7.22)

- 2005사업연도에 가결산 방식에 따라 중간예납하는 경우에는 톤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 2. 9 이후 최초로 중간예납하는 분부터 적용

라. 기준선박의 범위 조정(규칙§46의3②)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input type="checkbox"/> 톤세제도 적용요건*상 기준선박의 범위</p> <p>① 소유 선박 및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p> <p>② 2년이상 기간 용선선박</p> <p>* 적용요건 : 2년미만 기간 용선한 외국선박의 연간운항순톤수의 합계 ≤ (기준선박의 연간운항순톤수의 합계×5배)</p>	<p>- 다만, 2년이상 기간으로 용선한 선박을 다른 해운기업에게 대선한 경우에는 이를 제외</p>

(2) 개정이유

- 용선한 선박을 수차례 다른 해운기업에게 대선하는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용선한 기업만 기준선박으로 인정받도록 하여
  - 동일 선박이 중복하여 기준선박으로 인정받는 문제 해소
  - \* 톤세 적용 요건의 취지
    - 우리나라 국적선박 증대를 통한 해운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7. 4. 17 이후 톤세 적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4. 타법인주식 취득 규제제도 폐지(법§135, 영§129)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input type="checkbox"/>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차입금과다법인이 타법인의 주식을 취득·보유하는 경우에는</p> <p>○ 타법인의 주식가액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p> <p>* 손금불산입액</p> $\text{지급이자} \times \frac{\text{타법인주식}}{\text{차입금}}$	<p>&lt;폐 지&gt;</p>

##### (2) 개정이유

-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차입금 비율이 크게 낮아지는 등 기업의 재무구조가 크게 개선되고
- 2001년부터 법인간 배당에 대해 이중과세조정을 허용하는 등 타법인 출자에 대한 조세정책방향이 변화된 점을 감안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5. 소비성서비스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 완화

가. 광고선전비 손비 인정 차등 적용 폐지(법§137, 영§135)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광고선전비 손비인정 한도 <input type="checkbox"/> 소비성서비스업* : 수입금액의 2% * 호텔·여관(관광숙박업 제외), 주점 (관광유희음식점 제외), 무도장, 도박장(카지노 제외), 안마업 <input type="checkbox"/> 기타 업종 : 전액 손비인정	<input type="checkbox"/> 전액 손비인정

(2) 개정이유

소비성서비스업에 대하여는 각종 세제지원을 배제하고 있는 차별적 규제를 폐지하여

○ 다른 업종과 동일한 수준으로 비용인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나. 접대비 한도액 차등 적용 폐지(법§136, 영§130)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 접대비 한도액 (①+②)</p> <p>① 1,200만원(중소기업 1,800만원)</p> <p>② 수입금액 × 적용율(0.2~0.03%)</p> <p style="margin-left: 20px;">*100억이하 0.2%, 100~500억 0.1%</p> <p style="margin-left: 20px;">500억 초과 0.03%</p> <p>○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와 소비성 서비스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의 경우</p> <p style="margin-left: 20px;">: ① + ②×20%만 인정</p> <p>○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자기관 (정부지분 20%이상), 정부투자·출자기관이 최대주주인 법인의 경우</p> <p style="margin-left: 20px;">: (①+②) × 70%만 인정</p>	<p>○ 소비성 서비스업 제외</p> <p>○ 현행유지</p>

(2) 개정이유

- 특정 업종에 대한 차별을 폐지하여 형평을 제고하고 제도 단순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6. 세제지원대상 스톡옵션 요건 보완(법§15③, 영§13)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input type="checkbox"/> 다음 요건을 갖추어 행사하는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세를 비과세(이익기준 3천만원)하고 당해 법인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을 배제</p> <p>○ 부여일로부터 2년이상 근무</p> <p>○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3월이내 행사</p>	<p><input type="checkbox"/> 다음의 경우 근로소득세는 과세하되 부당행위계산부인은 적용을 배제</p> <p>* 관련 법 규정과 일치</p> <p>○ 2년미만 근무후 사망·정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 예외인정</p> <p>○ 3월이후에도 행사기간내 행사하면 인정</p>

(2) 개정이유

-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사망등 불가피한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 예외 인정
- 퇴직한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시점에 따라 부여법인의 부당행위 여부가 달라지는 불합리 해소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5.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V. 중소기업 지원세제 보완

### 1. 중소기업 졸업기준 보완 등 (조특령§2① 단서, 부칙§4)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 범위에서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시근로자수 1,000명 이상</li> <li>○ <u>상장·등록법인</u>으로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li> <li>○ 자기자본(자산 - 부채) 1,000억원 이상</li> <li>○ 매출액 1,000억원 이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u>비상장법인</u> 포함</li> </ul>
<input type="checkbox"/> 중소기업 업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조업 등 32개 업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토양정화업 추가</li> <li>*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업종에 추가된 토양정화업을 중소기업 범위에도 추가</li> </ul>

#### (2) 개정이유

- 상장법인과 마찬가지로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을 중소기업 졸업기준에 포함하여 상장·비상장 법人间 과세형평 제고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졸업기준 변경 : 2007.1.1 이후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분부터 적용
- 업종추가 : 2006. 2 . 9일 이후 종료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 2. 중소기업 유예기간 인정 제외 사유 추가(조특령§2②)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예기간 불인정  ① 중소기업외의 기업과 합병하여 중소기업기준 초과 ②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과 합병하여 중소기업기준 초과 ③ 실질적 독립성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④ 창업일이 속하는 <u>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종료일</u> 현재 중소기업 규모기준 초과하는 경우	④ 창업일이 속하는 <u>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의 과세연도 종료일</u> 현재 중소기업 규모기준 초과하는 경우

### (2) 개정이유

- 통상 창업 후 1 ~ 2년은 사업준비기간에 해당하고 기업의 매출 규모 등은 사업준비기간 이후에 보다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측면을 고려하여
  - 창업중소기업의 규모기준 초과여부를 판정하는 기간을 현행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확대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7.1.1이후 창업하는 분부터 적용

### 3.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기준 명확화 (영§2⑤)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중소기업에서 제외시 유예기간 적용(4년) 사유</p> <p>○ 정부가 중소기업의 규모기준을 변경함으로써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경우 4년간 유예기간을 적용</p> <p>예) 제조업(現종업원 기준 300명) 종업원은 280명으로 동일하나 '05년에 종업원 기준을 300명에서 250명으로 변경함으로써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경우 '08년 까지는 중소기업으로 간주</p>	<p>○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조문정리</p> <p>- 현행 :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u>별표의 개정</u>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거나 ---</p> <p>- 개정 : <u>별표1의 개정</u>으로</p> <p>*중소기업기본법 개정내용('02.5)</p> <p>개정전 : 별표 중소기업 규모기준 개정후 : 별표1 중소기업 규모기준 별표2 중소기업 독립성기준</p>

#### (2) <개정이유> 조문정리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개정(2002.5월)으로 중소기업유예기간 적용 대상이 아닌 독립성기준이 별표2에 규정됨에 따라 당초부터 유예기간 적용대상인 별표1로 조문정리

\* 독립성 기준을 중기법시행령 제3조 제2호로 규정하였으나 별표2로 변경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되는 등의 사유로 독립성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유예기간 적용을 배제(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9 및 조특법시행령§2 제2항)

## VI. 비과세 · 감면 축소

---

### 1.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폐지 (§12)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 감면  ○ 일 몰 : '05.12.31	<폐 지>

#### (2) 개정이유

- 감면혜택이 소수의 일부 대기업에 편중되고 외국에도 유사 운용사례가 없음

## 2. 해외파견비용 임시세액공제제도 폐지(§10의2)

### (1) 개정내용

증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대상자 ○ 해외에 파견된 인턴사원 <input type="checkbox"/> 공제율 ○ 해외파견비용 × 7% <input type="checkbox"/> 일몰 : '05.12.31	<폐 지>

### (2) 개정이유

- 인턴사원 채용 및 해외파견 증대 관련 실효성 부족

### 3.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제도 폐지 (§30의4)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당해연도 상시근로자*인원이 직전연도 상시근로자수를 초과하는 경우  * 상시근로자 : 고용계약기간이 1년이상인 근로기준법에 의한 정규직 근로자  ○ 추가고용인원 1인당 1백만 원을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 일몰 : '05.12.31	<폐 지>

#### (2) 개정이유

- 고용증대에 대한 인센티브로 작용하기보다 사후적인 보조금에 불과하여 일몰도래에 따라 폐지

#### 4. 기업어음 세액공제제도 개선 (§7의2)

##### (1) 개정내용

총 전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checkbox"/>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제기간별 공제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0일 이내 : 0.3%</li> <li>- 31일~60일 : 0.15%</li> </ul> </li> <li>○ 공제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해 과세연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li> </ul> </li> <li>○ 공제대상거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기업간 결제만 배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기업 → 대기업 : ×</li> <li>· 대기업 → 중소기업 : ○</li> <li>· 중소기업 → 중소기업 : ○</li> <li>· 중소기업 → 대기업 : ○</li> </ul> </li> </ul> </li> <li>○ 일 몰 : '05.12.31</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제대상거래 축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기업간 거래만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기업 → 대기업 : ×</li> <li>· 대기업 → 중소기업 : ×</li> <li>· 중소기업 → 중소기업 : ○</li> <li>· 중소기업 → 대기업 : ×</li> </ul> </li> </ul> </li> <li>○ 일몰연장 : '08.12.31 (3년 연장)</li> </ul>

##### (2) 개정이유

- 하도급 거래의 현금성 결제비율이 일정수준에 오른 점을 감안하여 폐지하되, 중소기업간 거래는 현행과 같이 계속 지원하여 현금성 결제비율 제고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1.1이후 구매대금을 결제하는 분부터 적용

## 5. 신용카드 소득공제 소득공제율 인하(§126의2)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한 ○ '05년 11월 지출분까지  <input type="checkbox"/>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 (카드사용액 - 총급여액 × 15%) × 20%	<input type="checkbox"/> 기한 연장 ○ '07년 11월 지출분까지  = (카드사용액 - 총급여액 × 15%) × 15%

### (2) 개정이유

- 신용카드사용의 보편화로 신용카드사용 유도차원의 조세지원을 점진적으로 축소할 필요
  - 카드사용자에 대한 심리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근로자의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공제율 소폭 인하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5.12월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6. 국제선박 양도차익 손금산입 제도 일몰규정 도입등(법§23, 영§20)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checkbox"/> 내국법인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국제선박을 양도할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새로운 선박의 취득에 사용된 양도차익의 80%를 일시상각충당금으로 손금산입</li> <li>○ 새로운 선박 취득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전선박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 이내</li> </ul> </li> <li>○ 일시환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새로운 선박취득에 미사용</li> <li>- 새로운 선박취득전 해산 등</li> </ul> </li> <li>○ 이자상당가산액 적용배제</li> <li>○ 일몰시한 없음</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자상당가산액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납기간 1일 1만분의3 (연리 10.95%)</li> </ul> </li> <li>○ 일몰규정 신설 : '08.12.31</li> </ul>

(2) 개정이유

- 해운업에 대한 톤세제도를 도입('04.12.31)함에 따라 중복지원 측면을 감안하여 일몰시한 도입
  - 손금산입한 준비금 등의 일시환입의 경우와 형평성 감안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1.1이후 최초로 양도하거나 익금산입하는 분부터 적용

7. 상장·등록기업의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제도 폐지(법§104의3, 영§104)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input type="checkbox"/> 주권상장·코스닥상장법인이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을 계상한 경우 손금산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손금산입 범위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해 과세연도에 취득한 자기 주식의 취득가액*의 30%</li> </ul> </li> <li>○ 보유의무 : 취득후 6월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월미만보유시 익금산입</li> </ul> </li> <li>○ 익금산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사주 처분에 따른 손실과 상계하고 5년후 일시 익금산입</li> </ul> </li> </ul> <p>* 일몰시한 : 2005.12.31</p>	<p>&lt;폐 지&gt;</p>

(2) 개정이유

- 장기·안정적인 주식투자 수요기반 확충을 위한 조세지원 목적 달성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의 익금산입 등에 관하여는 종전규정을 적용

## 8. 세금우대종합저축 대상 축소 (§89)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세금우대종합저축 대상·한도 ○ 20세미만 : 1천5백만원 ○ 20세이상 : 4천만원 ○ 노인·장애인 : 6천만원	<input type="checkbox"/> 지원대상 축소 ○ 20세미만 폐지 ○ (현행 유지) ○ (현행 유지)

### (2) 개정이유

20세미만 저축의 경우 대부분 저축여력이 있는 고소득자가 세금우대를 추가로 적용받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

※ 20세미만 소년·소녀가장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이므로 현행 생계형저축(한도 3,000만원)에 대한 비과세특례 이용 가능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1.1이후 최초로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9. 장기주택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대상 축소(조특령§81①)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장기주택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대상('06년말까지) <input type="checkbox"/> 18세이상 세대주로서 - 무주택자 - 85㎡이하의 1주택 소유자	<input type="checkbox"/> 비과세대상 축소 <input type="checkbox"/> 18세이상 세대주로서 - 무주택자 - 국민주택이하로서 가입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1주택 소유자

(2) 개정이유

- 현행 85㎡이하 1주택 소유자의 경우 주택가액 차이에도 불구하고 동일 한 세제지원으로
- 무주택자 및 1주택 소유자간에 나타나는 불형평을 해소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2.9이후 최초로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 10. 장기주식형 저축에 대한 비과세 폐지 (§87의4)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장기주식형 저축 비과세 ○ 불입한도 : 1인당 8천만원 - 1년이상, 주식편입비율 60%이상 - '05.12.31까지 발생 소득	<input type="checkbox"/> 일몰시한 도래에 따라 폐지

### (2) 개정이유

- 실질적인 조세지원 효과가 미약하여 2005년 일몰도래에 따라 폐지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11. 선박투자회사 출자주식 양도시 비과세 폐지 (§87의5)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선박투자회사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양도시 양도세 비과세 * 액면가액 3억원이하 배당소득 비과세, 초과부분 분리과세 (§87의5(2)) ('08.12월 일몰) ○ 신설 및 일몰시한 : '04.1.1 ~ '05.12.31	<삭 제> ○ 일몰시한 도래 - 개정전 취득한 주식을 개정후 양도하는 경우 종전규정 적용 (부칙 신설)

### (2) 개정이유

- 부동산투자회사등 여타 Fund등에 비해 과도한 지원
  - \* '05.5월 현재 29개사 설립·운용중
- 개인투자자 배당소득 비과세등 여타 지원제도 계속 존치

## 12. 준비금 중복지원 적용 배제 (§127⑧)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중복지원 배제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일 사업용 자산에 대한 투자준비금 중복적용 배제</li> <li>○ 동일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중복적용배제</li> <li>○ 외국인투자기업 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의 중복적용 배제</li> <li>○ 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 중복적용 배제     &lt;신 설&gt;</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일 사업손실준비금인 코스닥상장 중소기업 사업손실준비금과 문화사업준비금에 대한 중복적용 배제</li> </ul>

### (2) 개정이유

- 향후 사업손실을 보전(또는 투자)할 목적으로 소득금액의 30%를 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있는 영화제작업 등이
- 문화사업준비금 뿐만아니라 벤처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코스닥상장중소기업 사업손실준비금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중복적용 배제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5.12.31일부터 적용

13. 한국농촌공사 일부 면세사업 과세전환(조특시행규칙§48)

(1)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안
<p><input type="checkbox"/> 한국농촌공사 면세사업</p> <p>○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10)에 규정된 사업*</p> <p>* 농어촌정비사업, 농지등의 재개발사업, 농어촌지역개발사업, 오염토양개선사업 등</p>	<p><input type="checkbox"/> 다음 사업 제외</p> <p>○ 농업기반시설 부지 및 수면임대사업</p> <p>○ 지하수 개발사업</p>

(2) 개정이유

- 농업기반시설 부지 및 수면 등을 임대하는 사업과 지하수 개발사업의 경우,
- 공익성이 낮고 민간부문과 경합성이 있으므로 과세전환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7.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4. 농협 일부 면세사업 과세전환(조특시행규칙§48)

(1)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농협 면세사업 <input type="checkbox"/> 농수산물도매수탁판매사업, 농기계수리업, 양곡창고업 등	<input type="checkbox"/> 종이포대 제조업 및 도축업 제외

(2) 개정이유

- 농협이 수행하는 종이포대 제조업과 도축업은
  - 공공성이 높은 사업으로 보기 어렵고 일반지대 제조회사 및 일반 도축장과의 경쟁관계에 있으므로 과세전환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7.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5. 산림조합중앙회 일부 면세사업 과세전환(조특시행규칙§48)

(1)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산림조합 면세사업 ○ 사유림대리경영 ○ 교육·지원사업 ○ 사방사업과 훼손지복구사업 등  ※ 산림조합법 제46조 및 제108조에 규정된 사업	<input type="checkbox"/> 다음 사업 제외 ○ 산림도로(林道) 시공업 ○ 휴양림 조성업

(2) 개정이유

산림도로(林道) 시공업과 휴양림 조성업은

- 건설업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산림사업법인과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과세사업으로 전환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7.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6. 한국조폐공사 일부 면세사업 과세전환 (조특시행규칙§48)

(1)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한국조폐공사 면세사업  <input type="checkbox"/> 은행권·주화 및 국채 제조 <input type="checkbox"/> 각종 유가증권 제조 <input type="checkbox"/> 각종 용지의 제조 등	<input type="checkbox"/> 다음 사업 제외  <input type="checkbox"/> 특수압인물의 제조·판매업 (훈장 제외)

(2) 개정이유

- 조폐공사가 수행하는 업무 중 특수압인물(훈장 제외) 제조·판매업은
  - 공익성이 낮고 민간부분과 경합성이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으로 전환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7.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7. 별정우체국·우편취급소 일부 면세사업 과세전환 (조특시행규칙§48)

(1)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별정우체국 및 우편취급소의 면세사업  <input type="checkbox"/>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체신업무 수행	<input type="checkbox"/> 방문접수 소포배송용역 면세사업 범위에서 제외

(2) 개정이유

- 별정우체국과 우편취급소가 수행하는 업무 중 방문접수소포배송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04년부터 과세 전환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 조세특례제한법관련 규정이 정비되지 않아 면세사업 범위에서 제외됨을 명확하게 규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별도 적용례 두지 않음

18. 농수산물유통공사 면세사업 범위 조정 (조특시행규칙§48)

(1)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농수산물유통공사 면세사업 ○ 농림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농수산물비축사업 ○ 출하조정사업 ○ 화훼류수탁판매사업  <추 가>	<input type="checkbox"/> 면세사업 범위 조정  ○ 출하조정사업 제외  ○ 유통조성사업*

\* 유통조성사업 : 우수 농수산물유통지원사업, 조사·연구·홍보·지도·교육훈련 및 해외시장개척사업, 연구개발사업 [농안법시행령 §23, 농안사업실시규정 §82(사업의 분류)]

(2) 개정이유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수행하는 사업의 변화를 감안하여 정부대행 업무영역 조정

※ 농안법상 변동된 위탁사업을 세법에 반영하여 법규정의 실효성 도모

조세지원의 효과가 미미한 비과세·감면은 축소·폐지하는 원칙에 따라 출하조정사업을 제외하는 반면에,

○ 유통조성사업은 농림부장관의 위탁에 의해 수행하고 기금과 농특회계에서 비용이 조달되고 민간과 경합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면세사업으로 규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06.4.17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VII. 농·어업 지원

### 1.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기한 연장(\$105)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input type="checkbox"/> '05년 12월말까지 * 비료, 농약, 사료, 농업용기계, 축산업용 기자재, 어업용 기자재, 친환경농업용 자재 등	<input type="checkbox"/>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 3년 연장 <input type="checkbox"/> '08년 12월말까지

#### (2) 개정이유

- 외국 농수축산물의 수입급증 및 농산물 개방압력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의 생산비용의 절감을 지원하기 위해
-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을 3년 연장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일몰연장

## 2. 농·어업용 기자재 수입분에 대한 부가세 면제 (§106)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부가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어업용 기자재 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 '05년 12월말까지	<input type="checkbox"/> 면제시한 연장  ○ '08년 12월말까지

### (2) 개정이유

- 농어업용 기자재를 국내에서 구입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므로 형평성 차원에서 농어민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어업용 기자재를 직접 수입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면제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일몰연장

### 3. 농협조합 등 종업원 자사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법§88의4)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input type="checkbox"/> 농협중앙회 출자지분 중 근로자보유 자사지분 배당소득 비과세	<input type="checkbox"/> 과세특례 범위 확대 <input type="checkbox"/> 농협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출자지분 중 근로자보유 자사지분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추가

#### (2) 개정이유

- 농협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출자지분 중 근로자 보유 자사지분 배당소득에 대하여
- 우리사주조합원 자사주 배당소득 및 농협중앙회 근로자보유 자사지분 배당소득 비과세와 형평성 도모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 VIII. 기타 미비점 보완 및 개선

### 1. 지급조서 전자제출세액 공제대상 확대(법§104의2)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지급조서 전자제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 세무대리인이 전자제출하는 경우 세무대리인의 범위 - 세무사법에 의한 세무사와 세무법인  * 제출자별 100만원 한도. 세무법인은 연 3백만원을 한도로 사원수 1인당 연 100만원씩 공제	<input type="checkbox"/> 지급조서 전자제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 세무대리인의 범위에 공인 회계사법상 회계법인 추가

#### (2) 개정이유

- 국세청 국세정보통신망(HTS)을 통해 지급조서를 제출할 경우 전산입력, 오류체크 등에 소요되는 행정비용이 절감되므로
- 전자제출하는 회계법인의 경우도 세무법인과 동일한 수준의 세제혜택 부여 필요
- \* 세무사법에 의한 세무사 :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를 포함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 2. 9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 2. 전자신고세액 제출세액 공제대상 확대(법§104의5)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전자신고 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무대리인이 전자신고하는 경우 세무대리인의 범위</li> <li>- 세무사법에 의한 세무사 및 세무법인</li> <li>* 세무대리인의 경우 개인은 100만원 한도 세무법인은 연 3백만원의 한도로 사원수 1인당 연 100만원씩 공제</li> </ul>	<input type="checkbox"/> 전자신고 세액공제 대상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무대리인의 범위에 공인 회계사법상 회계법인 추가</li> </ul>

### (2) 개정이유

#### 전자신고제도의 조기정착 및 제도활성화 유도

- 전자신고하는 회계법인의 경우도 세무법인과 동일한 수준의 세제혜택 부여 필요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 2. 9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3. 내국인 면세점 면세물품 구입한도등 조정(법§121의13⑤)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면세물품 1회당 구입한도(연간 4회 이내) 및 품목당 판매가격 한도 <input type="checkbox"/> 300달러 상당액 - 35만원 이하 (시행령)	<input type="checkbox"/> 400달러 상당액 - 40만원 이하

#### (2) 개정이유

- 1회당 구매한도 및 품목당 판매가격 한도를 400달러로 조정하여 고객의 구매력을 높이고 제주국제자유도시 선도프로젝트 사업의 재원 마련 지원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영 시행후 최초로 면세물품을 판매하거나 구입하는 분부터 적용

#### 4. 세금우대자료 미제출가산세 보완(법§90의2)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산세 부과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사주조합원 보유 자사주</li> <li>- 장기보유주식</li> <li>- 개인별 저축한도 관리대상인 세금우대저축     &lt;신 설&gt;</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박투자회사 배당소득     비과세자료</li> </ul>

##### (2) 개정이유

- 선박투자회사 배당소득 비과세 및 분리과세명세서를 미제출시  
    가산세 부과대상에 포함
- 비과세 및 분리과세되는 배당소득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명세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 부과 필요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1.1이후 최초로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5. 개인연금저축 등 특별해지신고 기한 신설

(영§80⑤·⑧, §80의2④·⑧, §81②·⑤, §83④·⑩)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저축의 특별해지 사유 - 사망, 해외이주 - 천재·지변, 저축자의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저축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질병의 발생 - 금융기관의 해산·파산 등	○ 개인연금저축 등 세금우대 저축 가입자가 특별해지사유를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사유발생일부터 6월이내에 해지토록 의무 부여  ○ 특별해지사유발생으로 해지신청시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금융기관에 제출

(2) 개정이유

□ 개인연금저축 등의 해지가산세 또는 비과세·감면 추정적용 배제 대상인 특별해지사유 발생시 저축가입자의 해지신고 기한을 신설하여

○ 해지신청일부터 수년전에 발생한 사유(퇴직 등)로 감면 세액 등의 추정없이 해지하는 문제점 보완

※ 현재는 국세청 예규로 해지신청일 현재 특별해지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만 인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2.9이후 특별해지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 6. 세금우대 투자신탁의 합병시 조세특례의 유지

(영§80⑥, §80의2⑦, §81③, §83⑨)

### (1)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투자신탁이 통합되는 경우 ○ 중도해지로 보고 저축기간을 새로 기산	○ 위탁회사와 수탁회사간의 재계약에 불과하므로 저축의 유지로 간주

### (2) 개정이유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신탁의 합병은 위탁회사와 수탁회사간의 재계약에 불과하며
  - 통합된 수익증권 취득은 저축가입자의 중도해지·환매신청에 의한 중도해지라고 볼 수 없으므로
  - 투자신탁의 통합시 저축기간의 재기산은 저축자에게 기간의 불이익을 귀속시키는 결과를 초래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2.9이후 투자신탁이 합병되는 분부터 적용

## 7. 투자회사에 대한 과세제도 보완(조특법 §91의2)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투자회사의 과세대상소득에서 다음 유가증권의 매매·평가 차익을 제외 ○ 국외에서 발행되어 국외 에서 거래되는 유가증권 ○ 상장·협회등록 유가증권 ○ 벤처기업 주식·출자지분	<삭 제>  (현행 유지)  (현행 유지)

### (2) 개정이유

- 개인의 해외직접투자자와 간접투자간 과세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 '04년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투자신탁을 통한 국외에서 발행되어 거래되는 유가증권의 거래 및 평가차익을 과세로 전환함에 따라
  - 투자회사를 통한 국외에서 발행되어 거래되는 유가증권의 거래 및 평가차익도 과세로 전환하여 투자신탁과의 불균형 문제 해소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5. 7. 13 이후 설립되는 투자회사부터 적용.  
 다만, 2005. 7. 13 전 설립된 투자회사의 경우 2005. 7. 13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결산일 후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

## 8. 부동산 중개업소의 수입금액 노출에 따른 세부담 경감(법§122①)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input type="checkbox"/> 실거래가 신고에 따라 부동산 중개업소의 수입금액 증가시 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거래가 신고에 따른 수입금액증가액의 50%에 상당하는 세액</li> <li>○ 실거래가 신고에 따른 수입금액의 5%에 상당하는 세액 중 선택</li> </ul>

### (2) 개정이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의거 '06.1.1부터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해 실거래가 신고의 무화에 따른 세부담 경감

○ 세액공제 수준은 전자상거래 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수준 감안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9. 특정성 있는 관세감면제도에 대한 일몰 신설 (§118①)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input type="checkbox"/> 관세감면 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철도·공공철도, 고속철도 건설용 물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레일유도기 등 288개 품목</li> <li>- 감면액: 69억원('04년)</li> </ul> </li> <li>○ 신·재생에너지 생산용 기자재 및 이용기자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풍력에너지 이용기자재 등 26개 품목</li> <li>- 감면액: 19억원('04년)</li> </ul> </li> </ul> <p><input type="checkbox"/> 적용시한 : 없음</p>	<p><input type="checkbox"/> 일몰 신설 : '07.12.31</p>

(2) 개정이유

- 특정성 있는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은 원칙적으로 폐지
  - 즉각적인 감면폐지가 기업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일몰제('07.12.31)로 운영한 후 단계적 폐지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일몰신설 사항으로 적용시기 해당 없음

10. 국민주택규모 초과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경비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시한 연장 (법 §106①4의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input type="checkbox"/> 일반관리·경비용역에 대하여 '05년말까지 부가가치세 면제  * 전용면적 25.7평	<input type="checkbox"/> 일몰시한 '08년말까지 3년 연장

(2) 개정이유

-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중산층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일몰시한을 2008년말까지 3년 연장하기로 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1.1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11. 고속철도 운영자산 관련 매입세액공제 특례(법 §108의2)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input type="checkbox"/> 철도공사가 승계한 고속철도 운영자산과 관련한 매입세액 환급  <input type="checkbox"/> '06년부터 3년간 고속철도 요금에 대한 부가세 납부세액을 한도로 공제

### (2) 개정이유

- 철도공사의 경영수지개선을 지원하고 고속철도 과세전환에 따른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 '06년부터 고속철도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3년간 공제\*\*하는 방식으로 동 금액을 환급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1.1이후 최초로 신고·납부하는 분부터 적용

12. 정부업무대행단체 삭제 및 주차장운영업·자동차견인업 면세 사업에서 배제(§106)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31개 정부업무대행단체의 일부사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input type="checkbox"/> 다만,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부동산임대업, 골프장·스키장운영업 등은 면세사업 범위에서 제외	<input type="checkbox"/>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조직위원회를 정부업무대행단체에서 삭제  <input type="checkbox"/> 주차장운영업*, 자동차견인업**을 면세사업 범위에서 제외  * 수수료를 받고 자동차를 일정기간 주차시키는 산업활동 (표준산업분류상 63915) ** 일반자동차운송업(60311)

(2) 개정이유

-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종료로 조세지원 목적 소멸
  - 공익성이 낮고 민간부문과 경합성이 있는 주차장운영업과 자동차견인업을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 범위에서 제외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7.1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3. 농협 일부사업 과세전환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정부업무대행  
단체에 추가(§106)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농협중앙회 및 조합이 정부업무대행단체에 포함	<input type="checkbox"/> 조합공동사업법인 추가

(2) 개정이유

- 규모화·경영 효율화를 위해 기존조합의 일정부분(유통 등)을  
분리하여 조합공동사업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 농협과 같이 정부업무대행단체로 지정하여 농산물유통 활성화  
및 농업인 실익 제고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 2. 9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14.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수상오락서비스업 과세전환(\$106)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input type="checkbox"/>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면세 사업</p> <p>○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 기금의 증식을 위한 사업</p> <p>○ 후생복지사업</p> <p>○ 기타 행정자치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p> <p>※ 연금매점사업, 골프장·스키장 운영업 등 제외</p>	<p>○ 수상오락서비스업* 제외</p> <p>* 한국표준산업분류상 8892 88921(해수욕장운영업) 88929(기타수상오락서비스업)</p>

### (2) 개정이유

-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운영하는 해수욕장의 경우 민간부문과 경쟁관계에 있으므로
- 수상오락서비스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전환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 7. 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5. 국민주택 리모델링용역 면세범위 확대(§106⑤)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국민주택 리모델링 용역 부가세 면제  ○ 100분의 120 증축까지 허용	○ 100분의 130 증축 허용

(2) 개정이유

- 주택법 시행령 개정('05.9.16) 내용\*에 맞추어 100분의 130 증축분까지 부가가치세 면제 확대

\* 공동주택의 과도한 증축을 방지하여 구조적 안전을 확보하고 주거환경 개선 지원을 위해 리모델링 증축범위를 주거전용면적의 10분의 3 이내 증축 허용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 2. 9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6. 소비성서비스업 관련 조문정리(법§9①, 영§8①, §130②)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소비성서비스업의 범위 (영§130②)  ○ 호텔업 및 여관업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 숙박업 제외  ○ 주점업 *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 전용유희음식점업 및 관광유 흥음심점 제외  ○ 오락·유희등 재경부령이 정하는 사업(規則§57) * 무도장운영업 * 도박장운영업(단, 허가받은 카지노업은 제외) * 의료행위가 아닌 안마업	<input type="checkbox"/> 범위규정을 이관하여 규정 ⇒ (영§8①)  <종전과 같음>

(2) 개정이유

- 소비성서비스업에 대한 접대비(法§136) 및 광고선전비(法§137)에 대한 규제가 폐지됨에 따라 소비성서비스업의 범위에 대한 위임규정 이관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조문정리

<참고>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비성서비스업에 대해  
조세지원을 배제하고 있는 제도 현황

-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9)
-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10)
-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30의5)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32)
-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63의2)

17. 의료기기 사업용자산 범위 보완(규칙§3)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input type="checkbox"/> 투자세액 공제대상 사업용 자산 범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인세법 별표6의 업종별 자산(차량, 운반구, 선박, 항공기 제외)</li> <li>○ 운수업 : 차량, 운반구 및 선박 포함</li> <li>○ 어업 : 선박</li> <li>○ <u>의료기관 : 렌트겐 또는 전자관을 사용하는 기기, 소독살균용 또는 수술용 기기, 조제기기, 치과진료용 유니트, 광학검사기 등</u></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삭제</li> </ul>

(2) 개정이유

의료기관이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의료기기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6 보건업의 업종별자산으로서

○ 조특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항제4호에서 별도로 규정할 필요 없음

\* 재경부 조세지출예산과-111(2005. 2. 5) 예규 반영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별도 적용례 두지 않음

## 18. '의제제조업' 범위 명확화(규칙§2①)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의제제조업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로서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li> <li>-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을 포함)할 것</li> <li>-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li> <li>- 그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 책임 하에 직접 판매할 것</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조업체에 의뢰하여(사업장이 국내에 소재하는 업체에 한한다)</li> </ul>

\* 의제제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은 아니나 조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조업으로 보아 제조업의 감면제도를 적용하는 업종

### (2) 개정이유

대법원 판례, 국세심판례, 재경부 질의·회신에서

- 제조를 위탁받는 업체는 국내기업에 한하는 것으로 판결·해석하고 있으므로
- 해외기업에게 제조를 위탁하는 경우 제조업으로 보지 않는 것임을 시행규칙에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납세자 혼란 방지

\* 통계법상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도 위탁업체가 국내업체인 경우로 해석하고 있음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별도 적용례 두지 않음

19. 한국농촌공사 일부 면세사업 과세전환(규칙§48)

(1)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안
<p><input type="checkbox"/> 한국토지공사의 면세사업</p> <p>○ 공유수면의 매립용역을 국가 또는 지자체에 공급하는 사업</p> <p style="text-align: center;">&lt;추 가&gt;</p>	<p>○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업무*</p> <p>* 종전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면세사업</p>

(2) 개정이유

- 건교부장관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한국토지공사에 시험업무를 위탁하여 제공하는 용역임
- 종전에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하던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부가가치세 면제)이 한국토지공사로 이관됨에 따른 조문정리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06.4.17 이후 시행하는 분부터 적용

# 양도소득관련

## [양도소득관련]

### 【개정된 주요내용】

#### <소득세법>

#### I. 부동산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제도로 전환

1.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범위 확대
2. 전 소유자의 양도가액을 현 소유자의 취득가액으로 의제
3.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서류 조정

#### II.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강화

1. 1세대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강화
2. 탄력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 가능한 1세대 2주택 이상의 범위 조정
3. 1세대 3주택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조정
4. 주택과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입주권 보유세대에 대한 양도세 강화
5.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보유세대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신설
  - 가.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요건
  - 나. 상속시 양도세 비과세 요건
  - 다. 동거봉양 합가시 양도세 비과세 요건
  - 라. 혼인시 양도세 비과세 요건
  - 마. 지정문화재주택 보유시 양도세 비과세 요건
  - 바. 이농주택 보유시 양도세 비과세 요건
  - 사. 귀농주택 보유시 양도세 비과세 요건
  - 아.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양도세 비과세 요건
6. 1세대 2 「주택+입주권」 과 1세대 3 「주택+입주권」

양도세 중과대상 주택의 범위

가. 보유주택수 계산

나.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

7.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제도 개선

### Ⅲ.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강화

1.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강화

2.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신설

가. 기간기준

나. 대상토지

다. 연간수입금액/토지가액 기준 적용방법

라. 기 타

3. 양도세 중과대상인 부동산법인 주식의 기준 신설

4. 농지대토를 비과세제도에서 감면제도로 전환 및  
감면요건 조정

### Ⅳ. 기타 개정사항

1.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보완

2. 중형 이하 건설임대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3. 국외이주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기준 조정

4. 지방이전공공기관과 기업의 종업원에 대한 지원

5. 1세대 다주택자 실거래가 과세시 주택수 계산 명확화

6. 토지 투기지역 조기지정

7. 공시주택가격이 없는 주택·토지가격 산정 방법

8. 가격공시 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당시 공시가격 산정

9. 코스닥·프리보드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축소

10. 중소기업 최대주주의 보유지분 양도에 대한 부당행위  
계산규정 보완
11. 세대의 개념 보완

#### <법인세법>

1.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과세 강화
2.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신설
  - 가. 기간기준
  - 나. 대상토지
  - 다. 연간수입금액/토지가액 기준 적용방법
  - 라. 기 타
3. 임대주택 법인세 추가과세 제외
4. 주식양도명세서 제출의무 개선
5. 주택 부수토지의 범위 조정
6. 법인세 추가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조정

#### <조세특례제한법>

1. 농지대토 감면제도로 전환 및 감면요건 조정
2. 농어촌주택 취득자 양도세 과세특례 연장
3.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제도 개선
4.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세 이월과세 요건 완화
5. 프리보드에서 거래되는 벤처기업 소액주주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 <농어촌특별세법>

1. 농지대토 양도소득 감면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상속세 및 증여세관련>

1. 창업자금 사전상속제도 신설
  - 가. 증여대상재산 제외 범위
  - 나. 창업으로 보지 않는 범위
  - 다. 창업자금 사용내역서 제출
  - 라. 창업자금 사후관리
  - 마. 기타 절차규정 신설
2. 지방청 단위의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 설치
3. 감정평가수수료 공제 확대
4. 경매·공매시 시가로 인정되는 범위 개선

## [양도소득관련]

### <소득세법>

#### I. 부동산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제도로 전환

##### 1.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범위 확대(법§96, 영§162의2)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토지·건물 양도소득세는 기준시가 과세가 원칙  <input type="checkbox"/> 다음의 경우는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 과세 ○ 6억원이상 고가주택 양도 ○ 취득후 1년이내 부동산, 미등기부동산 양도 ○ 투기지역 안의 부동산 ○ 1세대 3주택자의 주택 등 <추 가>	<input type="checkbox"/> 토지·건물 양도소득세는 실거래가로 과세('07년 시행) ○ '06년까지 기준시가로 과세  <input type="checkbox"/> 실거래가로 과세하는 범위 확대  ○ 1세대 2주택자의 주택 ○ 비사업용 토지* * 부채지주 농지·임야·목장용지 및 비사업용 나대지·잡종지

###### (2) 개정이유

- 양도소득세 과세를 실제소득에 맞게 정상화하여 소득종류간 불형평을 시정하고 응능부담원칙 실현
  - '06년에는 재산증식 목적의 부동산에 대하여 실거래가로 과세하도록 실거래가 과세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실거래가 과세제도 전면 시행 : '07.1.1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실거래가 과세범위 확대 : '06.1.1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 전 소유자의 양도가액을 현 소유자의 취득가액으로 의제  
(법§97⑦)

(1) 개정내용

증 전	개 정
<p><input type="checkbox"/> 현 소유자가 자산 취득당시 전 소유자의 양도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확인한 경우 동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간주</p> <p>○ 고가주택에 한하여 적용</p> <p>* 전 소유자의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시 인감증명서를 제출</p>	<p>○ 적용범위를 모든 부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 확대</p>

(2) 개정이유

- '07년부터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제도가 모든 부동산에 대하여 전면 시행됨에 따라
- 종전에 실거래가로 과세되는 고가주택에 대하여만 적용하는 제도를 모든 부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 확대하여 적용함으로써 부동산 실거래가 과세제도의 조기정착을 유도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1.1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3.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서류 조정(영§169, §173)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부동산 양도소득세 예정·확정 신고시 제출서류 ○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등본 ○ 토지 및 건물등기부등본 ○ 계약서 사본 - 고가주택의 양도에 관한 계약서사본에는 양수자의 인감증명에 사용하는 인장 날인 ○ 고가주택 양도시 양수자의 인감증명서 ○ 자본적지출액·양도비등 명세서 등	- 모든 부동산으로 확대  ○ 모든 부동산으로 확대

#### (2) 개정이유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제도의 조기정착을 유도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6.1.1부터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II.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강화

### 1. 1세대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강화 (법§95②, §104①)

#### (1) 개정내용

증 전	개 정
<p><input type="checkbox"/> 1세대 2주택자의 주택 양도시 일반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년 미만 : 50%</li> <li>○ 1년~2년 미만 : 40%</li> <li>○ 2년 이상 : 9~36%</li> </ul> <p>※ 1세대 3주택 이상자의 주택 양도시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60% 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p>	<p><input type="checkbox"/> 1세대 2주택자의 주택 양도시 50% 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p> <p><input type="checkbox"/> 다음 주택만 보유주택수로 계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도권, 광역시 소재 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도권·광역시 중 군지역 및 도농복합도시 읍·면지역 제외</li> </ul> </li> <li>○ 기타지역: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주택</li> </ul> <p><input type="checkbox"/> 다음의 사유로 2주택이 된 경우는 중과대상에서 제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무상 형편 (1년이상 거주하고, 사유해소일 부터 3년이내)</li> <li>○ 혼인·노부모 봉양 (사유발생일부터 5년이내)</li> <li>○ 소송으로 취득 (판결일부터 3년이내)</li> <li>○ 1세대3주택 중과에서 제외 되는 주택(장기임대주택 등)</li> </ul>

#### (2) 개정이유

- 거주목적의 실수요자가 아니라 주택을 재산증식 수단으로 이용하는 1세대 2주택 보유자에 대하여 양도세를 중과하여
  - 자본이익을 환수하고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여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7.1.1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참고> 1세대 2주택 양도소득세 중과대상 주택의 범위  
(영§167의5 신설)

가. 보유주택수 계산

□ 1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중 다음 주택을 기준으로 2주택 해당 여부를 판정함

\*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 양도세 중과제도와 동일

① 수도권, 광역시 소재 주택. 다만, 다음 지역은 제외

- 수도권·광역시중 군지역 및 도농복합시의 읍·면지역
- 수도권중 주택보급률, 주택가격 및 그 동향을 감안하여 규칙(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 기타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 기타지역 : 광역시 군지역, 경기도 도농복합시의 읍·면지역, 기타 도지역

(예) 인천 강화·옹진군, 부산 기장군, 대구 달성군, 울산 울주군  
경기도 가평·양평·연천군, 경기도 평택시 포승면 등

나. 1세대 2주택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

①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

(ㄱ)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양도세 감면대상 주택

구분	대상주택	감면요건	감면율
장기 임대 주택 (§97)	○ 86.1.1~00.12.31 신축주택 ○ 85.12.31이전 신축주택으로 입주사실 없는 주택 * 국민주택에 한정	○ 5호이상 임대 사업자가 ○ 5년이상 임대후 양도	○ 매입임대 · 5년이상 임대시 양도세 50%감면 · 10년이상 임대시 양도세 100%감면 ○ 건설임대 · 5년이상 임대시 양도세 100%감면
신축 주택 임대 (§97의2)	○ 99.8.20~01.12.31 건설 ○ 99.8.20~01.12.31 분양 * 국민주택에 한정	○ 2호이상 임대 사업자가 ○ 5년이상 임대후 양도	○ 양도세 100% 감면
미분양 주택 (§98)	○ '95.10.31현재 미분양주택 ○ '98.2.28 현재 미분양주택 * 국민주택에 한정	○ 97.12.31 또는 98.12.31이전 분양취득하여 ○ 5년이상 임대후 양도	○ 종소과세와 양도세 20% 과세중 선택적용
신축 주택 취득 (§99)	○ 98.5.22~99.6.30 자기건설 ○ 98.5.22~99.6.30 분양취득 (국민주택은 98.5.22~ '99.12.31 분양취득분) * 고급주택(전용 50평이상, 기준시가 5억원초과)제외	-	○ 취득 후 5년내 양도시 : 양도 소득 전액면제 ○ 취득 후 5년이후 양도시 : 5년간 발생 양도소득 면제
신축 주택 취득 (§99의3)	○ 01.5.23~03.6.30 자기건설 ○ 01.5.23~03.6.30 분양취득 (서울, 과천, 5대신도시는 02.12.31) * 고가주택(6억원초과) 제외	-	(위와 같음)

(ㄴ) 장기임대사업용 주택으로 일정기간이상 임대후 양도하는 주택

구 분	중과 제외요건		
	임대호수	임대기간	규 모
· 건설임대주택	2호이상	5년이상	149㎡(45평)이하로서 기준시가 6억원이하
· 매입임대주택			
신규사업자 (03.10.30이후 임대사업자등록)	5호이상	10년이상	국민주택 규모이하로서 기준시가 3억원이하
기존사업자 (03.10.29이전 임대사업자등록)	2호이상	5년이상	"

(ㄷ) 종업원에게 10년이상 무상으로 제공한 주택(장기 사원용주택)

(ㄹ)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

\* 피상속인의 상속주택이 2개 이상인 경우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이 가장 긴 주택만 해당

(ㄴ)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주택

(ㄷ) 저당권 실행이나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주택으로서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

② 1세대원중 일부가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시·군에 소재한 직장으로 이전하고 그 직장이 소재하는 시·군에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 1년이상 거주하고 당해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내 양도

③ 1세대 1주택자가 혼인하거나 노부모 봉양을 위해 합가하여 2주택이 된 경우로서 혼인일 또는 합가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

- ④ 주택의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중이거나 소송결과에 따라 취득한 주택 : 소유권 확정판결일부터 3년 이내
- ⑤ 세대의 구성원이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인가를 받고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후 5년 이상 가정보육시설로 사용한 주택 : 가정보육시설로 사용하지 아니한 날부터 6월 이내
  - \* 저출산시대에 대비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1세대 3주택 양도세 중과대상에서도 제외
- ⑥ 양도세가 과세되는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당해 주택 양도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
- ⑦ 수도권·광역시 소재 주택으로서 기준시가 1억원 이하주택
  -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소재한 주택(재개발·재건축주택)은 제외
- ⑧ 상기 ①~⑤외에 1주택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1주택

다. 기타사항

(1) 1세대 2주택 해당여부 판정시기(1세대3주택 중과제도와 동일)

주택양도일을 기준으로 하여 당해 양도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 2주택인지 여부를 판정함

□ 동일한 날에 2개이상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납세자에게 유리한 방법, 즉 세금이 적게 나오는 방법에 의함  
(납세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봄)

[예] 1세대 3주택자가 동일한 날에 2개(甲, 乙) 주택을 양도한 경우

- 甲주택 : 양도차익 1억원 → 먼저 양도한 것으로 처리  
(3주택 60%세율 적용)
- 乙주택 : 양도차익 2억원 → 후에 양도한 것으로 처리  
(2주택 50%세율 적용)

(2) 보유주택수 판정기준(1세대3주택 중과제도와 동일)

-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

- 1주택으로 간주

- 단, 공동상속주택(상속인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주택으로 간주

\*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

- ① 당해주택에 거주하는 자 ② 호주승계인 ③ 최연장자

- 다가구주택

-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하나의 주택으로 봄

- 다만,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는 1주택(단독주택)으로 계산

- 부동산매매업자의 재고자산인 주택 : 주택수 계산시 포함

(3) 임대주택사업자와 관련된 기타사항(1세대3주택 중과제도와 동일)

○ 기존사업자의 기준

- '03.10.29 이전에 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시·군·구에 등록을 한 주택임대사업자를 말함
- '03.10.29 이전에 시·군·구에 신고를 한 경우에는 '04.6.30까지 세무서에 신고시 기존사업자로 인정

○ 임대주택수의 계산

- 기존사업자('03.10.29 이전) : 사업자등록시 등록한 임대주택(임대를 개시한 주택)을 기준으로 함
- 신규사업자('03.10.30 이후) : 동일 시(광역시·특별시 포함)·군지역에서의 임대주택을 기준으로 제한
  - \* 등록된 임대주택에 한함

○ 임대기간의 계산

- 주택임대기간의 기산일 :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 \*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계산
- 기준호수 이하 임대한 기간은 임대기간에서 제외
-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을 합산
- 기존 임대주택의 퇴거일부터 다음 임차인의 입주일까지의 기간으로서 3월이내의 기간은 임대기간에 포함
  - ※ 조세특례제한법(§97)의 임대기간 계산을 준용하여 적용

○ 임대주택의 사후관리

- 임대주택의 임대 의무기간 요건(10년 또는 5년이상)충족 이전이라도 살고 있는 주택(⑧)에 해당하는 주택) 양도시
    - 일단, 당해 임대주택을 임대 의무기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1주택 판정
  - 향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과 일반세율 차액을 추정. 다만, 수용(협의매수 포함)되거나 사망으로 상속되는 경우 예외 인정
    - 임대 의무기간 요건 충족 이전에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임대 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아니한 기간이 6월을 경과하게 되는 경우
- ※ 양도세 감면대상 임대주택(ㄱ) 및 장기 사원용주택(ㄷ) 및 가정보육시설(⑧)에 대해서도 사후관리 규정 준용

○ 중과배제 신청방법

- 과세표준 신고시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중과배제 신청
  - 임대사업자 등록증(또는 보육시설인가증),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인 주민등록등본 등

2. 탄력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가능한 1세대 2주택 이상의 범위 조정 (영§168의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 다음의 주택은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1세대 2주택 이상”의 범위에서 제외</p> <p>○ 세대원의 일부가 대학 취학 또는 근무상의 사유로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주택</p> <p>- 취득후 1년이상 거주 및 사유 해소일부터 3년 미경과</p> <p style="text-align: center;">&lt;신 설&gt;</p> <p style="text-align: center;">&lt;신 설&gt;</p> <p style="text-align: center;">&lt;신 설&gt;</p>	<p>○ 대학취학으로 주거를 이전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제외</p> <p>○ 1세대 1주택자가 당해 주택 양도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①)</p> <p>-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p> <p>○ 세대의 구성원이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인가(시장, 군수, 구청장)를 받고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후</p> <p>- 5년 이상 가정보육시설로 사용하고 사용하지 아니한 날부터 6월 이내 양도하는 주택(②)</p> <p>○ ①·②외에 1주택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1주택</p>

(2) 개정이유

-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1세대 2주택이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를 1세대 2주택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와 일치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1.1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3. 1세대3주택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조정(영§167의3)

#### (1) 개정내용

증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다음의 주택은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대상에서 제외 <input type="checkbox"/> 장기 임대사업용 주택 등 <신 설>  <input type="checkbox"/> 저당권 실행이나 채권변제를 받기위해 취득한 주택 -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주택	<input type="checkbox"/> 세대의 구성원이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인가(시장, 군수, 구청장)를 받고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후 - 5년 이상 가정보육시설로 사용하고 사용하지 아니한 날부터 6월 이내 양도하는 주택  <input type="checkbox"/>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주택

#### (2) 개정이유

- 가정보육시설의 양도세 중과배제요건 합리화
- 저당권 실행 등으로 취득한 주택의 세부기준 마련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가정보육시설 : 2006.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저당권설정등 주택 : 2006.2.9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4. 주택과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입주권 보유세대에 대한 양도세 강화  
(법§104①)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재개발·재건축으로 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되는 경우 주택으로 취급되지 않아  ○ 종전 1세대 3주택자는 다른 주택양도시 - 1세대 2주택자로 취급되어 60% 중과대상에서 제외  ○ 종전 1세대 2주택자는 다른 주택 양도시 -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음  ※ 재개발·재건축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과세	<input type="checkbox"/> 재개발·재건축으로 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되는 경우 주택수 계산에 포함  - 1세대 3주택자와 동일하게 양도세 60% 중과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  -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 받지 못하고 1세대 2주택자와 동일하게 양도세 50%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 재개발·재건축 입주권 양도시에는 종전과 동일하게 과세

(2) 개정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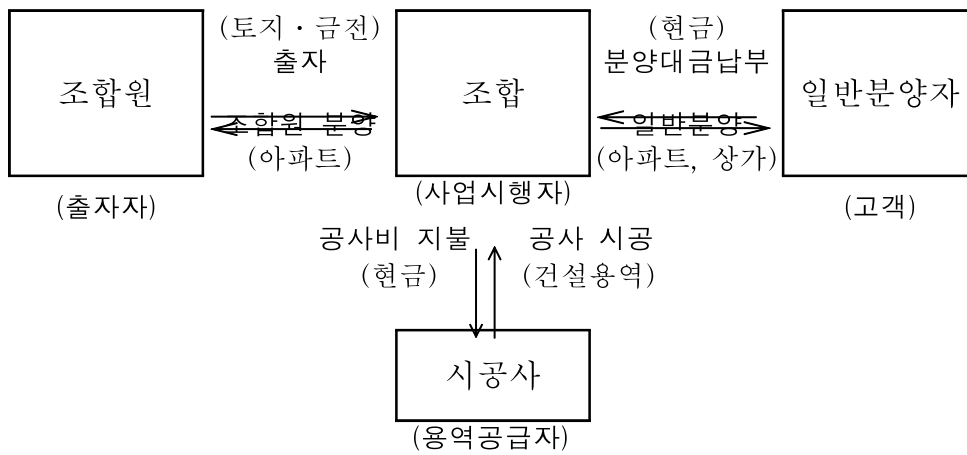
다주택자의 재개발·재건축아파트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여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고 과세형평을 제고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1.1이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입주권부터 적용
- 다만, '05년말 이전에 재개발·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입주권은 06.1.1이후 취득한 분부터 적용

<참고> 주택재건축사업시 입주권의 주택해당 여부

□ 재건축사업 관련 재화·용역 및 자금흐름도



- 조합원 분양에 따른 입주권 : 주택수 계산에 포함
  - 조합원이 기존 주택대신 취득한 입주권
  - 제3자가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입주권
- 일반 분양에 따른 입주권 : 주택수 계산에 포함하지 않음
  - 제3자가 일반분양에 의하여 취득한 입주권

5.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보유세대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신설(영§156의2 신설)

가. 일시적 1세대 2주택(1주택+1입주권)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요건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p>① 1세대 2주택자의 주택중 1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주택 양도시 양도세 비과세 배제</p> <p>② 1세대 1주택자가 입주권을 취득한 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요건 충족시 양도세 비과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주권 취득후 1년 이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그림 중 ㉠의 경우)</li> </ul> <p>※ 현행 이사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p> <p>*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3년 보유(서울, 과천 및 5대 신도시는 3년 보유중 2년 거주)한 주택(양도가액 6억원 이하)을 양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그림 중 ㉡, ㉢의 경우)</li> </ul> <p>㉠ 종전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갖출 것</p> <p>㉡ 재건축주택 완공전에 또는 완공후 1년이내에 종전주택 양도</p> <p>㉢ 재건축주택 완공후 1년이내에 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1년 이상 거주</p> <p>*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요양 등의 경우는 세대원 일부가 이사하지 않더라도 가능</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 style="text-align: center;">입주권 취득 1년경과    주택 완공 1년경과</p> <p style="text-align: center;">-----▶-----    -----◀-----    -----</p> <p style="text-align: center;">                  ㉠비과세            ㉡비과세            ㉢비과세            ㉣과세</p> </div>

	<p>③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주거용으로 취득한 주택 (대체주택) 양도시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양도세 비과세 적용</p> <p>㉠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상 거주</p> <p>㉡ 재건축주택 완공전에 또는 완공후 1년 이내에 대체 주택 양도</p> <p>㉢ 재건축주택 완공후 1년 이내에 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1년이상 거주</p> <p>*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요양 등의 경우는 세대원 일부가 이사하지 않더라도 가능</p>
<p>&lt;신 설&gt;</p>	<p>□ 대체주택 양도 또는 입주권 취득후 기존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은 경우 사후 관리</p> <p>○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사유 발생시</p> <p>* 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p> <p>- 당해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신고시 양도세* 납부</p> <p>* 양도당시 비과세를 받지 않았을 경우 납부할 양도소득세액</p>
<p>&lt;신 설&gt;</p>	<p>□ 세대원 일부가 재건축주택으로 이사하지 않더라도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요양 등의 부득이한 사유</p> <p>○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p> <p>- 고등학교, 대학교 등의 취학</p> <p>-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p> <p>- 1년이상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p>

(2) 개정이유

- 1세대가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입주권」 또는 2주택을 소유 하더라도 실수요 목적으로 주택 또는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 주택 양도시 양도세 비과세를 허용하여 1세대 1주택자의 주거 생활안정을 지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1.1이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입주권부터 적용
  - 다만, 2005년말 이전에 재개발·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입주권은 2006.1.1이후 취득한 분부터 적용

나. 상속시 양도세 비과세요건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input type="checkbox"/>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채씩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p> <p>○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p> <p>* 상속주택 양도시 과세</p> <p style="text-align: center;">&lt;신 설&gt;</p> <p style="text-align: center;">&lt;신 설&gt;</p>	<p><input type="checkbox"/>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재개발·재건축입주권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만 적용</p> <p><input type="checkbox"/> 1세대 1주택자가 재개발·재건축입주권을 상속받은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p> <p>○ 입주권은 없이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p> <p><input type="checkbox"/> 상속주택(상속입주권 포함)과 일반주택 각각 1개와 재건축·재개발입주권을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p> <p>○ 일반주택과 재건축·재개발입주권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결정</p>

(2) 개정이유

- 1세대 1주택자가 입주권을 상속받는 경우 및 주택과 입주권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입주권 포함)을 상속받는 경우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하는 기준을 마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1.1이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분부터 적용
  - 다만, 2005년말 이전에 재개발·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입주권은 2006.1.1이후 취득한 분부터 적용

※ 특례가 적용되는 상속주택과 상속받은 재개발·재건축입주권

① 상속주택(§155②)와 동일)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결정
  - ㉠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주택
  - ㉡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주택
  -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거주한 주택
  - ㉣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
  - ㉤ 상속인이 선택하는 주택

② 상속받은 재개발·재건축입주권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조합원입주권에 대해 특례를 적용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이상의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결정
  - ㉠ 피상속인이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조합원입주권
  - ㉡ 피상속인이 주택에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조합원입주권
  - ㉢ 상속인이 선택하는 조합원입주권

다. 동거봉양 합가시 양도세 비과세 요건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 1세대 1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한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이 된 경우</p> <p>○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p> <p>* 직계존속 :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男 60세 · 女 55세 이상)</p> <p>&lt;신 설&gt;</p> <p>&lt;신 설&gt;</p>	<p>□ 1세대 1주택자와 직계존속이 재개발·재건축입주권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에만 적용</p> <p>□ 1주택 또는 1입주권을 소유한 1세대가 각각 1입주권 또는 1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합가한 경우</p> <p>○ 합가일부부터 2년내 주택 양도시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p> <p>□ 1세대 1주택자 또는 1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이 입주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동거봉양 합가시</p> <p>○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준을 3가지 경우로 구분하여 판단</p> <p>※ [별표] 참조</p>

(2) 개정이유

□ 1세대 1주택자 또는 1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이 입주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 합가하는 경우의 양도세 비과세기준을 마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1.1이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분부터 적용

○ 다만, 2005년말 이전에 재개발·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입주권은 2006.1.1이후 취득한 분부터 적용

※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세대구성원	직계존속	합가	비고
1입주권	1입주권	2입주권	-
1입주권	1주택	1주택 1입주권	개정내용 내
1입주권	1주택 1입주권	1주택 2입주권	별표 ②
1주택	1입주권	1주택 1입주권	개정내용 내
1주택	1주택	2주택	영 §155
1주택	1주택 1입주권	2주택 1입주권	별표 ②
1주택 1입주권	1입주권	1주택 2입주권	별표 ①
1주택 1입주권	1주택	2주택 1입주권	별표 ①
1주택 1입주권	1주택 1입주권	2주택 2입주권	별표 ③

[별표]

① 1주택과 재건축·재개발 입주권 1개를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입주권 없음) 또는 1입주권을 보유한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

- ㉠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이 보유하던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여부 결정
- ㉡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1세대가 보유하던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다음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여부 결정
  - 1세대가 보유한 주택이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거주를 위해 취득한 대체주택으로서 1년이상 거주할 것 또는
  - 1세대가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입주권을 취득할 것

② 1주택(입주권 없음) 또는 1입주권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과 입주권을 보유한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

- ㉠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1세대가 보유하던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여부 결정
- ㉡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이 보유하던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다음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여부 결정

- 직계존속이 보유하던 주택이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거주를 위해 취득한 대체주택으로서 1년이상 거주할 것 또는
- 직계존속이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입주권을 취득할 것

③ 1주택과 재건축·재개발 입주권 1개를 보유한 1세대가 1주택과 재건축·재개발 입주권 1개를 보유한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

-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 다음의 요건을 갖추고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여부 결정
  - 세대를 합치기 전에 1세대 또는 직계존속이 보유하던 주택이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거주를 위해 취득한 대체주택으로서 1년이상 거주할 것 또는
  - 세대를 합치기 전에 1세대 또는 직계존속이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입주권을 취득할 것

라. 혼인시 양도세 비과세 요건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input type="checkbox"/> 1주택자가 다른 1주택자와 혼인하여 2주택이 된 경우</p> <p>○ 혼인일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p> <p style="text-align: center;">&lt;신 설&gt;</p> <p style="text-align: center;">&lt;신 설&gt;</p>	<p><input type="checkbox"/> 혼인한 1주택자들이 재개발·재건축입주권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에 만 적용</p> <p><input type="checkbox"/> 1주택자가 입주권을 소유한 자와 혼인하여 「1주택 + 1입주권」 이 된 경우</p> <p>○ 혼인일부터 2년 이내에 주택 양도시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p> <p><input type="checkbox"/> 1주택과 입주권을 소유한 자가 혼인하는 경우</p> <p>○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준을 2가지 경우로 구분하여 판단</p> <p>※ [별표] 참조</p>

(2) 개정이유

- 1주택과 입주권을 소유한 자가 혼인하는 경우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마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1.1이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분부터 적용

- 다만, 2005년말 이전에 재개발·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입주권은 2006.1.1이후 취득한 분부터 적용

[별표]

① 1주택과 1입주권을 보유한 자(甲)가 1주택(입주권 없음) 또는 1입주권을 보유한 자(乙)와 혼인하여 2주택이 된 경우

㉠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乙이 보유하던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甲이 보유하던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 甲이 보유하던 주택이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거주를 위해 취득한 대체주택으로서 1년이상 거주할 것 또는

- 甲이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입주권을 취득할 것

② 1주택과 재건축·재개발 입주권 1개를 보유한 자가 1주택과 재건축·재개발 입주권 1개를 보유한 다른 자와 혼인하여 2주택이 된 경우

○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 다음의 요건을 갖추고 혼인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 혼인하기 전 보유하던 주택이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거주를 위해 취득한 대체주택으로서 1년이상 거주할 것 또는

- 혼인하기 전에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입주권을 취득할 것

마. 지정문화재주택 보유시 양도세 비과세요건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input type="checkbox"/> 문화재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p> <p>○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p> <p>* 지정문화재 주택 양도시는 과세  <span style="padding-left: 40px;">&lt;신 설&gt;</span></p>	<p><input type="checkbox"/> 문화재주택과 일반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재개발·재건축 입주권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만 적용</p> <p><input type="checkbox"/> 문화재주택과 일반주택 각각 1개와 재건축·재개발입주권을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p> <p>○ 일반주택과 재건축·재개발 입주권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결정</p>

(2) 개정이유

- 문화재주택, 일반주택과 입주권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마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1.1이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분부터 적용
- 다만, 2005년말 이전에 재개발·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입주권은 2006.1.1이후 취득한 분부터 적용

바. 이농주택 보유시 양도세 비과세요건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input type="checkbox"/> 이농인이 5년 이상 거주하던 주택(이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p> <p>○ 1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p> <p>※ 이농주택 양도시는 과세</p> <p style="text-align: center;">&lt;신 설&gt;</p>	<p><input type="checkbox"/> 이농주택과 일반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재개발·재건축 입주권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만 적용</p> <p><input type="checkbox"/> 이농주택, 일반주택과 입주권을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p> <p>○ 일반주택과 입주권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여부 결정</p>

(2) 개정이유

- 이농주택, 일반주택과 입주권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마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1.1이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분부터 적용
- 다만, 2005년말 이전에 재개발·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입주권은 2006.1.1이후 취득한 분부터 적용

사. 귀농주택 보유시 양도세 비과세요건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1세대 1주택자가 영농·영어 종사목적으로 귀농주택(수도권 외의 읍·면지역)을 취득한 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 과세 적용 ※ 귀농주택 양도시는 과세	<input type="checkbox"/> 귀농주택과 일반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재개발·재건축입주권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만 적용

(2) 개정이유

- 귀농주택, 일반주택과 입주권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  
 는 경우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마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1.1이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분  
 부터 적용
- 다만, 2005년말 이전에 재개발·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  
 가된 입주권은 2006.1.1이후 취득한 분부터 적용

아.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양도세 비과세 요건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input type="checkbox"/> 주택 재건축·재개발사업의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p> <p>○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세 비과세 여부를 판정</p> <p style="text-align: center;">&lt;신 설&gt;</p>	<p><input type="checkbox"/>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내에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p> <p>○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세 비과세 여부를 판정</p>

(2) 개정이유

- 대법원 판례\*를 반영하여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보완

\* 대법원 2004두9456(2005.3.11)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1.1이후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6. 1세대 2 「주택+입주권」 과 1세대 3 「주택+입주권」 양도세  
 중과대상 주택의 범위(영§167의4 신설)

가. 보유주택수 계산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1세대 3주택 중과세 판정시 다음의 주택은 보유주택수 계산 에서 제외  ○ 다음지역에 소재하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  <지역> · 수도권·광역시 이외의 지역 · 수도권·광역시중 군지역과 도농복합시의 읍·면지역	<input type="checkbox"/> 1세대 2 「주택+입주권」 및 1세대 3 「주택+입주권」 중과세 판정시 다음의 주택과 입주권은 보유주택수 계산에서 제외  ① 다음지역에 소재하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  ② 다음지역에 소재하는 입주권 으로서 관리처분계획상의 종전 주택의 가격(사업시행 인가 고시일 기준)이 3억원 이하인 것  <지역> · 수도권·광역시 이외의 지역 · 수도권·광역시중 군지역과 도농복합시의 읍·면지역

(2) 개정이유

- 주택과 입주권을 합쳐 2개 이상 보유한 자의 주택 양도시 양도세  
 중과를 적용함에 있어
- 보유주택수 계산에서 제외되는 주택과 입주권의 기준 마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1세대 3 「주택+입주권」 : 2006.1.1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1세대 2 「주택+입주권」 : 2007.1.1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나.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input type="checkbox"/> 1세대 3 「주택+입주권」 이상 소유자 양도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input type="checkbox"/> 1세대 3주택 이상 소유자 양도세 중과대상에서 제외 되는 주택의 범위와 동일
<신 설>	<input type="checkbox"/> 1세대 2 「주택+입주권」 소유자 양도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input type="checkbox"/> 1세대 2주택 소유자 양도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와 동일

(2) 개정이유

- 주택과 입주권을 2개 이상 보유한 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를 규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1세대 3 「주택+입주권」 : 2006.1.1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1세대 2 「주택+입주권」 : 2007.1.1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7. 1세대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제도 개선  
(법§95②, 영 §159의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input type="checkbox"/> 장기보유특별공제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년~5년 : 양도차익 10%</li> <li>○ 5년~10년 : 양도차익 15% (기준면적 미만 고가주택 : 25%)</li> <li>○ 10년이상 : 양도차익 30% (기준면적 미만 고가주택 : 50%)</li> </ul> <p>* 기준면적 미만 고가주택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과 ②를 충족하는 주택</li> <li>① (가액기준) 6억원 초과 주택</li> <li>② (면적기준) 전용면적 45평미만 공동주택 또는 80평미만 단독주택</li> </ul> <p style="text-align: center;">&lt;신 설&gt; &lt;신 설&gt;</p> <p>※ 세대와 가족의 개념</p> <p>①세대 : 거주자와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구성 다음의 경우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간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0세 이상 또는 소득이 있는 경우</li> <li>- 배우자가 사망·이혼한 경우</li> <li>- 당해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li> </ul> <p>②가족 : 거주자와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배우자 포함)과 형제자매, 취학, 질병요양, 근무·사업상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거소에서 일시퇴거한 자 포함</p>	<p><input type="checkbox"/>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조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년~5년 : 양도차익 10%</li> <li>○ 5년~10년 : 양도차익 15% &lt;고가주택 우대규정 삭제&gt;</li> <li>○ 10년 이상 : 양도차익 30% &lt;고가주택 우대규정 삭제&gt;</li> </ul> <p style="text-align: center;">○15년 이상인 1세대 1주택 : 45%</p> <p><input type="checkbox"/> 15년 이상 보유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경우</li> <li>○ 일시적 1주택과 1입주권인 경우</li> </ul> <p>* 고가주택 또는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p>

(2) 개정이유

- 과세형평을 감안하여 1세대1주택인 기준면적 미만의 고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일반주택과 동일하게 조정하면서
- 장기간 보유한 자산의 세부담을 완화하는 동제도의 취지에 맞게 15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상향조정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1.1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Ⅲ.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강화

#### 1.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강화(법§104①)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 1년미만 보유 : 50% ○ 1년~2년미만 보유 : 40% ○ 2년이상 보유 : 9~36% ○ 미등기 양도자산 : 70% <추 가>	○ 비사업용 토지 : 60% * 부재지주 농지·임야·목장용지 및 비사업용 나대지·잡종지 ○ 비사업용 토지를 과다보유한 법인의 주식 : 60%
<input type="checkbox"/> 토지중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 미등기 양도자산 <추 가>	○ 비사업용 토지

##### (2) 개정이유

- 토지를 실수요에 따라 생산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재산증식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양도세를 중과함으로써
-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여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하고 투기 이익을 철저히 환수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7.1.1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2.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신설(영§168의6 내지 §168의14)

◇ 비사업용 토지 : 기간기준(가)과 대상토지기준(나)을 충족하는 토지

### 가. 기간기준

□ (원칙) 양도세는 장기보유기간중 발생한 양도차익에 과세하므로 사업용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 양도시점뿐만 아니라 보유기간중 사업용으로 사용된 기간을 고려

○ 다음 요건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사업용 토지임

- ① 양도일 직전 3년중 2년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
- ② 양도일 직전 5년중 3년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
- ③ 보유기간중 80/100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

⇒ 사업용토지의 기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 (예외) 부득이하게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예외 적용

(1유형)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당해 기간을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간주

□ 토지 취득후 다음 사유가 발생한 부동산

-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안의 토지 : 지정된 기간

-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면허 등을 신청하였으나 건축법과 행정지도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 :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
  - ※ 부동산매매업(건물건설업과 부동산공급업) 자의 매매용부동산 제외
-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면허를 받았으나 건축자재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로 착공이 제한된 토지 : 착공이 제한된 기간
  - ※ 부동산매매업(건물건설업과 부동산공급업) 자의 매매용부동산 제외
- 사업장(임시작업장 제외)의 진입도로로서 私道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 : 사도 또는 도로로 이용되는 기간
- 「건축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에 公共空地로 제공한 토지 : 당해 건축물의 착공일부터 공공공지로의 제공이 끝나는 날까지의 기간
-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않은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 :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중인 기간
- 저당권 실행등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및 청산 절차에 따라 잔여재산의 분배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 : 취득일 부터 2년
- 취득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중인 토지 : 소송이 계속중인 기간(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기간을 포함)

-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의하여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 :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
-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 :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
- 2년 이상 사업에 사용한 토지로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폐업 또는 이전함에 따라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토지 : 휴업·폐업 또는 이전일부터 2년
-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의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 재촌·자경한 자가 소유한 농지로서
  - 농지의 형질이 변경되어 황지가 됨으로써 자경하지 못하는 경우 : 사유발생일부터 2년
- 토지 취득후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 정당한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

(2유형)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의 기간을 기준으로 사업용 여부를 판정

- 「민사소송법」에 의하여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를 통하여 양도된 토지
  - 최초의 경매기일 또는 공매일을 양도일로 보아 사업용 여부를 판정
-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위임하여 양도된 토지
  - 매각을 위임한 날을 양도일로 보아 사업용 여부를 판정

□ 일간신문\*에 일정 조건\*\*으로 매각을 3일 이상 공고하고, 공고일(최초의 공고일)부터 1년 이내에 매각계약을 체결하여 양도된 토지

→ 매각 공고일을 양도일로 보아 사업용 여부를 판정 가능

\*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을 포함한 3개 이상의 일간신문

\*\* 매각조건 : 매각예정가격이 시가 이하이고 매각대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매각계약 체결일부터 6월 이후에 결제할 것

□ 상기 요건을 갖춘 토지로서 상기 매각조건을 갖추어 매년 매각을 재공고\*하고, 재공고일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거나 1년 이내에 매각계약을 체결하여 양도된 토지

→ 최초 매각공고일을 양도일로 보아 사업용 여부를 판정 가능

\* 직전 매각공고시의 매각예정가격에서 동금액의 100분의 10을 차감한 금액 이하로 매각을 재공고한 경우에 한함

(3유형)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당해 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구분

□ 공장의 가동에 따른 소음·분진·악취 등에 의하여 생활환경의 오염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안의 토지로서 당해 토지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취득한 공장용 부속토지의 인접토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토지로서

○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제도의 유예기간인 '06년까지 사업인정 고시된 지역의 토지는 중과대상에서 제외

## 나. 대상토지

### (1) 농지(전·답·과수원)\*

\*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

□ (원칙) 개인이 재촌·자경하는 농지는 종과대상에서 제외

\* 재촌 : 농지소재지 시·군·구와 연접 시·군·구에 거주

\*\* 자경 : 농작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 특별시, 광역시(군지역 제외), 시지역(읍·면지역 제외)의 도시지역 안의 농지(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제외)는 종과대상

- 다만, 재촌·자경하던 농지를 도시지역(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제외) 편입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 (예외) 농지법에서 소유가 인정되는 일정한 경우에는 재촌·자경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제외

○ 주말·체험영농 소유 농지(세대당 300평)

○ 종자생산자, 농업기자재 생산자 소유농지

○ 상속농지(상속일부터 5년내 양도시)

\* '06.12.31이전 상속받은 농지는 상속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더라도 '09.12.31까지 양도시 종과대상에서 제외

\* 지역제한 없음

○ 이농농지(이농일부터 5년내 양도시)

\* '06.12.31이전 이농농지는 이농일부터 5년이 경과하였더라도 '09.12.31까지 양도시 종과대상에서 제외

○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해 취득한 매립농지

○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거나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로서 전용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토지수용, 공익사업,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 종중소유농지(2005.12.31이전 취득분에 한함)
  - \* 지역제한 없음
- 농지의 개발사업지구 안에 소재하는 농지(1,500제곱미터 미만) 또는 한계농지의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농지(1,500제곱미터 미만)
- 5년 이상 계속 재촌·자경한 농지를 소유자\*가 질병(1년이상), 고령(65세이상), 징집, 취학, 선거에 의한 공직취임 등의 사유로 재촌·자경할 수 없어 임대 또는 사용대하는 경우\*\*
  - \* 질병 또는 고령의 사유는 재촌요건은 충족해야 함
  - \*\* 가족중 소유자와 동거하면서 영농에 종사한 자를 포함
- '06.12.31까지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09.12.31까지 양도시)
  - \* 지역제한 없음

## (2) 임야

□ (원칙) 다음의 임야를 제외

- 도시지역 밖 또는 도시지역의 보전녹지지역\* 안의 임야중 개인이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 또는 특수개발지역\*\*으로 지정된 임야
  - \* 도시의 자연환경·경관·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 \*\* 장기간 대단지로 개발할 필요가 있는 산림지역으로 산림청장이 지정
- 도시지역(보전녹지지역 제외)으로 편입된 경우 편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중과대상에서 제외
- 재촌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

\* 재촌 : 임야소재지 시·군·구와 연결 시·군·구에 거주

□ (예외) ① 실제 사업에 사용되는 임야로서 중과가 불합리한 토지는 제외

- 산림계가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임야
- 임업후계자가 산림용종자, 산림용묘목, 버섯, 분재, 야생화, 산채 기타 임산물을 생산하는 토지
- 자연휴양림의 조성 또는 관리·운영업에 사용하는 임야
- 수목원의 조성 또는 관리·운영업에 사용하는 임야
- 종·묘 생산업자가 산림용종자 및 산림용묘목을 생산하는 임야
- 제사, 종교, 자선, 학술, 기예 등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 '06.12.31.까지 20년 이상 소유한 임야('09.12.31까지 양도시)
- 종중소유 임야(2005.12.31. 이전 취득분에 한함)
- 상속받은 임야(상속일부터 5년내 양도시)
  - \* '06.12.31이전 상속받은 임야는 상속일부터 5년내에 경과하였더라도 '09.12.31까지 양도시 중과대상에서 제외
- ② 공익상 필요, 산림보호육성을 위해 필요한 다음의 임야는 중과대상에서 제외
  - 사찰림, 동유림, 보안림, 산림유전자원보호림, 채종림, 시험림
  - 자연보존지구 및 자연환경지구(자연공원법)안 임야
  - 문화재보호구역(문화재보호법)안 임야
  - 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안의 임야

- 전통사찰이 소유하고 있는 경내지(전통사찰보존법)
- 군사시설보호구역(군사시설보호법), 해군기지구역(해군기지법), 특별보호구역(군용전기통신법)
- 접도구역(도로법), 철도노선인접지역(철도법), 도시공원(도시공원법), 연안구역으로 고시된 지역(하천법) 안의 임야
- 상수원 보호구역(수도법) 안의 임야

### (3) 목장용지

#### □ 다음의 목장용지를 제외

- 축산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소유한 도시지역 밖의 목장용지(도시지역으로 편입된 경우 편입일부터 3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포함)로서 기준면적\* 범위 내의 토지
    - 양도일 전 축산업을 영위한 일정기간\*의 최고사육두수를 평균한 두수에 축산용 토지기준을 적용하여 기준면적 산정
      - 최근 6과세기간\*중 납세자가 선택한 사업영위 3과세기간
      - 최근 4과세기간중 납세자가 선택한 사업영위 2과세기간
      - 사업영위기간이 2년 이하인 경우 축산업 영위한 과세기간
- \*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포함

※ 목장용지의 기준면적

구분	사업	가축두수	축사및부대시설(m <sup>2</sup> )		초지또는사료포(ha)		비고
			축사	부대시설	초지	사료포	
한우(육우)	사육	1두당	7.5	5	0.5	0.25	말·노새·당나귀 사육 포함
한우(육우)	비육	1두당	7.5	5	0.2	0.1	
유우	목장	1두당	11	7	0.5	0.25	
양	목장	10두당	8	3	0.5	0.25	
사슴	목장	10두당	66	16	0.5	0.25	
토끼	사육	100두당	33	7	0.2	0.1	친칠라 사육 포함
돼지	양돈	5두당	50	13	-	-	개 사육 포함
가금	양계	100두당	33	16	-	-	
밍크	사육	5수당	7	7	-	-	여우 사육 포함

- 종중소유 목장용지(2005.12.31 이전 취득분에 한함)
- 상속받은 목장용지(상속일부터 5년내 양도시)
  - '06.12.31이전 상속받은 목장용지는 '09.12.31까지 양도시 중과 대상에서 제외
- '06.12.31까지 20년 이상 소유한 목장용지('09.12.31까지 양도시)

(4) 비사업용 나대지

(4)-1 지방세법상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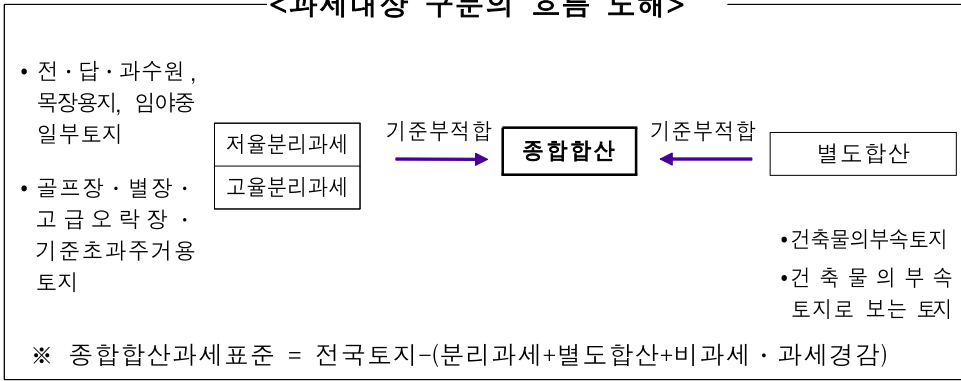
□ (원칙) 지방세법상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

\* (예) 건축물이 없는 일반적 의미의 나대지, 공장건축물 부속토지 기준면적 초과분, 일반건축물 부속토지 기준면적 초과분 등

○ (예외)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중 사업·거주에 필수적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참고> 재산세 종합합산과세 대상

<과세대상 구분의 흐름 도해>



<과세대상 구분요약>

분리과세 (0.07%, 0.2%, 4%) <법 182①3 영 132①~⑥>	①저울분리과세 : (0.07%)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중 일부토지 (0.2%) 공장·기타 분리과세대상 모든 토지 ②고울분리과세(4%) : 골프장·별장·고급오락장용 토지(※별장)
별도합산 (0.2~0.4%) <법 182①2, 영 131-2①~③>	① 「공장용건축물」의 기준면적이내 부속토지 • 공장용건축물<영 131-2①1> : 특별·광역시지역 및 시지역(읍·면 지역, 산업단지 공업지역 제외)안의 공장용 건축물 • 기준면적=바닥면적×용도지역배율<영 131-2②> ② 「영업용건축물」의 기준면적이내 부속토지 • 영업용건축물<영 131-2①2> : 모든 건축물 중 공장용건축물·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토지·무허가건축물·시가표준액 100분의3 미달 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 • 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보는 토지<영131①> : 건축중인 경우와 건물멸실등기일이 6월이상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보나, 건축기간이 경과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건축물이 있는 토지로 보지 않음 ③ 별도합산할 이유가 있는 토지(영131-2③) : 여객자동차터미널등(12종)
종합합산 (0.2%~0.5%) <법 182①1>	①나대지 ② 분리과세대상토지중 기준초과 토지 ③ 별도합산대상토지중 기준초과 토지 ④ 분리과세·별도합산대상에서 제외된 모든 토지

(4)-2.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이나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

## 지

### ① 운동장·경기장 등 체육시설용 토지

#### 선수전용 체육시설용 토지

- 직장운동경기부 설치단체\*가 선수전용으로 계속하여 제공하는 체육시설용 토지중

- 선수전용체육시설 종목별 기준면적 이내 토지

- \* 정부투자기관 및 상시 근무하는 직장인이 1,000명 이상인 공공단체 (국민체육진흥법)

#### 종업원용 체육시설용 토지

- 사업장에 근무하는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설치한 체육 시설용 토지로서 종업원용체육시설 기준면적 이내 토지

#### 체육시설용 토지

- 체육시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단위당 시설·설비기준을 충족하는 체육시설업용 토지(골프장업, 스키장업 포함)

#### 경기장운영업용 토지

- 경마장, 육상경기장, 야구장, 축구장 등 경기장운영업용 토지

### ② 휴양시설업용 토지

- \* 관광진흥법에 의한 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 등에 사용되는 토지 (휴양시설업의 일부로 운영되는 스키장업 또는 수영장업용 토지 포함)

#### 옥외동물방목장과 옥외식물원으로 이용되는 토지

#### 건축물부속토지의 경우 일반 건축물부속토지의 2배

부설주차장용 토지의 경우 일반건축물 부설주차장의 2배

- 다만, 교통영향평가 협의결과(건교부 또는 지자체)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용 토지는 모두 인정

③ 주차장용 토지

건축물 부설주차장용 토지

- 주차장법에 의한 기준면적 이내 토지(주택 제외)

自家의 주차장용 토지

- 상품 수송 등 업무용 자동차를 필수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 여객·화물자동차에 허용하는 수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최저차고기준면적의 1.5배)의 토지

주차장업용 토지

- 주차장운영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소유한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으로서
  - 연간수입금액/토지가액 비율이 3% 이상인 토지

④ 개발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

법령에 의해 개발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토지의 조성후 2년이 경과한 토지는 제외\*)

- \* 토지의 조성후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사업용 토지에 해당

※ 산업단지 조성용 토지는 지방세법상 별도합산과세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하여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
- 「관광진흥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 안에서 조성한 토지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촉진지구 안의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
-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단지 조성사업의 실시계획이 승인된 지역의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
-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유통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유통단지 안에서 조성한 토지
- 「기업도시특별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구역 내에서 조성한 토지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개발사업시행자가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조성한 토지
-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 조성한 토지

⑤ 청소년 수련시설용 토지

- 청소년의 심신수련에 사용되는 청소년 수련시설용 토지\*로서 기준면적(1인당 200㎡) 범위 내의 토지

\*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등

⑥ 예비군훈련장용 토지

- 종업원의 예비군훈련을 위한 토지로서 다음요건을 갖춘 것
  - 지목이 대지 또는 공장용지가 아닐 것
  - 주거·상업·공업지역 밖의 토지
  - 수임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예비군훈련의 실시를 위임받은 자가 소유하고 설비·시설기준을 갖춘 기준면적 이내 토지

⑦ 기타 토지

- 무주택 1세대가 소유하는 660㎡(200평) 이내 나지
- 하치장용 토지
  - 상품의 보관·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사용되는 하치장·야적장·적치장 등 하치장용 토지는
    - 매년 상품의 보관·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 평균의 1.2배
- 골재채취장용 토지
  - 골재채취법에 의하여 골재채취의 허가(시장·군수·구청장)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바에 따라 골재채취에 사용하는 토지
- 폐기물수집 및 처리업용 토지
  - 폐기물관리법상 허가를 받은 폐기물처리업자가 동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
- 광천지
  - 연간수입금액/토지가액 비율이 4% 이상
    - \* 광천지 : 온수·약수·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와 그 유지(維持)에 사용 되는 부지.
- 양어장, 지소용 토지
  - \* 양어장 : 육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또는 양식을 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지적법)

지소용 토지 : 내수면양식업·뉴시터운영업 등에 사용되는 댐·저수지·소유지 및 자연적으로 형성된 湖沼와 그 유지를 위한 부지

○ 수산업법에 의하여 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종묘생산어업\*\*의 허가를 받아 당해 사업을 영위하는 토지

\* 인공적으로 조성한 육상의 해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어업

\*\* 일정하게 구획된 바다·바닷가 또는 인공적으로 조성한 육상의 해수면에 시설물을 설치하여 수산종묘를 생산하는 어업

○ 내수면어업법에 의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면허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 영위하는 면허어업, 허가어업, 신고어업에 사용되는 토지

\* 내수면 : 하천·댐·호소·저수지 기타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의 수류 또는 수면

○ 그 외의 양어장, 지소용 토지 : 연간수입금액/토지가액 비율이 4% 이상

#### ⑧ 기타 수입금액기준 적용 토지

□ 블록·석물 및 토관제조용 토지

○ 연간수입금액/토지가액 비율이 20% 이상

□ 조경작물식재업용 토지·화훼판매시설업용 토지

○ 연간수입금액/토지가액 비율이 7% 이상

□ 학원용 토지

○ 자동차정비·중장비운전·중장비정비 학원용 토지 :  
연간수입금액/토지가액 비율이 10% 이상

\* 자동차운전학원은 지방세법상 재산세 분리과세

○ 농업교습학원용 토지 : 연간수입금액/토지가액 비율이 7% 이상

- 블록·석물·토관·벽돌·콘크리트제품·옹기·철근·비철금속·플라스틱파이프·골재·조경작물·화훼·분재·농산물·수산물·축산물의 도매업 및 소매업용 토지
- 연간수입금액/토지가액 비율이 10% 이상

(4)-3. 주택과 별장

□ 주택부수토지 초과분

- 주택면적의 5배(도시지역 안) 또는 10배(도시지역 밖)를 초과하는 토지
- ※ 지방세법의 주택부속토지 기준
  - 경계가 확정된 경우는 경계안, 경계불명확한 경우는 바닥면적의 10배 이내

□ 상시주거용이 아닌 별장과 별장부속토지

\* 별장 : 주거용건축물로서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 다만,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별장과 별장부속토지는 제외(농어촌주택 요건과 유사)

① 다음 지역을 제외한 읍·면 지역에 소재

- 수도권과 광역시 소재 군 지역. 다만, 접경지역(연천군, 인천 옹진군 등)은 포함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도시지역과 허가구역
- 소득세법에 의한 투기지역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

② 대지면적이 660㎡ 이내이고 주택의 연면적이 150㎡ 이하

③ 별장과 부속토지의 가액이 1억원을 초과하지 않을 것

## <참고1> 지방세법상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

### ① 「공장용건축물」의 기준면적이내 부속토지

- 공장용건축물(지방세영 §131-2①1) : 특별·광역시지역 및 시지역 (읍·면지역, 산업단지 공업지역 제외) 안의 공장용 건축물
- 기준면적 = 바닥면적 × 용도지역배율
- 용도지역배율(지방세영 §131-2②)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도 시 지 역	1. 전용주거지역	5배
	2. 준주거지역·상업지역	3배
	3. 일반주거지역·공업지역	4배
	4. 녹지지역	7배
	5. 미계획지역	4배
도시지역외의 용도지역		7배

### ② 「영업용건축물」의 기준면적이내 부속토지

- 영업용건축물(지방세영 §131-2①2) : 모든 건축물 중 공장용건축물·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토지·무허가건축물·시가표준액 100분의3 미달 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
- 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보는 토지(지방세영 §131①) : 건축중인 경우와 건물멸실등기일이 6월이상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보나, 건축기간이 경과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건축물이 있는 토지로 보지 않음

### ③ 별도합산할 이유가 있는 토지(지방세영 §131-2③) : 12종

-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용토지
- 자동차운송사업자 및 대여사업자의 차고용토지(최저보유차고 면적의 1.5배이내)
- 건설기계주거장·옥외작업장 토지(최저시설기준 면적의 1.5배이내)
- 자동차운전학원용 토지(시설 구역내)
- 야적장·컨테이너장, 보세창고용 토지(사용된 최대면적의 1.2배이내)
- 자동차관리사업용 토지(최저시설 기준면적의 1.5배이내)
- 유통단지안의 유통 시설용토지(행자부장관이 산업부장관과 협의한 토지)
- 시이상 지역의 레미콘 제조업용 토지 (산업단지·공업지역 제외 및 공장입지 기준면적이내)
- 자동차시험·연구용도 및 자동차·건설기계검사용 등의 토지
- 대중체육시설업의 필수시설 중 운동시설용 토지
- 관광사업자의 박물관·미술관·동물원 등의 야외전시장용 토지
- 전문휴양업·공연장·의료기관·방송국·체육시설업 등의 부설 주차장 중 설치기준면적이내 토지

## <참고2> 지방세법상 재산세 분리과세대상토지

① 공장용지(지방세영 §132①1)

- 읍·면지역, 산업단지 공업지역 안의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로서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 안의 토지

$$* \text{공장건축물연면적} \times \frac{100}{\text{업종별 기준공장면적율(산자부장관 고시)}}$$

② 전·답·과수원(농지)

-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소유 농지(특별시, 광역시, 시지역의 도시지역 안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에 한함)
-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소유 농지
- 사회복지사업자가 복지시설 소비용에 공하기 위해 소유한 농지
- 법인이 매립·간척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로서 실제 영농에 사용하고 있는 법인소유 농지(특별시, 광역시, 시지역의 도시지역 안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에 한함)
- 종중 소유 농지

③ 목장용지

- 개인·법인이 축산용으로 사용하는 도시지역 안의 개발제한구역·녹지지역과 도시지역 밖의 목장용지로서 축산용 토지와 건축물의 기준을 적용한 토지면적 범위안에서 소유하는 토지·

④ 산림보호육성을 위한 임야

- 산림법에 의하여 특수개발지역으로 지정된 임야와 산지관리법에 의하여 보전산지 안에 있는 임야로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
-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임야
-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지정된 자연환경지구 안의 임야
- 종중 소유 임야
-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
- 군사시설보호구역중 제한보호구역안의 임야
- 군용전기통신법에 의한 특별보호구역 안의 임야
- 도로법에 의한 접도구역 안의 임야
- 철도법에 의한 철도노선인접지역 안의 임야
- 도시공원법에 의한 도시공원 안의 임야
- 하천법에 의하여 연안구역으로 고시된 지역 안의 임야
-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임야

⑤ 골프장용 토지, 고급오락장용 토지

-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 도박장 · 유흥주점영업장 · 특수목욕장 · 카지노장 · 자동도박기 설치 장소 · 욕실설치 미용실 · 유흥주점업소(관광유흥음식점 제외)중 무도유흥주점(카바레, 나이트클럽 등) 영업장소와 룸살롱
- ⑥ 분리과세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사업용 토지)
  - 한국토지공사 · 대한주택공사의 공급 목적 소유토지(5년이내)
  - 염전(폐전일로부터 10년이내 포함)
  - 한국수자원공사의 공급목적 소유토지
  -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발전 · 송전 · 변전시설에 직접사용 토지
  - 광업권이 설정된 광구내 토지로서 채광계획 인가토지
  - 매립 및 간척한 토지(공사준공인가일로부터 4년이내)
  - 주택건설사업자의 사업에 공여된 토지 (사업승인일부터 분양완료시까지)
  - 석유비축시설용 · 석유저장 · 송유설비 토지(한국석유공사)
  - 가스공급설비용 토지(한국가스공사)
  - 열생산설비용 토지(한국지역난방공사)
  - 국방상의 목적외에는 그 사용 및 처분등을 제한하는 공장구내 토지
  - 농 · 수 · 산림 · 염연초생산조합의 구관사업과 농수산물유통 시설용 토지
  - 종교단체 · 학교단체 등 비영리사업자 소유토지(1995. 12. 31이전 소유토지에 한함)
  -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자에게 분양 · 임대 목적으로 소유한 토지
  - 농어촌정비사업자의 공급목적용 토지
  -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타인에게 매각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소유한 토지
  - 한국산업단지공단이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소유한 토지(임대포함)
  - 산업단지조성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토지
  - 대덕연구단지관리계획 원형지 지정토지
  - 한국수자원공사의 발전 · 수도 · 공업 · 농업용수 공급 또는 홍수조절용 토지
  - 군용화약류시험장용 토지(허가취소 1년이내 포함)
  - 부동산투자회사의 목적사업용 토지
  - 도시개발사업에 공여하는 주택건설용 및 산업단지조성용토지 (실시계획고시일로부터 공급완료일까지)
  - 한국철도공사의 목적사업용 철도용지

다. 연간수입금액/토지가액 기준 적용방법

□ 연간수입금액/토지가액 비율은 과세기간(사업연도) 단위로 계산

○ 당해 과세기간의 연간수입금액/토지가액 비율은 다음 ①과 ②중 큰 금액으로 계산

① 당해 과세기간의 연간 수입금액 /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가액

②  $\frac{\text{당해 과세기간의 연간 수입금액} + \text{직전 과세기간의 연간수입금액}}{\text{당해 과세기간의 토지가액} + \text{직전 과세기간의 토지가액}}$

□ 토지가액은 당해 과세기간 최종일의 기준시가를 적용

○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은 양도일의 기준시가를 적용

□ 연간 수입금액의 계산

○ 토지와 지상건축물·시설물 등에 관련된 사업의 총수입금액

- 임대료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49의2①)\*을 준용한 간주임대료 금액을 합산

\* 당해기간의 전세금 × 과세대상 기간의 일수 ×  $\frac{\text{계약기간1년의 정기에금이자율}}{365(\text{윤년 } 366)}$   
또는 임대보증금

○ 총수입금액이 당해 토지와 지상건축물·시설물 등과 기타 토지와 지상건축물·시설물 등에 공통으로 관련되어 있어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당해 토지등의

당해 토지가액

$$\text{수입금액} = \text{총수입금액} \times \frac{\text{총수입금액이 관련된 토지가액}}{\text{총수입금액이 관련된 토지가액}}$$

○ 일정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토지에서의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예: 사업의 신규개시·폐업일,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은 사업기간의 수입금액을 1년간 환산한 금액

$$\text{사업기간의 수입금액} \times \frac{365(\text{윤년 } 366)}{\text{과세기간중 당해 토지에서의 사업기간}}$$

## 라. 기타

### □ 토지가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

○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함

### □ 기준면적 초과토지의 구분

○ 연접한 다수 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용도에 일괄하여 사용되고 그 면적이 비사업용토지 판정기준이 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 그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는 건축물바닥면적(시설물 수평투영면적)을 제외한 토지중에서 후에 취득한 토지로 하되

- 동일한 시기에 취득한 토지중에서는 납세자가 선택한 토지

□ 토지의 종류별 면적의 계산

○ 복합용도 건축물의 부속토지인 경우

- 특정용도에 사용되는 토지의 면적 또는 건축물의 바닥면적 =  
건축물 부속토지의 면적 또는 건축물의 바닥면적  
× 특정용도에 사용되는 연면적 ÷ 건축물의 연면적

○ 동일경계 안에 용도가 다른 다수의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 특정 건축물 부속토지의 면적 = 전체 토지면적  
× 특정 건축물의 바닥면적 ÷ 전체 건축물의 바닥면적

### 3. 양도세 중과대상인 부동산법인 주식의 기준 신설(영§167의7)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의 주식 양도시 양도세 과세(9~36%)  * (유형1) 일반법인 - 주식발행법인의 부동산등 비율 $\geq$ 자산가액의 50% - 양도자의 지분비율 $\geq$ 50% - 발행주식총수증 양도비율(3년간 누계) $\geq$ 50%  ○ (유형2) 특정업종 영위법인 - 주식발행법인의 부동산등 비율 $\geq$ 자산가액의 80% - 골프장, 스키장, 휴양콘도미니엄 또는 전문휴양시설 경영·분양·임대업	<input type="checkbox"/> 다음 요건을 갖춘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의 주식 양도시 양도세 60% 중과  ○ 비사업용 토지의 가액 $\geq$ 자산가액의 50%

#### (2) 개정이유

- 현재 부동산으로 주로 구성된 부동산법인 주식의 양도소득은 부동산과 같이 일반세율(9~36%) 적용하고 있으나
  - 개인이 보유한 비사업용 나대지·잡종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 세율을 60%로 상향조정함에 따라
    - 개인이 법인을 설립하여 비사업용 나대지·잡종지 등을 보유하고 동 법인 주식의 양도를 통해 양도세 중과를 회피할 수 있으므로
    - 자산중 비사업용 나대지·잡종지 등이 일정비율 이상인 부동산 법인의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도 인상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7.1.1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4. 농지대토 감면제도로 전환 및 감면요건 조정(소득법§89④ 삭제, 조특법 §70, §133②신설 및 농특령§4)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농지대토 비과세 ○ 감면한도 없음  <input type="checkbox"/> 농지 대토 감면(비과세)요건 ○ 대체취득 요건 · 종전농지 면적 이상 또는 · 가액의 1/2이상 취득	<input type="checkbox"/> 감면제도(100%)로 전환 ○ 감면한도 : 5년간 1억원 * 8년 자경 감면한도와 동일  ○ 대체취득 요건 완화 · 종전농지 면적 1/2이상 또는 · 가액의 1/3이상 취득

(2) 개정이유

- 농지대토 비과세제도가 과도한 농지 대체취득 수요를 유발하여 지가를 상승시키고 토지시장을 불안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 비과세제도를 감면한도가 있는 감면제도로 전환하여 농지의 대체취득 수요를 감소시키고 토지시장의 안정을 유도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1.1이후 양도하여 대토하는 분부터 적용
  - 2005.12.31까지 종전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받았거나 종전 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 농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종전규정 적용

IV. 기타 개정사항

# 1.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보완(법§101②)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양도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수증자가 3년 이내에 그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증여자가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간주	<input type="checkbox"/> 증여자가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기간을 <input type="checkbox"/> 수증자가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그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로 연장

## (2) 개정이유

- 1세대2주택과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율 인상으로 증여세율(10~50%)이 양도세 중과세율(60%)보다 낮은 점을 이용하여
- 증여후 양도를 통하여 양도세 중과를 회피할 소지가 있으므로 부당행위 계산부인 기간 연장(3년 → 5년)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7.1.1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2. 중형 이하 건설임대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영§167의3)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건설임대주택 양도시 양도세 중과 배제  <매입임대> - 국민주택규모(25.7평) 이하 - 5호 이상 소유·10년 이상 임대 - 양도당시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 이하  <건설임대> - 국민주택규모(25.7평) 이하 - 5호 이상·5년 이상 임대	(현행과 같음)          - 주택규모를 45평(149㎡)까지로 확대(단독의 경우 대지면적 298㎡ 이하)하고 - 임대호수도 2호 이상·5년이상으로 완화 - 양도당시 국세청 기준시가 6억원 이하

### (2) 개정이유

중형 이하 임대주택의 공급을 활성화

○ 자기가 신축해서 임대하여 주고 있는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지원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5.5.31이후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는 분부터 적용

### 3. 국외이주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기준 조정(영§154①)

#### (1) 개정내용

증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3년이상 보유(서울, 과천, 5대 신도시 3년 보유, 2년 거주)한 1세대1주택 양도시 비과세  <input type="checkbox"/> 다음의 경우 보유·거주 요건 미적용 - 협의매수·수용시  - 국외이주로 양도시	- 협의매수·수용시(사업인정 고시일전 취득분에 한함)  - 국외이주로 출국후 2년내 양도시

#### (2) 개정이유

- 공익사업을 위한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 당해 지역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것을 알고 투기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예외규정 적용 배제
- 국외이주후 오랜기간(예:10년) 경과후 양도하여도 양도시까지 발생한 모든 양도차익이 비과세되는 불합리 해소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2.9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2006.2.9 전에 사업인정이 고시된 지역의 주택으로서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는 종전규정 적용
- 2006.2.9 전에 국외이주한 경우 2007.12.31까지 양도시 종전 규정 적용

#### 4. 지방이전공공기관과 기업의 종업원에 대한 지원(영§155)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1세대1주택 비과세 <input type="checkbox"/> 거주이전으로 인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 종전주택을 1년내 양도시 비과세	<input type="checkbox"/>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또는 법인이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 공공기관 종사자 및 법인의 임원과 사용인이 - 당해 공공기관 또는 법인이 이전한 지역(시·군) 또는 연접한 지역의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 종전주택을 2년내 양도시 비과세(중복보유 허용기간 연장)

##### (2) 개정이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과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 지원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6.2.9 이후 지방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종사자와 법인의 임원과 사용인에게 적용

5. 1세대 다주택자 실거래가 과세시 주택수 계산 명확화  
(영§162의2⑤)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1세대 1주택,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판정시 공동상속주택의 경우  -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	<input type="checkbox"/> 실거래가 과세대상인 1세대 2주택 이상 보유자 판정시  ○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  *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 ① 당해주택에 거주하는 자 ② 호주승계인 ③ 최연장자

(2) 개정이유

공동상속주택의 주택수 계산에 대한 예규를 시행령에 규정

※ 1세대 3주택의 실가 과세 판정시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자의 경우  
그 지분은 주택수에서 제외(재경부 재산-274, 2005.3.18)

(3) 적용시기 및 적용래

2006.1.1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6. 토지 투기지역 조기지정 (영§162의3)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토지 투기지역은 분기별로 지정  <input type="checkbox"/> 직전분기 지가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 보다 높고  <input type="checkbox"/> 직전분기 지가상승률이 전국평균의 1.3배 보다 높은 경우  <input type="checkbox"/> 대규모개발사업지역은 <input type="checkbox"/> 직전분기 지가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 보다 높은 경우  ※ 대규모개발사업 : 신도시, 신 행정수도건설 예정지구 및 그 연접지구	<input type="checkbox"/> 토지 투기지역을 월별로 지정하고 지정기준을 주택투기지역 지정 기준과 일치  <input type="checkbox"/> 직전월 지가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 보다 높고  <input type="checkbox"/> 직전 2개월 평균 지가상승률이 전국평균의 1.3배 보다 높은 경우  <input type="checkbox"/> 직전분기를 월별로 전환하고 <input type="checkbox"/>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복합도시 건설특별법」 제정에 따라 자구 조정  ※ 특별법에 의한 예정지역 및 주변 지역

### (2) 개정이유

- 2005.2월 말부터 월간지가통계발표(건교부)에 맞추어 토지투기 지역을 월별로 전환하여 지가급등시 조기 대처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5.5.31부터 시행

## 7. 공시가격이 없는 주택·토지가격 산정 방법(영§164)

### (1) 개정내용

증 전	개 정
<신 설>	<p><input type="checkbox"/> 공시가격이 없는 개별주택과 공동주택의 기준시가 산정방법</p> <p>○ 원칙</p> <p>- 단독주택 : 구조·용도, 이용 상황 등 이용가치가 유사한 인근 주택을 표준주택으로 보고 주택 가격비준표에 의해 산정</p> <p>- 공동주택 : 인근 유사주택의 거래가격·임대료 및 건설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산정</p> <p>○ 다음의 가액으로 평가 가능</p> <p>- 2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의 감정 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p> <p>- 시장·군수가 취득세 과세 표준으로 산정*한 가액</p> <p>* 개별주택가격 : 건교부장관이 제공한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p> <p>공동주택가격 : 지역별·단지별·면적별·층별 특성 및 거래가격 등을 참작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p>

<p>□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 토지를 기준으로 건교부장관이 제공하는 토지가격비준표에 의해 세무서장이 산정</li> <li>○ 다음의 가액으로 평가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의 감정 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li> </ul> </li> </ul> <p style="text-align: center;">&lt;신 설&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장·군수가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산정*한 가액</li> </ul> <p>*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p>
---	---

(2) 개정이유

-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표준도 기준시가로 인정하여 행정의 일관성 및 효율성 제고
- 주택가격 공시가 누락되었거나 공시이후 신축된 경우등 공시주택 가격이 없는 경우 주택가격 산정방법을 규정
  -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격 산정방법을 준용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2.9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8. 가격공시 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당시 공시가격 산정

(영§164)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input type="checkbox"/>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p> <p>○ 아파트·고급연립, 집단상가·오피스텔</p> <p>국세청장 최초 고시 기준시가 × 취득당시 토지·건물 기준시가 합계액 최초 고시당시 토지·건물 기준시가 합계액</p>	<p>○ 새로이 공시되는 단독주택 및 다세대·연립 : 현행의 아파트등과 동일하게 적용</p> <p>2005.4.30 최초로 고시한 개별주택 또는 공동주택(아파트 및 고급연립주택 제외)가격 × 취득당시 토지·건물 기준시가 합계액 '05.4.30 최초 고시당시 토지·건물 기준시가 합계액</p>

(2) 개정이유

기존의 아파트등 취득당시 기준시가 환산방식과 일관성 감안

(3) 적용시기

2005.8.5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9. 코스닥·프리보드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축소  
(영§157)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대주주의 주식양도차익 과세  ○ 지분 3%이상 또는 시가총액 100억원이상	<input type="checkbox"/> 대주주 범위 세분화  ○ 유가증권상장법인 : 현행과 동일  ○ 코스닥시장, 프리보드 : 지분 5%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원이상

(2) 개정이유

- 시장규모에 따른 대주주 범위 조정을 통해 중소·벤처기업 육성지원을 위해
  - 코스닥시장, 프리보드의 경우 지분비율은 상향조정하고 시가총액기준은 하향조정
    - 지분비율 : 3%이상 ⇒ 5%이상
    - 시가총액 기준 : 100억원이상 ⇒ 50억원이상
- \* free board  
: 비상장 주식이나 상장이 폐지된 주식에 대해 유동성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운영되는 장외호가중개시장으로  
기술력이 있는 유망기업이 발행한 주식을 상장이전의 단계에서 투자할 수 있는 기회 제공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5.8.5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0. 중소기업 최대주주의 보유지분 양도에 대한 부당행위 계산규정 보완(영§167⑤)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input type="checkbox"/>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 부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여 양도한 경우</li> <li>○ (효과)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해 계산</li> <li>○ (판정기준) 시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증법상 평가기준 준용</li> <li>- 최대주주의 주식의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해 주식의 평가액에 일정비율 할증하여 평가</li> <li>· 대기업 : 30% 할증 (지분율 50% 이하 : 20%)</li> <li>· 중소기업 : 15% 할증 (지분율 50% 이하 : 10%)</li> </ul> </li> </ul> </li> </ul> <p>* 다만, '06년말까지 중소기업 최대주주 지분을 상속·증여하는 경우에는 할증평가 배제(조특법 §100의 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기업 : 조특법에 의해 상속·증여시 할증평가를 배제하는 것과 평가기준을 일치(조특법 §100의2 준용)</li> </ul>

(2) 개정이유

- 중소기업 최대주주의 지분 평가에 있어 상속·증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할증평가가 배제됨에 따라
  - 동일 주식의 평가에 있어 증여이익 계산시에는 할증평가가 배제되는 반면
    - 양도소득세 계산에는 할증평가가 적용되는 문제점을 개선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2.9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11. 세대의 개념 보완(영§167의3)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input type="checkbox"/> 세대의 개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인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직계존비속, 형제자매)으로 구성</li> </ul> <p><input type="checkbox"/> 다음의 경우는 배우자가 없더라도 1세대로 인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0세 이상인 경우</li> <li>○ 소득이 있는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우자가 사망 또는 이혼한 경우</li> <li>○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li> </ul>	<p>(현행과 동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득세법 제4조에 의한 소득으로서 세대원이 당해 주택을 소유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는 제외(직계존속의 사망, 결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로서 부득이하게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li> </ul> <p>(현행과 동일)</p> <p style="text-align: center;">&lt;폐 지&gt;</p>

(2) 개정이유

- 독립적인 생계유지가 불가능한 세대원을 독립된 세대로 분리하여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도록 세대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1.1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2006년도 최저생계비(보건복지부 2005.9.1고시)

(원/월)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금액(원/월)	418,309	700,849	939,849	1,170,422	1,353,242	1,542,382

## <법인세법>

### 1.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과세 강화(법§55의2)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input type="checkbox"/> 법인의 소득에 대하여는 13·25%의 세율로 과세</p> <p><input type="checkbox"/> 다음의 부동산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 추가과세</p> <p>○ 지가급등지역* 토지·건물 : 10%(미등기 20%)</p> <p>* 지가급등지역 (① + ②)</p> <p>① 직전분기의 평균지가가 직전전분기 대비 3%이상 상승 또는 전년도 동분기 대비 10%이상 상승한 지역</p> <p>② 대도시권(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광역시)과 개발사업이 진행중이거나 예정되어 있는 지역 및 그 인근지역중 재경부령이 정하는 지역(현재까지 없음)</p> <p>○ 주택 : 30%(미등기시 40%)</p> <p>* 장기임대주택, 장기사택 등 제외</p> <p style="text-align: center;">&lt;추 가&gt;</p>	<p>○ 비사업용 토지 : 30% (미등기시 40%)</p>

#### (2) 개정이유

□ 토지를 생산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재산증식 수단으로 이용하는 법인에 대하여 중과함으로써

○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여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하고 투기 이익을 환수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7.1.1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2.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신설(법§55의2, 영§92의3 내지 §92의11)

◇ 비사업용 토지 : 기간기준(가)과 대상토지기준(나)을 충족하는 토지

### 가. 기간기준

□ (원칙) 양도세는 장기보유기간중 발생한 양도차익에 과세하므로 사업용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 양도시점뿐만 아니라 보유기간중 사업용으로 사용된 기간을 고려

- 다음 요건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사업용 토지임
  - ① 양도일 직전 3년중 2년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
  - ② 양도일 직전 5년중 3년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
  - ③ 보유기간중 80/100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

⇒ 사업용토지의 기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 (예외) 부득이하게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예외 적용

(1유형)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당해 기간을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간주

□ 토지 취득후 다음 사유가 발생한 부동산

-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안의 토지 : 지정된 기간

-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면허 등을 신청하였으나 건축법과 행정지도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 :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
  - ※ 부동산매매업(건물건설업과 부동산공급업) 자의 매매용부동산 제외
-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면허를 받았으나 건축자재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로 착공이 제한된 토지 : 착공이 제한된 기간
  - ※ 부동산매매업(건물건설업과 부동산공급업) 자의 매매용부동산 제외
- 사업장(임시작업장 제외)의 진입도로로서 私道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 : 사도 또는 도로로 이용되는 기간
- 「건축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에 公共空地로 제공한 토지 : 당해 건축물의 착공일부터 공공공지로의 제공이 끝나는 날까지의 기간
-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않은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 :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중인 기간
- 저당권 실행등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및 청산 절차에 따라 잔여재산의 분배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 : 취득일 부터 2년
- 취득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중인 토지 : 소송이 계속중인 기간(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기간을 포함)

-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의하여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 :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
-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 :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
- 2년 이상 사업에 사용한 토지로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폐업 또는 이전함에 따라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토지 : 휴업·폐업 또는 이전일부터 2년
-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의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 재촌·자경한 자가 소유한 농지로서
  - 농지의 형질이 변경되어 황지가 됨으로써 자경하지 못하는 경우 : 사유발생일부터 2년
- 토지 취득후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 정당한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

(2유형)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의 기간을 기준으로 사업용 여부를 판정

- 「민사소송법」에 의하여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를 통하여 양도된 토지
  - 최초의 경매기일 또는 공매일을 양도일로 보아 사업용 여부를 판정
-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위임하여 양도된 토지
  - 매각을 위임한 날을 양도일로 보아 사업용 여부를 판정

□ 일간신문\*에 일정 조건\*\*으로 매각을 3일 이상 공고하고, 공고일(최초의 공고일)부터 1년 이내에 매각계약을 체결하여 양도된 토지

→ 매각 공고일을 양도일로 보아 사업용 여부를 판정 가능

\*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을 포함한 3개 이상의 일간신문

\*\* 매각조건 : 매각예정가격이 시가 이하이고 매각대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매각계약 체결일부터 6월 이후에 결제할 것

□ 상기 요건을 갖춘 토지로서 상기 매각조건을 갖추어 매년 매각을 재공고\*하고, 재공고일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거나 1년 이내에 매각계약을 체결하여 양도된 토지

→ 최초 매각공고일을 양도일로 보아 사업용 여부를 판정 가능

\* 직전 매각공고시의 매각예정가격에서 동금액의 100분의 10을 차감한 금액 이하로 매각을 재공고한 경우에 한함

(3유형)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당해 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구분

□ 공장의 가동에 따른 소음·분진·악취 등에 의하여 생활환경의 오염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안의 토지로서 당해 토지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취득한 공장용 부속토지의 인접토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토지로서

○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제도의 유예기간인 '06년까지 사업인정 고시된 지역의 토지는 중과대상에서 제외

## 나. 대상토지

### (1) 농지(전·답·과수원)\*

\*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

#### □ (원칙)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소유농지

\* ① 수입금액이 큰 사업 또는 ② 다음요건을 충족할 것

i) 농지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당해 법인이 제조·생산하는 제품의 원료로 사용하고 농업과 제조업을 구분경리

ii) 법인이 농지를 농업에 직접 사용

iii) ① 법인이 생산한 농산물중 50% 이상을 당해 법인이 제조하는 제품의 원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전체 농지

② 법인이 생산한 농산물중 50% 미만을 당해 법인이 제조하는 제품의 원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농지의 면적중 사용비율에 상당하는 면적의 2배 이내의 농지

○ 특별시, 광역시(군지역 제외), 시지역(읍·면지역 제외)의 도시지역 안(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제외)의 농지 중과

- 다만, 주업법인이 소유하던 농지는 도시지역(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제외) 편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제외

#### □ (예외) 농지법에서도 소유가 인정되는 다음 경우는 제외

○ 학교, 공공단체, 농업연구기관, 농협 등 농업생산자단체, 종자생산자, 농업기자재 생산자가 시험·연구·실습지로 소유하는 농지

○ 유동화전문회사 등이 담보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농지(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시)

○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거나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로서 전용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토지수용, 공익사업,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 농업기반공사 소유 농지
-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해 취득한 매립농지
- 종중소유농지(2005.12.31. 이전 취득분에 한함)
- 제사, 종교, 자선, 학술, 기예 등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농지

## (2) 임야

### □ 다음의 임야는 제외

- 도시지역 밖 또는 도시지역 보전녹지지역 안의 임야중
  -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및 독립가(篤林家)\*\*인 법인이 영림계 확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 또는 특수개발지역으로 지정된 임야
- \* 투자금액이 가장 큰 사업이 임업인 법인
- \*\* 법인 독립가 : 500헥타르이상의 산림을 영림계획에 따라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법인 또는 조림실적이 300헥타르이상이고 영림계획에 따라 산림을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법인
- 도시지역(보전녹지지역을 제외)으로 편입된 경우 편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중과대상에서 제외

### □ (예외) ① 실제 사업에 사용되는 임야로서 중과가 불합리한 토지는 중과대상에서 제외

- 산림조합 및 산림계가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임야
- 자연휴양림의 조성 또는 관리·운영업에 사용하는 임야
- 수목원의 조성 또는 관리·운영업에 사용하는 임야

- 종·묘 생산업자가 산림용종자 및 산림용묘목을 생산하는 임야
- 제사, 종교, 자선, 학술, 기예 등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 종중소유 임야(2005.12.31. 이전 취득분에 한함)

② 공익상 필요, 산림보호육성을 위해 필요한 다음의 임야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

- 사찰림, 동유림, 보안림, 산림유전자원보호림, 채종림, 시험림
- 자연보존지구 및 자연환경지구(자연공원법)안 임야
- 문화재보호구역(문화재보호법)안 임야
- 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안의 임야
- 전통사찰이 소유하고 있는 경내지(전통사찰보존법)
- 군사시설보호구역(군사시설보호법), 해군기지구역(해군기지법), 특별 보호구역(군용전기통신법)
- 접도구역(도로법), 철도노선인접지역(철도법), 도시공원(도시공원법), 연안구역으로 고시된 지역(하천법) 안의 임야
- 상수원 보호구역(수도법) 안의 임야

### (3) 목장용지

□ 다음의 목장용지만 중과대상에서 제외

-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한 도시지역 밖의 목장 용지로서 기준면적\*\* 범위 내의 토지
  -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경우 편입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중과 제외

\* ①수입금액이 큰 사업 또는 ② 다음요건을 충족할 것

i) 목장용지에서 생산된 축산물을 당해 법인이 제조·생산하는

제품의 원료로 사용하고 축산업과 제조업을 구분경리

ii) 법인이 목장용지를 축산업에 직접 사용

iii) ㉠ 법인이 생산한 축산물중 50% 이상을 당해 법인이 제조하는 제품의 원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전체 농지

㉡ 법인이 생산한 축산물중 50% 미만을 당해 법인이 제조하는 제품의 원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농지의 면적중 사용 비율에 상당하는 면적의 2배 이내의 농지

· 농업협동조합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에 포함

\*\* 목장용지의 기준면적은 개인과 동일함

○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및 농업연구기관이 시험·연구·실습지로 사용하는 목장용지

○ 제사, 종교, 자선, 학술, 기예 등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 중중소유 목장용지('05.12.31까지 취득분에 한함)

#### (4) 비사업용 나대지

##### (4)-1 지방세법상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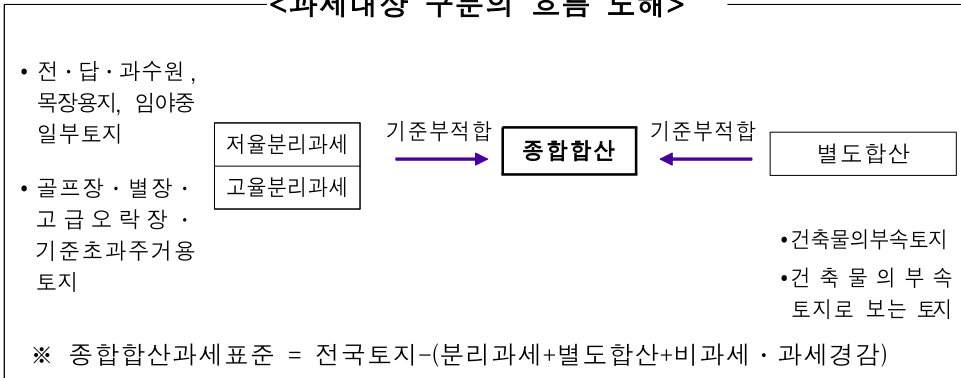
□ (원칙) 지방세법상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

\* (예) 건축물이 없는 일반적 의미의 나대지, 공장건축물 부속토지 기준면적 초과분, 일반건축물 부속토지 기준면적 초과분 등

○ (예외) 재산세 종합합산대상 토지중 사업에 필수적인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

<참고> 재산세 종합합산과세 대상

<과세대상 구분의 흐름 도해>



<과세대상 구분요약>

<b>분리과세</b> (0.07%, 0.2%, 4%) <법 182①3 영 132①~⑥>	①저울분리과세 : (0.07%)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중 일부토지 (0.2%) 공장·기타 분리과세대상 모든 토지 ②고울분리과세(4%) : 골프장·별장·고급오락장용 토지(※별장)
<b>별도합산</b> (0.2~0.4%) <법 182①2, 영 131-2①~③>	① 「공장용건축물」의 기준면적이내 부속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장용건축물&lt;영 131-2①1&gt; : 특별·광역시지역 및 시지역(읍·면 지역, 산업단지 공업지역 제외)안의 공장용 건축물</li> <li>기준면적=바닥면적×용도지역배율&lt;영 131-2②&gt;</li> </ul> ② 「영업용건축물」의 기준면적이내 부속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영업용건축물&lt;영 131-2①2&gt; : 모든 건축물 중 공장용건축물·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토지·무허가건축물·시가표준액 100분의3 미달 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li> <li>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보는 토지&lt;영 131①&gt; : 건축중인 경우와 건물멸실등기일이 6월이상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보나, 건축기간이 경과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건축물이 있는 토지로 보지 않음</li> </ul> ③ 별도합산할 이유가 있는 토지(영 131-2③) : 여객자동차터미널등(12종)
<b>종합합산</b> (0.2%~0.5%) <법 182①1>	①나대지 ② 분리과세대상토지중 기준초과 토지 ③ 별도합산대상토지중 기준초과 토지 ④ 분리과세·별도합산대상에서 제외된 모든 토지

(4)-2.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이나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

① 운동장·경기장 등 체육시설용 토지

선수전용 체육시설용 토지

○ 직장운동경기부 설치단체\*가 선수전용으로 계속하여 제공하는 체육시설용 토지중

- 선수전용체육시설 종목별 기준면적 이내 토지

\* 정부투자기관 및 상시 근무하는 직장인이 1,000명 이상인 공공단체 (국민체육진흥법)

운동경기업 법인의 선수훈련용 토지

○ 운동경기업 영위법인이 선수훈련에 직접 사용하는 체육시설로서 선수전용체육시설 종목별 기준면적의 1.5배 이내 토지

종업원용 체육시설용 토지

○ 사업장에 근무하는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설치한 체육 시설용 토지로서 종업원용체육시설 기준면적 이내 토지

체육시설용 토지

○ 체육시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단위당 시설·설비기준을 충족하는 체육시설업용 토지(골프장업, 스키장업 포함)

경기장운영업용 토지

○ 경마장, 육상경기장, 야구장, 축구장 등 경기장운영업용 토지

② 휴양시설업용 토지\*

\* 관광진흥법에 의한 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 등에 사용되는 토지  
(휴양시설업의 일부로 운영되는 스키장업 또는 수영장업용 토지 포함)

- 옥외동물방목장과 옥외식물원으로 이용되는 토지
- 건축물부속토지의 경우 일반 건축물부속토지의 2배
- 부설주차장용 토지의 경우 일반건축물 부설주차장의 2배
  - 다만, 교통영향평가 협의결과(건교부 또는 지자체)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용 토지는 모두 인정

③ 주차장용 토지

- 건축물 부설주차장용 토지
  - 주차장법에 의한 기준면적 이내 토지(주택 제외)
- 自家의 주차장용 토지
  - 상품 수송 등 업무용 자동차를 필수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 여객·화물자동차에 허용하는 수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최저차고기준면적의 1.5배)의 토지
- 주차장업용 토지
  - 주차장운영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한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으로서
    - 연간수입금액/토지가액 비율이 3% 이상인 토지

④ 개발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

□ 법령에 의해 개발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토지의 조성후 2년이 경과한 토지는 제외)

- \* 토지의 조성후 3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사업용 토지에 해당
- ※ 산업단지 조성용 토지는 지방세법상 별도합산과세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하여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
- 「관광진흥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 안에서 조성한 토지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촉진지구 안의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
-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이 승인된 지역의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
-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유통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유통단지 안에서 조성한 토지
- 「기업도시특별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구역 내에서 조성한 토지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개발사업시행자가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조성한 토지
-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 조성한 토지

⑤ 청소년 수련시설용 토지

□ 청소년의 심신수련에 사용되는 청소년 수련시설용 토지\*로서 기

준면적(1인당 200m<sup>2</sup>) 범위 내의 토지

- \*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아영장 등

⑥ 예비군훈련장용 토지

- 종업원의 예비군훈련을 위한 토지로서 다음요건을 갖춘 것
  - 지목이 대지 또는 공장용지가 아닐 것
  - 주거·상업·공업지역 밖의 토지
  - 수임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예비군훈련의 실시를 위임받은 자가 소유하고 설비·시설기준을 갖춘 기준면적 이내 토지

⑦ 기타 토지

- 하치장용 토지
  - 상품의 보관·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사용되는 하치장·야적장·적치장 등 하치장용 토지는
    - 매년 상품의 보관·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 평균의 1.2배
- 골재채취장용 토지
  - 골재채취법에 의하여 골재채취의 허가(시장·군수·구청장)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바에 따라 골재채취에 사용하는 토지
- 폐기물수집 및 처리업용 토지
  - 폐기물관리법상 허가를 받은 폐기물처리업자가 동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
- 광천지
  - 연간수입금액/토지가액 비율이 4% 이상
    - \* 광천지 : 온수·약수·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와 그 유지(維持)에 사용되는 부지.
- 양어장, 지소용 토지
  - \* 양어장 : 육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또는 양식을 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지적법)

지소용 토지 : 내수면양식업·뉴시터운영업 등에 사용되는 댐·저수지·소유지 및 자연적으로 형성된 湖沼와 그 유지를 위한 부지

- 수산업법에 의하여 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종묘생산어업\*\*의 허가를 받아 당해 사업을 영위하는 토지

\* 인공적으로 조성한 육상의 해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어업

\*\* 일정하게 구획된 바다·바닷가 또는 인공적으로 조성한 육상의 해수면에 시설물을 설치하여 수산종묘를 생산하는 어업

- 내수면어업법에 의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면허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 영위하는 면허어업, 허가어업, 신고어업에 사용되는 토지

\* 내수면 : 하천·댐·호소·저수지 기타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의 수류 또는 수면

- 그 외의 양어장, 지소용 토지 : 연간수입금액/토지가액 비율이 4% 이상

#### ⑧ 기타 수입금액기준 적용 토지

블록·석물 및 토관제조용 토지

- 연간수입금액/토지가액 비율이 20% 이상

조경작물식재업용 토지·화훼판매시설업용 토지

- 연간수입금액/토지가액 비율이 7% 이상

학원용 토지

- 자동차정비·중장비운전·중장비정비 학원용 토지 : 연간수입금액/토지가액 비율이 10% 이상

\* 자동차운전학원은 지방세법상 재산세 분리과세

- 농업교습학원용 토지 : 연간수입금액/토지가액 비율이 7% 이상

- 블록·석물·토관·벽돌·콘크리트제품·옹기·철근·비철금속·플라스틱파이프·골재·조경작물·화훼·분재·농산물·수산물·축산물의 도매업 및 소매업용 토지
- 연간수입금액/토지가액 비율이 10% 이상

(4)-3. 주택과 별장

- 주택부수토지 초과분
  - 주택면적의 5배(도시지역안) 또는 10배(도시지역밖)를 초과하는 토지
    - ※ 지방세법의 주택부속토지 기준
      - 경계가 확정된 경우는 경계안, 경계불명확한 경우는 바닥면적의 10배 이내
- 상시주거용이 아닌 별장과 별장부속토지
  - \* 별장 : 주거용건축물로서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 다만,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별장과 별장부속토지는 제외(농어촌주택 요건과 유사)
    - ① 다음 지역을 제외한 읍·면 지역에 소재
      - 수도권과 광역시 소재 군 지역. 다만, 접경지역(연천군, 인천 옹진군 등)은 포함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도시지역과 허가구역
      - 소득세법에 의한 투기지역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
    - ② 대지면적이 660㎡ 이내이고 주택의 연면적이 150㎡ 이하
    - ③ 별장과 부속토지의 가액이 1억원을 초과하지 않을 것

## <참고1> 지방세법상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

### ① 「공장용건축물」의 기준면적이내 부속토지

- 공장용건축물(지방세영 §131-2①1) : 특별·광역시지역 및 시지역 (읍·면지역, 산업단지 공업지역 제외) 안의 공장용 건축물
- 기준면적 = 바닥면적 × 용도지역배율
- 용도지역배율(지방세영 §131-2②)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도 시 지 역	1. 전용주거지역	5배
	2. 준주거지역·상업지역	3배
	3. 일반주거지역·공업지역	4배
	4. 녹지지역	7배
	5. 미계획지역	4배
도시지역외의 용도지역		7배

### ② 「영업용건축물」의 기준면적이내 부속토지

- 영업용건축물(지방세영 §131-2①2) : 모든 건축물 중 공장용건축물·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토지·무허가건축물·시가표준액 100분의3 미달 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
- 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보는 토지(지방세영 §131①) : 건축중인 경우와 건물멸실등기일이 6월이상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보나, 건축기간이 경과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건축물이 있는 토지로 보지 않음

### ③ 별도합산할 이유가 있는 토지(지방세영 §131-2③) : 12종

-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용토지
- 자동차운송사업자 및 대여사업자의 차고용토지(최저보유차고 면적의 1.5배이내)
- 건설기계주거장·옥외작업장 토지(최저시설기준 면적의 1.5배이내)
- 자동차운전학원용 토지(시설 구역내)
- 야적장·컨테이너장, 보세창고용 토지(사용된 최대면적의 1.2배이내)
- 자동차관리사업용 토지(최저시설 기준면적의 1.5배이내)
- 유통단지안의 유통 시설용토지(행자부장관이 산업부장관과 협의한 토지)
- 시이상 지역의 레미콘 제조업용 토지 (산업단지·공업지역 제외 및 공장입지 기준면적이내)
- 자동차시험·연구용도 및 자동차·건설기계검사용 등의 토지
- 대중체육시설업의 필수시설 중 운동시설용 토지
- 관광사업자의 박물관·미술관·동물원 등의 야외전시장용 토지
- 전문휴양업·공연장·의료기관·방송국·체육시설업 등의 부설 주차장 중 설치기준면적이내 토지

## <참고2> 지방세법상 재산세 분리과세대상토지

① 공장용지(지방세영 §132①1)

- 읍·면지역, 산업단지 공업지역 안의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로서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 안의 토지

$$* \text{ 공장건축물연면적} \times \frac{100}{\text{업종별 기준공장면적율(산자부장관 고시)}}$$

② 전·답·과수원(농지)

-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소유 농지(특별시, 광역시, 시지역의 도시지역 안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에 한함)
-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소유 농지
- 사회복지사업자가 복지시설 소비용에 공하기 위해 소유한 농지
- 법인이 매립·간척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로서 실제 영농에 사용하고 있는 법인소유 농지(특별시, 광역시, 시지역의 도시지역 안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에 한함)
- 종중 소유 농지

③ 목장용지

- 개인·법인이 축산용으로 사용하는 도시지역 안의 개발제한구역·녹지지역과 도시지역 밖의 목장용지로서 축산용 토지와 건축물의 기준을 적용한 토지면적 범위안에서 소유하는 토지·

④ 산림보호육성을 위한 임야

- 산림법에 의하여 특수개발지역으로 지정된 임야와 산지관리법에 의하여 보전산지 안에 있는 임야로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
-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임야
-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지정된 자연환경지구 안의 임야
- 종중 소유 임야
-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
- 군사시설보호구역중 제한보호구역안의 임야
- 군용전기통신법에 의한 특별보호구역 안의 임야
- 도로법에 의한 접도구역 안의 임야
- 철도법에 의한 철도노선인접지역 안의 임야
- 도시공원법에 의한 도시공원 안의 임야
- 하천법에 의하여 연안구역으로 고시된 지역 안의 임야
-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임야

⑤ 골프장용 토지, 고급오락장용 토지

-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 도박장 · 유흥주점영업장 · 특수목욕장 · 카지노장 · 자동도박기 설치 장소 · 욕실설치 미용실 · 유흥주점업소(관광유흥음식점 제외)중 무도유흥주점(카바레, 나이트클럽 등) 영업장소와 룸살롱

⑥ 분리과세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사업용 토지)

- 한국토지공사 · 대한주택공사의 공급 목적 소유토지(5년이내)
- 염전(폐전일로부터 10년이내 포함)
- 한국수자원공사의 공급목적 소유토지
-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발전 · 송전 · 변전시설에 직접사용 토지
- 광업권이 설정된 광구내 토지로서 채광계획 인가토지
- 매립 및 간척한 토지(공사준공인가일로부터 4년이내)
- 주택건설사업자의 사업에 공여된 토지 (사업승인일부터 분양완료시까지)
- 석유비축시설용 · 석유저장 · 송유설비 토지(한국석유공사)
- 가스공급설비용 토지(한국가스공사)
- 열생산설비용 토지(한국지역난방공사)
- 국방상의 목적외에는 그 사용 및 처분등을 제한하는 공장구내 토지
- 농 · 수 · 산림 · 염연초생산조합의 구관사업과 농수산물유통 시설용 토지
- 종교단체 · 학교단체 등 비영리사업자 소유토지(1995. 12. 31이전 소유토지에 한함)
-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자에게 분양 · 임대 목적으로 소유한 토지
- 농어촌정비사업자의 공급목적용 토지
-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타인에게 매각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소유한 토지
- 한국산업단지공단이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소유한 토지(임대포함)
- 산업단지조성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토지
- 대덕연구단지관리계획 원형지 지정토지
- 한국수자원공사의 발전 · 수도 · 공업 · 농업용수 공급 또는 홍수조절용 토지
- 군용화약류시험장용 토지(허가취소 1년이내 포함)
- 부동산투자회사의 목적사업용 토지
- 도시개발사업에 공여하는 주택건설용 및 산업단지조성용토지 (실시계획고시일로부터 공급완료일까지)
- 한국철도공사의 목적사업용 철도용지

**다. 연간수입금액/토지가액 기준 적용방법**

- 연간수입금액/토지가액 비율은 과세기간(사업연도) 단위로 계산
  - 당해 과세기간의 연간수입금액/토지가액 비율은 다음 ①과 ②중 큰 금액으로 계산
    - ① 당해 과세기간의 연간 수입금액 /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가액
    - ② 
$$\frac{\text{당해 과세기간의 연간 수입금액} + \text{직전 과세기간의 연간수입금액}}{\text{당해 과세기간의 토지가액} + \text{직전 과세기간의 토지가액}}$$
  
- 토지가액은 당해 과세기간 최종일의 기준시가를 적용
  -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은 양도일의 기준시가를 적용
  
- 연간 수입금액의 계산
  - 토지와 지상건축물·시설물 등에 관련된 사업의 총수입금액
    - 임대료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49의2①)\*을 준용한 간주임대료 금액을 합산
      - \* 
$$\frac{\text{당해기간의 전세금} \times \text{과세대상} \times \text{계약기간1년의 정기에금이자율}}{\text{또는 임대보증금} \quad \text{기간의 일수} \quad \text{365(윤년 366)}}$$
  - 총수입금액이 당해 토지와 지상건축물·시설물 등과 기타 토지와 지상건축물·시설물 등에 공통으로 관련되어 있어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text{당해 토지등의 수입금액} = \text{총수입금액} \times \frac{\text{당해 토지가액}}{\text{총수입금액이 관련된 토지가액}}$$

- 일정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토지에서의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예: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은 사업기간의 수입금액을 1년간 환산한 금액

$$\text{사업기간의 수입금액} \times \frac{365(\text{윤년 } 366)}{\text{과세기간중 당해 토지에서의 사업기간}}$$

## 라. 기타

### □ 토지가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

-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함

### □ 기준면적 초과토지의 구분

- 연접한 다수 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용도에 일괄하여 사용되고 그 면적이 비사업용토지 판정기준이 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 그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는 건축물바닥면적(시설물 수평투영면적)을 제외한 토지중에서 후에 취득한 토지로 하되
  - 동일한 시기에 취득한 토지중에서는 납세자가 선택한 토지

□ 토지의 종류별 면적의 계산

○ 복합용도 건축물의 부속토지인 경우

- 특정용도에 사용되는 토지의 면적 또는 건축물의 바닥면적 =  
건축물 부속토지의 면적 또는 건축물의 바닥면적  
× 특정용도에 사용되는 연면적 ÷ 건축물의 연면적

○ 동일경계 안에 용도가 다른 다수의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 특정 건축물 부속토지의 면적 = 전체 토지면적  
× 특정 건축물의 바닥면적 ÷ 전체 건축물의 바닥면적

### 3. 임대주택 법인세 추가과세 제외 (영§92의2)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checkbox"/> 내국법인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반 법인세외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도소득의 30%(미등기 40%)를 추가로 과세</li> </ul> </li> <li><input type="checkbox"/> 다음의 경우 추가과세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주택(85㎡(25.7평) 이하)을 5호이상 임대하는 법인이 10년 이상 임대한 국민주택</li> </ul> </li> <li>○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건설 임대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포함)하는 법인이 주택 및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주택 규모를 149㎡(45평)까지로 확대(단독은 대지면적 298㎡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도당시 국세청 기준시가 6억원 이하로 제한</li> <li>- 2호이상 임대하는 법인이 5년이상 임대한 주택으로 완화</li> <li>*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현행과 동일</li> </ul> </li> <li>○ 건설임대주택을 일반에게 분양하는 경우와 함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도 포함됨을 명확화</li> </ul> </li> </ul>

#### (2) 개정이유

주거안정을 위하여 중형 이하 건설임대주택의 공급을 활성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중형건설임대주택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
  - 2006.1.1이후 최초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는 분부터 적용
  
-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
  - 2006.1.1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4. 주식양도명세서 제출의무 개선(영§161)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사업연도중 주식변동상황이 있는 법인은 주식변동상황명세서와 함께 주식양도명세서 제출  <input type="checkbox"/> 거래소·코스닥상장 법인은 대주주 주식거래분 기재 * 대주주 - 거래소 주식 : 지분 3% 이상 또는 시가 100억원 이상 - 코스닥 주식 : 지분 5% 이상 또는 시가 50억원 이상	<input type="checkbox"/> 거래소·코스닥상장 법인은 대주주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자의 주식거래분만 기재

##### (2) 개정이유

- 거래소·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경우 증권예탁원의 실질주주 명부를 기준으로 純증감분만 작성하고 있어 주식시장에서 거래된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 주식양도명세서 기재대상을 지배주주와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한정하도록 변경하여 기업의 납세편의 제고
  - ※ 대주주의 기말 변동분은 종전과 같이 주주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제출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공포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5. 주택 부수토지의 범위 조정(영§92의2④4호)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input type="checkbox"/> 주택신축판매법인의 주택 (부수토지 포함) 양도차익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p> <p>○ 부수토지 :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도시지역 외 10배) 이내</p> <p>* '건물이 정착된 면적'은 '건물이 정착된 바닥면적'(우리부 재산 46014-104, '98.5.21)</p>	<p>○ 부수토지 : 다음 중 넓은 면적 이내</p> <p>- 건물이 정착된 면적 5배 (도시지역 외 10배)</p> <p>- 건물(주택)의 연면적</p> <p>* 건물의 연면적 계산시 지하층 면적, 지상층의 주차장 면적 및 주민 공동시설면적 제외</p>

(2) 개정이유

- 주택의 부수토지를 건물 바닥면적의 5배(도시지역외 10배) 이  
내의 토지로만 제한함에 따라
-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아파트)의 경우  
그 부수토지가 현행 법령상의 한도를 초과하여 법인세가 추가  
과세되는 문제 해소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2.9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6. 법인세 추가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조정

(영§92의2②)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법인이 소유한 다음의 주택 양도시 법인세 추가과세(30%) 대상에서 제외  <input type="checkbox"/> 저당권 실행이나 채권변제를 받기위해 취득한 주택 -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주택	-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주택  * 예 : 소유권에 관한 소송결과로 취득한 주택으로서 확정판결일 부터 3년이내에 양도하는 주택

(2) 개정이유

- 법인세 추가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저당권 실행 등으로 취득한 주택의 세부기준 마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2.9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 1. 농지대토 감면제도로 전환 및 감면요건 조정(소득세법§89④삭제, 조특법§70, §133②신설)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농지대토 비과세 <input type="checkbox"/> 감면한도 없음	<input type="checkbox"/> 감면제도(100%)로 전환 <input type="checkbox"/> 감면한도 : 5년간 1억원 * 8년 자경 감면한도와 동일
<input type="checkbox"/> 농지 대토 감면(비과세)요건 <input type="checkbox"/> 자경요건 · 3년 이상 자경한 농지 양도 · 새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자경 <input type="checkbox"/> 대체취득 요건 · 종전농지 면적 이상 또는 · 가액의 1/2이상 취득	<input type="checkbox"/> 농지 대토 감면요건 완화 <input type="checkbox"/> (현행과 동일) <input type="checkbox"/> 대체취득 요건 완화 · 종전농지 면적 1/2이상 또는 · 가액의 1/3이상 취득

#### (2) 개정이유

- 농지대토 비과세제도가 과도한 농지 대체취득 수요를 유발하여 지가를 상승시키고 토지시장을 불안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 비과세제도를 감면한도가 있는 감면제도로 전환하여 농지의 대체취득 수요를 감소시키고 토지시장의 안정을 유도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1.1이후 양도하여 대토하는 분부터 적용

## 2. 농어촌주택 취득자 양도세 과세특례 연장(조특법§99의4)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input type="checkbox"/> 농어촌주택외 주택 양도시1주택 소유로 간주 * 농어촌주택 · 광역시, 수도권과 투기지역외 소재 · 주택 45평(아파트 35평), 대지 200평이하 · 취득당시 기준시가 7천만원이하, 일반주택 양도당시 1억원이하 <input type="checkbox"/> 농어촌주택 취득시한 : '05.12.31	<input type="checkbox"/> 일몰시한 연장 : '08.12.31까지 3년간 연장

### (2) 개정이유

- 도시민의 농어촌 주택 취득을 지원하여 도시자본의 농촌유입을 촉진하고 농촌지역경제 활성화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1.1부터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3.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제도 개선(영§69)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8년이상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 상속받은 농지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포함하여 8년 이상인 경우 전부 감면  ○ 감면한도: 연간 1억원  ○ 자경: 직접 경작하거나 자기책임 하에 농사를 지은 경우로서 대리경작 등은 제외 (기본통칙 69-0...3)	○ 상속인이 경작하지 않는 경우 감면요건 합리화 - 8년 자경요건을 갖춘 농지를 상속받은 후 3년내 양도시 감면  ○ 감면한도 합리적 조정 - 5년간 1억원  ○ 자경의 정의 명확화 - 농작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2분의 1 이상을 자기노동력으로 경작(농지법 §2)

#### (2) 개정이유

- 상속인이 경작하지 않는 경우 감면요건 합리화
  - 8년이상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제도중 자경하지 않는 농지상속인에 대한 감면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
- 자경의 정의 명확화
  - 조특법령에 자경에 대한 정의규정 없이 기본통칙으로
    -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거나 자기책임하에 농사를 지은 경우로서 대리경작 등을 제외하고 있으나
    - ‘자기책임하에 농사를 지은 경우’라는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납세자의 불필요한 민원 및 실질적으로 영농에 종사하지 않아도 감면되는 문제 발생

- 농지의 효율적 이용관리를 위한 농지법의 자경 개념과 일치
  - 직접 경작하거나 자기책임하에 농사 → 농작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 1. 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다만, 2005년말까지 농지를 상속받은 상속인은 시행일부터 3년 이내(2008년)까지 양도하는 경우 종전규정 적용

#### 4.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세 이월과세 요건 완화(영§29)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input type="checkbox"/> 개인이 다음 방법에 의하여 법인전환시 양도세 이월과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li> <li>○ 1년 이상 영위한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양도</li> </ul> <p>* 이월과세 : 개인이 사업용부동산을 현물출자 등으로 법인에 양도시 개인에 대하여 양도세를 과세하지 않고 추후 법인이 양도시 종전 개인이 납부할 양도세액 상당액을 납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양도</li> <li>- '1년이상 사업' 요건 폐지</li> </ul>

##### (2) 개정이유

원활한 법인전환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의 구조조정 촉진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6.1.1 이후 권리와 의무를 포괄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5. 프리보드\*에서 거래되는 벤처기업 소액주주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법§14①7호 신설)

증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프리보드에서 주식양도시 ○ 주식양도차익의 20%양도세 과세 (중소기업주식은 10%)  <input type="checkbox"/> 상장·코스닥시장의 경우 소액주주 주식양도차익은 비과세 * 소액주주 : 발행주식 총수 3%미만 이면서 시가총액 100억원 미만	<input type="checkbox"/> 프리보드에서 주식양도시에도 ○ 벤처기업(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소액주주에 대해서는 양도세 비과세  <input type="checkbox"/> 소액주주의 범위는 코스닥시장의 소액주주와 일치

\* free board

: 비상장 주식이나 상장이 폐지된 주식에 대해 유동성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운영되는 장외호가중개시장으로  
 기술력이 있는 유망기업이 발행한 주식을 상장이전의 단계에서 투자할 수 있는 기회 제공

(2) 개정이유

- 순수 벤처기업의 자본조달을 용이하게 하여 거래소 및 코스닥시장 퇴출기업의 자력회복과 코스닥 상장전 기업을 지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5.8.5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 1. 창업자금 사전상속제도 신설(조특법§30의5 신설)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증여시 증여재산가액에 대해 증여세 과세 <input type="checkbox"/> 상속시 상속전 10년기간중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상속세 과세 * 상속·증여세율 <table style="margin-left: 20px;"> <tr> <td style="text-align: center;">1억원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5</td> <td style="text-align: center;">10</td> <td style="text-align: center;">30</td> <td style="text-align: center;">30억원 초과</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0%</td> <td style="text-align: center;">20%</td> <td style="text-align: center;">30%</td> <td style="text-align: center;">40%</td> <td style="text-align: center;">50%</td> </tr> </table> * 공제액 : 증여시 3천만원 상속시 5억원	1억원 이하	5	10	30	30억원 초과	10%	20%	30%	40%	50%	<input type="checkbox"/> 65세이상의 부모가 30세 이상이거나 결혼한 자녀에게 <input type="checkbox"/> 창업자금을 '07년말까지 증여하는 경우 - 10%의 낮은 세율로 과세하고 상속시 정산 <input type="checkbox"/> 증여재산 : 30억원 한도 <input type="checkbox"/> 부동산·비상장주식 등 양도세 과세대상자산 제외 <input type="checkbox"/> 사전증여재산특별공제 : 5억원 <input type="checkbox"/> 대상업종 : 다음만 제외 ○ 소비성서비스업 ○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등 <input type="checkbox"/> 사후관리 위반시 정상세율(10~50%)로 과세(이자상당액 가산) <input type="checkbox"/> 사전상속특례신청시만 적용
1억원 이하	5	10	30	30억원 초과							
10%	20%	30%	40%	50%							

#### (2) 개정이유

- 출산율 저하, 고령화 진전에 대응하여 젊은 세대로의 부(富)의 조기이전을 촉진하여 경제활력 증진 도모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1.1이후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

<세부내용>

□ 대상자

- 증여자 : 65세이상의 부모
- 수증자 : 30세이상이거나 혼인한 자녀(거주자에 한정)

□ 창업의 범위 : 기업을 새로이 설립(개인·법인 무관)

- 다음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허용
  - 소비성서비스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
  -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내 기업영위업종
- 당해 재산을 증여받아 1년내 창업
  - \* 창업의 범위 제외(조특법§6④)
    - 합병·분할·현물출자,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사업을 승계등
    - 법인전환, 폐업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전 사업과 동종의 사업 영위
    - 사업확장, 업종추가등 새로운 사업 개시로 보기 곤란한 경우
    - 기존사업의 운용자금, 대체설비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 증여재산 : 30억원 한도

- 현금, 채권, 상장주식중 소액주주분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 제외)
  - \* 부동산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은 증여시점까지 발생한 양도소득이 탈루 되는 문제가 있어 제외(증여후 양도시 증여시점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산정)
-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
  - 토지·건물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
  - 주식 또는 출자지분
    - \* 거래소상장법인·코스닥상장법인 주식중 소액주주분(상장: 3% 미만  
과 시가 100억원 미만, 코스닥: 5%미만과 시가 50억원 미만) 제외
  - 영업권, 시설물이용권 등 기타자산

□ 증여시한 : 2007년 말까지

□ 증여세율 : 10%

□ 사전증여재산 특별공제 : 5억원

○ 증여재산공제(직계비속 3천만원) 적용 배제

\* 상속시 일괄공제 : 5억원

□ 정산방법

○ 상속세 납부세액 = [(상속재산가액 + 증여당시 가액) - 상속공제] × 상속세율 - 사전증여세액

□ 사후관리

○ 다음의 경우에는 사후관리 위반으로 증여시점기준으로 정상세율(10~50%) 과세(이자상당액 징수)

\* 이자상당액 :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1일 1만분의3을 곱하여 계산

- 증여후 3년내 증여받은 재산중 창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재산이 있는 경우

· 창업후 3년간 매년 증여받은 재산 투자명세서 제출  
(위반시 가산세 부과 : 미제출하거나 불분명한 증여가액의 3/1000)

- 10년내 창업재산(가치증가분 포함)을 타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업자체를 폐업·휴업하는 경우

· 사망, 부도, 영업상 필요·사업전환을 위한 휴업(2년 한도)등 부득이한 경우 제외

가. 증여대상재산 제외 범위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lt;신 설&gt;</p>	<p><input type="checkbox"/> 증여대상재산 제외 범위</p> <p>○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p> <p>- 토지·건물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p> <p>- 주식·출자지분 : 거래소·코스닥상장법인 주식중 소액주주분* 제외</p> <p>* 상장 : 3%미만과 시가 100억원미만 코스닥 : 5%미만과 시가 50억원미만</p> <p>- 영업권, 시설물이용권 등 기타자산</p>

(2) 개정이유

- 부동산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은 증여시점까지 발생한 양도소득이 탈루되는 문제가 있어 제외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1.1이후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

나. 창업으로 보지 않는 범위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lt;신 설&gt;</p>	<p><input type="checkbox"/>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후 1년내 창업</p> <p>○ 다음은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합병·분할·현물출자, 사업의 양수를 통한 종전사업 승계</li> <li>- 법인전환, 폐업후 다시 개시 하거나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li> <li>- 사업확장, 업종추가등 새로운 사업 개시로 보기 곤란한 경우</li> <li>- 기존사업의 운용자금, 대체설비 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li> </ul> <p><input type="checkbox"/> 창업자금 증여받은 후 3년내 당해 목적에 모두 사용</p>

(2) 개정이유

실질적인 창업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는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

\*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의 창업제외(조특법 §6④) 참조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6.1.1이후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

다. 창업자금 사용내역서 제출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input type="checkbox"/> 창업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창업자금사용내역서 제출 <input type="checkbox"/> 미제출·불분명시 창업자금 사용명세서미제출가산세 부과 - 미제출·불분명제출 금액 × 1천분의 3
<신 설>	<input type="checkbox"/> 창업자금사용내역서 제출일 <input type="checkbox"/> 창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input type="checkbox"/> 창업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매 과세연도 과세표준신고기한 * 창업자금사용내역서 기재내용 증여받은 창업자금내역, 사용내역, 사용관련 증빙 등

(2) 개정이유

- 창업자금이 창업에 사용되었는지 사후관리를 위한 확인 절차 필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1.1이후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

라. 창업자금 사후관리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input type="checkbox"/> 창업제외 대상 업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비성서비스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 제외)</li> <li>-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에 의한 단란주점영업, 관광진흥법에 의한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 제외)</li> <li>-무도장운영업, 도박장운영업(폐광지역 카지노 제외), 의료행위가 아닌 안마업</li> </ul> </li> <li>○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li> <li>○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내 기업영위업종</li> </ul>
<신 설>	<input type="checkbox"/> 창업후 10년내 폐업이나 추징하지 아니하는 폐업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증자 사망으로 인한 폐업</li> <li>○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폐업</li> </ul>

<p>&lt;신 설&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창업이후 영업상 또는 사업전환을 위하여 1회에 한하여 2년내 일시 휴·폐업</li> <li>□ 사후관리 위반으로 추징시 이자상당액 가산</li> <li>○ 증여세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추징사유 발생일까지 1일 1만분의 3</li> </ul>
--------------------	---

(2) 개정이유

- 창업자금으로 창업할 수 없는 업종 규정
- 창업후 10년내 폐업이나 추징에서 제외하는 폐업범위 규정
- 사후관리 위반으로 추징시 이자상당액 산정기준 마련

\* 중소기업투자준비금, 문화사업준비금 추징시의 이자상당액 산정 기준 감안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1.1이후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

마. 기타 절차규정 신설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lt;신 설&gt;</p>	<p><input type="checkbox"/> 증여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창업자금 특례신청서를 제출</p> <p>* 창업자금 특례신청서 및 사용내역서</p> <p>○ 창업자금 특례을 기한내에 하지 않은 경우 사전상속 특례 미적용</p>

(2) 개정이유

창업자금 사전상속제도 관련 절차규정 신설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6.1.1이후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

## 2. 지방청 단위의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 설치(상증영 §56의2)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 ○ 설치 : 국세청 - 구성 : 3·4급 1인, 민간위원 10인 - 기능 : 납세자가 신청한 보충적 평가방법의 적정성 여부심의	<input type="checkbox"/> 국세청위원회 구성·기능변경 - 구성 : 3·4급 3인, 민간위원 9인 - 기능 : 지방청위원회의 심의결정 평가, 평가방법 및 기준에 관한 제도개선사항 등을 추가 * 기능변경은 지방청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 한함  <input type="checkbox"/> 지방청위원회 설치 허용 - 구성 : 3·4급 2인(본청 1, 지방청 1), 민간위원 5인(본청위원 3, 지방청위원 2) - 기능 : 현행 국세청위원회 기능 수행

### (2) 개정이유

- 비상장주식 평가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통한 효율성 및 납세자 편의 제고를 위해
  - 각 지방청별로 심의위원회 설치근거 신설
- 각 지방청위원회의 위원 7명중 4명을 본청위원으로 구성토록 하여 지방청간 평가의 일관성과 형평성 유지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공포일 이후 평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3. 감정평가수수료 공제 확대(상증영 §20의2)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는 납세자의 부담으로 신용평가기관에 주식평가를 의뢰할 수 있음  <input type="checkbox"/> 감정평가수수료는 ○ 평가된 가액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 1,000만원 한도에서 공제인정	○ 평가된 가액으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 평가대상법인 수, 의뢰기관 수별로 각 1,000만원 한도에서 공제인정

#### (2) 개정이유

- 납세자가 부담하는 주식감정평가수수료는 비상장주식평가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신용평가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 평가가액이 상속·증여재산가액으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그 비용을 상속·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허용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공포일 이후 최초로 평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4. 경매·공매시 시가로 인정되는 범위 개선(상증영§49①3.)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 평가기간(평가기준일 전후 6월, 증여의 경우 3월)내 당해 재산에 대한 수용·경매·공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보상가액·경매가액·공매가액을 시가로 인정</p> <p>○ 다음은 시가에서 제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물납재산을 특수관계자가 공매받은 경우</li> </ul> <p style="padding-left: 40px;">&lt;추 가&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액의 비상장주식을 경매·공매받은 경우</li> <li>*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1미만 또는 액면가액이 3억원 미만 소유</li> <li>- 수의계약으로 경매·공매받은 경우</li> </ul>

(2) 개정이유

- 물납재산을 공매를 통하여 저가 인수한 후 그 취득가액을 시가로 인정 받아 증여하는 방법으로 증여세를 회피하는 사례방지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공포일 이후 최초로 경매·공매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 국제조세(비거주자·외국법인) 관련

# [국제조세(비거주자·외국법인) 관련]

## 【개정된 주요내용】

### I. 소득세법·법인세법 중 국제조세 관련

1. 간주배당금액을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명확화
2.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범위 명확화
3. 전문인적용역에 대한 과세제도의 개선
4.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면제
5. 비거주자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방법 보완
6. 조세회피지역에 소재하는 펀드 등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규정
7. 소득세법 관련 기타사항
8. 내국법인 판정기준 보완
9. 국내간접투자기구를 통한 해외투자시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의 개선
10. 법인세법 관련 기타사항

### II. 조세특례제한법 중 국제조세 관련

1. 외화표시채권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대상 범위 조정
2. 증자에 대한 조세감면 신청절차 간소화
3.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대상업종 추가
4.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추징제도 개선
  - 가. 감면세액 추징방법 개선
  - 나. 법인세등의 추징방법 추가
  - 다. 감면세액 추징 면제대상 추가
  - 라. 감면세액 추징 면제절차 명시
5. 조세감면기간 조문 명확화

**【법률·영·규칙 개정일자】**

- 소득세법 : 제7837호(2005.12.31.)
- 소득세법시행령 : 제19327호(2006.2. 9.)
- 소득세법시행규칙 : 제503호(2006.4.10.)
- 법인세법 : 제7838호(2005.12.31.)
- 법인세법시행령 : 제19328호(2006.2. 9.)
- 법인세법시행규칙 : 제497호(2006.3.14.)
- 조세특례제한법 : 제7839호(2005.12.31.)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제19329호(2006.2. 9.)

# I. 소득세법·법인세법 중 국제조세 관련

## 1. 간주배당금액을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명확화(소득법 §17)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input type="checkbox"/> 배당소득(소득세법§17 열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1호)</li> <li>○ 단체로부터 받은 배당 또는 분배금(2호)</li> <li>○ 의제배당 등(3호~7호)</li> </ul> <p style="text-align: center;">&lt;신 설&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조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소득도 배당소득범위에 추가</li> </ul>

### (2) 개정이유

- 현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배당소득으로 취급하였으나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의 범위에 명확히 규정
- \* 국조법 17조 : 내국법인이 해외조세피난처에 자회사를 설립하여 그곳에 소득을 유보하는 경우 동 유보소득을 내국법인에 배당한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제도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1.1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범위 명확화(소득법 §119.2호, 법인법 §93.2호)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input type="checkbox"/> 소득세법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p> <p>○ 국조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해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p> <p><input type="checkbox"/> 법인세법 제93조(국내원천소득)</p> <p>○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규정하는 배당소득 및 국조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해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p> <p>*국조법§9 :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으로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이전된 소득이 내국법인에게 반환되지 않는 경우 배당으로 처분</p>	<p>○ 국조법 제9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해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p> <p>* 국조법§14 : 내국법인이 국외 지배주주로부터 출자지분의 3배를 초과하여 차입한 경우 초과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국외지배주주에게 배당한 것으로 취급하고, 동 금액은 내국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함</p>

(2) 개정이유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배당소득으로 취급하던 것을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범위에 명확히 규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1.1이후 최초로 배당으로 처분되는 분부터 적용

3. 전문인적용역에 대한 과세제도의 개선(소득법§119.6호, §121⑤, 소득령§179⑦, 법인법 §93.6호, 법인령§132⑦)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input type="checkbox"/>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의 전문인적용역 소득에 대한 과세</p> <p>○ 총지급액에 대하여 분리과세 (지급금액의 20%)</p> <p>* 전문인적용역 : 개인 또는 법인이 제공하는 기술지원·경영자문등의 용역</p>	<p>○ 총지급액에서 항공료·숙박비 또는 식사대(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항공회사 등에 직접 지불한 비용에 한함)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p> <p>- 비거주자는 본인이 선택하는 경우 종합소득으로 신고 가능</p>

(2) 개정이유

- 비거주자(외국법인 포함)의 인적용역 제공 대가에 대한 과세시 과세소득에서 인적용역을 제공받은 자가 인적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 항공회사·숙박업자 또는 음식점자에게 직접 지불한 항공료·숙박비 또는 식사대를 차감하도록 하여
  - 국제적 과세기준에 맞도록 하는 한편 납세편의 제고
  - 또한, 비거주자의 경우 본인이 선택하는 때에는 종합과세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세부담 완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2.9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4.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면제(소득법§156①)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비거주자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수자가 비거주자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원천징수  <input type="checkbox"/> 양도차익의 25% 또는 양도금액의 10%중 적은 금액	<input type="checkbox"/> 비거주자가 양도소득세를 미리 납부하였거나 비과세 또는 과세미달되는 것임을  <input type="checkbox"/> 관할세무서장이 발행한 확인서를 통하여 입증하는 경우 원천징수 면제

##### (2) 개정이유

비거주자가 인감증명 발급시 미리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양수자가 다시 원천징수하는 것은 이중과세하는 것이므로

\* 재외국민이 부동산 매도용으로 인감증명 발급시 경유하는 부동산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의 안내에 의하여 미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단서규정)

비거주자가 예정신고·납부하였다는 사실 또는 과세미달·비과세된다는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서를 양수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원천징수 면제

\* 현재는 국세청의 집행지침에 따라 양수자의 원천징수 면제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6.2.9이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

5. 비거주자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방법 보완(소법§156의3 신설)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input type="checkbox"/> 비거주자의 채권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p> <p>○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예:10%) 적용</p>	<p>○ 비거주자가 채권보유기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p> <p>-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조세조약에서 정한 제한세율(예:10%)과 국내원천징수세율(14%)을 비교하여 높은세율을 적용</p> <p>* 현행 법인세법 제98조의3과 동일</p>

(2) 개정이유

- 현재는 비주거자에게 채권등의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조세조약에서 정한 제한세율(예:10%)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도록 되어 있어
- 최종보유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비거주자가 보유하지 않은 기간 까지도 낮은 제한세율을 적용하려는 사례가 발생하므로
- 비거주자가 채권 보유기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조세조약에서 정한 세율(예:10%)과 국내 원천징수세율(14%)을 비교하여 높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2.9이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

6. 조세회피지역에 소재하는 펀드 등에 대한 원천징수특례 규정 신설(소득법§156의4, 법인법§98의5 신설)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lt;신 설&gt;</p>	<p><input type="checkbox"/> 국내법인이 재경부장관이 정하는 조세회피 지역에 소재한 외국기업에게 투자소득(배당, 이자, 주식양도소득 등)을 지급하는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선 국내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한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득수취자가 3년 이내 과세관청에 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갖춰 경정청 구하는 경우 6월 이내 해당 조세조약을 적용하여 기납부세액을 환급</li> </ul> </li> <li>○ 다만, 국세청에 사전 신고하여 승인을 받은 외국기업의 경우는 처음부터 조세조약을 적용할 수 있도록 예외 허용</li> </ul> <p><input type="checkbox"/> 사전승인 신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세청장에게 원천징수특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약상대국에서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li> <li>- 법인 또는 단체의 설립신고서 및 정관 사본</li> <li>- 이사회 구성원의 성명 및 주소</li> <li>- 주주의 인적사항 및 지분현황</li> <li>- 법인 또는 단체의 종업원 수 및 각 종업원별 업무분장</li> </ul> </li> </ul>

종 전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국내원천소득을 얻기 위한 투자와 관련된 경제적 또는 영업상 동기에 대한 설명서</li> <li>- 해당 국내원천소득을 얻기 위한 투자자금 조달방법</li> <li>- 해당 국내원천소득 수령 후의 처분명세서 또는 그 계획서</li> <li>- 최근 3개년도 체약상대국의 세무당국에 제출한 세무신고서·감사보고서·재무제표 및 부속서류</li> <li>- 체약상대국 유가증권시장에의 상장등록 사항 및 그시장에서 정규적인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li> <li>- 연금·기금의 수혜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li> <li>- 체약상대국의 금융당국이 규율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해당 투자회사등의 투자자의 그 주식 또는 지분보유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li> </ul> <p>□ 사전승인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일부터 3월 이내 조세조약상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자로 사전승인</li> <li>- 소득수취법인이 실질귀속자에 해당하고 체약상대국의 법인인 경우</li> </ul>

종 전	개 정
	<p>* 실질귀속자 : 소득과 관련하여 법적 또는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고 동 소득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등 동 소득에 대한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득수취법인이 체약상대국의 정부기관 등(공공기관 포함)에 해당하는 경우</li> <li>- 소득수취법인의 발행주식이 체약상대국의 법령에 의해 인정되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정규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li> <li>- 소득수취법인의 발행주식총수(지분을 포함한다)의 100분의50 이상이 체약상대국의 개인·정부기관등 또는 상장법인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되는 법인인 경우</li> <li>- 소득수취법인이 체약상대국의 연금·기금 또는 그와 유사한 단체인 경우에는 동 연금·기금 또는 단체로부터 수혜를 받는 자의 100분의 50 이상이 체약상대국의 거주자인 경우</li> <li>- 소득수취법인의 최근 3개년 동안 수입금액 중 주식·채권의 보유나 양도 또는 무형자산의 사용이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최근 3개년 수입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10 이하인 법인인 경우</li> </ul>

종 전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득수취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투자회사 기타 이에 준하는 단체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자회사등의 사업활동의 투명성과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계약상대국의 금융당국이 동 투자회사 등을 규율하고 있을 것</li> <li>· 투자회사등에 참여하는 투자자가 직전 과세연도 일평균 100명 이상일 것</li> </ul> </li> <li>- 소득수취법인이 당해 소득에 대하여 부담한 세액이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과 해당국과의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된 세액과의 차익의 100분의 50 이상이 되는 경우</li> </ul> <p>□ 사전승인 신청내용에 대한 보정요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전승인신청 내용에 대하여 보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문서로 보정요구</li> <li>- 보정기간은 승인기간(3월)에 불산입</li> </ul> <p>□ 사전승인 취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기재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사전승인을 취소</li> </ul>

종 전	개 정
	<p><input type="checkbox"/> 경정청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정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전승인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 경정을 청구</li> </ul> <p><input type="checkbox"/> 경정청구 내용에 대한 보정요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전승인신청 내용에 대하여 보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문서로 보정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정기간은 경정기간(6월)에 불산입</li> </ul> </li> </ul> <p><input type="checkbox"/> 경정청구에 대한 경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정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국내원천소득의 소득수취자가 실질귀속자에 해당하는 등 사전승인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경정결정</li> </ul>

(2) 개정이유

- 재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가 또는 지역에 소재하는 펀드등이 조세조약을 이용하여 조세회피(treaty shopping)하는 행위를 방지

※ 원천징수에 대한 OECD입장

- 조세조약 체결국은 조세조약에서 정하는 소득발생지국의 과세제한을 적용하기 위해 자국 국내법에서 정하는 절차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음(OECD모델 조세조약 제1조에 대한 주석서 제26.2문단)

※ 유사제도 도입국가 : 독일, 미국, 캐나다, 스위스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7.1이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

## 7. 소득세법 관련 기타사항

### 가. 사모투자신탁의 투자자인 비거주자와의 국외특수관계자 범위 조정(소득령 §23)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 사모투자신탁의 투자자가 거주자1인, 거주자1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만 이루어진 경우 소득의 발생원천별로 소득구분</p> <p>○ 거주자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특수관계</p> <p>○ 비거주자·외국법인과 국조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국외지배주주)</p> <p>*국조법시행령 제3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국법인의 주식 50%이상 직접·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외국주주</li> <li>- 위의 외국주주가 주식의 50%이상을 직접·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외국법인</li> <li>- 사업방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외국주주</li> </ul>	<p>○ 현행과 동일</p> <p>○ 특수관계 범위 조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거주자와 그의 배우자·직계혈족 및 형제자매</li> <li>- 일방이 타방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 이상을 직접·간접 소유하는 관계</li> <li>- 제3자가 일방 또는 타방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 이상을 직접·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일방과 타방간의 관계</li> </ul>

(2) 개정이유

- 현행 규정은 비거주자·외국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다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간의 특수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명확히 규정하되
- 특수관계의 범위를 현실적으로 파악이 가능한 비거주자와 그의 배우자·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또는 주식을 통한 지배관계로 한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2.9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나. 비거주자의 유가증권 양도시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수입금액을 조정하는 특수관계의 범위 합리적 개선(소득령 §183의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input type="checkbox"/>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특수관계 있는 비거주자(외국법인 포함)와 유가증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산정</p> <p>○ 특수관계의 범위 : 국조법 제2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p> <p>*국조법 제2조제1항제8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방이 타방의 주식 50%이상 직접·간접으로 소유</li> <li>- 제3자가 쌍방의 주식 50%이상 직접·간접으로 소유시 쌍방관계</li> <li>- 사업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관계</li> <li>-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는 관계</li> </ul>	<p>○ 특수관계의 범위 조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거주자와 그의 배우자·직계혈족 및 형제자매</li> <li>- 비거주자가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관계</li> </ul>

(2) 개정이유

-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간의 특수관계를 판정함에 있어
- 현실적으로 파악이 가능한 비거주자와 가족관계, 주식을 통한 지배관계로 한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2.9이후 최초로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다. 자본거래로 인한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범위 명확화  
(소득령 §179<sup>⑮⑯</sup>)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 내국법인의 주주인 비거주자가 특수관계 있는 자와</p> <p>○ 자본거래로 인하여 소득이 증가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p> <p>○ 특수관계의 범위 : 국조법 제2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p>	<p>○ 특수관계가 있는 다른 주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에 대하여 과세함을 명확히 함</p> <p>○ 특수관계의 범위 명확화</p> <p>-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p> <p>-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소득령 제23조제7항제1호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p>

(2) 개정이유

- 자본거래로 인하여 그 가치가 증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라함은 특수관계가 있는 다른 주주등으로부터 분여받아 이익이 발생한 소득임을 명확히 하고
- 주주인 비거주자가 특수관계 있는 거주자뿐만 아니라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주주로부터 분여받는 이익에 대하여도 과세됨을 명확히 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2.9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라. 조문정리(소득세법 시행령)

종 전	개 정
<p>제102조(채권등의 범위 등)            ⑤법 제46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이자상당액(이하 이 조에서 “<u>보유기간이자상당액</u>”이라 한다)</p>	<p>제102조(채권등의 범위 등)            ⑤법 제46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이자상당액(이하 이 조 및 제207조의3에서 “<u>보유기간이자상당액</u>”이라 한다)</p> <p>* 신설규정인 제207조의3(비거주자의 채권등의 이자등에 대한 원천징수특례)에서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문정리</p>
<p>제216조의2(비거주자의 지급조서 제출의무특례) ①</p> <p>3. 법 제119조제3호·제9호 및 제10호의 국내원천소득</p> <p>제216조의2(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의무 특례)</p> <p>⑤제출기한 : 다음연도 2월말</p>	<p>제216조의2(비거주자의 지급조서 제출의무특례) ①</p> <p>3. 법 제119조제3호 및 제10호의 국내원천소득</p> <p>*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규정이 신설('03년말)되었으므로 지급조서를 제출하도록 함</p> <p>제216조의2(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의무 특례)</p> <p>&lt;삭 제&gt;</p> <p>* 소득세법 제164조의2로 규정 ('03.12.30 신설)</p>

## 8. 내국법인 판정기준 보완(법인법§1①, §9)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내국법인의 정의  ○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 <신 설>	<input type="checkbox"/> 내국법인 판정기준 추가 (① 또는 ②) ① 현행과 동일  ② <u>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Place of effective management)를 둔 법인</u>
<input type="checkbox"/> 납세지 ○ 본점·주사무소의 소재지	<input type="checkbox"/> 납세지 ○ 본점·주사무소 또는 <u>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국내에 본점·주사무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함)의 소재지</u>

### (2) 개정이유

-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라 하더라도 국내에서 실제로 관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내국법인으로 봄
  - \* 실질적 관리장소란 “법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중요한 관리와 상업적 결정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를 의미
- 우리나라가 체결한 대부분의 조세조약에서 거주자의 최종 판정기준으로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 현행 국내세법의 내국법인 판정기준에 동기준을 포함하여 조세조약과의 균형유지
- 영국·호주·프랑스·독일 주요 선진국에서도 동 기준 채택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9. 국내간접투자기구를 통한 해외투자시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의 개선(법인법§57조의2, 법인령§94의2)

(1)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안
<p>&lt;신 설&gt;</p>	<p>□ 간접투자기구(투자신탁, 투자회사)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공제(환급)</p> <p>○ 공제(환급) 방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해 소득에 대하여 국내 원천징수세율(14%)로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li> <li>- 법인세액에서 공제하고 공제세액이 법인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환급</li> </ul> <p>○ 공제(환급) 신청금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해 사업연도(회계기간)의 외국납부세액 합계액에 환급비율*을 곱한 금액</li> </ul> <p>* 환급비율 :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중 과세대상소득금액)을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중 국외원천과세대상소득금액)으로 나누어 구한 비율</p> <p>○ 공제(환급) 신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자회사등은 법인세 신고시 외국납부세액계산서 제출</li> <li>- 투자신탁은 결산시 외국납부세액환급신청서 및 외국납부세액계산서 제출</li> </ul>

## (2) 개정 이유

□ 내국인이 직접 해외투자를 하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하나

○ 간접투자기구(투자신탁·투자회사)를 통하여 해외투자한 경우에는

- 간접투자기구단계에서도 외국납부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고 투자자단계에서도 공제받지 못하여 이중과세문제가 발생하고 직접투자와 과세불형평 문제

① 간접투자기구 단계에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이유

- 투자신탁(계약형 신탁)의 경우 법인세법상 실체가 없는 도관으로서 법인세 납부의무가 없어 외국납부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
- 투자회사(회사형 신탁)의 경우 투자자에게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 배당을 하면 전액 배당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게 되므로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게 됨

② 투자자 단계에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이유

- 투자신탁(계약형 신탁)의 경우 개별투자자별로 외국납부세액을 구분계산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공제불가
- 투자회사(회사형 신탁)의 경우 외국에 세금을 납부한 것은 법인인지 투자자가 아니므로 공제불가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 간접투자기구의 외국납부세액은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되 납부할 세액이 없어 공제세액이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환급해 주는 제도를 도입

□ 다만, 펀드가 해외 과세대상 원천소득외의 다른 투자자산에서 손실이 발생하여 해외원천소득이 잠식되는 경우에는

- 개별 투자자의 배당소득이 감소하거나 없는 경우가 되어 전체 해외원천소득에 대하여 국내와 국외에서 이중과세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부분만큼은 환급세액에서 제외

$$\diamond \text{ 환급세액} = \text{외국납부세액}^{1)} \times \left( \frac{\text{당해사업연도 소득금액중 과세대상소득금액}}{\text{당해사업연도 소득금액중 국외원천 과세대상소득금액}} \right)^{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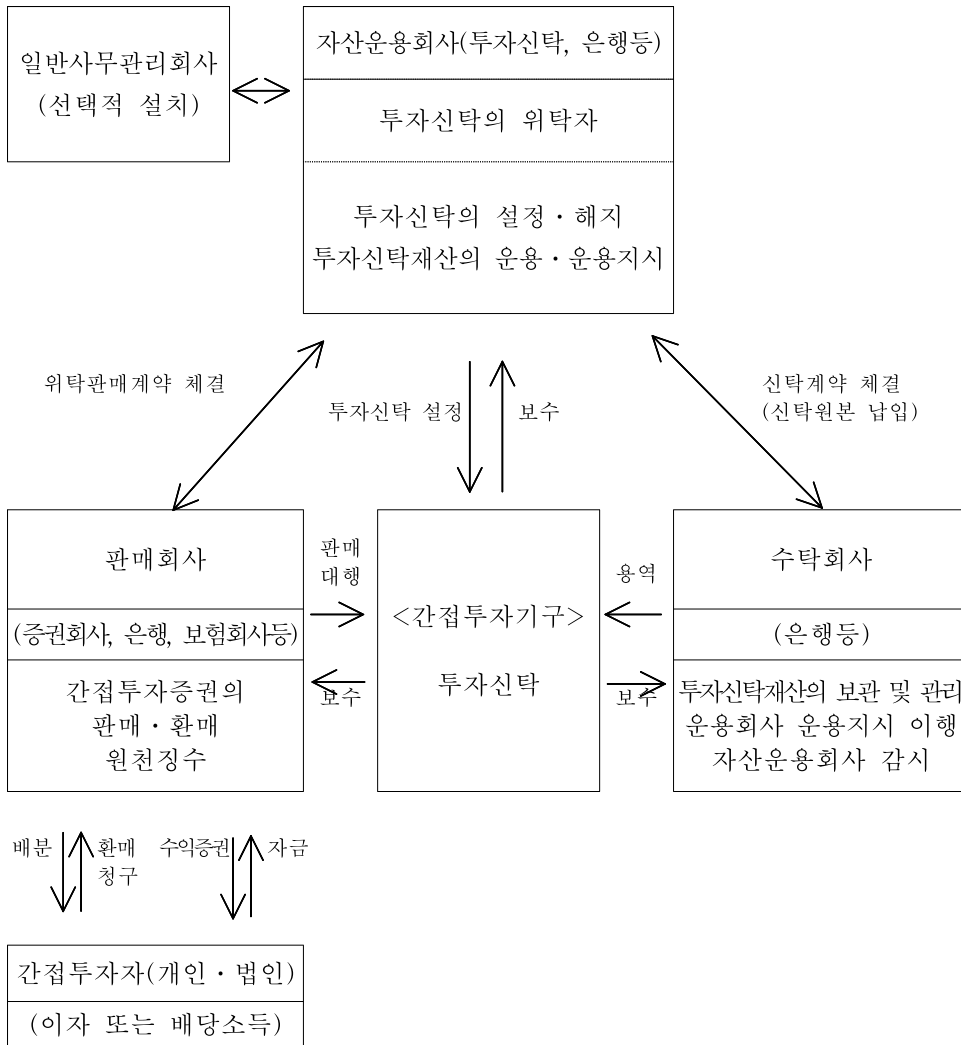
- 1) 국외 소득별로 계산(14% 한도 적용)한 외국납부세액 합계액
- 2) 환급비율 :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하며,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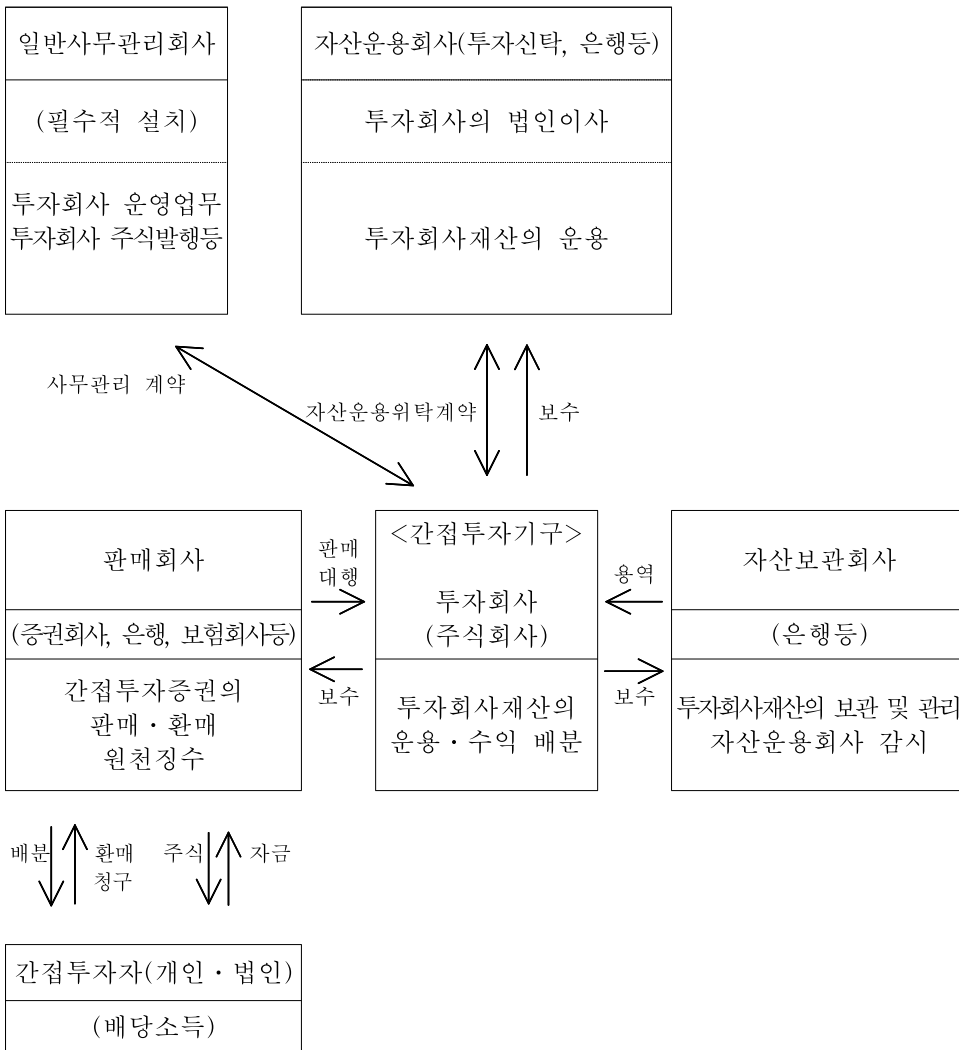
- 2006.2.9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 참고 > 간접 투자기구 개관

### ① 투자신탁



## ② 투자회사



## 10. 법인세법 관련 기타사항

### 가. 이전가격 과세조정에 대한 가산세 완화(법인령 §118④)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부당과소신고금액의 범위에 <input type="checkbox"/> <u>이전가격 과세조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금액 포함</u> * 부당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는 산출세액의 <u>20%</u> 가산세 부과	<삭 제>  * 일반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는 산출세액의 <u>10%</u> 가산세 부과

#### (2) 개정이유

- 이전가격 조정은 국가간의 과세권 조정을 위해 내국법인과 해외 특수관계자간 거래가격을 재계산하는 규정으로
  -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과는 다름
- 국조법 제13조에서도 상호합의결과 납세의무자의 과실이 없다고 확인되는 경우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 이전가격 과세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한 금액에 대해서도 일반과소 신고가산세(10%)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2.9이후 익금에 산입하는 분부터 적용

나.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시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수입금액을 조정하는 특수관계의 범위 합리적 개선(법인령 §131②④)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input type="checkbox"/>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u>특수관계 있는 외국법인(비거주자 포함)과 유가증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산정</u></p> <p>○ 특수관계의 범위 : 국조법 제2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p> <p>*국조법 제2조제1항제8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방이 타방의 주식 50%이상 직접·간접으로 소유</li> <li>- 제3자가 쌍방의 주식 50%이상 직접·간접으로 소유시 쌍방관계</li> <li>- 사업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관계</li> <li>-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는 관계</li> </ul>	<p>○ 특수관계의 범위 조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방이 타방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 이상을 직접·간접 소유하는 관계</li> <li>- 제3자가 일방 또는 타방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 이상을 직접·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일방과 타방간의 관계</li> </ul>

(2) 개정이유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간의 특수관계를 판정함에 있어
- 외국법인간 사업방침의 실질적으로 지배하는지 여부를 판정하기 어려우므로 주식을 통한 지배관계로 한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2.9이후 최초로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다. 자본거래로 인한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범위 명확화  
(법인령 §132⑬⑭)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input type="checkbox"/> 내국법인의 주주인 외국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와</p> <p>○ 자본거래로 인하여 소득이 증가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p> <p>○ 특수관계의 범위 : 국조법 제2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p>	<p>○ 특수관계가 있는 다른 주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에 대하여 과세함을 명확히 함</p> <p>○ 특수관계의 범위 명확화</p> <p>-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p> <p>-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법인령 제131조제2항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p>

(2) 개정이유

- 자본거래로 인하여 그 가치가 증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라함은 특수관계가 있는 다른 주주등으로부터 분여받아 이익이 발생한 소득임을 명확히 하고
- 주주인 외국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거주자뿐만 아니라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주주로부터 분여받는 이익에 대하여도 과세됨을 명확히 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라. 조문정리

종 전	개 정
<p>&lt;법인세법&gt;</p> <p><input type="checkbox"/> 제92조(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p> <p>○ <u>조특법 제135조 내지 제138조</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35(차입금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li> <li>· §136(접대비의 손금불산입 특례)</li> <li>· §137(소비성서비스업 광고선전비의 손금불산입)</li> </ul>	<p>○ 조특법 제138조</p> <p>* 조특법 제135조 내지 제137조 삭제에 따른 조문정리</p>
<p>&lt;법인세법 시행령&gt;</p> <p>제2조제1항</p> <p>2의2. -----</p> <p>-----<u>비영리외국법인</u></p>	<p>2의2. -----</p> <p>-----<u>비영리외국법인(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u></p> <p>*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외국에 소재하더라도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으면 내국법인에 해당하도록 법 제1조 개정에 따른 조문정리</p>

종 전	개 정
<p>제7조(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p> <p>2.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의 <u>본점 또는 주사무소</u></p>	<p>2. ----- -----<u>본점·주사무소 또는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u></p> <p>*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외국에 소재하더라도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으면 내국법인에 해당하도록 법 제1조 개정에 따른 조문정리</p>
<p>제113조</p> <p>②---(이하 <u>이 조 및 제114조의2</u>에서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이라 한다)</p>	<p>②-----(<u>이하 이 조·제114조의2 및 제138조의3</u>에서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이라 한다)</p> <p>* 제138조의3(외국법인의 채권등의 이자등에 대한 원천징수특례)에서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문정리</p>
<p>제137조</p> <p>④----<u>본점·주사무소 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u></p>	<p>④----<u>본점·주사무소·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u></p> <p>* 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없더라도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원천징수하여야함</p>

종 전	개 정
<p>제138조의3</p> <p>①----<u>당해 채권등에 대한 이자상당액은 당해 외국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며,</u> ----- ---<u>당해 외국법인이 당해 채권등을 이자등의 지급일에 매입한 것으로 본다</u></p> <p>1. <u>당해</u>-----</p>	<p>①----<u>지급금액 전액을 당해 외국법인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으로 보며,</u>-----  ---<u>당해 외국법인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u></p> <p>1. <u>지급금액 중 당해</u>-----</p> <p>* 단순조문정리</p>
<p>제138조의4</p> <p>⑥----<u>본점·주사무소 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u></p>	<p>⑥----<u>본점·주사무소·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u></p> <p>* 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없는 경우 소득수령자가 직접 비과세·면제신청서 제출</p>
<p>제162조의2 ①제출의무 면제</p> <p>3. <u>법 제93조제3호·제7호 및 제8호의 국내원천소득</u></p>	<p>3. <u>법 제93조제3호 및 제8호의 국내원천소득</u></p> <p>* 외국법인의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규정이 신설('03년말)되었으므로 지급조서를 제출하도록 함</p>

## II. 조세특례제한법 중 국제조세 관련

### 1. 외화표시채권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대상 범위 조정(조특령 §18①)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다음의 국제금융거래 소득에 대한 법인세등 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지자체·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 및 수수료</li> <li>○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외화채무에 대한 이자 및 수수료</li> <li>○ 금융기관이 국외에서 발행 또는 매각하는 외화표시어음과 외화예금증서의 이자 및 수수료</li> </ul>	(좌 동)
<input type="checkbox"/> 면제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거주자·외국법인</li> <li>○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예 : 국내금융기관의 해외지점)</li> </ul>	○ (현행과 같음)  <삭 제>

#### (2) 개정이유

- 외환보유액 및 거주자의 외화채권 투자액 증가 등 경제 환경 변화에 따라
  - 원활한 외화조달을 목적으로 한 외화채권 이자소득에 대한 조세지원 필요성 저하

- \* 외환보유액 : 741억달러('99) → 962 " ('00) → 1,028 " ('01) → 1,214 " ('02) → 1,554 " ('03) → 1,991 " ('04) → 2,073 " ('05.10말)
- \* 거주자 외화채권 투자액 : 67억달러('01) → 83 " ('02) → 106 " ('03) → 142 " ('04)

□ 비거주자나 외국법인과는 달리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이 보유한 외화는 어차피 국내에 송금될 자금이므로 신규 외화의 유입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 내국법인의 절세수단으로 악용 가능성이 있어 이를 차단하고, 원화표시채권이자소득에 대한 과세와의 형평성 유지

- \* 1999년 이후 거주자 및 내국법인 면제대상에서 제외 (1998.12.28,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5584호)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2.9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 2. 증자에 대한 조세감면 신청절차 간소화(조특법 §121의2, §121의4)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input type="checkbox"/> 외국인투자 신고후 조세감면 결정을 받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세감면결정 금액 범위내에서 순차적으로 증자하는 경우</li> <li>○ 증자시마다 조세감면 결정을 받아야 함</li> </ul> <p style="text-align: center;">&lt;신 설&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세감면 결정통지일로부터 3년이내의 증자분에 대하여는 조세감면신청 및 결정 면제</li> <li>○ 외국인투자 신고후 최초의 조세감면결정통지일부터 3년 이내에 최초의 출자(증자 포함)가 없는 경우 조세감면 결정 효력 상실</li> </ul>

### (2) 개정이유

- 외국인투자 신고후 조세감면 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를 하는 경우
  - 증자시마다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 결정을 받도록 되어 있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여 외국인 투자 활성화 지원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1.1이후 최초로 증자하는 분부터 적용

### 3.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대상 업종 추가(조특령 §116의2⑤)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투자기업에 3년간 100%, 2년간 50% 법인세등 감면</p> <p>○ 감면 대상 업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조업(1천만불 이상 투자시)</li> <li>- 관광업(1천만불 이상 " )</li> <li>- 물류업(5백만불 이상 " )</li> </ul> <p style="text-align: center;">&lt; 신 설 &gt;</p>	<p>○ 감면 대상업종 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의료기관</li> </ul> <p>· 투자금액 : 5백만불 이상</p>

#### (2) 개정이유

-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 유치 활성화
  - 경제자유구역에 대규모 외국병원 입주시 생활기반시설 확충에 따라 외국인투자자에게 적합한 투자환경 조성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2.9이후 최초로 외국인투자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

#### 4.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추징제도 개선

##### 가. 감면세액 추징방법 개선(조특법 §121조의5①, 조특령 §116의7)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 과세관청이 추징</p> <p>- 추징방법 신설</p> <p>※ 추징사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등록말소</li> <li>· 주식을 내국인(법인)에게 양도시</li> <li>· 폐업 등</li> </ul> <p style="text-align: center;">&lt;신 설&gt;</p>	<p>○ 추징사유 발생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징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시</li> <li>· 추징세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법인세로 신고·납부하도록 함</li> </ul> <p>- 이자상당 가산액 : 1일 3/10,000</p> <p>- 가산기간 :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의 다음날부터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일</p>

###### (2) 개정이유

- 감면대상 외국인투자기업에 감면세액의 추징사유가 발생시

\* 예) 경제자유구역 입주 제조기업 : 1,000만불(최초 투자액)  
→ 200만불 감자

- 직전 5년 이내의 감면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자진 신고·납부하도록 하여
  - 기간의 이익만 회수하도록 하되 납부의무 미이행시에는 가산세를 가산하여 추징
- 추정시 감면세액에 부가되는 이자상당액 계산방법 규정하고
- 이자상당가산액의 가산기간을 구체적으로 규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1.1이후 최초로 추정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나. 법인세등의 추정방법 추가(조특령 §116조의7①)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input type="checkbox"/> 외국인투자신고후 3년이내에 출자목적물의 납입 및 차관의 도입이 조세감면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추정 (법§121조의5제1항제6호)</p> <p style="text-align: center;">&lt;신 설&gt;</p>	<p>○ 추정세액 계산방법</p> <p>- 추정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p>

(2) 개정이유

- 추정세액 계산방법 명확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1.1이후 최초로 추정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다. 감면세액 추징 면제대상 추가(조특령 §116조의10 신설)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 조세감면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여 추징하지 아니하는 경우</p> <p>○ 다음 개발사업시행자의 개발사업 완료 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시행자</li> <li>- 제주투자진흥지구개발사업시행자</li> </ul> <p style="text-align: center;">&lt;신 설&gt;</p>	<p>○ 다음의 개발사업시행자 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도시개발사업시행자</li> </ul>

(2) 개정이유

- 기업도시 개발사업시행자의 경우
  -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시행자 등과 동일하게 단기간의 개발사업을 완료한 이후에는 당해 개발사업을 진행한 법인을 청산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 법인해산으로 추징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개발사업이라는 조세감면의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보아 추징 면제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2.9이후 최초로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라. 감면세액 추징 면제절차 명시(조특령 §116조의10③)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input type="checkbox"/> 다음의 경우 추징 면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투자자가 대한민국국민에게 주식등을 양도한 경우로서 재경부장관이 주무부장과 협의하여 인정한 경우</li> <li>- 고도기술사업등 생산제품을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li> <li>- 법령·정부시책에 따라 양도한 경우로 인정한 경우</li> </ul> <p style="text-align: center;">&lt;신 설&gt;</p>	<p><input type="checkbox"/> 주식등 양도일부터 2월이내 재경부장관에게 추징면제 신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경부장관은 30일 이내(30일 이내 연장 가능) 추징면제 여부 결정 후</li> <li>○ 신청인 및 추징권자에게 통보</li> </ul>

(2) 개정이유

- 조세추징 면제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감면세액 추징 면제신청 및 면제결정·통지 규정을 법령으로 명확히 규정
- \* 현행 재경부 고시로 규정(외국인투자등에 대한 조세감면규정 제8조)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2.9이후 최초로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 5. 조세감면기간 조문 명확화(조특법 §121의2②·⑫)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input type="checkbox"/>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소득세액 전액 감면 기간</p> <p>○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5년(또는 3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p>	<p>○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또는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p>

### (2) 개정이유

- 감면기간의 해석에 있어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5년(또는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로 오해될 소지가 있어
  - 조문을 명확히 규정함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 부가가치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 【개정된 주요내용】

### I. 자영업자 등의 세부담 경감

1.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율 조정
2. 경매·공매 과세 제외
3. 사업양수도 요건 개선
4. 대손세액 공제요건 완화

### II. 부가가치세 비과세·감면 축소

1. 국가 등의 부동산 임대업 등 수익사업 과세전환
2. 외화획득사업 영세율 범위 조정
3. 내국신용장에 의해 공급하는 금지금 수출범위 조정

### III. 부가가치세 면세범위 조정

1. 채권추심업 면세 일몰기한 연장
2. 창업투자조합 등의 운용수수료 면세
3.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 면세

### IV. 납세편의 제고 및 미비점 보완

1. 창고증권 관련규정 보완
2. 전기사업자의 납세·신고지 간소화
3. 과세유형 전환시기 보완
4. 간이과세 배제기준 보완
5.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 지정절차 근거 신설
6. 영세율 첨부서류 전자신고 확대
7.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한 매입세액공제 범위 확대
8. 토지·건물 감정가액 명확화
9.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범위 정비

10. 전기통신사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 특례 보완
11. 영수증 교부 특례 규정 보완
12.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신설
13. 산학협력단이 학술연구용 등으로 수입하는 기자재 면세
14. 전기판매사업자의 전기요금통합청구방법 정의
15. 창업투자회사·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자산관리·운용용역 중 과세되는 용역
16. 국가 등이 공급하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 V. 서식 개정 및 신설

1. 사업자등록신청서 서식 개정(별지 제3호 서식)
2. 수입금액명세서(변호사용)(별지 17호 서식(1))
3.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 집계표 신설(별지 제12호의5 서식)
4.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별지 12호의4 서식)

### 【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일자】

- 대통령령 : 제 16189호(2006.2.9)
- 재정경제부령 : 제 499호(2006.3.17)

# I. 자영업자 세부담 완화

## 1.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율 조정(부가령 §74의3④)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업종별 부가가치율 · 제조, 전기·가스, 소매업: 20% · 농·어업, 건설, 부동산임대: 30% · 음식, 숙박, 운수, 통신업: 40% * 부가가치율: 직전 3년간 신고된 업종별 평균 부가가치율 등을 감안하여 규정	<input type="checkbox"/> 업종별 부가가치율 조정 · 소매업: 15%(5%p↓) · (현행과 동일) · 음식, 숙박업: 30%(10%p↓) ('07년 12월까지)

### (2) 개정이유

- 영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한시적으로 업종별 부가가치율 인하
  - 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자영업자의 급증으로 어려운 경영여건에 있는 소매업 및 음식·숙박업에 대해 세제지원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2. 경매·공매에 의한 재화의 공급 과세대상 제외(부가령 §14①)

### (1) 개정내용

증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경매·공매 절차에 따른 토지·건물 등의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	<input type="checkbox"/>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세징수법(§61, §62)에 의한 공매</li> <li>○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경매</li> </ul>
<input type="checkbox"/> 경매·공매 실시기관이 세금계산서를 교부가능	<input type="checkbox"/>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규정 삭제

### (2) 개정이유

- 경매 재화 공급자는 대부분 폐업, 파산 등으로 세금부담능력이 없어 체납하는 반면, 경락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고 있어 세수일실만 초래
  - 경매대금의 배분시 부가가치세가 다른 채권에 반드시 우선하지 않으므로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3. 사업양수도 요건 개선(부가령 §17②)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과세제외 사업양수도의 범위  ○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사업분할 포함)  ○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  ○ 사업의 동일성 유지(통칙)	<input type="checkbox"/> 과세제외 양수도의 범위  ○ 인적요건 - 과세사업자간 사업양수도 - 일반·간이과세자 모두 포함하되 간이과세 배제기준 보완 - 다만, 사업양수 후 면세전용이나 개인적 목적 사용은 과세  ○ 업종요건 - 사업 동일성 요건 폐지: 일부 직접사용 및 업종의 변경 등의 경우에도 적용

#### (2) 개정이유

- 자영업자의 사업전환을 지원하고 구조조정에 관한 세제상의 걸림돌 제거를 위해 과세제외 사업양도 요건을 완화
- 사업양수도 관련 조세 분쟁을 최소화시켜 사업자의 경영상 애로 사항 해소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4. 대손세액공제 범위 확대(부가령 §63조의2①, ②)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손세액공제 범위</li> <li>· 파산(강제화의 포함)</li> <li>· 강제집행</li> <li>· 사망·실종신고</li> <li>· 정리계획인가 결정</li> <li>· 상법상의 소멸시효 완성</li> <li>· 회수기일 6개월이상 경과한 10만원 이하 채권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손세액공제 범위 확대</li> <li>- 법인세법·소득세법상 대손금 인정범위와 일치</li> <li style="margin-left: 20px;">* 소득령 §55②, 법인령 §62①</li> </ul>

##### (2) 개정이유

- 대손세액공제사유를 법인세법·소득세법상 대손금의 범위와 동일하게 규정하여 자영업자의 자금 부담 완화 및 경영여건 개선지원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시행일 이후 대손이 확정되는 분부터 적용

## II. 부가가치세 비과세·감면 축소

### 1. 국가 등의 부동산임대업 등 수익사업 과세전환(부가령 §38)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input type="checkbox"/>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중 과세 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정사업조직의 택배용역</li> <li>○ 고속철도 여객운송용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 등이 공급하는 다음 사업 과세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동산 임대업</li> <li>- 도·소매업, 음식·숙박업</li> <li>-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중 골프장·스키장 운영업 및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li> </ul> </li> </ul>

#### (2) 개정이유

-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지방자치단체는 민간기업과 경쟁관계에 있는 부동산임대업, 도·소매업 등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사례가 증가
  - 공급주체에 따라 과세 또는 비과세하는 경우 조세부담의 불공평으로 인한 가격차이로 자원배분의 중립성을 저해함
    - \* EU지침 :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일반적으로 면세이나 민간과의 경쟁을 심각히 왜곡시키는 경우에는 과세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7.1.1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2. 외화획득용역 영세율범위 조정(부가령 §26①5)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관광진흥법에 의한 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판매업자가  <input type="checkbox"/> 외국인에게 판매하는 관광기념품에 대해 영세율 적용	<input type="checkbox"/> 외국인의 범위 - 출국 내국인도 포함

### (2) 개정이유

-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 판매장의 이용범위 확대
  - 출국하는 내국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출국장에서 인도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7.1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3. 내국신용장에 의해 공급하는 금지금 수출범위 제외(부가령 §24②1)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영세율 적용 수출재화의 범위  ○ 구매 확인서 ·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도 포함  ○ 다만, 구매확인서에 의해 공급하는 금지금 제외	○ 내국신용장에 의해 공급하는 금지금도 제외

#### (2) 개정이유

- '05. 3. 면세금 납세담보제도에 의거 면세금 탈세가 원천 봉쇄됨에 따라 일부 사업자들이 수출 거래를 가장하여 환급받은 후 국내에 유통시키는 수법으로 부가세를 탈루하는 변칙거래를 방지할 필요
- 구매승인서로 공급하는 금지금에 대한 영세율 배제 조치('03.7.1)와 같이 내국신용장에 의한 금지금 공급에 대해서도 영세율 적용 배제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시행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참고> 금지금 수출입에 대한 제도 변동내역

	'03년 6월 이전	'03년 7월 이후
부가 가치세	수입 및 국내거래시 과세 (10%)	일정요건 갖춘 수입·국내 거래시 면세
관세	3%	3%
수출시 영세율 적용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수출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적용	내국신용장의 경우에만 적용

※ 구매확인서는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수입된 물품을 외화획득용 원료(물품)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국내에서 구매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장이 내국신용장 규정을 준용하여 발급하는 서류

※ 내국신용장(Local L/C)

□ 국내수출업자가 수출용 원자재 또는 완제품을 조달할 때 외국환은행이 그 물품대금 지급을 보장하는 지급보증서

○ 수출업체의 경우 수출용 원자재를 내국신용장에 의해 조달하면 원자재금융을 지원받아 결제할 수 있고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어 물품구입가격상의 이점

○ 수출용 원자재나 완제품 공급업체의 경우에는 당해 내국신용장을 근거로 해당 물품제조에 소요되는 원자재의 구입자금 및 제조, 가공자금을 용자받을 수 있음

### Ⅲ. 부가가치세 면세범위 조정

#### 1. 채권추심업 일몰시한 연장(부가령 §33①12)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채권추심업  ○ '05년말까지 면세	  ○ 면세시한 3년연장('08년말)

##### (2) 개정이유

- 연체자문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용정보업계의 채권추심  
용역에 대한 면세시한 연장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1.1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2. 창업투자회사 등의 자산관리·운용용역 면세(부가령 §33①)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input type="checkbox"/> 금융·보험 용역 면제</p> <p>○ 창업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CRC) 등이 조합에 제공하는 자산관리·운용용역은 면세대상에서 제외</p>	<p>○ 면세범위 추가</p> <p>- 창업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 등이 조합에 제공하는 자산관리·운용용역</p> <p>- 다만, 부동산, 실물자산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산 운용하는 경우는 제외</p>

### (2) 개정이유

- 다른 간접투자기구와 조세중립성 차원에서 창업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에도 동일하게 부가가치세 면제하여 벤처기업 활성화 및 기업구조조정 지원
- 다만, 자산운용회사와 같이 부동산, 실물자산 등에 운용하는 경우는 제외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시행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3.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 면세(부가령 §37)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 등과 관련하여 제공하는 용역  <input type="checkbox"/> 부가가치세 면제	<input type="checkbox"/> 산학협력단이 학술·기술연구 등과 관련하여 제공하는 용역  <input type="checkbox"/> 3년간('08.12.31) 부가가치세 면제

#### (2) 개정이유

- 산학협력 활성화 및 대학 연구비 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산학협력단의 연구용역에 대해 한시적으로 면세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시행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IV. 납세편의 제고 및 미비점 보완

1. 국내에서 런던금속거래소 지정창고에 반출한 재화를 국내로 반입시  
관련 규정 보완(부가령 §14②, §21①, §58⑨)

(1) 개정내용

증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창고증권관련 부가세 취급 ○ 과세제외 거래 - 실물을 창고에 임치 - 창고증권 유통 - 보세구역내 인도 위해 창고에서 인취 ○ 과세거래 - 실물 인취후 보세구역내 거래 - 수입(외국에서 임치한 재화) <신 설>	○ 과세대상 거래 추가 - 국내에서 지정창고에 임치된 실물의 국내반입
<input type="checkbox"/>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규정 신설 <input type="checkbox"/> 관련 재화의 거래시기 ○ 실물인취에 따른 당해 재화가 수입재화에 해당하는 경우 수입신고 수리일 <신 설>	<input type="checkbox"/> 세관장이 수입재화에 준하여 반입자에게 세금계산서 교부 ○ 국내에서 지정창고에 임치된 실물이 국내로 반입되는 경우 반입 신고 수리일

(2) 개정이유

- 국내로부터 보세구역내 런던금속거래소(LME) 지정창고에 임치되어 창고증권의 형태로 거래되던 재화가 창고에서 인취되어 국내에 반입되는 경우
  - 동 거래는 수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수 없어 무자료 유통으로 인한 이중가격이 발생할 소지
- 국내임치 실물을 국내반입하는 경우에도 과세대상 거래로 규정하여 반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도록 함으로써 정상적인 유통질서 도모
  - 거래시기를 반입신고 수리일로 하는 한편 세관장이 반입신고 수리일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도록 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이 영 시행일 이후 국내로 반입되는 분부터 적용

## 2. 전기판매사업자의 납세·신고지 간소화(부가령 §4①)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input type="checkbox"/> 부가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여야 함</p> <p>○ 각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 및 납세협력의무 부여</p> <p>○ 다만, 광업, 전기통신업 등의 경우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함</p>	<p>○ 전기판매사업자가 재정부령에서 정하는 전기요금 통합청구의 방법을 요금을 청구하는 경우 그 업무총괄장소</p>

### (2) 개정이유

- 전기통신사업과 같이 전기판매사업의 경우에도 전기요금 통합청구의 방법으로 요금을 청구하는 경우
  - 업무총괄장소를 사업장으로 인정하여 납세편의 제고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시행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3. 과세유형 전환시기 보완(부가령 §74의2㉔)

#### (1) 개정내용

증 전	개 정
<p><input type="checkbox"/> 과세유형 전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 사업장(기준사업장)을 보유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간이사업장도 일반과세로 전환</li> </ul> </li> <li>○ 일반과세사업장(기준사업장)의 직전 1년 공급대가가 4천8백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준사업장 및 일반과세 전환 간이사업장 모두 간이과세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2기부터 간이전환</li> </ul> </li> </ul> </li> </ul>	<p style="text-align: center;">&lt;신 설&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과세사업장(기준사업장)을 폐업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나머지 사업장의 직전 1역년 공급대가가 4천8백만원에 미달(간이과세 배제기준 제외)시 간이과세 적용</li> <li>· 기준사업장의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 적용</li> </ul> </li> </ul>

#### (2) 개정이유

- '05.1.1부터 일반과세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간이과세 사업장이 일반과세로 전환('03.12.30 부가가치세법 개정)

□ 그러나, 일반과세사업장(기준사업장)이 폐업된 경우

○ 일반과세로 전환된 간이과세 사업장의 유형전환시기에 대한  
규정이 없어 납세 혼선 초래

⇒ 유형전환시기를 명확히 하여 납세편의 제고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시행일 이후 기준사업장이 폐업하는 분부터 적용

#### 4. 간이과세 배제기준 보완(부가령 §74②)

##### (1) 개정내용

증 전	개 정
<p><input type="checkbox"/> 다음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간이과세 적용배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업, 제조업, 도매업</li> <li>○ 부동산매매업, 부동산임대업</li> <li>○ 특소법상 과세유흥장소</li> <li>○ 변호사, 변리사 등 전문인적용역</li> <li>○ 소재지, 사업종류, 규모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간이과세 배제기준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과세자로부터 포괄 양수받은 사업을 영위하는 자</li> </ul> </li> </ul>

##### (2) 개정이유

-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양수받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간이사업자 등록 배제
  - 사업 포괄양수도는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변경하는 것이므로
  - 종래 일반과세로 운영되던 사업장에 대해서는 간이과세를 배제하고 일반과세로 유지하는 것이 법논리상 타당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시행일 이후 사업을 양수하는 분부터 적용

5.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 지정절차 근거 보완(부가령 §80⑥)

(1) 개정내용

총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국세청장은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대상자의 지정절차를 정할 수 있음	<input type="checkbox"/>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의 지정절차 추가

(2) 개정이유

- 현금영수증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 지정절차 규정 보완

6. 부가세 영세율 첨부서류 전자신고 허용(부가령 §64③)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input type="checkbox"/> 영세율 첨부서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출실적명세서</li> <li>· 수출계약서 사본, 구매확인서 사본 또는 외화입금증명서</li> <li>·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또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li> <li>· 외화입금증명서</li> <li>· 재화·용역공급계약서 사본 등</li> </ul> <p>○ 수출실적명세서의 경우 전자적 제출 가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 포함</li> </ul>	<p>○ 전자적 제출 범위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국신용장 등 재정경제부령에서 정하는 서류</li> </ul>

(2) 개정이유

영세율 첨부서류의 전자제출 범위를 확대하여 납세편의 제고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7.1.1 이후 신고하는분부터 적용

## 7.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범위 확대(부가령 §80④)

### (1) 개정내용

증 전	개 정
<p>□ 매입세액공제가 인정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범위</p> <p>○ 영수증 교부대상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 등을 이면확인한 매출전표</p> <p>- 영수증 교부대상 사업자 중 다음 업종 영위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매·음식·숙박업</li> <li>· 기타 최종소비자 상대업종</li> </ul> <p>* 제조, 도매업 등은 제외</p> <p>*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할 수 없음(§57②)</p>	<p>○ 일반과세자의 범위 확대</p> <p>- 영수증 교부대상 일반과세자→ 모든 일반과세자</p> <p>* 제조, 도매업 등도 인정</p> <p>- 다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수 없는 다음 업종은 제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욕·이발·미용업</li> <li>· 여객운송업(전세버스제외)</li> <li>· 입장권 발행사업자</li> </ul>

### (2) 개정이유

-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 시기에 신용카드전표 등으로 결제하는 경우
  -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면제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도록 하여 납세편의 제고 및 국세행정의 낭비적 요소 제거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시행일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는 분부터 적용

## 8. 토지·건물 감정가액 명확화(부가령 §48의2④)

### (1) 개정내용

증 전	개 정
<p><input type="checkbox"/> 토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면서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 안분계산 기준</p> <p>i) 기준시가 ii) 감정평가가액 iii) 장부가액, 취득가액</p>	<p>○ 감정평가가액의 인정범위</p> <p>- 공급시기 직전 과세기간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까지의 감정가액</p>

### (2) 개정이유

- 토지와 건물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감정가액 인정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납세편의 제고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시행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9.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범위 정비(부가령 §34①)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input type="checkbox"/> 부수되는 토지의 범위 - 건물이 정착된 바닥면적의 5배(도시계획구역외 10배)  ※ 초과되는 토지임대는 과세	<input type="checkbox"/> 부수되는 토지의 범위 : 다음 중 큰 면적 한도 - 건물이 정착된 면적 5배(도시계획구역외 10배)  - 건물의 연면적의 1배

### (2) 개정이유

- 주택의 임대시 토지는 건물 바닥면적의 5배(도시지역외 10배)의 범위 내에서만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면세하고 있으나
- 공동주택의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경우에도 부수토지가 5배를 초과하여 과세되는 문제해소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시행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0. 전기통신사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 특례 보완(부가령 §58㉠)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 전기통신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시 세금계산서 교부</p> <p>○ 수탁자·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대리인이 세금계산서 교부</p> <p>□ 전기통신사업자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가입자에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고</p> <p>○ 다른 통신사업자에게 대가징수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p> <p>- 전기통신사업자가 타 통신사업자에게 교부하고</p> <p>-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가입자에게 세금계산서 교부 가능</p> <p>* 이동통신가입자가 휴대폰을 통해 국제전화를 하는 경우 한국통신의 국제전화회선을 이용</p> <p>- 한국통신→이동통신회사→가입자</p>	<p style="text-align: center;">&lt; 추 가 &gt;</p> <p>□ 방송법에 의한 위성DMB 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자의 가입자에게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제공하고</p> <p>○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대가징수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p> <p>- 방송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교부하고</p> <p>- 전기통신사업자가 가입자에게 세금계산서 교부 가능</p> <p>* 이동통신가입자가 휴대폰을 통해 위성DMB방송을 수신하고 그 대가를 이동통신회사에게 지급</p> <p>- 위성DMB사업자(Tu Media)→이동통신회사→가입자</p>

(2) 개정이유

□ 위성DMB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가입자에게 자기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도록 하여

○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맞춰 세제를 탄력적으로 운용함으로써  
납세편의 제고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이 영 공포일('05.12.30)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최초로 세금계  
산서를 발행하는 분부터 적용

11. 영수증 교부 특례 규정 보완(부가령 §79의2②)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input type="checkbox"/> 영수증 교부특례 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음의 경우 일반과세자도 영수증 교부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만,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가능</li> </ul> </li> <li>· 임시사업장 개설 사업자가 임시사업장에서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li> <li>·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산업용이 아닌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li> <li>·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li> <li>·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가 산업용이 아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경우</li> <li>·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한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산업용이 아닌 열을 공급하는 경우</li> </ul>	<p style="text-align: center;">&lt; 추 가 &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송법에 의한 이동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가 전기통신회사가입자에게 방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li> </ul>

(2) 개정이유

- DMB 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자의 가입자에게 방송용역(DMB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하여 납세 편의를 제고
- 가입자가 사업자로서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에 한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공포일('05.12.30)이 속하는 과세기간중 최초로 영수증을 교부하는 분부터 적용

12.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신설(부가령 §64②, §65①)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부가가치세 신고 구비서류  ○ 예정·확정신고서 ○ 전자화폐결제명세서 ○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 ○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 수입금액명세서 ○ 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 ○ 매입·매출처별세액계산서합계표	<input type="checkbox"/> 구비서류 보완       <신 설> ○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명세서

(2) 개정이유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이 있는 경우
  - 매입세액 불공제분 계산 근거에 대한 서식을 신설하여 납세편의 제고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3. 산학협력단이 학술연구용 등으로 수입하는 기자재 면세 (규칙 §12의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학교·박물관 또는 기타시설에서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물품 <input type="checkbox"/> 부가가치세 면제 ※ 산학협력단이 학술연구용 등으로 수입하는 물품은 부가가치세 과세	<추 가> <input type="checkbox"/> 산학협력단에서 학술연구용 등으로 수입하는 물품 <input type="checkbox"/> 부가가치세 면제

(2) 개정이유

- 산학협력 활성화 및 대학 연구비 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산학협력단의 학술연구용 수입물품에 대해 면세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시행일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4. 전기판매사업자의 전기요금통합청구방법 정의(규칙§1의2④)

(1) 개정내용

— < 시행령 개정내용 > —

전기판매사업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전기요금통합청구 방법으로 요금을 청구하는 전기사업에 있어서

○ 당해 사업장은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종 전	개 정
<신 설>	<p>○ 전기요금통합청구방법의 정의</p> <p>-전기판매사업자가 2 이상의 전기 사용계약단위를 통하여 각 사업장에서 이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하고 각 사업장의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에서 전기요금을 일괄하여 청구하는 것</p>

(2) 개정이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전기요금통합청구방법의 정의 규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시행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5. 창업투자회사·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자산관리·운용용역 중  
과세되는 용역 (규칙 §11의6)

(1) 개정내용

<p>— &lt; 시행령 개정내용 &gt; —</p>
<p><input type="checkbox"/> 창업투자회사·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제공하는 자산관리·운용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p> <p>○ 다만, 부동산, 실물자산 및 그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는 제외</p>

종 전	개 정
<p>&lt;신 설&gt;</p>	<p>○ 창업투자회사 등이 부동산, 실물 자산 및 간투법시행령에서 규정 하는 자산 및 이와 유사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금감위가 투자의 대상으로 정한 것은 면 세대상에서 제외</p> <p>*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령 제3조 8. 지상권·전세권·임차권 등 부동산의 사용에 관한 권리 9. 어업권 10. 광업권</p>

(2) 개정이유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가 부동산, 실물자산  
등을 운용하고 받는 수수료에 대해 과세하는 것과 형평 유지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시행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6. 국가 등이 공급하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규칙 §11의7)

(1) 개정내용

— < 시행령 개정내용 > —

<p><input type="checkbox"/> 국가 등이 제공하는 부동산임대용역, 골프장 등 수익사업과세전환</p> <p>○ 다만, 국방부 및 국군이 군인·군무원 및 이들의 직계존비속 등 재정경제부령에서 정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은 제외</p>
---

종 전	개 정
<p>&lt;신 설&gt;</p>	<p>○ 국방부 및 군인의 직계존비속의 범위</p> <p>-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p>

(2) 개정이유

- 군장병 사기진작 및 輿地 및 비상근무가 많은 군 특성상 생계를 같이하는 군인가족의 경우에도 군인 등과 동일한 혜택 부여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7.1.1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V. 서식개정 및 신설

## 1. 사업자등록신청서 서식 개정(별지 제3호 서식)

### (1) 개정내용

#### < 서식 개정내용 >

- 사업자등록신청서를 납세자가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간편하게 하고 효과적인 세원관리를 위함

### (2) 개정이유

- 사업자등록신청서 작성·접수단계 부터 신청내용 및 작성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게 하고 본인이 스스로 쉽게 작성 할 수 있도록 사업자등록신청서 서식 개정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4.1 이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접수번호	<b>사업자등록신청서(개인사업자용)</b>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신청서)	처리기간
		7일(보정요구시 14일)

귀하의 사업자등록 신청내용은 영구히 관리되며 납세성실도를 검증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아래 해당 사항을 사실대로 작성하시기 바라며 신청서에 본인이 자필로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인적사항

상호(단체명)		전화번호	(사업장)
성명(대표자)			(주택)
			(휴대전화)
주민등록번호		FAX번호	
사업장(단체) 소재지		E-Mail주소	@

2. 사업장현황

업종	주업태		주종목		주업종코드	개업일	종업원수	
	부업태		부종목		부업종코드			
사업장구분	자가	타가	사업장을 빌려준 사람(임대인)			임대차 내역		
			성명 (법인명)	사업자 등록번호	주민(법인) 등록번호	임대차 계약기간	(전세) 보증금	월세
	m <sup>2</sup>	m <sup>2</sup>				원	원	
인허가 사업여부	신고( ) 등록( ) 허가( ) 해당없음( )			주류면허	면허번호	면허신청 여( ) 부( )		
특별소비세 해당여부	제조( ) 판매( ) 장소( ) 유통( )							
사업자금 내역 (전세보증금 포함)	자기자금	원		타인자금	원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	원			간이과세 적용 신고 여부	여( ) 부( )			
그 밖의 신청사항	확정일자 신청여부	공동사업자 신청여부	사업장소 외 송달장소 신청여부		사업자단위 신고·납부사업자의 종된 사업장 신설여부			
	여( ) 부( )	여( ) 부( )	여( ) 부( )		여( ) 부( )			

가로210mm× 세로297mm [신문용지 54g/m<sup>2</sup>(재활용품)]

(뒤 쪽)

3.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시 유의사항 (아래 사항을 반드시 읽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가. 귀하가 다른 사람에게 사업자명의를 빌려주는 경우 사업과 관련된 각종 세금이 명의를 빌려준 귀하에게 나오게 되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1)소득이 늘어나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더 낼 수 있습니다.
  - (2)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못내게 되면 체납자가 되어 소유재산의 압류·공매처분, 체납내역의 금융기관 통보, 여권발급제한, 출국규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나. 귀하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수취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에 따라 해당 법인 및 대표자 또는 관련인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공급가액 및 그 부가가치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 신용카드 가맹 및 이용은 반드시 사업자 본인명의로 하여야 하며 사업상 결제목적 이외의 용도로 신용카드를 이용할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아래 사항을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리인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신청인과의 관계

위에서 작성한 내용과 실제 사업자 및 사업내용 등이 일치함을 확인하며,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제25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74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업자등록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그 밖의 단체] 및 확정일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위 대리인 (서명)

세무서장 귀하

- 구비서류
1. 사업허가증 사본·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 중 1부(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인 경우에 한합니다)
  2. 임대차계약서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합니다) 1부
  3.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 1부
- 사업자등록 신청시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붙임의 서식 부표에 추가로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①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 ②종업원을 1인 이상 고용한 경우
  - ③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 받고자 하는 경우



## 2. 수입금액명세서(변호사용) 서식 개정(별지 제17호 서식(1))

### (1) 개정내용

#### < 서식 개정내용 >

- 변호사의 수입금액명세서 중 공급가액란의 소송사건 수입료를 착수금, 성공보수, 실비변상으로 구분하여 수입금액명세서 작성

### (2) 개정이유

- 변호사의 수입금액명세서상의 기재내용을 대한변호사협회 회칙(제44조)상의 보수규정과 일치(착수금, 성공보수, 실비변상으로 구분)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시행일 이후 신고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별지 제17호서식(1)]

**수입금액명세서(번호사용)**

(           년           기)

①상 호		②성 명		③ 사업자등록번호	
------	--	------	--	-----------	--

공 급 가 액	④ 합    계		⑤소송사건		⑥고문료 등 사무보수		⑦기    타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⑧ 일 련 번 호	소송사건 명세(⑤소송사건의 수입내용)									
	소송의뢰인		사    건    내    용				해당 과세기간 공급가액			
	⑨ 사업자등록 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⑩ 상호 또는 성명	⑪ 사건 구분	⑫ 사건번호 (접수일)	⑬ 소송물 가    액	⑭ 판결일	⑮ 합    계	⑯ 착수금	⑰ 성공보수	⑱ 실비 변상
	계									
			(    )							
			(    )							
			(    )							
			(    )							
			(    )							
			(    )							
			(    )							

※ 작성방법

- ⑤소송사건란은 민사·형사사건의 수입건수와 보수의 합계액을 기입하며, 보수합계액은 소송사건 명세서의 합계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 ⑥고문료 등 사무보수란은 고문료·상담료·감정료 및 문서작성료 등 사무보수의 건수와 합계액을 기입합니다.
- ⑦기타란은 소송사건의 보수와 사무보수를 제외한 그 밖의 수입사무 및 사건의 건수와 보수 등의 합계액을 기입합니다.
- ⑯·⑰·⑱해당 과세기간 공급가액란은 해당 신고기간에 해당하는 소송사건의 보수를 ⑯착수금·⑰성공보수 또는 ⑱실비변상(여비 등을 별도로 받는 경우)으로 구분하여 기입합니다.

가로210mm× 세로297mm [신문용지 54g/m<sup>2</sup>(재활용품)]

**3.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 서식 신설(별지 제12호의 5 서식)**

(1) 개정이유

□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신용카드 등으로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 신고내용과 신용카드 및 세금계산서매출분 과세표준  
과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부합자료 축소로 납세편의 제고

\* 현재 국세청 고시로 운영중인 서식을 시행규칙에 반영

(2)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시행일 이후 신고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b>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b> (      년      기      예정·확정 )			
<b>1. 인적사항</b>			
①상호(법인명)		②성 명(대표자)	
③사업장소재지		④사업자등록번호	
<b>2.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현황</b>			
구      분	⑤합      계	⑥신용·직불· 기명식 선불카드	⑦현금영수증
합      계			
과세 매출분			
면세 매출분			
봉      사      료			
<b>3.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⑤합계) 중 세금계산서(계산서) 교부내역</b>			
⑧세금계산서 교부금액		⑨계산서 교부금액	

※ 작성방법

1.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현황(⑤~⑦) : 부가가치세 과세 매출분, 면세 매출분 및 봉사료로 각각 구분하여 기입하고, 과세 매출분란은 공급대가(부가가치세를 포함합니다)를 기입합니다.

2.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⑤합계) 중 세금계산서(계산서) 교부내역(⑧·⑨) : ⑧ 세금계산서란은 ⑤합계란의 과세 매출분 합계금액 중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금액을 기입하고, ⑨계산서 교부금액란은 ⑤합계란의 면세 매출분 합계금액 중 계산서를 교부한 금액을 각각 기입합니다.

가로210mm× 세로297mm [신문용지 54g/m<sup>2</sup>(재활용품)]

#### 4.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서식 신설(별지 제12호의 4 서식)

##### (1) 개정내용

##### < 서식 개정내용 >

- 부가가치세 예정·확정 신고시 구비서류로서 「매입세액 불공제분 근거」를 제출하여야 하나 정형화된 서식이 없어 납세자 혼란과 불편을 초래
  - 서식을 신설하여 납세편의 제고

##### (2) 개정이유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이 있는 경우

\* 필요적 기재사항 누락,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구입 및 유지,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 면세사업 관련 지출, 토지 관련 매입세액, 등록전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 예정·확정신고시 구비서류로 「매입세액 불공제분 근거」를 제출하여야 하나 정형화된 서식이 없어 납세자의 혼란 초래

##### (2)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시행일 이후 신고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      년      기)					
<b>1. 인적사항</b>					
상 호 (법인명)		성 명 (대표자)		사 업 자 등록번호	
<b>2.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내역</b>					
매입세액 불공제 사유		세 금 계 산 서			비고
		매 수	공 급 가 액	매 입 세 액	
①필요적 기재사항 누락 등					
②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③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 구입 및 유지					
④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 관련					
⑤면세사업 관련					
⑥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					
⑦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⑧합 계					
<b>3.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내역</b>					
일련 번호	과세·면세사업 공통매입		⑪	⑫	⑬불공제 매입세액 [⑩×(⑫÷⑪)]
	⑨공급가액	⑩세 액	총공급가액 등	면세공급가액 등	
1					
2					
3					
4					
5					
합계					
<b>4.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내역</b>					
일련 번호	⑭총공통 매입세액	⑮면세사업 확정비율	⑯불공제 매입 세액 총액(⑭×⑮)	⑰기 불공제 매입세액	⑱가산 또는 공제되는 매입세액(⑯-⑰)
1					
2					
합계					
<b>5.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재계산 내역</b>					
일련 번호	⑲해당 재화의 매입세액	⑳경감률 [1-(5/100 또는 25/100×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㉑증가 또는 감소된 면세공급가액(사용 면적) 비율	㉒가산 또는 공제되는 매입세액 (⑲×⑳×㉑)	
1					
2					
합계					

가로210mm× 세로297mm [신문용지 54g/m<sup>2</sup>(재활용품)]

### 작성 방법

1.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내역(①~⑧)

- 가. 매입세액 불공제 사유(①~⑦)란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각 호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을 각 사유별로 구분하여 매수·공급가액 및 세액을 각각 기입합니다.
- 나. ⑧합계란은 ①란 내지 ⑦란의 합계로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별지 제12호서식) 2장 앞쪽 ⑬란의 ④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의 금액 및 세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2.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내역(⑦~⑬)

- 가. ⑨·⑩과세·면세사업 공통매입란은 공통매입세액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공급가액 및 세액의 합계액을 각각 기입합니다.
- 나. ⑪총공급가액 등란은 ⑩세액란의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총공급가액·총매입가액·총예정공급가액 또는 총예정사용면적을 기입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4항)
- 다. ⑫면세공급가액 등란은 ⑩세액란의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면세사업의 공급가액·매입가액·예정공급가액 또는 예정사용면적을 기입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4항)
- 라. ⑬불공제 매입세액란은 ⑩세액란의 공통매입세액에 ⑫면세공급가액을 곱한 후에 ⑪총공급가액 등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3.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내역(⑭~⑱)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4항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에 기입합니다.

- 가. ⑭총공통매입세액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4항에 따른 예정공급가액비율 등에 따라 안분계산한 공통매입세액의 합계액을 기입합니다.
- 나. ⑮면세사업 확정비율란은 과세·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또는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및 사용면적 비율을 기입합니다.
- 다. ⑯불공제 매입세액 총액란은 ⑭총공통매입세액에 ⑮면세사업 확정비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 라. ⑰기 불공제 매입세액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4항에 따른 예정공급가액 비율 등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으로 불공제한 매입세액의 합계액을 기입합니다.
- 마. ⑱가산 또는 공제되는 매입세액란은 ⑯불공제 매입세액 총액에서 ⑰기 불공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기입하며, 차감한 금액이 0 미만인 경우에는 음수(-)로 기입합니다.

4.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재계산 내역(⑲~㉒)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후 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비율이 증감되어 재계산하는 경우에 기입합니다.

- 가. ⑲해당 재화의 매입세액란은 감가상각자산 매입세액의 합계액을 기입합니다.
- 나. ⑳경감률란은 건물 또는 구축물은 100분의 5(2001. 12. 31 이전 취득분은 100분의 10을 적용합니다)를 적용하고,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은 100분의 25를 적용합니다.
- 다. ㉑증가 또는 감소된 면세 공급가액(사용면적) 비율란은 해당 과세기간의 면세비율에서 해당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그 후의 과세기간에 재계산한 때에는 그 재계산한 과세기간을 말합니다)의 면세비율을 차감하여 기입합니다.
- 라. ㉒가산 또는 공제되는 매입세액란은 ⑲해당 재화의 매입세액에 ㉑경감률 및 ㉑증가 또는 감소된 면세 공급가액(사용면적)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입합니다.

# 교통세법 · 시행령

## 교통세법 · 시행령

### 【개정된 주요내용】

#### I. 제2차 에너지세계개편

1. 휘발유 · 경유에 대한 교통세 탄력세율 적용
2. 건설기계 계약금액에 경유세율 인상분 반영

### 【법 · 시행령 개정일자】

- 법률 : 제7576호(2005. 7. 8)
- 대통령령 : 제18941호(2005. 7. 8)

# I. 제2차 에너지세제개편

## 1. 휘발유·경유에 대한 세율조정(법 §2, 영 §3조의2)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법정세율	실행세율	법정세율	실행세율
· 휘발유 630원/ℓ	545원/ℓ	· 휘발유 630원/ℓ	535원/ℓ
· 경 유 319원/ℓ	287원/ℓ	· 경 유 365원/ℓ	323원/ℓ

### (2) 개정이유

- 제1차 에너지세제개편으로 '06.7월까지 휘발유, 경유 및 LPG부탄의 소비자가격 비율이 100:75:60이 되도록 조정 중이었으나
- '05년 경유승용차 보급확대 등에 따른 환경오염 악화 방지를 위하여 상대가격 비율을 '07.7월까지 100:85:50으로 조정하는 제2차 에너지세제개편을 추진

<제2차 에너지 세제개편 법정세율 변동 내역>

기 간	현 행		개 정	
	경유(원/ℓ)	LPG부탄(원/kg)	경유(원/ℓ)	LPG부탄(원/kg)
세제개편 전	319	420	-	-
'05.7.8~'06.6.30	362	515	365	360
'05.7.1~'07.6.30	404	612	404	360
'07.7.1~	404	612	454	360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5. 7. 8이후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2. 건설기계 계약금액에 경유세율 인상분 반영(교통세령 부칙)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input type="checkbox"/> 경유세율 인상분만큼 관급 공사의 계약금액 조정

### (2) 개정이유

- 건설기계에 대하여 경유세율 인상분이 계약금액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근거규정 마련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5. 7. 8부터 적용

## 특별소비세법 · 시행령

## [특별소비세법 · 시행령]

### 【개정된 주요내용】

#### I. 제2차 에너지세제개편 및 세부담 형평성 제고

1. LPG 부탄에 대한 세율 조정
2. LNG 및 등유·부생연료유 세율 조정

#### II. 기타 미비점 보완

1. 장애인에 대한 승용차 면세특례시 첨부서류 현실화
2. 미납세반출제도 적용범위 확대

### 【법 · 시행령 개정일자】

- 법 률 : 제7575호(2005. 7. 8)  
제7840호(2005. 12. 31)
- 대통령령 : 제18940호(2005. 7. 8)  
제19258호(2005. 12. 31)  
제19334호(2006. 2. 9)

# I. 제2차 에너지세제개편 및 세부담 형평성 제고

## 1. LPG부탄에 대한 세율 조정(법 §1, 영 §2조의2)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법정세율	실행세율		법정세율	실행세율
LPG부탄	420원/kg	382원/kg	LPG부탄	360원/kg	306원/kg

### (2) 개정이유

- 2005년 경유승용차 시판에 따른 보완대책으로 에너지 상대가격을 국제수준으로 재조정하는 제2차 에너지세제개편에 따라 휘발유와 경유·LPG부탄의 상대가격비를 조정

※ 조정내용(휘발유 : 경유 : LPG부탄의 상대가격비)

- 1차에너지세제개편('06.7월까지) ⇒ 100 : 75 : 60
- 2차에너지세제개편('07.7월까지) ⇒ 100 : 85 : 50

<제2차 에너지 세제개편 법정세율 변동 내역>

기 간	현 행		개 정	
	경유(원/ℓ)	LPG부탄(원/kg)	경유(원/ℓ)	LPG부탄(원/kg)
세제개편 전	319	420	-	-
'05.7.8~'06.6.30	362	515	365	360
'05.7.1~'07.6.30	404	612	404	360
'07.7.1~	404	612	454	360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5.7.8이후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2. LNG 및 등유·부생연료유 세율 조정(법 §1, 영 §2조의2)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등유·부생유 세율  <div style="text-align: center;"><u>법정세율</u></div> ○ 등 유 154원/ℓ ○ 부생유 112원/ℓ  <input type="checkbox"/> LNG 세율  ○ 40원/kg	<div style="text-align: center;"><u>법정세율</u>    <u>탄력세율*</u>    <u>탄력세율**</u></div> ○ 등 유 178원/ℓ    154원/ℓ    134원/ℓ ○ 부생유 130원/ℓ    112원/ℓ    103원/ℓ  ○ 60원/kg

\* 2005. 7. 8 개정

\*\* 2005. 12. 31 개정

### (2) 개정이유

- 등유는 경유와 대체 가능한 석유제품으로서 전용을 방지할 목적으로 경유와 함께 특별소비세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있었으나
- LNG가 보급되지 않는 농어촌지역 등에서 주로 난방유로 사용되는 등유의 세율이 도시지역 아파트에서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LNG보다 세율이 높아 유종간 형평을 맞출 필요
- 이에 따라 등유에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종전 수준으로 동결('05. 7. 8) 및 인하('05. 12. 31)하고 LNG 세율은 인상
  - 등유의 열등대체재인 부생연료유도 등유와 함께 인하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1. 1이후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II. 기타 미비점 보완

### 1. 장애인에 대한 승용차 면세특례시 첨부서류 현실화(영§19의3 ①항7·8호, §31 ③항)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장애인 가족이 승용차를 구입하는 경우 첨부서류  ○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의 주민등록표 등본 <추 가>  * 장애인(1~3급) 또는 장애인 가족이 승용차 구입시 특소세 면제	<input type="checkbox"/> 내국인 장애인 가족*을 둔 외국국적 거주자의 경우   ○외국인 등록증명·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가족 :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

#### (2) 개정이유

- 내국인 장애인 가족을 둔 외국국적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주민등록이 없는 특수한 점을 인정하여
  - 외국인등록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 증명으로 동일세대임이 확인되는 경우 승용차 구입시 특별소비세가 면제될 수 있도록 함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시행일 이후 최초로 반출·수입신고하거나 세액공제 또는 환급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2. 미납세반출제도 적용 범위 확대(영§19③항5호)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미납세반출 허용범위  ○ 승용자동차의 보관·관리를 위하여 반출 및 환입하는 경우  - 제조장→ 하치장(가능) - 하치장→ 제조장(가능) - 하치장→ 하치장(불가)	<input type="checkbox"/> 미납세반출 허용범위 확대       - 하치장→ 하치장(허용)

### (2) 개정이유

- A하치장에서 B하치장으로 이동이 필요한 경우 우선 제조장에 반입하여 다른 하치장으로 재이동해야 함
- 반복적인 미납세 반출·반입 신고로 기업과 행정기관의 업무 증가 및 기업의 물류비용 발생
- 기업의 재고의 효율적 운용 및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하치장 간 이동을 허용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시행일 이후 하치장에서 반출하는 분부터 적용

# 주 세 법 · 시 행 령

## 주세법 · 시행령

### 【개정 한 주요내용】

#### I. 가산세 제도 정비

1. 납부불성실가산세 규정 보완

#### II. 납세편의 제고

1. 의제 주류판매업 폐지신고 통합

#### III. 기타 미비점 보완

1. 수입주류 환입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제도 보완
2. 납세증지 첩부 주류 대상 확대
3. 서식개정

### 【법 · 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일자】

- 법 률 : 제7841호(2005. 12. 31)
- 대통령령 : 제19336호(2006. 2. 9)
- 재정경제부령 : 제486호(2006. 2. 9)

# I. 가산세 제도 정비

## 1. 납부불성실가산세 규정 보완(법§27)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납부불성실가산세 ○ 무납부 및 과소납부한 때 <추 가> ○ 미납부(과소납부)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납세고지일 ×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 과다환급받은 경우 ○ 미납부(과소납부 또는 과다환급)세액 × 납부기한(환급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 ×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 (2) 개정이유

- 납부기한 다음날에 납부하는 경우 가산세 적용이 제외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미납일수 계산을 타 세법\*의 규정과 동일하게 조정

\* 소득세법 제81조제4항, 부가세법 제22조5항 등

- 미납부(과소납부)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 ×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 과소납부와 과다환급은 성격이 동일하므로 과다환급받은 분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 다만, 납세의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는 제외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1.1이후 최초로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주류부터 적용

## II. 납세편의 제고

### 1. 의제 주류판매업 폐지신고 통합(법§16)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input type="checkbox"/> 의제주류판매업의 폐지</p> <p>○ 주류판매를 폐지한 때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p> <p>※ 의제주류판매 면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주류판매업을 하는 자</li> <li>• 주류판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고, 주류(탁·약주 제외)를 제조장으로부터 직접 구입하지 않는 자로서 식료잡화점·일용잡화점 또는 유사한 상점에서 주류를 소매하는 자</li> </ul>	<p>○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폐업 신고시 주류판매업 폐지신고로 간주</p>

#### (2) 개정이유

- 납세편의 제고 및 행정비용 축소를 위하여 의제주류판매업의 폐지신고를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폐업신고로 같음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 1. 1이후 최초로 폐업 신고하는 자부터 적용

### Ⅲ. 기타 미비점 보완

#### 1. 수입주류 환입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제도 보완(법§34 영§39)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국내 제조 주류가 변질, 품질 불량 등의 사유로 주류제조장에 다시 환입되거나 파손·재해로 멸실된 경우 세액공제 또는 환급  <p style="text-align: center;">&lt;추 가&gt;</p> <input type="checkbox"/> 환급신청 관할 <input type="checkbox"/> 관할세무서장	<input type="checkbox"/> 수입 주류의 경우에도 변질, 품질불량 등의 사유로 폐기되거나 파손·재해로 멸실된 경우에는 세액공제 또는 환급  <input type="checkbox"/>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세관장

##### (2) 개정이유

- 수입주류가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어 변질 등의 사유로 폐기되거나 유통과정 중 파손 또는 재해로 멸실된 경우에는 주세 환급절차가 불분명
  - 수입주류의 경우에도 국내 제조 주류와 같이 이미 납부한 주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함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 1. 1이후 최초로 수입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2. 납세증지 첩부 주류 대상 확대(규칙§9)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납세증지 첩부 주류  ○ 탁주·약주를 제외한 모든 주류	○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약주 추가

### (2) 개정이유

- 탁·약주의 경우 그동안 소규모 생산으로 납세증지 첩부에서 제외하였으나 주세보전 및 주류유통질서 확립, 약주와 세율이 같은 청주·과실주 등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약주에 대하여는 납세증지를 첩부토록 의무화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 7. 1일부터 적용

### 3. 서식개정

#### (1) 개정내용 및 개정이유

서 식 명	구분	개정내용
환입·폐기주류세액공제(환급)신청서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 주세법 시행령 제39조의 개정 에 따라 폐기(수입)주류를 추가

[별지 제15호서식]

환입·폐기주류세액공제(환급)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① 성명(대표자)			② 주민(법인)등록번호				
	③ 상호(법인명)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주소(본점소재지)							
	⑥ 제조(판매)장소소재지							
신청내용								
⑦ 환입·폐기주류	주류의 종류	상표명	알콜분(%)	용량(ml)	본수	환입·폐기수량(ℓ)	본당가격	출고·수입가격
⑧ 공제받을세액	과세표준			주세			교육세	
⑨ 환입·폐기사유								
⑩ 출고·수입연월일 및 환입·폐기연월일			년 월 일 출고·수입, 년 월 일 환입·폐기					
<p>「주세법」 제34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세무서장 귀하 세관장</p>								
구비서류 : 1. 관할 세무서장·세관장 또는 권한 있는 행정기관이 변질·품질불량·과손·자연해 등으로 인하여 환입·폐기 또는 멸실되었음을 확인한 서류 2. 이미 납부되었거나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을 증명하는 서류 3. 수입주류의 경우에는 수입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m<sup>2</sup>)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개정된 주요내용】

I. 영세율·사후환급 사항

1. 일부 농약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제외
2. 축산계열화사업자 사료 영세율 적용 범위 조정
3. 농업용기자재 영세율 적용대상 축소
4. 축산업용 기자재 영세율 적용 범위 확대
5. 친환경농업용 자재 사후환급 범위 확대
6. 영세율 적용 일부 품목 사후환급 전환

II. 면세유제도 개선

1. 농업용 면세유 구매전용카드 대상 확대
2. 면세유류구입권 발급시기 및 사용시한 조정

【법·시행령 개정일자】

- 대통령령 : 제18887호(2005.6.30)
- 대통령령 : 제19331호(2006.2.9)

# I. 영세율·사후환급 사항

## 1. 일부 농약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적용 제외 (특례규정§3)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input type="checkbox"/> 농약관리법에 의한 농약 영세율 적용</p> <p>○ 제외 품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곡해충약(貯穀害蟲藥)</li> <li>- 고독성농약*</li> </ul> <p style="text-align: center;">&lt;추 가&gt;</p> <p>* '05. 1월부터 과세전환</p>	<p>○ 제외품목 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독성(魚毒性) 1급인 보통 독성농약</li> </ul>

※ 어독성 1급인 보통독성농약 매출액('04) : 455억원

### (2) 개정이유

- 독성이 강한 농약 사용으로 인한 환경부담 등의 부작용과 함께 농민들의 건강문제를 감안 시 농약의 사용 축소 필요

※ 농림부도 친환경농업육성법에 근거하여 농업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화학비료와 합성농약 사용량을 2013년까지 현재('99~'03년 평균사용량)보다 40% 정도 줄일 계획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7.1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2. 축산계열화사업자 사료 영세율 적용범위 조정 (특례규정 §2)

### (1) 개정내용

증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축산업 또는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받는 사료는 영세율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li> <li>○ 영농조합법인</li> <li>○ 농협중앙회 및 조합</li> <li>○ 축산계열화사업자(위탁·계약 사육용 사료)</li> <li>○ 비영리가축검정기관 (가축검정용 사료)</li> </ul>	<input type="checkbox"/> 영세율 적용 범위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축산계열화사업자가 직접 사육에 사용하기 위한 가축용 사료는 제외</li> </ul>

### (2) 개정이유

- 축산계열화사업은 계열화사업체에서의 사육단계와 계열농가에서의 사육단계로 나누어짐
- 축산계열화사업 지원의 당초 취지인 사육 농민에 대한 소득 증진 차원에서 계열농가에서의 사육단계에서만 영세율이 적용되도록 범위를 제한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 7. 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3. 농업용 기자재 영세율 적용 대상 축소 (특례규정 별표1)

#### (1) 개정내용

증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영세율 적용대상 농업기계  ○ 경운기, 트랙터 등 48종	<input type="checkbox"/> 영세율 대상에서 제외  ○ 주행형 탈곡기 ○ 인력분무기 ○ 병잎 자르는 기계 ○ 누에 올리는 쉼 ○ 누에고치수확기 등 5종

#### (2) 개정이유

- 조세지원의 실효성이 미미한 품목을 영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 4. 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4. 축산업용 기자재 영세율 적용 범위 확대 (특례규정 별표2)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 기자재  <input type="checkbox"/> 사료배합기, 육추기, 포유기, 착유기 등 50종	<input type="checkbox"/> 영세율 적용대상에 추가  <input type="checkbox"/> 벌통 <input type="checkbox"/> 채밀기(採蜜器) <input type="checkbox"/> 소초(巢礎)세트*  * 소초광(巢礎筐), 사양기(飼養器), 격리판

##### (2) 개정이유

- 영농비용 경감 및 타축종 지원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양봉업용 기자재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 4. 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5. 친환경농업용 자재 사후환급 범위 확대 (특례규정 별표5)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다음 농업용 기자재에 대해 부가세 사후환급 적용  <input type="checkbox"/> 농업용 필름·파이프 등 9종	<input type="checkbox"/> 사후환급 품목 확대  <input type="checkbox"/> 축산업용 톱밥  <input type="checkbox"/> 이앙기용 멀칭종이(논농사 피복용)

※ 축산업용 톱밥 : 축산폐수 및 분뇨정화용  
 이앙기용 멀칭(mulching)종이 : 논농사 피복용으로 제초제 살포 억제

(2) 개정이유

- 친환경농업용 자재에 대한 사후환급 적용 확대를 통해 농가 부담 경감 지원 및 친환경농업 확산 유도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 4. 1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 6. 영세율 적용 일부 품목 사후환급 전환 (특례규정 별표5)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다음 농업용 기자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input type="checkbox"/> 동력과중기 <input type="checkbox"/> 농업용 양수기 <input type="checkbox"/> 밭씨밭아기 <input type="checkbox"/> 동력배토기 <input type="checkbox"/> 동력예취기	<input type="checkbox"/> 사후환급* 대상으로 전환  * 농·어민이 부가가치세를 선부담한 후 사후에 관할세무서로부터 환급

### (2) 개정이유

- 영세율 적용 시 지원효과가 전액 농·어민에게 귀속되지 않으므로 타용도로 전용가능성이 있고 가격이 낮은 품목 등을 중심으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으로 전환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 4. 1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참고> 농·어업용 기자재 부가세 제도 개선 (요약)

구분	종 전	개 정	
		제외품목	추가품목
일몰시한	'05년말	'08년말 (3년 연장)	
영세율 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약, 비료, 사료</li> <li>· 농업용(경운기, 트랙터 등 48종)</li> <li>· 축산업용(육추기, 포유기 등 50종)</li> <li>· 임업용(동력천공기 등 15종)</li> <li>· 친환경농업용(키토산, 목초액, 천적 3종)</li> <li>· 어업용(어망, 부자 등 37종)</li> </ul>	<p>&lt;외부불경제 품목&gt; 어독성 농약(1급) 중 보통독성농약</p> <p>&lt;실효성 미미&gt; 주행형탈곡기 누에고치수확기 인력분무기 등 5종</p> <p>&lt;사후환급 전환&gt; 동력과중기 동력배토기 동력예취기 농업용 양수기 별씨밭아기</p>	<p>&lt;양봉용 기자재&gt; 별통 채밀기 소초세트(소초광, 사양기, 격리판)</p>
사후환급 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업용 필름 등 9종</li> <li>· 어상자 등 12종</li> </ul>	-	<p>&lt;친환경 자재&gt; 축산업용 톱밥 이앙기용멀칭종이</p> <p>&lt;영세율 품목 사후환급 전환&gt; 동력과중기 동력배토기 동력예취기 양수기 별씨밭아기</p>

## II. 면세유 제도 개선

### 1. 농업용 면세유 구매전용카드 대상 확대(특례규정 §16)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 농어민은 면세유 구입 시 구매 전용카드 또는 구입권 사용</p> <p>○ 면세유 구매전용카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민 : 전년도 2만리터 이상 사용한 자</li> <li>- 어민 : 전년도 4만리터 이상 사용한 자</li> </ul> <p>○ 면세유류구입권 또는 출고지시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민 : 전년도 2만리터 미만 사용한 자</li> <li>- 어민 : 전년도 4만리터 미만 사용한 자</li> </ul>	<p>○ 구매전용카드 사용대상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민 : 전년도 1만리터 이상 사용한 자 (좌 동)</li> <li>- 농민 : 전년도 1만리터 미만 사용한 자 (좌 동)</li> </ul>

#### (2) 개정이유

- 면세유 유통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면세유 구매전용카드 사용대상을 확대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5.10.1 이후 석유류를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 2. 면세유류구입권 발급시기 및 사용시한 조정 (특례규정 §20)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면세유류구입권 발급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기계 : 분기별 발급</li> <li>○ 선박 : 수시</li> </ul> <p>* 예외 : 일정시기에 집중 사용하는 농기계·어업용 시설 등은 영농·영어시기를 감안하여 발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기계 : 월별 발급으로 조정 (좌 동)</li> </ul>
<input type="checkbox"/> 면세유류구입권 사용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민 : 2개월 이내</li> <li>○ 어민 : 휘발유(1일), 경유(3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민 : 1개월 이내로 단축 (좌 동)</li> </ul>

### (2) 개정이유

- 농업용 면세유류구입권 발급시기를 분기별 발급에서 월별 발급으로 조정하고 사용시한을 1개월 이내로 단축하여 면세유 배정·사용에 대한 관리 강화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구입권 발급) 2005. 10. 1 이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 (구입권 사용시한 축소) 2005. 10. 1 이후 면세유류구입권을 발급받는 분부터 적용

## 제주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규정

## [제주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규정]

### 【개정된 주요내용】

#### I. 법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

1. 내국인 면세점 면세물품 구입한도 및 판매한도 규정(특례 규정 §5)
2. 면세물품의 범위 조정 및 통보조항 규정

#### 【법·시행령 개정일자】

- 법 률 : 제7839호(2005.12.31)
- 대통령령 : 제19332호(2006.2.9.)

# I. 법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

## 1. 내국인 면세점 면세물품 구입한도 및 판매한도 규정(특례규정 §5)

< 조특법 개정내용 >
<p><input type="checkbox"/> 제주도 관광객의 구매력을 높이고 제주국제자유도시 선도 프로젝트 사업의 개발재원 마련을 위해</p> <p>○ 면세물품 1회당 구입한도 및 품목당 판매가격 한도를 300달러 상당액에서 400달러 상당액으로 조정</p>

### (1) 개정내용

증 전	개 정
<p><input type="checkbox"/> 1회당 구입한도 및 품목당 판매한도</p> <p>○ 35만원</p> <p>※ 구입회수 : 연간 4회</p>	<p>○ 40만원</p>

### (2) 개정이유

- 법에서 위임한 구입한도 및 판매한도를 평균환율 등을 감안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시행일 이후 판매 또는 구입하는 분부터 적용

<참고> 제주도 면세점 제도개요

	세제지원 내용	비고
면세점 운영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전면세점</li> <li>- 면세점에서 교환권을 교부 받고 공·항만에서 물품 인도</li> </ul>	현행 보세판매 제도와 동일
면세물품 구입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인당 1회 \$400 이하, 연4회 구입가능</li> <li>- 다만, 1인당 1회 주류는 \$100 이하, 담배는 10갑 이내 구입가능</li> </ul>	단가 \$400 이상 물품은 판매할 수 없음
면세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류, 주류, 담배, 화장품, 귀금속, 넥타이, 벨트 등 16종</li> <li>○ 제주도 조례가 정하는 물품</li> </ul>	개별품목 열거
면세물품 공급·통관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물품 : 제조장 출고 시 면세반출</li> <li>수입물품 : 수입시점에서 통관 허용</li> </ul>	
면세점 이용 관광객의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세 이상 내·외국인(제주도민 포함)</li> </ul>	

## 2. 면세물품의 범위 조정 및 통보조항 규정(특례규정 §4)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면세물품의 범위  ○ 주류, 담배, 시계 등 15종 ○ 신변잡화류(재경부 고시) <추 가>  <신 설>	○ 제주도 조례가 정하는 물품  <input type="checkbox"/> 제주도 조례로 정한 물품을 재경부장관에게 즉시 통보하도록 규정

### (2) 개정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05.10.14)\*을 반영하여 제주도 조례가 정하는 물품을 면세물품의 범위에 포함하고, 동 물품에 대한 통보조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제주도 면세점(JDC) 쇼핑이 활성화되도록 이용제한 완화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조례 공포일 이후 외국물품이 지정면세점에 반입되거나 사업자가 내국물품을 지정면세점에 직접 반출하는 분부터 적용

#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 【개정된 주요내용】

1. 농지대로 양도소득 감면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2. 중소기업의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3. 산학협력단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 【시행령 개정일자】

- 대통령령 : 제19257호(2005.12.31.)
- 대통령령 : 제19338호(2006.2.9.)

<농어촌특별세법 · 시행령>

1. 농지대토 양도소득 감면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농특령§4⑥)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다음 감면시 농특세 비과세 ○ 농어민, 농어민을 조합원으로 하는 단체(영농조합법인등)에 대한 감면 - 8년 자경농지 감면 등 <신 설>	○ 농지대토 감면

(2) 개정이유

농지대토 양도소득 감면에 대한 농특세 비과세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6.1.1이후 감면받는 분부터 적용

2. 중소기업의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영 §4①1)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 style="text-align: center;">&lt;신 설&gt;</p> <p>※ 감면세액에 대해 20% 농특세 과세</p>	<p><input type="checkbox"/> 중소기업의 구조조정 지원을 위하여 다음의 경우 농어촌특별세 비과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전환을 위하여 사업용 고정자산 처분</li> <li>○ 금융기관 부채상환을 위하여 사업용 부동산 처분</li> <li>○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최대주주의 부동산 처분대금 증여</li> </ul>

(2) 개정이유

- 중소기업이 사업전환을 위하여 사업용 고정자산을 처분할 경우 세부담을 완화
- 중소기업의 금융기관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과 최대주주를 통한 자구노력 지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이 영 공포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3. 산학협력단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영 §4⑥5)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지방세가 면제되는 다음의 단체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input type="checkbox"/>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input type="checkbox"/> 학술연구단체, 장학단체 등	<input type="checkbox"/> 산학협력단을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추가  <input type="checkbox"/>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학협력단

#### (2) 개정이유

- 산학협력단은 산업발전을 위한 신기술 개발 및 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단체로서 농특세가 비과세되는 사회교육 시설, 연구단체 등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 산학협력단이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농특세 비과세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이 영 공포일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 종합부동산세법 · 시행령

# [종합부동산세법 · 시행령]

## <개정된 주요내용>

### I. 세대별 합산과세

1. 세대 정의 및 세대원의 범위 신설
2. 주된 납세의무자
3. 혼인 및 노부모 봉양에 대한 세대별 합산유예

### II. 주택분 종부세 세부담 강화

1. 공시가격의 정의 신설 및 재산세 과세표준 정의 삭제
2. 주택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자 확대
3. 주택분 종부세 과세표준 산정방식 변경
4. 주택분 세율체계 조정 및 과표적용율 인상 및 세율체계 조정
5. 재산세 공제 방식 변경
6. 주택 및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세부담 상한 확대

### III. 토지분 종부세 세부담 강화

1. 비사업용 토지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자 확대
2. 토지분 종부세 과세표준 산정방식 변경
3. 토지분 세율체계 및 과표현실화율 조정

### IV. 기타개정사항

1. 어린이 놀이방 종부세 합산 배제
2. 과세자료 제공 범위 확대

### 【법 · 시행령 개정일자】

- 법 률 : 제 7836호(2005.12.31.)
- 대통령령 : 제19253호(2005.12.31.)

# I. 세대별 합산과세

## 1. 세대 정의 및 세대원의 범위 신설(법§2, 영§1의2)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lt;신 설&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칙) 본인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직계존비속, 형제자매)으로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부는 주민등록상 단독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도 항상 동일한 세대</li> <li>○ 취학, 요양, 근무상 형편에 따른 퇴거자도 합산대상 세대원에 포함</li> </ul> </li> <li>□ (예외) 다음의 경우는 배우자가 없더라도 1세대로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0세 이상인 경우</li> <li>○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li> <li>○ 소득세법 제4조에 의한 소득으로서 세대원이 당해 주택을 소유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는 제외(가족의 사망, 결혼으로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li> </ul> </li> </ul>

(2) 개정이유

○ 종합부동산세 과세 방식 변경(법§7)

- 인별합산 ⇒ 세대별 합산 과세

○ 배우자가 없는 경우 1세대로 인정받기 위한 최저소득수준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정함

- 미성년자는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독립세대로 보지 아니함

- 다만, 미성년자 본인의 결혼, 부모의 사망으로 인한 경우에는 1세대 인정

※ 참고 : 2006년도 최저생계비(보건복지부 2005.9.1고시)

(원/월)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금액(원/월)	418,309	700,849	939,849	1,170,422	1,353,242	1,542,382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06년 과세분부터 적용

## 2. 주된 납세의무자(법§7, 영§2의2)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lt;신 설&gt;</p>	<p><input type="checkbox"/> 주택·비사업용토지 세대별 합산 과세에 따른 납세의무자 규정 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대원중 주된 주택소유자 및 주된 비사업용토지 소유자에게 종부세 납세의무 부과</li> <li>○ 다른 세대원에 대하여는 소유 주택·토지의 공시가격 범위 내에서 연대납세의무 부과</li> </ul> <p><input type="checkbox"/> 주된 주택소유자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을 소유한 세대원 중 <u>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의 합계액이 가장 큰 자</u></li> <li>○ 공시가격의 합계액이 가장 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에서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는 자</li> <li>○ 주택 공시가격의 합계액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으로서 종합부동산세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자</li> </ul> <p><input type="checkbox"/> 주된 토지소유자도 주택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p>

### (2) 개정이유

- 담세능력에 따른 납세의무 부과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06년 과세분부터 적용

### 3. 혼인 또는 노부모 봉양에 대한 세대별 합산유예(영§1의2)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input type="checkbox"/> 혼인 또는 노부모 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 2년간 세대별 합산 유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혼인으로 1세대가 되는 경우</li> <li>○ 60세 이상(여자의 경우 5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해 합가하여 1세대가 되는 경우</li> </ul> <p style="margin-left: 40px;">* 혼인 또는 합가전 상태를 1세대로 보아 2년간을 각각 합산하되 2년 후에는 혼인 또는 합가후 상태에서 합산</p>

#### (2) 개정이유

- 혼인이나 노부모 봉양의 경우 투기우려나 세부담 회피소지가 없는 점을 감안 2년간 세대별 합산 유예
  - 혼인, 노부모 봉양등에 따른 세부담 급증 방지
  - \*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규정과 같이 취급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06년 과세분부터 적용
  - \* 2006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혼인 또는 합가한지 1년~2년 이내인 경우에는 1년간 합산 유예

## II. 주택분 종부세 세부담 강화

### 1. 공시가격의 정의 신설 및 재산세 과세표준 정의 삭제(법§2)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lt;신 설&gt;</p>	<p><input type="checkbox"/> “공시가격” 정의 신설</p> <p>*“공시가격”이라 함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을 말한다. 다만, 동법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제1호단서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으로 한다.</p> <p><input type="checkbox"/> “재산세 과세표준” 정의 삭제</p>

#### (2) 개정이유

-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과세표준 적용비율이 달라짐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방식에서 「공시가격」 합산방식으로 변경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06년 과세분부터 적용

## 2. 주택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자 확대 (법§7)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u>인별로</u> 소유주택에 대한 재산세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이 4.5억을 초과하는 자에게 종부세 과세  ※ 과세기준금액 : 공시가격 9억원 초과(과표적용율 50%)	<input type="checkbox"/> <u>세대별로</u> 소유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6억원을 초과하는 세대의 주된 납세의무자에게 종부세 과세  ○ 과세기준금액 하향조정 (공시가격 9억원 초과 → 6억원 초과)  ○ 과세방법변경 「인별 합산」 ⇒ 「세대별 합산」

### (2) 개정이유

- 종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공시가격 9억원, 시가 11~12억원)이 지나치게 높아 과세대상자 범위가 협소하므로
  - 당초 보유세 강화 취지에 맞게 과세기준금액을 하향조정하여 과세대상자를 확대
- 세대별 합산 과세는 세대별 주거현실에 기초한 것으로서
  - 형평성 차원이나 경제 현실에 부합
  - 부부간, 세대원간 분산 등기를 통한 조세회피를 실질적으로 예방 가능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06년 과세분부터 적용

### 3. 주택분 종부세 과세표준 산정방식 변경(법§8)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주택분 종부세 과세표준 ○ 인별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에서 4.5억원을 공제한 금액  ⇒ (재산세과표합계액 - 4.5억원)  ※ 재산세 과표 : 공시가격 × 재산세 과표적용율 : 50%	<input type="checkbox"/> 주택분 종부세 과세표준 ○ 세대별로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  ⇒ (공시가격합계액 - 6억원)

#### (2) 개정이유

-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공시가격체계로 변경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공시가격의 합계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정착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06년 과세분부터 적용

#### 4. 주택분 종부세 과표적용율 인상 및 세율체계 조정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과표적용율 50%  <input type="checkbox"/> 세율체계 : 3단계		<input type="checkbox"/> 과표적용율을 2009년까지 100%로 인상하고 세율체계 조정  ○ 06년 70% ○ 07년 80%, 08년 90%, ○ 09년이후 100%																								
<table border="1"> <thead> <tr> <th>과세표준</th> <th>세율</th> </tr> </thead> <tbody> <tr> <td>5.5억 이하</td> <td>1%</td> </tr> <tr> <td>5.5억 초과 45.5억 이하</td> <td>2%</td> </tr> <tr> <td>45.5억 초과</td> <td>3%</td> </tr> </tbody> </table>	과세표준	세율	5.5억 이하	1%	5.5억 초과 45.5억 이하	2%	45.5억 초과	3%	<table border="1"> <thead> <tr> <th>과세표준</th> <th>과표 적용율</th> <th>세율</th> </tr> </thead> <tbody> <tr> <td>3억이하</td> <td>06년 70%</td> <td>1%</td> </tr> <tr> <td>3억 초과 14억 이하</td> <td>07년 80%</td> <td>1.5%</td> </tr> <tr> <td>14억 초과 94억 이하</td> <td>08년 90%</td> <td>2%</td> </tr> <tr> <td>94억 초과</td> <td>09년 100%</td> <td>3%</td> </tr> </tbody> </table>	과세표준	과표 적용율	세율	3억이하	06년 70%	1%	3억 초과 14억 이하	07년 80%	1.5%	14억 초과 94억 이하	08년 90%	2%	94억 초과	09년 100%	3%		
과세표준	세율																									
5.5억 이하	1%																									
5.5억 초과 45.5억 이하	2%																									
45.5억 초과	3%																									
과세표준	과표 적용율	세율																								
3억이하	06년 70%	1%																								
3억 초과 14억 이하	07년 80%	1.5%																								
14억 초과 94억 이하	08년 90%	2%																								
94억 초과	09년 100%	3%																								
※ 과표적용율 50%를 기준으로  9억원 ~ 20억원 1% 20억원 ~ 100억원 2% 100억원 초과 3%를 적용		※ 공시가격에 연도별 적용율을 곱하여 세액계산('06년 기준) (6~9억원) × 70% × 1% (9~20억원) × 70% × 1.5% (20~100억원) × 70% × 2% (100억원 초과) × 70% × 3%																								

##### (2) 개정이유

- 고가주택 및 다주택보유자인 종부세 대상자의 세부담을 정상화
-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세율체계를 조정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06년 과세분부터 적용

5. 재산세 공제 방식 변경(법§9, 법§14, 영§4의2, 영§5의3)

(1) 개정내용

증 전	개 정
<p><input type="checkbox"/> 이중과세 조정을 위하여</p> <p>○ 표준세율에 의해 계산한 재산세 합계액 중 199만원(비사업용 토지 125만원, 사업용 토지 680만원)초과 금액을 종부세 산출세액에서 공제</p>	<p><input type="checkbox"/> 이중과세 조정을 위하여</p> <p>○ 재산세 부과액 중 과세기준금액 (주택 6억원, 사업용 토지 3억원, 사업용 토지 40억원)초과분에 대한 재산세액을 종부세 산출 세액에서 공제</p> <p>○ 산식</p> <p style="text-align: right;">주택분 과세기준금 액을 초과하는 분에 대하여 주택분 재산 세 표준세율로 계산 한 재산세 상당액</p> <p>주 택 분      세 표준세율로 계산 재산세로      한 재산세 상당액</p> <p>부 과 된 × <math>\frac{\text{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분에 대한 재산세액}}{\text{주택분 과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액}}</math></p> <p>세 액 의      주택을 합산하여 주 합계액      택분 재산세 표준세                  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p> <p>* 토지분의 경우도 같은 산식 적용</p>

(2) 개정이유

- 종부세 이중과세 조정을 위하여 과세기준금액 초과분에 대한 재산세액(탄력세율 및 세부담상한 적용후 세액)을 종부세액에서 공제
- 종부세 이중과세 조정시 실제 납부한 재산세를 기준으로 조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06년 과세분부터 적용

<참고> 종합부동산세 세액 계산 방법

① 과세표준산출

○ 세대별로 주택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과세기준금액(6억원)을 초과하는 분

② 세율별 과세표준에 연도별 적용비율 적용

○ 06년 70%

③ 세율을 적용

④ 6억원 초과분에 해당하는 재산세액 공제

※ 계산사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①)		○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 - 6억원  ○ 6~9, 9~20, 20~100, 100억원 초과 부분에 대해 각각 연도별 적용비율을 적용  ○ 각 구간별 세율 적용
× 세율별 과세표준에 연도별 적용율(②)	⇒	
× 세율(③)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 1차 지방세액 공제(④)		○ 6억원 초과분에 해당하는 재산세액 공제  <table border="0" style="width: 100%;"> <tr> <td style="padding-right: 20px;">전체 실제 재산세 부과액</td> <td style="border-left: 1px solid black; padding-left: 20px;">과세기준금액 초과분에 대한 재산세액</td> </tr> <tr> <td style="padding-right: 20px;">* 탄력세율 및 세부담 상한 적용후 금액</td> <td style="border-left: 1px solid black; padding-left: 20px;">(표준세율 적용) 전체 재산세 부과액 (표준세율 적용)</td> </tr> </table>	전체 실제 재산세 부과액	과세기준금액 초과분에 대한 재산세액	* 탄력세율 및 세부담 상한 적용후 금액	(표준세율 적용) 전체 재산세 부과액 (표준세율 적용)
전체 실제 재산세 부과액	과세기준금액 초과분에 대한 재산세액					
* 탄력세율 및 세부담 상한 적용후 금액	(표준세율 적용) 전체 재산세 부과액 (표준세율 적용)					
= 납부할 세액	⇒					

## 6. 주택 및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세부담 상한 확대(법§10,§15)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한도  ○ 전년대비 1.5배 한도	<input type="checkbox"/>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한도  ○ 전년대비 3배 한도로 인상 * 재산세와 사업용 토지 세부담 한도는 1.5배 유지

### (2) 개정이유

- 종전 세부담 상한(150%)에서는
  - 세부담이 정상화되는데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고
  - 그 기간동안에는 보유가액에 상응하는 세부담이라는 세제개편의 취지가 희석됨
- 세부담을 조기에 현실화하고 보유세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세부담 상한을 상향조정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06년 과세분부터 적용

### Ⅲ. 토지분 종부세 세부담 강화

#### 1. 비사업용 토지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자 확대(법§12)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 인별 소유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u>재산세 과세표준</u>을 합한 금액이 3억원(공시가격 6억원)을 초과하는 자에게 종부세 과세</p> <p>※ 과세기준금액 : 공시가격 6억원 (과표적용율 50%)</p>	<p>□ 세대별로 소유 비사업용 토지의 <u>공시가격</u>을 합산하여 3억원을 초과하는 세대의 주된 납세의무자에게 종부세 과세</p> <p>○ 과세기준금액 하향조정 (공시가격 6억원 초과 → 3억원 초과)</p> <p>○ 과세방법변경 「인별 합산」 ⇒ 「세대별 합산」</p>

##### (2) 개정이유

- 나대지 등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
  - 생산에 사용되지 않는 유헴토지이고 주로 재산증식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점을 감안 주택보다 무겁게 과세
- 부부간, 세대원간에 분산하는 방법으로 세부담 회피소지를 방지하기 위해 주택과 같이 세대별 합산
  - ※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경우 생산에 사용되는 사업용 토지인 점을 감안 현행 과세기준금액 유지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06년 과세분부터 적용

## 2. 토지분 종부세 과세표준 산정방식 변경(§13)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비사업용토지의 종부세 과세표준 ○ <u>재산세 과세표준</u> 을 합한 금액에서 3억원(공시가격 6억원)을 공제한 금액  ⇒ (재산세 과표 - 3억원)  ※ 재산세과표 : 공시가격 × 과표 적용율(50%)	<input type="checkbox"/> 공시가격을 세대별로 합산하여 3억원을 초과한 금액  ⇒ (공시가격 - 3억원)
<input type="checkbox"/> 사업용토지의 종부세 과세표준 ○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에서 20억원(공시가격 40억원)을 공제한 금액	<input type="checkbox"/> 공시가격을 인별로 합산하여 40억원을 초과한 금액  ⇒ (공시가격 - 40억원)

### (2) 개정이유

- 나대지등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보유세를 대폭 강화하여 지가 상승이익을 기대한 토지 가수요를 차단
  - 사업용 토지는 생산에 사용되는 점을 감안 현행과 同一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06년 과세분부터 적용

### 3. 토지분 세율체계 및 과표현실화를 조정(법§14)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lt;비사업용 토지&gt;</p> <p><input type="checkbox"/> 과표적용율 50%</p> <p>○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산하여 3억원(공시가격 6억원) 초과분에 대해 종부세 과세</p> <table border="1"> <thead> <tr> <th>과세표준</th> <th>세율</th> </tr> </thead> <tbody> <tr> <td>7억원 이하</td> <td>1%</td> </tr> <tr> <td>7억원 초과 47억원 이하</td> <td>2%</td> </tr> <tr> <td>47억원 초과</td> <td>4%</td> </tr> </tbody> </table>		과세표준	세율	7억원 이하	1%	7억원 초과 47억원 이하	2%	47억원 초과	4%	<p><input type="checkbox"/> 과표적용율을 2009년까지 100%로 인상하고 세율체계 조정</p> <p>○ 공시가격 3억원 초과분에 대해 종부세 과세</p> <table border="1"> <thead> <tr> <th>과세표준</th> <th>과표적용율</th> <th>세율</th> </tr> </thead> <tbody> <tr> <td>17억원 이하</td> <td>06년 70%</td> <td>1%</td> </tr> <tr> <td>17억원 초과 97억원 이하</td> <td>07년 80%</td> <td>2%</td> </tr> <tr> <td>97억원 초과</td> <td>08년 90%</td> <td>4%</td> </tr> </tbody> </table> <p>※ 공시가격에 연도별 적용율 곱하여 세액 계산</p>			과세표준	과표적용율	세율	17억원 이하	06년 70%	1%	17억원 초과 97억원 이하	07년 80%	2%	97억원 초과	08년 90%	4%
과세표준	세율																							
7억원 이하	1%																							
7억원 초과 47억원 이하	2%																							
47억원 초과	4%																							
과세표준	과표적용율	세율																						
17억원 이하	06년 70%	1%																						
17억원 초과 97억원 이하	07년 80%	2%																						
97억원 초과	08년 90%	4%																						
<p>&lt;사업용 토지&gt;</p> <p><input type="checkbox"/> 과표적용율 50%</p> <p>○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산하여 20억원(공시가격 40억원) 초과분에 대해 종부세 과세</p> <table border="1"> <thead> <tr> <th>과세표준</th> <th>세율</th> </tr> </thead> <tbody> <tr> <td>80억원 이하</td> <td>0.6%</td> </tr> <tr> <td>80억원 초과 480억원 이하</td> <td>1%</td> </tr> <tr> <td>480억원 초과</td> <td>1.6%</td> </tr> </tbody> </table>		과세표준	세율	80억원 이하	0.6%	80억원 초과 480억원 이하	1%	480억원 초과	1.6%	<p><input type="checkbox"/> 과표적용율을 매년 5%p씩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p> <p>○ 공시가격 40억원 초과분에 대해 종부세 과세</p> <table border="1"> <thead> <tr> <th>과세표준</th> <th>세율</th> </tr> </thead> <tbody> <tr> <td>160억원 이하</td> <td>0.6%</td> </tr> <tr> <td>160억원 초과 960억원 이하</td> <td>1%</td> </tr> <tr> <td>960억원 초과</td> <td>1.6%</td> </tr> </tbody> </table> <p>※ 06년 이후 과표조정을 매년 5%씩 상향조정                      05 : 50%                      06 : 55%                      :                      :                      15 : 100%</p>			과세표준	세율	160억원 이하	0.6%	160억원 초과 960억원 이하	1%	960억원 초과	1.6%				
과세표준	세율																							
80억원 이하	0.6%																							
80억원 초과 480억원 이하	1%																							
480억원 초과	1.6%																							
과세표준	세율																							
160억원 이하	0.6%																							
160억원 초과 960억원 이하	1%																							
960억원 초과	1.6%																							

## (2) 개정이유

### ○ 토지에 대한 보유세 합리화

-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중부세를 강화하되
- 생산에 사용되는 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과표현실화

### ○ 종합부동산세 계산방식을 재산세 과세표준합산방식에서 공시가격 기준으로 전환에 따라 세율체계를 공시가격 기준으로 전환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 06년 과세분부터 적용

#### IV. 기타개정사항

##### 1. 가정보육시설(어린이 놀이방) 종부세 합산 배제(법§8, 영§4)

종 전	개 정
<p>□ 어린이 놀이방(가정보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부세 면제 (지방세법 §272, 종부세법 §6)</p> <p>○ 주거를 겸용하는 경우는 과세</p> <p>※ 임대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요건                      -매입임대: 5호이상, 10년이상 임대                      -건설임대: 2호이상, 5년이상 임대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을 할 것</p>	<p>□ 주거겸용 어린이 놀이방의 경우에도</p> <p>○ 일정요건하에 종부세 합산 대상에서 배제</p> <p>&lt;요건&gt;</p> <p>-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인가를 받고 세대원이 5년 이상 가정보육시설로 사용할 것</p> <p>* 단, 수용, 사망,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 의무운영기간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p> <p>* 이사한 주택을 3월이내에 가정보육시설로 운영하거나 사망으로 운영하지 아니한 기간이 3월이내인 경우 계속하여 가정보육시설을 운영하는 것으로 간주</p> <p>-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할 것</p>

##### (2) 개정이유

- 저출산시대에 대비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장려 및 지원
  - \* 가정보육시설수 : 전국 11,178개소
  - 평균건평 36평, 자가 55.3%, 임대 45.3%, 기타 1.2%

##### (3) 적용시기

- 2006년도 과세분부터 적용

## 2. 과세자료 제공 범위 확대(법§21, 영§17)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납세의무자별로 주택 또는 토지에 대한 종부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국세청장에게 송부	<input type="checkbox"/> 재산세 납세의무자별로 주택 및 토지에 대한 재산세 및 종부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국세청에 통보  <input type="checkbox"/> 행정자치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재산세 부과 자료를 10일내에 국세청장에게 제출

### (2) 개정이유

- 세대별 합산과세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국세청에 통보하는 과세자료 확대
  -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 → 재산세 과세자료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06년 과세분부터 적용

## 관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관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개정된 주요내용】

1. 과오납금 환급청구권 소멸시효 연장
2. 확정가격에 대한 세관장의 직권 결정절차 마련
3. 관세 가산세 부과체계 개선
4. 품목분류 변경의 효력 규정
5. 항공기 항행 안전용품에 대한 관세감면기간 위임근거 신설
6. 재수출 감면세율 규정
7. 고액상습채납자 명단공개 근거 마련
8. 세관장의 승객예약자료 열람·제출요구권 신설
9. 업무정지 명령의 정지기간 상한선 설정
10. 보세창고 장치기간 단축을 통한 물류원활화
11. 통관단일창구 운영 법적근거 마련
12. 관세포탈죄·허위신고죄·과태료 조항 개정
13. 징수금액의 최저한 상향 조정
14. 간이세율표 개정
15. 특정물품 관세감면대상에 종마의 수말·피조개 종묘 추가
16. 관세감면의 일몰기한 도입 및 일부 품목 감면을 축소

### 【법 · 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일자】

- 법 률 : 제7581호(2005.7.13)  
제7887호(2006.3.24)
- 대통령령 : 제19478호(2006.5.22)
- 재정경제부령 : 제470호(2005.12.30)

## 1. 과오납금 환급청구권 소멸시효 연장(법§22)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납세자의 과오납금 환급청구권 소멸시효 ○ 2년	○ 3년

### (2) 개정이유

-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관세환급청구권 소멸시효를 3년으로 연장
- \*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5년임에 비하여 납세자의 관세환급청구권 소멸시효는 2년으로 납세자와 과세권자간에 형평성 문제가 있어 이를 개정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5.7.13 이후부터 적용

## 2. 확정가격에 대한 세관장의 직권 결정절차 마련(법§28)

### (1) 개정내용

증 전	개 정
<p><input type="checkbox"/> 수입물품의 가격은 수입신고 시에 확정 신고</p> <p><input type="checkbox"/> 예외적으로 수입 이후 가격이 확정되는 물품의 경우,</p> <p>○ 먼저 잠정 가격신고 후, 세관장이 정한 기간(통상 1년) 내에 확정하여 가격신고</p> <p style="text-align: center;">&lt;신 설&gt;</p>	<p><input type="checkbox"/> 세관장이 정한 기간 내 확정 가격신고가 없는 경우,</p> <p>○ 세관장이 직권 결정</p>

### (2) 개정이유

- 가격을 확정하지 않는 경우에 세관장이 직권으로 결정하여 납세법률관계의 불안정성 해소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이법 시행(2006.3.24) 전에 잠정가격 신고 후 확정가격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분부터 적용

### 3. 관세 가산세 부과체계 개선(법§42·241, 영§39)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일반수입시 가산세율 ○ 부족세액의 20% 범위내 대통령령에 따라 가산세 부과	○ 내국세체계와 같이 가산세를 2종류로 구분하여 운영 - 신고불성실 가산세 : 부족세액의 10% - 납부불성실 가산세 : 부족세액×미납부기간×이자율 (1일 13/10만, 연리4.745%)
<input type="checkbox"/> 간이수입시 가산세율 ○ 이사회물 : 20% ○ 여행자 휴대품 : 30% <신 설>	○ 승무원 휴대품 : 30%

#### (2) 개정이유

- 관세의 가산세 체계를 내국세와 마찬가지로 세분화함으로써 운용의 합리성 제고
- 간이수입시 가산세율 부과대상에 승무원 휴대품 추가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3.24 이후 최초로 수정신고하거나 납세고지 하는 분부터 적용

#### 4. 품목분류 변경의 효력 규정(법§87)

##### (1) 개정내용

증 전	개 정
<p><input type="checkbox"/> 품목분류 변경의 효력</p> <p>★ 관세청장이 사전심사 후 결정(또는 직권결정)한 품목분류를 다시 변경결정하는 경우의 효력</p> <p style="text-align: center;">&lt;신 설&gt;</p>	<p>○ 원칙 : 미래효만 인정 (법적 안정성 유지)</p> <p>○ 예외 : 선의의 납세자에게 유리한 경우 제한적 소급효 허용</p> <p>(예) 高→低세율로 품목분류 변경시, 저세율을 소급 적용하여 환급</p> <p>- 단 사전심사과정에서 고의적으로 서류조작 등을 하였을 경우에는 소급하여 추징·처벌</p>

##### (2) 개정이유

- 품목분류를 결정한 이후 변경결정한 경우에 그 효력(소급효)의 적용에 있어 관세청·국세심판원의 처리사례에 혼란 발생
  - 법에서 품목분류 변경 효력에 관하여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효력의 일관성 유지 및 납세자 권익 향상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3.24 이후부터 적용

## 5. 항공기 항행 안전용품에 대한 관세감면기간 위임근거 신설(법§93)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관세감면 대상 ○ 항공기 항행 안전용품 - 레이더 장치 등 42개 품목 - 감면액: 30억원('05년)  <input type="checkbox"/> 일몰근거 : 없음	<input type="checkbox"/> 일몰 근거 마련 ○ 법률에서 일몰기한 규정 (07.12.31 까지)

### (2) 개정이유

- 특정성 있는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은 원칙적으로 폐지
  - 즉각적인 감면폐지가 기업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일몰제로 운영한 후 단계적 폐지
  - 국민의 재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직접 법률에서 일몰기한 규정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3.24 이후부터 적용

## 6. 재수출 감면세율 규정(법§98, 영§117)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재수출 감면세 ○ 임대차 계약 등에 의해 일시 수입 후 재수출되는 물품의 감면세율을 대통령령에 위임	○ 재수출 감면세율을 직접 법률에 규정

\* 재수출 감면제도

- 임대차·도급계약에 의해 일시 수입하는 물품 중 국내사용(소비)된 부분에는 관세를 징수하되, 수출되는 부분에는 관세를 면제하는 제도(기간에 따라 30~85% 감면)

### (2) 개정이유

- 본 조항은 국내 소비분만 과세하겠다는 관세의 소비세적 성격을 반영한 것으로서 91년 이후 개정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 국회사무처 법제실의 「행정입법의 법률로의 전환과제」(‘04.9)에 따라 시행령에 있는 관세감면률을 법으로 이관하는 것임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3.24 이후부터 적용

7. 고액상습채납자 명단공개 근거 마련(법§116조의2, 영§141의2·141의3)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input type="checkbox"/> 명단공개 대상 및 내용 ○ 대상 : 2년 이상, 10억원 이상 채납 ○ 내용 : 성명·상호·직업·연령·세목·채납액·채납요지 등  <input type="checkbox"/> 명단공개 제외사유 ○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에 있는 경우 ○ 채납액의 30% 이상 기납부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장수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채납된 세금을 회생계획의 납부일정에 따라 납부하고 있는 경우 ○ 재산상황·미성년자 해당여부 및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할 때 공개의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설치 ○ 위원 : 관(4), 민(6), 위원장(관세청 차장) ○ 사전 소명기회(6월) 제공 및 공개여부 적정성 심사 등

(2) 개정이유

- 국세기본법에 '04년부터 도입·시행하고 있는 「고액·상습 채납자 명단공개제도」를 관세법에도 도입하여 성실납세 풍토 조성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07.1.1부터 시행

8. 세관장의 승객예약자료 열람·제출요구권 신설(법§137의2, 영§158의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input type="checkbox"/> 입항신고시 항공사(선사)의 세관 제출정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하목록 및 선기용품목록</li> <li>○ 승객명부 및 승무원 명부 등     &lt;신 설&gt;</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승객예약자료*</li> </ul> <p>*국적·성명·생년월일·여권번호·예약번호·주소·전화번호·항공권번호·발권일·발권도시·여행경로·동반탑승자·수하물자료 등</p> <p><input type="checkbox"/> 자료의 열람 및 보존 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세청장이 지정한 세관공무원만 열람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별 고유번호 부여</li> </ul> </li> <li>○ 1개월 경과시 자료를 별도로 보존하고 3년이상 보존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 범위반자 등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5년간 보존</li> </ul> </li> </ul>

(2) 개정이유

- 날로 지능화해가는 여행객 가장 밀수, 테러물품 반입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승객예약자료 제출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3.24 이후부터 적용

9. 업무정지 명령의 정지기간 상한선 설정 (법§165·178·204·224)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수출입관련자의 질서위반 등에 대하여 업무정지 명령 가능 * 수출입관련자 : 보세사·특허보세구역 설영인·종합보세구역 운영인·보세운송사업자	
<input type="checkbox"/> 업무정지 명령의 상한선 미설정	<input type="checkbox"/> 업무정지 명령을 6월의 범위 내에서 가능토록 명확하게 규정

(2) 개정이유

- 업무정지 명령 등이 과도하게 발동되어 수출입관련자의 이익 침해를 가져올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함
  - 업무정지 기간의 상한선을 설정함으로써 과도한 처벌 예방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3.24 이후부터 적용

10. 보세창고 장치기간 단축을 통한 물류원활화 (법§177·200·205)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보세창고 장치기간 ○ 외국물품 : 1년의 범위내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 (관세청 고시 : 1년) ○ 내국물품 : 1년(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 : 6월)	○ 현행유지 ○ 내국물품 : 1년의 범위내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
<input type="checkbox"/> 종합보세구역 장치기간 ○ 제한 없음	○ 보세창고의 장치기간 준용

(2) 개정이유

- 보세창고의 내국물품에 대한 장치 허용기간이 비교적 장기간으로 고정화되어 있고, 종합보세구역의 보세창고에는 장치기간이 제한이 없어 물류적체의 요인이 됨
- 따라서, 보세창고 및 종합보세구역의 장치기간을 1년의 범위내에서 관세청장이 탄력적으로 조정토록 하여 물류 원활화 도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3.24 이후부터 적용

## 11. 통관단일창구 운영 법적근거 마련(법§226, 영§223)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 수출입업자의 통관을 위해서는 수입신고 이외에 검역 등의 요건구비여부 확인* 필요</p> <p>* 식품위생법 등 29개 법률, 30개 수입요건확인기관</p> <p>○ 수출입업자가 개별 법령의 소관부처·기관별로 승인·허가 등을 받고난 후 세관에 수출입신고</p>	<p>○ 수출입신고 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에 대한 승인 등의 신청을 일괄처리</p> <p>- 관세청장이 지정·고시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청</p>

### (2) 개정이유

- 관세청의 통관단일창구(Single window) 구축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수출입 비용축소 및 민원편의 제고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3.24 이후부터 적용

## 12. 관세포탈죄·허위신고죄·과태료 조항 개정(법§270·276·277)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input type="checkbox"/> 허위의 신고를 갖추어 품목 분류를 사전심사 신청한 경우 ○ 관세포탈죄 적용
<신 설>	<input type="checkbox"/> 항공사(선사)의 승객예약자료에 대한 고의 미제출시 허위신고죄로 처벌(과실의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신 설>	<input type="checkbox"/> 보세화물주선업자가 세관장에 대한 신고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허위신고죄로 처벌(단, 변경 신고의무 불이행시는 과태료 부과)
<신 설>	<input type="checkbox"/> 종합보세구역 반입물품에 대한 세관장의 반출명령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 (2) 개정이유

- 허위의 서류를 갖추어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한 경우 관세포탈죄를 적용하여 관세탈루 목적의 허위신청 방지
- 관세법 개정으로 새롭게 신설된 규정의 의무이행수단 확보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3.24 이후부터 적용



## 14. 간이세율표 개정(영 별표2)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간이세율표 ○ 골프용품 : 55% ○ 모터보트 및 요트와 그 관련제품, 수상스키용품, 설상 및 수상 스쿠터, 윈드서핑용구, 영사기·촬영기와 그 관련제품 : 50% ○ 공기조절기와 그 관련제품 : 45% ○ 영상투사방식의 텔레비전수상기와 그 관련제품 : 35%	<input type="checkbox"/> 간이세율표 ○ 20% ○ 20% ○ 20% ○ 20%

### (2) 개정이유

- 특별소비세법 등 내국세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간이세율표 개정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5.22 이후부터 적용

15. 특정물품 관세감면대상에 종마의 수말·피조개 종묘 추가  
(규칙§43)

(1) 개정내용

증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관세가 면제되는 동식물의 종자개량 물품 <input type="checkbox"/> 종마의 경우 농가 사육용으로 도입하는 암말에 한함 <신 설>	<input type="checkbox"/> 종마의 수말도 추가  <input type="checkbox"/> 피조개 종묘 추가

(2) 개정이유

- 1992년 종마중 암말에 한해 관세를 면제한 이유는 양축농가 지원을 위한 것(수말은 마사회가 주로 수입)
  - 최근 양축형태 변화로 수말도 대부분 농가에서 수입하고 있는 바, 여타 종축과의 과세형평, 농가 비용부담 완화 등을 위해 종자용 수말(농가사육용)에 대하여도 관세면제
- 신항만 건설로 03년부터 국내 피조개 종묘 생산량이 급감하여 현재는 총수요의 86%를 수입에 의존
  - 피조개 양식어가의 비용부담 완화, 여타 종묘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지원 필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1.1 이후부터 적용

16. 관세감면의 일몰기한 도입 및 일부 품목 감면을 축소(규칙 §43·46)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환경오염 방지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div style="text-align: center;">&lt;신 설&gt;</div>	<input type="checkbox"/> 일몰기한(07.12.31) 도입
<input type="checkbox"/> 공장자동화물품의 감면률 <input type="checkbox"/> 일몰 : 05.12.31 <input type="checkbox"/> 40% * 다만, 중소기업체는 50%	<input type="checkbox"/> 일몰연장 : 07.12.31 <input type="checkbox"/> 30%로 축소 * 중소기업체 50%는 유지
<input type="checkbox"/> 방위산업에 소요되는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input type="checkbox"/> 일몰 : 05.12.31 <input type="checkbox"/> 70%	<input type="checkbox"/> 일몰연장 : 07.12.31 <input type="checkbox"/> 40%로 축소

(2) 개정이유

- 비과세·감면 축소원칙에 따라 특정성 있는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은 원칙적으로 폐지하여야 하나,
- 즉각적인 폐지로 기업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일몰제로 운용한 후 단계적 폐지를 위한 것임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1.1 이후부터 적용

## 조정 · 할당관세 규정

## 【조정·할당관세 규정】

### 【개정된 주요내용】

1. 조정관세 적용품목 및 적용관세율 조정
2. 할당관세 적용품목 및 적용관세율 조정

### 【법·시행령 개정일자】

- 대통령령 : 제19211호(2005.12.30 공포)
  - \* 관세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개정
- 대통령령 : 제19212호(2005.12.30 공포)
  - \* 관세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개정

# 1. 조정관세 적용품목 및 적용관세율 조정(대통령령)

-관세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개정-

## —조정관세<관세법제69조>—

- ◇ 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 관세율을 100%p로까지(즉, 조정관세의 ceiling : 100%) 인상할 수 있는 탄력관세제도
- \* 통상 1년단위로 운용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조정관세 적용품목 ○ '05년 : 냉동명태 등 19개	<input type="checkbox"/> 조정관세 적용품목 ○ '06년 : 냉동명태 등 18개(△1) - 제외 : 냉동새우 - 세율인하 : 메주 등 8개 * 나머지 10개 품목(바나나 등)은 국내업체 보호 등을 위해 현행세율 유지

### (2) 개정이유

- 조정관세 적용시한이 '05.12.31로 만료됨에 따라 2006년에 적용할 조정관세 내용 규정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06.1.1부터 '06.12.31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

<참 고> 2006년 조정관세 운용현황

관세율 표번호	품 명	기본관세 (잠정)	조 정 관 세 (%)		
			'05년	'06년	증감
0301	활 뱀 장 어	10	30	30	-
0301	활 돔	10	45	45	-
0301	활 농 어	10	45	40	-5
0301	활 민 어	10	36	36	-
0303	냉 동 명 태	10	30	30	-
0303	냉 동 콩 치	10	40	36	-4
0303	냉 동 흥 어	10	30	27	-3
0303	냉 동 민 어	10	70	63	-7
0306	냉 동 새 우	20	27	.	(제외)
0306	새 우 젓	20	55	50	-5
0307	냉 동 오 징 어	10	27	24	-3
0709	기 표 고 버 섯	30	45	45	-
0712	기 표 고 버 섯	30	45	45	-
0803	바 나 나	30	40	40	-
1902	당 면	8	45	45	-
1904	찐 쌀	8	50	50	-
2103	혼 합 조 미 료	8	45	45	-
2103	메 주	8	20	18	-2
4412	합 판	8	13	12	-1
8479	전 자 부 품 장 착 기	8	16	16	-

## 2. 할당관세 적용품목 및 적용관세율 조정(대통령령)

-관세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개정-

### 할당관세<관세법제71조>

◇ 기업경쟁력 강화, 원활한 물자수급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에서 40%p를 가감한 범위내에서 운용하는 탄력관세제도

\* 통상 1년단위로 운용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할당관세 적용품목 ○ '05년 : 사료용 겉보리 등 96개	<input type="checkbox"/> 할당관세 적용품목 ○ '06년 : 원유 등 89개(△7) - 제외(17개) : 페로실리콘 등 - 세율인상(9개) : 가공용옥수수 등 - 세율인하(4개) : 사료용 완두 등 - 신규적용(10개) : 천연가스액 등 * 나머지 66개 품목은 현행세율 유지

#### (2) 개정이유

- 할당관세 적용시한이 '05.12.31로 만료됨에 따라 2006년에 적용할 할당관세 내용 규정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06.1.1부터 '06.12.31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

(단위 : %)

관세율 표번호	품 명	기본관세 (잠정)	할 당 관 세		
			'05년	'06년	증감
0404	유장과 변성유장(사료용)	20	4	4	-
0511	브라인 슈림프알(치어 먹이용)	8	2	4	+2
0601	백 합 인 경	8	4	4	-
0713	완 두(사료용)	30	2	0	-2
0714	매 니 옥 칩(주정용)	20	10	10	-
0714	매 니 옥 펠 리 트(사료용)	7	0	1	+1
0802	아 몬 드	8	-	5	(신규)
1001	밀 (사 료 용)	3	0	0	-
1001	밀 (제 분 용)	3	1	1	-
1003	맥 주 맥	30	15	20	+5
1003	겔 보 리 (사료용)	5	2	2	-
1005	옥 수 수 (사료용)	5(3)	0	0	-
1005	옥 수 수 (가공용)	5(3)	1	2	+1
1107	맥 아	30	10	10	-
1201	대두(채유 및 탈지대두박용)	5(3)	0	1	+1
1214	알 팔 파(사 료 용)	20	1	1	-
1214	┌ 근채류(사료용및버섯재배용)	5/20	2	2	-
2308	└				
1514	유 채 조 유	10	-	8	(신규)
1514	유 채 정 제 유	30	-	10	(신규)
1518	동식물성 유지(사료용)	8	5	-	(제외)
1701	정 제 당	50	-	40	(신규)
2302	밀 기 울(사 료 용)	5	2	2	-
2306	면 실 박(사 료 용)	5	2	2	-

관세율 표번호	품 명	기본관세 (잠정)	할 당 관 세		
			'05년	'06년	증감
2306	야 자 박(사 료 용)	5	2	2	-
2306	팜 박(사 료 용)	5	2	2	-
2510	천 연 인 산 칼 슝	1	0	-	(제외)
2601	철 광 석	1	0	0	-
2602	망 간 광	1	0	-	(제외)
2603	동 광	1	0	0	-
2607	연 광	1	0	-	(제외)
2608	아 연 광	1	0	0	-
2701	유 연 탄	1	0	-	(제외)
2704	코 크 스	5	1	3	+2
2709	원 유	5	1	1	-
2709	원 유(나프타용)	5	0	0	-
2710	휘 발 유	8(5)	5	5	-
2710	등 유	8(5)	5	5	-
2710	경 유	8(5)	5	5	-
2710	중 유	8(5)	5	5	-
2710	나 프 타	5(1)	0	0	-
2710	천 연 가 스 액 (N . G . L)	5(1)	-	0	(신규)
2711	프 로 판 및 부 탄	5	1.5	1.5	-
2814	무 수 암 모 니 아	2	0	1	+1
2822	산 화 코 발 트	8	4	4	-

관세율 표번호	품 명	기본관세 (잠정)	할 당 관 세		
			'05년	'06년	증감
2825	산 화 텅 스 텐	8	3	1	-2
2825외	농 약 원 제	8	2	2	-
2905	에 틸 렌 글 리 콜	8	0	3	+3
2914	메 틸 에 틸 케 톤	8	3	-	(제외)
2922	H - 산	5	3	3	-
2924	이 오 프 로 마 이 드	8	0	0	-
2924	이 오 파 미 돌	8	0	0	-
2924	이 오 메 프 롤	8	0	0	-
2933	6 - 핵 산 락 탐	8	3	3	-
3102	요 소	8	2	2	-
3204	염 료	8	6/4	6/4	-
3302	방 향 성 물 질 의 혼 합 물	8	5	5	-
3501	카 세 인 · 카 세 인 산 염	20	8	8	-
3701	블 랭 크 마 스 크	8	3	3	-
3801	전 지 용 흑 연	8	4	4	-
3824	P D P 용 드 라 이 필 림	8	4	-	(제외)
3901	저 밀 도 폴 리 에 틸 렌	8	-	4	(신규)
3901	고 밀 도 폴 리 에 틸 렌	8	-	4	(신규)
3907	폴 리 라 틱 산	8	-	4	(신규)
3919	이 방 전 도 성 필 림	8	-	4	(신규)
3920	폴 리 이 미 드 필 림	8	4	4	-
3921	격 리 막	8	4	4	-
4001	천 연 고 무	1	0	0	-
4101	원 피	2	1	1	-
4102					
4103					

관세율 표번호	품 명	기본관세 (잠정)	할 당 관 세		
			'05년	'06년	증감
4401	목 재 칩	2	0	0	-
4403	원 목	1/2	0	0	-
4408	합 판 용 단 판	5	3	3	-
4408	무 니 목	5	3	3	-
5002	생 사	8	3	3	-
5101	양 모	1	0	0	-
5105					
5201	원 면	1	0	0	-
5203					
5205	면 사	8	2	4	+2
5403	재생 또는 반합성필라멘트사 (비스코스레이온의 것)	8	2	2	-
5504	재생 또는 반합성스테이플섬유 (비스코스레이온의 것)	4	2	2	-
7002	석 영 유 리	8	3	3	-
7020					
7002	경 질 유 리 관	8	4	-	(제외)
7006	P D P 전 용 유 리	8	4	4	-
7006	블랭크 마스크용유리	8	3	3	-
7006	유 기 E L 전 용 유 리	8	4	4	-
7201	선 철	2	0	0	-
7202	페 로 실 리 콘	3	1	-	(제외)
7202	페 로 실 리 코 망 간	8	4	-	(제외)
7202	페 로 크 로 뮴	3	1	-	(제외)

관세율 표번호	품 명	기본관세 (잠정)	할 당 관 세		
			'05년	'06년	증감
7203	직 접 환 원 철	1	0	0	-
7204	고 철	1	0	0	-
7410	동 박 적 층 판	8	-	4	(신규)
7501	산 화 니 켈	1	0	0	-
7502	니 켈 과	3	1	-	(제외)
7508	냉음극형광램프용전극	8	5	-	(제외)
7601	알 루 미 늬 과	3	1	1	-
7601	알 루 미 늬 빌 레 트	5	3	3	-
7602	알 루 미 늬 설	1	0	0	-
8001	주 석 과	3	2	-	(제외)
8105	코 발 트 분 말	3	0	-	(제외)
8108	티 타 늬 과	5	3	1	-2
8111	망 간	5	2	-	(제외)
8456	건 식 식 각 기	8	2.5	2.5	-
8479	증 착 기	8	2.5	2.5	-
8479	도 포 · 현 상 기	8	2.5	2.5	-
8529	PDP용 데이터전극 구동모듈	8	4	4	-
8531	O L E D 모 들	8	4	-	(제외)
8543	복 합 구 조 칩 (M C P)	8	2.6	0	-2.6

#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 특례에관한법률·시행령

#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시행령]

## <제정한 주요내용>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 I. 제정배경

### II. 주요내용

### III. 조문별 세부내용

1. 목적(\$1)
2. 정의(\$2)
3. 다른 법률과의 관계(\$3)
4. 협정관세(\$4)
5. 세율적용의 우선순위(\$5)
6. 긴급관세조치(\$6)
7. 잠정긴급관세조치(\$7)
8. 일시수입물품 면세(\$8)
9. 원산지결정기준(\$9)
10. 협정관세의 적용신청(\$10)
11. 원산지증빙서류의 수정통보(\$11)
12. 자료보관 및 제출요구(\$12)
13. 원산지조사(\$13)
14. 원산지사전심사(\$14)
15. 사전심사서 내용의 변경(\$15)
16. 협정관세의 적용배제(\$16)
17. 협정관세의 적용보류(\$17)
18. 상호협력(\$18)
19. 관세상호협의절차(\$19)
20. 과세자료 비밀유지의무(\$20)
21. 권한의 위임 및 위탁(\$21)
22. 벌칙(\$22)
23. 양벌규정(\$23)
24. 과태료(\$24)
25. 협정의 시행(\$25)
26. 부칙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원산지증빙서류(제2조)
2. 협정관세율(제3조)
3. 수량별 차등협정관세의 적용(제4조)
4. 긴급관세조치의 절차(제5조)
5. 잠정긴급관세조치절차(제6조)
6. 긴급관세조치의 재심사절차(제7조)
7. 싱가포르와의 협정에 의한 긴급관세조치의 특례(제8조)
8. 일시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면제(제9조)
9. 협정관세 적용신청(제10조)
10. 협정관세 사후적용신청(제11조)
11. 원산지증빙서류 수정통보(제12조)
12. 보관대상 원산지증빙서류(제13조)
13. 계약상대국에 대한 원산지확인요청(제14조)
14. 수출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조사(제15조)
15. 수입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조사(제16조)
16. 원산지에 관한 조사의 연기신청(제17조)
17. 원산지에 관한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제18조)
18. 원산지 등에 관한 사전심사(제19조)
19. 사전심사서 내용의 변경(제20조)
20. 싱가포르와의 협정에 따른 사전심사서 변경효력의 특례(제21조)
21. 협정관세의 적용제한(제22조)
22. 관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제23조)
23. 협정관세의 적용제한자의 지정 등(제24조)
24. 협정관세의 적용제한자 지정의 해제(제25조)
25. 협정관세의 적용보류(제26조)
26. 상호협력절차(제27조)
27. 관세상호협의를절차(제28조)
28.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제29조)
29. 관세법령과의 관계(제30조)
30. 서식의 제정(제31조)
31. 부칙

**【법 · 시행령 · 시행규칙 제정일자】**

- 법 률 : 제7842호(2005.12.31)
- 대통령령 : 제19335호(2006. 2. 9)
- 재정경제부령 : 제492호(2006. 2. 28)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 I. 제정배경

### <추진배경 >

- ◇ 최근 타결된 한·싱 FTA를 비롯한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모든 FTA의 효과적인 국내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국내이행법률체계 정비 필요
  
- 최근 타결된 한·싱 FTA를 비롯한 동시다발적 추진중인 諸 FTA의 효과적인 국내이행을 위하여 법률체계 정비 필요
  -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은 협정은 헌법에 의하여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나, 협정에서 국내법령에 위임한 사항과 협정이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국내이행법률이 요구
    - \*\* 미국, 캐나다, 일본 등 대다수 선진국도 이행법 제정·운영
  
- 한·칠 FTA의 경우 최초 협정임을 감안하여 단일특례법을 제정하였으나, 모든 FTA별 단일이행법 제정은 비효율적이므로 諸FTA 이행을 포괄하는 기본절차법 방식 요구
  - 국민의 재산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사항과 보편적 이행절차는 법률에, 각국별 특이사항은 하위법령에 규정
  
  - 이외에 FTA 교역대상물품에 대한 관세체계를 글로벌기준에 맞게 보완함으로써 「선진통상국가」 실현을 지원하고 역내간 공정무역을 촉진하려는 것임

## II. 주요내용

1

### 체약상대국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 마련

- 한·싱 FTA 등 협정에서 합의된 관세양허계획에 따라 품목별·연도별로 적용되는 협정관세율 규정(대통령령에 위임)
- ※ 협정에는 관세철폐 또는 관세인하대상물품과 연차적인 관세감축비율만을 정하고 있어 수입물품에 실제 적용할 구체적인 품목별 양허세율은 국내법령으로 마련 필요

2

### 국내산업피해 구제를 위한 긴급관세조치 절차마련

- 체약상대국 물품의 수입 급증으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율을 인상하거나 관세인하를 정지할 수 있는 양자간세이프가드제도를 도입함

3

### 특혜관세 적용에 필요한 원산지결정기준

- 체약상대국에서 실질적으로 제조·가공 또는 생산된 물품에 한하여 원산지를 인정하는 등 특혜관세의 적용 및 우회수출 입 여부 판단에 필요한 특혜원산지기준 마련
- ※ 원산지결정원칙으로 완전생산기준과 세번변경기준·부가가치기준 및 주요공정기준 등을 규정함

4

### 특혜관세 적용절차 및 원산지사전심사신청제도

- 특혜관세는 수입신고수리전까지 세관장에게 신청하게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수입신고수리후 1년까지 특혜관세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 현행 관세법상 수입신고시 원산지증명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지 않

는 경우에는 특혜세율 적용이 불가하며, 소급적용도 불인정

- 수입물품의 원산지에 의문이 있는 경우 관세청장에게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원산지를 결정하게 함

**5 우회수출입 확인을 위한 원산지검증제도**

- 원산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에 원산지의 검증을 요청하거나 해외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대상으로 직접 검증할 수 있도록 함

**6 협정이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재조치**

- 협정 이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협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특혜관세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7 체약상대국 관세당국과 관세행정상호협조**

- 협정의 통일적 이행을 위하여 양국 관세당국간 정보교환, 원산지검증지원 등 상호협력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

**8 수출기업 권익보호를 위한 관세상호협약제도**

- 우리나라의 수출기업이 체약상대국에서 부당한 원산지결정 또는 과세처분을 받은 경우 수출기업의 신청을 받아 재경부 장관이 상대국 관세당국과 협의할 수 있는 근거 마련

**III. 조문별 세부내용**

# 1. 목적(안 §1)

## (1) 개정내용

한·싱 FTA	법 률 안
	<input type="checkbox"/> 자유무역협정의 국내이행에 따른 관세의 부과·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 등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사항 규정

## (2) 개정이유

- 한·싱 FTA를 비롯한 모든 FTA의 효과적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FTA의 보편적인 사항과 관세관련 주요내용중 관세법과 상충되는 내용을 국내법 체계로 수용
- 계약상대국산 물품에 대한 협정관세율, 긴급관세조치와 원산지확인 등 통관절차에 대한 관세법의 특례를 정하여 역내간 교역활동 지원

- ◇ FTA는 양자조약으로 양국간 교역물품에만 적용되는 규정을 일반법인 관세법에 수용할 경우 관세법체계의 왜곡 및 법 적용상의 혼란이 예상되어 별도법 체계로 수용함이 효율적
- ◇ 한·칠 FTA의 경우 단일이행법을 제정하였으나,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는 모든 FTA 마다 개별이행법 도입은 비효율적이므로 모든 FTA를 포괄하는 기본법 방식의 입법 추진(세부사항은 하위규정에 위임)  
 ※ <참고> 한·칠 및 한·싱 FTA 주요내용 비교

<첨부>

한·칠, 한·싱 FTA 주요내용 비교

주요항목	한·칠 FTA	한·싱 FTA
관세철폐 · 공산품 · 농수산물	· 10,757개(94.5%) 9,102개(100%)(즉시철폐: 99.9%) 1,656개(70.4%)(즉시철폐: 15.6%)	· 10,315개(91.6%) 8,916개(97.4%)(즉시철폐: 68.8%) 1,399개(66.5%)(즉시철폐: 16.0%)
양허유형	· 8단계: 즉시, 5년, 7년, 9년, 10년, 16년, 할당, 제외	· 4단계: 즉시, 5년, 10년, 제외
관세할당	· 24개 농축산물	· (없음)
세이프가드 · 대상품목 · 조치내용 · 잠정조치 · 적용기간	· 농산물 · 관세인하정지/관세율인상 · 120일 · 제한없음	· 모든 품목 · (좌동) · 200일 · 최장 4년(1차 2년, 연장 2년)
관세감면	· 일시반입품 · 소액견품 · 수선 또는 개조후 재반입품	· (없음) · (없음) · 수리 또는 가공후 재반입품 (대상품목은 국내법령 준용)
원산지기준	· 완전생산 및 실질변형기준 · 품목별원산지기준(부속서) · (신설) · (신설)	· (좌동) · (좌동) · 역외가공원산지특례 · 개성공단원산지특례
원산지증명  · 유효기간	· 수출자 자율증명  · 2년	· 기관증명 * 싱측: 세관 * 아측: 세관, 상공회의소 · 1년
특혜신청	· 수입신고시 특혜신청 · 원산지증명서는 수입시 소지  · 수입후 1년이내 소급신청가능 · (신설) · 원산지증명서오류수정통보	· 수입신고시 특혜신청서 제출 · 원산지증명서 및 증빙서류는 세관 요구시에만 제출 · 국내법령에 따라 소급신청 · 수입자 원산지입증책임 명시 · (없음)
자료보관기간	· 수입자·수출자·생산자: 5년	· (좌동)

주요항목	한·칠 FTA	한·싱 FTA
원산지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관장, 증빙자료제출요구권</li> <li>· 서면조사</li> <li>· 현지조사</li> <li>* 조사절차 우선순위 미규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관장, 원산지소명요구권</li> <li>· 서면조사(상대국 세관경유)</li> <li>· 현지조사</li> <li>· 단계적 확인절차(1차 수입자, 2차 수출자 또는 생산자)</li> </ul>
사전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입신고전 원산지 사전심사</li> <li>· 상황변경시 변경·철회 가능</li> <li>· 선의의 수입자 적용유예: <u>90일</u></li> <li>· (신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입신고전 품목분류, 물품가격, 원산지 등 사전심사</li> <li>· (좌동)</li> <li>· 선의의 수입자 적용유예: <u>60일</u></li> <li>· 유효기간: 3년</li> </ul>
특혜관세 배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입자의 의무위반</li> <li>· 서면조사 답변서 미제출</li> <li>· 원산지가 사실과 다른 경우</li> <li>· 사전심사 허위자료 제출</li> <li>· 현지검증 부동의</li> <li>· (신설)</li> <li>· (신설)</li> <li>· 지속적인 원산지허위작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산지 미입증</li> <li>· 자료접근 거부</li> <li>· 원산지소명자료 미제출</li> <li>· 증빙자료 미보관</li> <li>· (좌동)</li> <li>· 직접운송 관련자료 미제출</li> <li>· 역외가공 증빙자료 미제출</li> <li>· (좌동)</li> </ul>
불복청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출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li> <li>· 에게도 불복청구권 부여</li> <li>· 행정심판, 행정소송</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동)</li> <li>· (좌동)</li> </ul>
관세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산지확인상호지원</li> <li>· 원산지관련 불복결정 상호통보</li> <li>· 원산지사전판정 상호통보</li> <li>· 원산지제도 변경내용 상호통보</li> <li>· 무역통계자료의 교환</li> <li>· 불법수출입정보교환</li> <li>· 통관제도의 표준화 및 조화</li> <li>· 세관직원 공동훈련 등</li> <li>· (신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동)</li> <li>· (없음)</li> <li>· (없음)</li> <li>· 관세법규의 공개</li> <li>· 최신 제도 및 관세정보 교환</li> <li>· (없음)</li> <li>· 통관절차 간소화 협력</li> <li>· 세관직원의 현지파견</li> <li>· 위험관리방식 통관절차 도입</li> </ul>
관세협력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세연락관 지정</li> <li>· 임시관세특별위원회 설치</li> </ul>
이행협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일규정(Uniform Regulations) 제정: 협정 발효전까지 양측이 추가 협의하여 마련 - 636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없음)</li> <li>· 세부규정은 자국 법령에 규정</li> </ul>

## 2. 용어의 정의 (안 §2)

### (1) 개정내용

한·싱 FTA 협정문	법률안
<p><input type="checkbox"/> 원산지증명서(협정 5.2.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o 수출국의 신청을 받아 관계당국에서 발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 세관, 상공회의소</li> <li>· 싱가포르: 세관</li> </ul> </li> <li>o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 : 1년 (협정 5.2.2)</li> <li>o 부속서의 원산지증명서 서식에 의하여 영어로 발급 (협정5.2.1, 5.2.6)</li> </ul>	<p><input type="checkbox"/>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 자유무역협정: GATT제24조에 의하여 체결되고, 국회 비준동의를 받아 공포된 국제협정</li> <li>ii) 계약상대국: 협정체결 상대국</li> <li>iii) 관세당국: 이국은 재정부장관 관세청장, 상대국은 관세관련 권한있는 당국</li> <li>iv) 원산지: 특혜관세 적용목적상 당해 물품이 생산된 국가나 지역</li> <li>v) 원산지증빙서류: 수출입물품의 원산지를 입증할 수 있는 것으로서 작성자·기재사항·유효기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서류</li> </ul>

### (2) 개정이유

- 이 법에서 사용되는 특정용어의 의미를 명확히 하여 통일적인 법 적용 및 운영을 도모 한편 법률체계를 간소화
- 원산지증빙서류의 기재사항 등은 FTA 마다 달라질 수 있으므로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탄력적 대응 도모
- o 원산지증명서의 형태 및 발급방식은 계약상대국의 지리적 특성, 제도관행 등에 따라 달라지는 바, 기관증명제(Authorised

certification) 와 자율증명제(Self-certification)로 구분

- 미국·캐나다·칠레 등 미주권은 무역업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자율증명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일본·아세안 등 아시아권은 정부기관에서 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증명제를 채택
- 최근 무역규제완화, 비관세장벽 철폐를 통한 통관절차 간소화 차원에서 EFTA(유럽자유무역연합: 스위스·노르웨이·아이슬란드·리히텐슈타인 4개국) 등 유럽지역에서는 자율증명제로 전환하고 있는 추세
- 한·칠 FTA 및 한·EFTA에서는 자율증명제, 한·싱 FTA에서는 기관증명제를 채택
- \* 현재 협상 진행중인 한·캐 FTA에서는 자율증명제, 한·아세안 FTA에서는 기관증명제 채택 가능성이 높음

<참고>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등 주요차이 비교

비교항목	한·칠 FTA	한·싱 FTA	한·EFTA
발급방식	수출자 자율증명	기관발급 (싱: 세관, 한: 세관, 상공회의소)	수출자 자율증명
사용양식	정형화된 서식	정형화된 서식	송품장
유효기간	2년	1년	1년
사용언어	영어	영어	영어

### 3. 다른 법률과의 관계(안 §3)

#### (1) 개정내용

한·싱 FTA 협정문	법 률 안
	<input type="checkbox"/>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세법과 협정 준용 <input type="checkbox"/> 이 법 또는 관세법이 협정과 상충시 협정을 우선하여 적용 <input type="checkbox"/> 한·칠 FTA는 「한·칠 FTA 관세특례법」 적용

#### (2) 개정이유

- 이 법과 협정, 관세법 및 「한·칠 FTA 관세특례법」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여 법체계상의 혼란 방지
-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세법과 협정을 준용하도록 명시하되, 협정우선원칙을 명시하여 협정이 이 법 또는 관세법 보다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함

협정 > FTA특례법 > 관세법

- 한·칠 FTA는 이 법 적용대상에 제외하고, 현행 한·칠 관세특례법을 적용토록 하여 법 적용의 일관성과 안정성 유지

※ 「한·칠 FTA 관세특례법」은 법적용의 일관성·안정성 유지 및 대국민편의 차원에서 존치 → 「FTA이행기본법」 체계로 통폐합시 오히려 혼란 및 국민불편 야기 예상

#### 4. 협정관세 (안 §4)

##### (1) 개정내용

한·싱 FTA 협정문	법률안
<p><input type="checkbox"/> 각 당사국은 협정부속서 제3.4의 양허표에 따라 관세를 점진적으로 철폐(협정 3.4.1)</p> <p>※ 협정부속서 : 각 품목별로 관세철폐·연도별 인하비율 등 규정</p>	<p><input type="checkbox"/> 품목별 협정관세율은 관세협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규정</p> <p>○ 관세법상 용도세율의 적용(§83), 품목분류체계의 수정(§84) 준용</p>

##### (2) 개정이유

- 한·싱 FTA를 비롯한 대부분의 FTA에서 관세양허물품, 관세철폐방식 등을 규정함에 따라, 이에 따른 구체적인 품목별 관세율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 양허대상물품 및 철폐방식은 협정에 포함되어 국회의 비준절차를 거치게 되므로 동 협정에 따른 구체적인 세율의 산출·작성은 기술적인 작업에 불과, 대통령령에 위임하더라도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는 것은 아님
  - \* 현행 관세법상 국제협력관세(WTO 양허관세 등)의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관세법 제73조)
  - 관세법(§83, §84)상 용도세율의 적용 및 세율이 변경되지 않는 품목분류 변경에 관한 규정은 이 법에 의한 협정 세율에도 준용토록 하여 적용법률에 대한 혼선방지

[참고]

<표1> 한·싱 FTA 관세양허 개요

◇ 전체품목수의 91.6%를 10년내 관세철폐(즉시철폐:59.7%)
· 공산품 관세철폐: 97.4%(즉시철폐: 68.8%)
· 농산품 관세철폐: 66.5%(즉시철폐, 19.9%)
◇ 쌀·참깨·쇠고기·닭고기 등 농축수산물과 석유화학제품, 베어링 등 946개 경쟁력 취약품목은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

<표2> 양허유형별 관세양허 개요

양허 카테고리	전 체	공산품	농산물	수산물	임산물
즉시철폐	6,724 (59.7)	6,304 (68.8)	232 (16.0)	56 (13.8)	132 (53.7)
5년철폐	2,009 (17.8)	1,487 (16.2)	358 (24.7)	135 (33.3)	29 (11.8)
10년철폐	1,582 (14.1)	1,125 (12.3)	377 (26.0)	37 (9.1)	43 (17.5)
<b>소 계</b>	<b>10,315 (91.6)</b>	<b>8,916 (97.4)</b>	<b>967 (66.6)</b>	<b>228 (56.2)</b>	<b>204 (82.9)</b>
양허제외	946 (8.4)	242 (2.6)	484 (33.4)	178 (43.8)	42 (17.1)
<b>합 계</b>	<b>11,261</b>	<b>9,158</b>	<b>1,451</b>	<b>406</b>	<b>246</b>

\* ( )안은 백분율을 의미함

<표3> 관세양허물품의 관세감축율(백분율)

	Y0	Y1	Y2	Y3	Y4	Y5	Y6	Y7	Y8	Y9	Y10
즉 시	100										
5년철폐	16.7	33.3	50.0	66.7	83.3	100					
10년철폐	9.1	18.2	27.3	36.4	45.5	54.5	63.6	72.7	81.8	90.9	100

<표4>

**양허유형별 주요품목**

양허 카테고리	주요 품 목
즉시철폐	원유, 천연가스, 반도체, 컴퓨터, 유선통신기기, 휴대폰, 가죽, 신발, 가구, 완구, 자동차, 공작기계, 종유, 원면 등 섬유원료, 원광석, 종이·제지, 철강, 비금속제품, 철도차량, 항공기
5년철폐	철면조 등 산동물, 음료베이스, 한약재, 고무벨트, 가죽제품, 패각공예품, 실리콘수지, 안전유리, 재봉기, 드릴공구, 카메라, 냉장고, VCR, 조명기기
10년철폐	맥주, 포도주, 제재목, 건조수산물, 견직물, 모직물, 부직포, 향수, 장갑, 우산, 텐트, 음향기기 부품, 영상기록 매체, 배전반, 계측기
제 외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마늘, 쌀, 참깨, 정당, 담배, 돔, 농어, 미꾸라지, 합판, 섬유판, 휘발유, 등유 등 석유제품, 벤젠, 톨루엔, 호르몬, 에틸렌, 프로필렌, 염화비닐수지, 배어링, 축전지

## 5. 세율적용의 우선순위(안 §5)

### (1) 개정내용

한·싱 FTA 협정문	법률안
<p><input type="checkbox"/> GATT 제6조 및 19조의 덤핑·상계·긴급관세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유지(협정 제6장)</p>	<p><input type="checkbox"/> 협정관세율이 관세법의 규정에 따른 적용세율 보다 높은 경우 관세법의 적용세율 적용</p> <p>○ 덤핑방지, 상계, 보복 및 특별 긴급관세는 협정관세보다 우선 적용</p>

### (2) 개정이유

- 이 법의 의한 협정관세율과 관세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과의 적용우선순위를 명확히 하여 과세혼란 방지
  - 협정관세율이 다른 나라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세율보다 높은 경우 일반세율을 우선 적용토록 하여 납세자 이익보호
  - 반덤핑·상계·긴급·특별긴급관세 및 보복관세 등 특별관세는 협정관세 보다 우선 적용되도록 하여 대외공정 무역질서 유지
- \* 현재 불공정무역 등으로 인해 부과하는 덤핑·긴급관세 등의 규정에 의한 세율은 MFN(최혜국세율) 세율을 초과하여 부과가능

[참고]

## 한·싱 FTA 협정관세 적용 우선순위

### <도입배경>

- 관세법상 동일한 수입물품에 대하여 여러 가지의 서로 다른 관세율(예: 기본관세, 할당관세, 조정관세, 양허관세, 덤핑방지관세 등)이 적용될 수 있음
  - 서로 다른 관세율 적용에 따른 과세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세법(제50조)에서는 세율적용의 우선순위를 규정
- 관세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세율과 한·싱 FTA에 의한 협정관세율의 우선순위가 모호하여 서로 경합될 경우 적용상의 혼란 예상
  - 이에 따라 관세법상의 각 세율과 FTA 협정관세율의 우선순위를 특례법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
  - ※ 협정관세와 관세법상의 각 세율과의 우선순위는 「한·칠 FTA 이행 관세특례법」 제3조와 동일하게 규정

### <세율 적용순위>

〈1순위〉	덤핑방지(51조), 상계(57조), 보복(63조), 긴급(65조), 특별긴급(68조)	→ 관세율의 높낮이에 관계없이 최우선 적용
〈2순위〉	협정세율 ≤ 관세법상 적용세율 협정세율 > 관세법상 적용세율	→ 협정세율 적용 → 관세법상 세율 적용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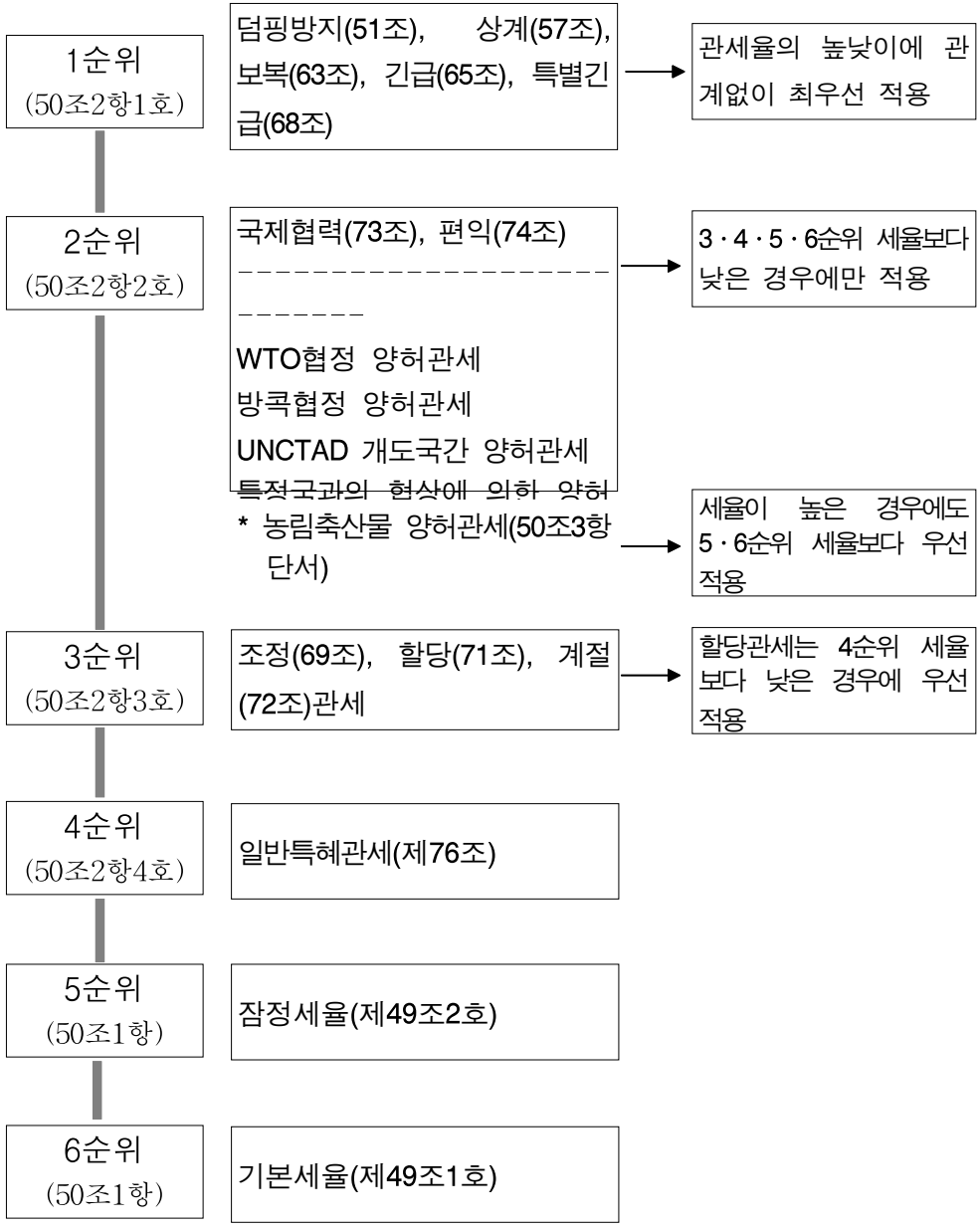
### 관세법상 관세율 적용 우선순위

---



---

(관세법 제50조)



## 6. 긴급관세조치 (안 §6)

### (1) 개정내용

한·싱 FTA 협정문	법률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긴급관세조치 요건(협정 6.4.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대국 물품의 수입급증</li> <li>-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 초래 또는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li> </ul> </li> <li>○ 긴급관세조치(협정 6.4.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세인하의 중지</li> <li>- 관세율 인상</li> </ul> </li> <li>○ 양국간 사전협의 절차 (협정 6.4.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치 이전 양국간 협의</li> <li>- 양국간 30일 이내 해결되지 않는 경우 긴급관세조치 시행</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체약상대국 물품의 수입급증으로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정관세의 연차적인 인하적용 중지 또는</li> <li>○ 일정한 범위 안에서 세율인상 조치</li> </ul> </li> <li>□ 긴급관세조치에 필요한 대상물품 세율 등은 재경부령으로 규정</li> </ul>

### (2) 개정이유

- 협정에서 체약상대국 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한 자국산업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양자간 긴급관세조치를 도입함에 따라 그 이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산업피해 구제를 위한 범위 안에서 연차적인 관세인하정지 또는 세율인상을 선택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긴급관세조치 가능
- \* 긴급관세조치기간: 한·싱 FTA(2년 원칙, 2년 연장 가능), 한·EFTA FTA(1년 원칙, 2년 연장 가능)

※ 협정상외의 긴급관세조치는 관세법의 긴급관세(§65), 특정국

물품긴급관세부과(§67조의2) 및 한·칠 FTA의 세이프가드와 대상물품 및 적용요건 등이 상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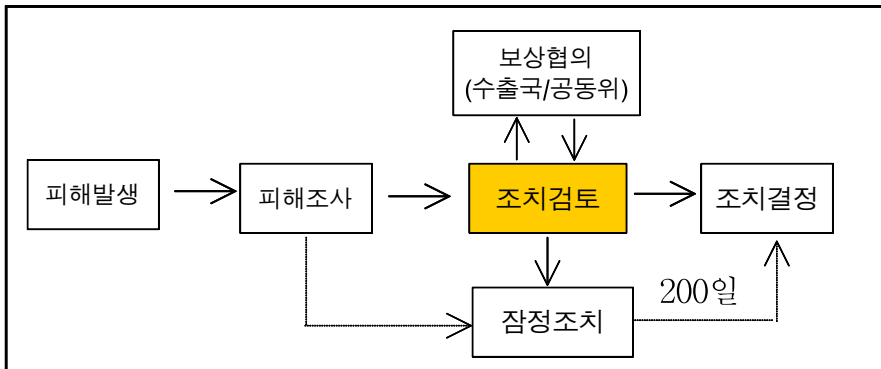
<참고>

**FTA 세이프가드조치 주요내용 비교**

구 분	WTO 세이프가드	한·칠 FTA	한·싱 FTA	한·EFTA
대상물품	모든 물품	농산물 중 양허품목	양허품목	양허물품
피해조사 관련조항	수입증가, 국내시장 점유율, 판매·생산·고용 등의 변화	조사규정 없음	조사규정 없음	WTO세이프가드 협정상의 조사절차
조치내용	관세율인상, 수량제한, 구조조정촉진	관세인하정지/ 관세율 인상	관세인하정지/ 관세율 인상	관세인하정지/ 관세율 인상
적용기간	4년+4년(8년)	제한 없음	2년+2년(4년)	1년+2년(3년)
재발동 제한기간	없음	없음	없음	3년
잠정조치 기간	200일	120일	200일	200일

- 긴급관세조치 대상물품·세율수준 등은 재경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양국간의 통상관계, 국내산업보호의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신속·탄력 대응이 가능토록 함

**【긴급관세조치 개념도】**



<참고>

한 · 싱 FTA 세이프가드조치 내용

□ 개 요

- 세이프가드(SG)조치는 ① 관세의 인하를 정지하거나 ② 협정 발효 전날과 SG조치일 시점의 MFN세율\* 중 낮은 세율까지 관세 인상을 할 수 있는 조치임

\* MFN(최혜국대우)세율 : WTO 모든 회원국에게 무차별적으로 적용되는 세율

□ 관세인하 정지

- 긴급관세조치로 관세의 추가적인 인하를 정지한 후 동 조치가 종료될 경우에는 관세인하계획에 따른 관세율을 적용
- 긴급관세조치는 일시적으로 취하는 조치이므로, 동 조치가 종료된 경우에는 이미 예시한 연도별 관세율을 적용

**<적용예시>**

△ A물품 관세율(MFN세율 9%)

기준세율	'06년	'07년	'08년
10	8	6	4

△ '06년에 '07년말까지 긴급관세조치(관세인하 정지)를 할 경우

- '06~'07 : 8% (긴급관세조치)
- '08년 : 4% (협정관세)

\* 관세인하 정지를 이유로 '08년에 6%관세를 적용하는 것이 아님

□ 관세인상 조치

- 관세인상조치는 협정발효 전날과 SG조치일 시점의 MFN 세율중 낮은 세율의 범위내에서 인상가능

- 즉, 긴급관세조치에 의한 관세인상은 협정 발효 이전의 MFN세율과 동 조치시의 MFN세율중 낮은 세율 초과 불가

## 7. 잠정긴급관세조치 (안 §7)

### (1) 개정내용

한·싱 FTA 협정문	법률안
<p><input type="checkbox"/> 잠정긴급관세조치 발동요건 (협정 6.4.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연시 회복하기 어려운 손상을 초래할 중대한 상황인 경우</li> <li>○ 최대 200일의 기간동안 잠정적으로 긴급관세조치가 가능</li> </ul>	<p><input type="checkbox"/> 잠정긴급관세조치 발동요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해조사기간 중에 발생하는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초래되는 경우</li> </ul> <p><input type="checkbox"/> 잠정긴급관세조치에 필요한 대상 물품·세율등은 재경부령으로 규정</p>

### (2) 개정이유

- 국내산업피해조사 도중에 발생하는 심각한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잠정적인 긴급관세조치에 관한 법적 근거와 기본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

※ 잠정긴급관세조치기간: 한·싱 FTA 및 한·EFTA FTA 모두 200일

- 체약상대국 물품의 증가로 인한 긴급한 국내산업피해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8. 일시수입물품면세 (안 §9)

### (1) 개정내용

한·싱 FTA 협정문	법 률 안
<p><input type="checkbox"/> 수리 또는 가공후 재반입물품은 원산지에 관계없이 자국법령에 따라 관세감면(협정 3.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체약상대국으로 수출된 후 재반입된 물품</li> <li>○ 체약상대국에서 수리 또는 가공 후 재반입된 물품</li> </ul>	<p><input type="checkbox"/> 체약상대국에서 일시 수입되는 물품으로 다음 각호의 1의 물품은 원산지를 불문하고 관세면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 2년의 범위내에서 다시 수출하기 위하여 일시수입하는 물품으로 재경부령이 정하는 물품</li> <li>ii. 우리나라에서 수출한후 2년의 범위안에서 다시 수입하는 물품으로 재경부령이 정하는 물품</li> </ul> <p><input type="checkbox"/>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관세면제대상에서 제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 관세감면을 받은 경우</li> <li>ii. 관세환급을 받은 경우</li> <li>iii. 보세가공 또는 장치기간 경과 물품을 재수출조건으로 매각함에 따라 관세가 미부과된 경우</li> </ul> <p><input type="checkbox"/> 관세면제물품의 용도의 사용등에 관하여는 관세법 규정 준용</p> <p><input type="checkbox"/> 관세면제절차는 대통령령에 위임</p>

### (2) 개정이유

- 협정에서 역내국가간 일시반출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면제를 허용함에 따라 국내법상 이행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FTA를 체결한 역내국가간 일시 반출입되는 물품 중 협정에 따라 재경부령이 정하는 물품은 원산지를 불문하고 관세면제
- 다만, 당해 물품 또는 원자재에 대해 관세감면, 관세환급 기타 관세유예 혜택 등을 받은 경우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여 동 제도의 남용으로 인한 이중관세특혜를 방지
  - \* 관세법 제99조제1항 단서 조항에서 원용
- 관세면제를 받은 물품의 용도외사용 등 일반적인 절차는 관세법(§97②~④)의 규정을 준용토록 하여 일관성 유지
- 역내교역물품에 대한 통관절차 간소화 및 관세부담을 완화하여 역내교역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9. 원산지결정기준(안 §8)

### (1) 개정내용

한·싱 FTA 협 정 문	법 률 안
<input type="checkbox"/> 원산지인정기준(협정 4.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국에서 전부 생산된 물품</li> <li>○ 수입재료를 사용한 경우 자국에서 세번이 변경되었거나 부가가치(45~60%)가 발생한 물품</li> </ul> <input type="checkbox"/> 원산지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상대국에서 직접 운송·반입되지 아니한 물품은 원산지불인정(협정 4.15)	<input type="checkbox"/> 원산지결정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해 물품의 전부를 생산한 나라</li> <li>○ 당해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된 경우 세번이 변경되거나 일정수준의 부가가치 발생 또는 주요공정이 수행된 나라</li> <li>○ 그 밖에 협정에서 정한 일정한 원산지 인정요건을 충족시킨 나라</li> </ul> <input type="checkbox"/> 비원산지국에서 선적되거나 경유한 물품은 원산지불인정  <input type="checkbox"/> 품목별 확인기준, 적용방법 등은 재경부령으로 규정

### (2) 개정이유

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혜관세 적용대상물품의 원산지결정원칙을 국내법으로 수용하고, 그 구체적 적용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 원산지의 결정방법은

- WTO 원산지협정, 개정교토협약 등 국제적 기준에 따라 자국에서 완전생산된 물품에 적용되는 '완전생산기준(Wholly Obtained Rule)'과

- 수입재료를 사용하여 생산된 물품에 적용되는 '세번변경기준 (Change of Tariff Classification)', '부가가치기준(Value added Criterion)' 또는 '주요공정기준(Operation Criterion)' 적용
- o 원산지물품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제3국에서 선적되거나 추가가공을 거친 후 수입되는 물품은 원산지를 불인정하는 '직접운송원칙'을 도입하여 우회수출입방지
- 협정관세 적용에 필요한 기준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우회수출입 방지 및 공정무역질서를 유지할 것으로 기대됨

<참고>

- ◆ 원산지판단기준: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또는 주요공정기준 사용
- 세번변경기준: 당해 물품의 생산에 투입된 수입원부자재의 稅番 (HS code)과 가공제품의 稅番이 일정단위이상 변경된 경우 원산지 인정 (예: 원유(HS 2709)를 수입하여 휘발유 (HS2710)을 생산한 경우 세번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
- 부가가치기준: 당해 물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일정 수준(예: 45~55%)이상의 부가가치(附加價値)가 발생한 경우 원산지 인정
- 주요공정기준: 당해 물품을 생산하는 주요공정이 수행된 나라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방법(예: 의류제품의 경우 제단 및 봉제 공정이 수행된 나라를 원산지로 인정)

## 10.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안 §10)

### (1) 개정내용

한·싱 FTA 협 정 문	법 률 안
<p><input type="checkbox"/> 협정관세 적용 신청절차 (협정 5.3.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입신고시 특혜신청서 제출</li> <li>○ 세관요구시 원산지증빙자료 제출</li> <li>○ 수입자가 원산지를 입증하는 때 에 한하여 특혜관세 적용 (협정 5.3.2)</li> </ul> <p><input type="checkbox"/> 협정관세 사후적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세납부후 수입국 법령이 정하 는 기간 이내에 증빙자료 제출</li> <li>○ 수입신고시 특혜신청</li> </ul>	<p><input type="checkbox"/> 협정관세는 수입신고수리전까지 신청하되, 세관장 요구시 증빙자 료 제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입자의 증빙자료 미제출 또는 입증 불충분시 협정관세 미적용</li> </ul> <p><input type="checkbox"/>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이내에 협정관세 사후신청 가능</p>

### (2) 개정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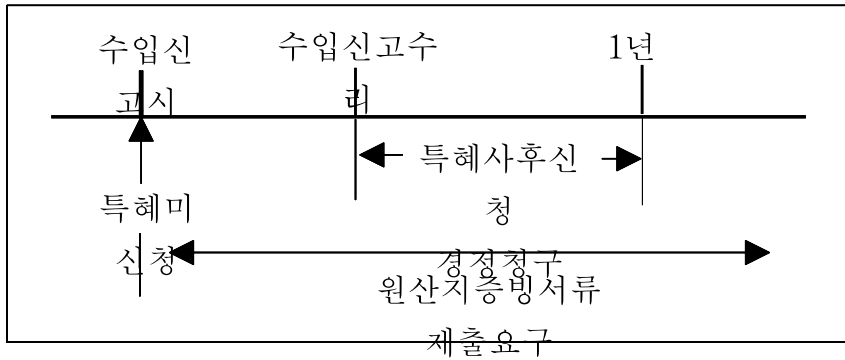
- 협정관세 적용신청에 필요한 요건과 절차를 마련하여 과세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납세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 협정관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수리전까지 세관장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원산지증빙서류는 세관장이 요구하는 경우에만 제출토록 하여 통관비용절감 및 납세편의 증진
- 수입자의 원산지입증책임을 도입하여 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그 증빙서류만으로 원산지를 인정하기가 충분하지 아니한 때에는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않도록 함

※ 특혜원산지는 대부분 당해 물품의 제조원가내역, 사용원재료 또는 제조공법 등을 기초로 결정되는 바, 수입자가 과세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원산지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특혜관세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관세탈루 및 우회수입 방지 필요

□ 한·싱 FTA를 비롯한 미국, 캐나다, 멕시코, 칠레 등 대부분의 FTA에서 도입하고 있는 협정관세 소급적용제도를 도입하여,

○ 부득이한 사유로 수입신고수리전까지 원산지증빙서류를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도 수입신고수리후 1년 이내에 세액경정청구절차에 따라 협정관세 사후적용 허용

<협정관세 사후적용 흐름도>



## 11. 원산지증빙서류의 수정통보(안 §11)

### (1) 개정내용

한·싱 FTA 협정문	법 률 안
	<input type="checkbox"/> 수출자가 원산지에 오류가 있을 안 때에는 관할세관장 및 수입자에게 수정통보  <input type="checkbox"/> 수입자가 원산지오류 수정통보를 받은 때에는 부족세액 수정신고

### (2) 개정이유

- 원산지증빙서류 오류사항에 대한 수출입자의 자율적인 수정통보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수출자가 자율발급한 원산지증명서 주요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그 오류사항을 세관장과 체약상대국의 수입자에게 수정통보하게 하여 자율적 공정무역질서 유지
- 우리나라의 수입자가 체약상대국의 수출자로부터 원산지 오류 수정통보를 받은 경우 세관장에게 부족세액 수정신고
  - ※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무역업자의 자율적인 법규준수와 성실신고를 유도함으로써 관세행정 및 협정이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

## 12. 자료보관 및 제출요구(안 §12)

### (1) 개정내용

한·싱 FTA 협정문	법 률 안
<p><input type="checkbox"/> 증빙자료 보관의무(협정 5.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입자: 원산지증명서사본 및 수입관련 문서 5년 이상 보관</li> <li>○ 수출자·생산자의 보관의무: 원산지관련 모든 기록을 발급일부터 5년이상 보관</li> </ul> <p><input type="checkbox"/> 세관당국의 서류제출요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입자: 원산지증명서 또는 원산지증빙자료 제출(협정 5.3.1)</li> <li>○ 수출자/생산자: 원산지증명서 또는 원산지증빙서류 제출(협정 5.4.1)</li> <li>○ 상대국 수출자/생산자: 원산지소명서 또는 원산지증빙서류 제출(협정 5.7.1)</li> </ul>	<p><input type="checkbox"/> 증빙자료 보관의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입자·수출자 및 생산자는 원산지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5년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li> </ul> <p><input type="checkbox"/> 세관장의 자료제출권 명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li> <li>○ 요구를 받은 자는 재경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내에 제출할 의무</li> </ul>

### (2) 개정이유

-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확인에 필요한 증빙자료의 보관과 제출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협정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자료보관의무 및 자료요구 위반시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보관기간: 5년

\* 재경부령이 정하는 자료제출기간: 30일

- 원산지검증에 필수적인 증빙자료 보관의무와 무역업자의 자료제출의무를 규정함으로써 효율적 원산지검증이 가능

### 13. 원산지조사(안 §13)

#### (1) 개정내용

한·싱 FTA 협정문	법 률 안
<input type="checkbox"/> 단계적 원산지검증(협정 5.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단계: 수입자 원산지증명서요구</li> <li>○ 2단계: 수입자 원산지소명 및 증빙자료 제출요구</li> <li>○ 3단계: 수출자(생산자) 원산지소명 및 증빙자료 제출요구</li> <li>○ 4단계: 수출자 현지방문조사</li> </ul> <input type="checkbox"/> 원산지현지확인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지방문조사시 수출자 동의 필요</li> <li>○ 조사결과 서면통지</li> </ul> <input type="checkbox"/> 조사결과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면자료 미제출시 특혜관세 배제</li> <li>○ 조사거부시 특혜관세 배제</li> </ul>	<input type="checkbox"/> 상대국 세관당국에 수입물품의 원산지 적정여부 검증 요구권 명시  <input type="checkbox"/> 세관장은 수출입자(상대국 수출자 및 생산자 포함)를 대상으로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지조사 착수시에는 수입자와 상대국 세관당국에 서면통지</li> <li>○ 해외현지조사는 현지 수출자의 동의를 필요하며, 조사완료후 그 결과를 조사대상자에게 서면통보</li> </ul> <input type="checkbox"/> 구체적인 조사 절차 및 방법은 재경부령에 위임

#### (2) 개정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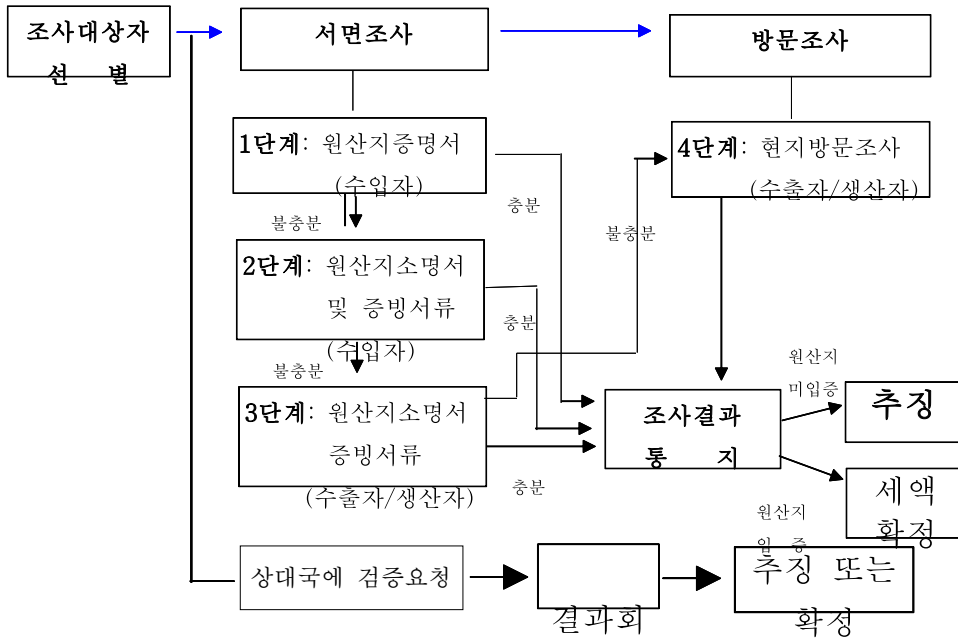
- 협정관세의 적정여부 및 수출물품의 원산지확인에 필요한 조사절차를 마련하여 협정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현지조사시에는 수입자 및 상대국 세관당국에 이를 통지하되,

조사대상자의 사전동의를 얻지 못하는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조사완료후에는 그 결과를 조사대상자에 통보토록 하여 조사절차의 적법성과 투명성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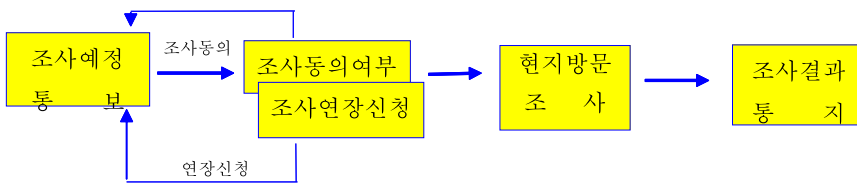
○ 서면조사 및 현지확인조사에 필요한 기술적 세부절차는 재경 부령에 위임하여 협정이행의 탄력성 제고

□ 원산지조작을 통한 관세탈루행위를 차단하고 우회수출입을 방지함으로써 공정한 무역환경을 조성하고 체약상대국과의 교역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참고 1> 원산지검증절차 흐름도(한·싱 FTA)



<참고 2> 현지조사절차 흐름도(한·싱 FTA)



## 14. 원산지 사전심사(안 §14)

### (1) 개정내용

한·싱 FTA 협정문	법 률 안
<p><input type="checkbox"/> 원산지결정에 의문이 있는 수입자 또는 수출자·생산자는 수입신고하기 전에 세관당국에 사전판정 신청가능(협정 5.8)</p> <p><input type="checkbox"/> 심사절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필요시 보충자료 제출요구</li> <li>○ 90일 이내 심사서 발급</li> <li>○ 사전판정사유에 대한 충분한 설명</li> </ul> <p><input type="checkbox"/> 심사효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전심사일 이후 수입물품에 적용</li> <li>○ 수입물품이 사전심사내용과 동일한 경우 3년간 적용</li> </ul> <p><input type="checkbox"/> 세관사용자수수료(협정 3.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관수수료는 제공된 서비스 비용의 범위내로 제한</li> <li>○ 제공된 서비스의 진정한 가치에 상응하는 구체적 요율에 기반</li> </ul>	<p><input type="checkbox"/> 원산지결정에 의문이 있는 경우 수입신고하기 전에 관세청장에게 사전심사신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전심사 내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내용에 따라 협정 관세 적용</li> <li>○ 사전심사 절차와 방법은 재경부령으로 규정</li> </ul> <p><input type="checkbox"/> 사전심사 신청인에게 재경부령이 정하는 수수료 부담</p>

### (2) 개정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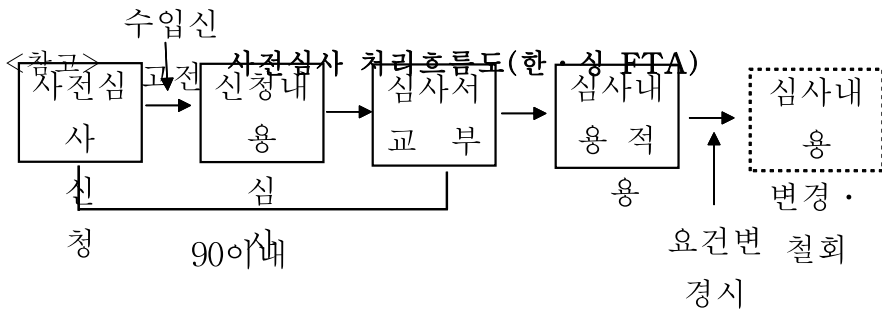
- 한·싱 FTA를 비롯한 대다수의 FTA에서 보편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원산지사전심사제도의 법적근거와 사전심사에 필요한 기본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

\* 유사제도: 관세법의 과세가격사전심사제도(§37) 및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86), 원산지사전확인제도(관세법시행령§236조의2)

o 사전심사 신청시에는 재경부령이 정하는 금액의 수수료를 납부토록 하여, 사전심사제도의 남용으로 인한 행정낭비를 방지하고 수익자 부담원칙 적용

※ 심사수수료: 신청품목당 3만원(한·칠 FTA 관세특례법시행규칙 제16조제7항)

□ 수입자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통관절차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무역비용을 절감하고 체약상대국과의 교역을 활성화 할 것으로 기대됨



## 15. 사전심사서 내용의 변경(안 §15)

### (1) 개정내용

한·싱 FTA 협정문	법 률 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checkbox"/> 사전판정 변경 또는 철회요건 (협정 5.8.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전판정에 착오가 있는 경우</li> <li>○ 사실 또는 상황에 변경이 있는 경우</li> <li>○ 협정이 개정된 경우</li> <li>○ 법원의 판결, 행정심판 또는 국내법령이 변경된 경우</li> </ul> </li> <li><input type="checkbox"/> 변경 또는 철회의 효력발생 (협정 5.8.5, 5.8.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변경·철회일 이후 효력발생</li> <li>○ 그 조건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소급효력 제한</li> <li>○ 선의인 경우 60일간 효력연기</li> </ul> </li> <li><input type="checkbox"/> 허위진술, 자료누락 및 사전판정 조건 미이행시 필요한 조치 (협정 5.8.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혜관세 배제 또는 벌금부과</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checkbox"/> 사전심사서의 변경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전심사의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 또는 상황의 변경 등 재경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li> </ul> </li> <li><input type="checkbox"/> 사전심사 변경절차 및 효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변경내용은 신청인에게 통지</li> <li>○ 변경일 이후에 수입되는 물품에 적용</li> <li>○ 신청인의 자료제출누락 또는 허위자료 제출 등으로 인한 때에는 소급적용</li> </ul> </li> </ul>

### (2) 개정이유

- 한·싱 FTA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전심사 변경에 관한 사항을 수용하고, 국내이행에 필요한 기본절차를 마련하여 정확하고 유연한 과세행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 사전심사의 변경내용은 변경일 이후에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적용토록 하되, 변경사유가 허위자료 또는 자료제출 누락등  
신청인의 귀책사유인 경우 소급적용 인정

## 16. 협정관세의 적용배제(안 §16)

### (1) 개정내용

한·싱 FTA 협정문	법 률 안
<p>□ 협정관세 적용배제사유(협정 5.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산지증빙서류 미제출 및 원산지 입증불충분(5.3.2, 5.3.3, 5.9.a)</li> <li>○ 원산지증빙서류 허위제출(5.7.3)</li> <li>○ 서면조사 미회신(5.7.3)</li> <li>○ 현지조사 거부(5.9.b(i))</li> <li>○ 증빙자료 미보존(5.9.b(ii))</li> <li>○ 원산지가 사실과 다른 경우</li> <li>○ 환적운송서류 미제출(5.9.c)</li> <li>○ 역외가공 입증자료 미제출(5.9.d)</li> <li>○ 사전심사 허위진술, 자료누락(5.8.7)</li> </ul> <p>□ 협정관세 적용정지자 지정(5.7.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정요건: 상대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지속적으로 원산지 증빙자료 허위작성</li> <li>○ 대상물품: 동종동질물품</li> <li>○ 적용기간: 성실신고 입증시까지 협정관세 적용정지</li> </ul>	<p>□ 협정관세 적용제한(이 경우 부족세액 추징: 적용시효 5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당한 사유없이 자료 미제출 또는 허위제출</li> <li>○ 원산지가 다른 경우 또는 원산지 입증 불충분</li> <li>○ 상대국에서 원산확인결과를 미회신하거나 회신내용이 불충분</li> <li>○ 서면조사 미회신 또는 현지조사 부동의</li> <li>○ 상대국 수출자등의 증빙자료접근 거부 또는 증빙서류 미보관</li> <li>○ 사전심사 허위자료제출 또는 자료제출 누락</li> <li>○ 그 밖에 세관장의 원산지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사유</li> </ul> <p>□ 협정관세 적용정지자 지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상대국의 수출자·생산자가 원산지증빙서류를 지속적으로 허위·오류 작성하는 때</li> <li>○ 효력범위: 동종동질의 물품 전체에 대해 협정관세 적용보류</li> <li>○ 적용기간: 원산지증빙서류의 성실한 작성 입증시까지</li> </ul>

(2) 개정이유

- 원산지가 충분히 입증되지 아니하거나 수출입자 또는 계약상 대국의 비협조로 원산지검증실행이 곤란한 때에는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여 관세탈루 및 우회수출입을 방지하려는 것임
- 협정관세 적용배제시 기존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세액을 추정 하되, 이 경우 관세부과제척기간은 5년 적용 (관세법 §21①제2호 준용)
  -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당해물품의 제조공정 또는 제조원가 내역을 기초로 결정되므로 수입자 또는 수출국 수출자의 성실신고가 필수적으로 요구됨
  - 신속한 통관을 위하여 선통관후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제한된 인력으로 약 5% 정도의 수입신고물품에 대해서만 사후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 따라서, 부과제척기간을 지나치게 단기(예:2년)로 규정할 경우 동 제도를 악용한 관세탈루 및 우회수입 증가 소지
  - 협정이행의 실효성 확보, 성실신고풍토 조성, 불성실신고자에 대한 제재 및 여타관세관계법과의 형평성 및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5년으로 규정

**【관세부과제척기간 비교】**

관세법(§21)	한·칠 FTA 특례법(§17④)	FTA 특례법안
<input type="checkbox"/> 일반: 2년 <input type="checkbox"/> 예외: 5년 · 관세포탈 · 가격신고 미이행 · 과세가격 일부 누락	<input type="checkbox"/> 5년 * 과세가격 일부 누락과 같은 수준	<input type="checkbox"/> 5년 * 과세가격 일부 누락과 같은 수준

- 아울러, 한·싱, 한·칠 FTA 등에서 채택하고 있는 수출국의 불성실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정지자 지

정제도를 도입하여 역내간 공정무역질서를 유지하려는 것임

- 협정상의 원산지증빙서류 성실작성의무를 지속적으로 위반한 수출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공급하는 동종동질물품 전체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협정관세 적용 배제
- 수출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특혜관세의 2차적인 수혜자인 바, 협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특혜관세를 일정기간 배제토록 하여 공정하고 성실한 무역환경 조성

## 17. 협정관세의 적용보류(안 §17)

### (1) 개정내용

한·싱 FTA 협정문	법률안
<p>※ 한·EFTA FTA(24.5)</p> <p>○ 수출국 관세당국의 원산지조사 기간 동안 특혜관세 적용보류 (조사기간: 10개월)</p>	<p><input type="checkbox"/> 조사 착수일에서 종료일까지 조사대상물품과 동일한 추가 수입 신고물품에 대하여</p> <p>○ 협정관세의 적용을 일시 보류</p> <p>○ 조사결과 조사대상 물품의 원산지가 수입자가 신고한 원산지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협정관세 소급적용</p>

### (2) 개정이유

- 통상 원산지조사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정을 감안, 원산지 조사기간 중 수입되는 동일 물품에 대해 협정관세의 적용을 일시 보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한·EFTA FTA의 경우 수출국 관세당국의 원산지조사 회신기간이 요청일부터 10개월로서 상당히 장기간이 소요
- 조사기간 도중 추가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특혜관세의 적용을 일시 보류함으로써, 조사종료 이후 추가 수입물품에 대한 재조사, 관세추징 및 가산세 부과 등의 행정처리 생략 가능
- 조사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특혜관세 소급적용 및 납부세액에 대한 환급처분을 하도록 하여 납세자 권익보호
- 관세행정 낭비를 제거하고, 납세자의 불편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18. 상호협력(안 §18)

### (1) 개정내용

한·싱 FTA 협정문	법 률 안
<input type="checkbox"/> 양국 관세당국간 협력(협정 5.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산지확인 상호지원</li> <li>○ 세관직원의 현지파견</li> <li>○ 서류없는 통관절차 협력</li> <li>○ 위험관리방식의 통관절차 발전</li> <li>○ 최신제도 및 관세정보 교환</li> <li>○ 관세법규의 공개</li> </ul> <input type="checkbox"/> 관세연락관지정(협정 5.15.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세협력사항 상호협의 창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 재경부장관이 지정</li> <li>* 싱측: 싱측 관세국장</li> </ul> </li> </ul> <input type="checkbox"/> 관세특별위원회(협정 5.15.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세관련 협정이행에 관한 중요 사항 협의</li> </ul>	<input type="checkbox"/> 통관절차의 간소화, 정보교환, 세관기술지원 등에 대해 상호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대국에 필요한 정보자료의 요청, 상대국과 공동조사, 현지조사 또는 조사참여, 상대국이 협력요청시 수락</li> </ul> <input type="checkbox"/> 협정의 운영을 위하여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체약상대국과 공동으로 관세협의기구 구성·운영

### (2) 개정이유

- 협정의 통일적 시행을 위하여 양국 관세당국간 상호협력에 관한 법적근거와 협력절차를 정하려는 것임
  - 통관절차의 간소화, 정보교환, 원산지조사 협력에 관한 사항과 협정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이견에 대한 협의·조정을 위하여 관세협의기구 구성·운영
  
- 양국간 관세행정 상호협조를 통하여 공정하고 적법한 무역증진 및 관세행정의 공동발전에 기여할 수 있고, 양국간 관세통

상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19. 관세상호협약절차(안 §19)

### (1) 개정내용

한·싱 FTA 협정문	법 률 안
<input type="checkbox"/> 관세특별위원회(협정 5.15.4) ○ 관세관련 협정이행에 관한 중요 사항 협의	<input type="checkbox"/> 상대국 관세당국으로부터 부적절한 원산지결정처분을 받은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 재경부장관에게 상대국 관세당국과 관세상호협약의 신청 가능  ○ 재경부장관은 외교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상대국과 관세상호협약의 요청  <input type="checkbox"/> 필요할 경우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관세협의기구 개최 요구

### (2) 개정이유

- 우리나라의 수출상품 또는 체약상대국에 진출한 국내투자기업이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부적절한 원산지결정 또는 과세처분을 받을 경우의 시정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
-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으로부터 협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원산지결정 또는 과세처분을 받은 우리나라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재경부장관에게 관세상호협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 위 신청을 받은 재경부장관은 외교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관세협의기구의 개최요구 등 관세상호협약의 개시절차 진행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2조(상호합의절차)에서 원용

## 20. 과세자료 비밀유지의무(안 §20)

### (1) 개정내용

한·싱 FTA 협정문	법 른 안
<p><input type="checkbox"/> 비밀유지(5.1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정의 규정에 의거 취득한 정보는 자국법률에 따라 비밀 유지</li> <li>○ 정보제공자의 경쟁적 지위를 침해되지 않도록 정보보호</li> </ul>	<p><input type="checkbox"/> 세관공무원은 자료제출자의 동의 없이 과세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 금지</p> <p>○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관세징송 또는 관세범의 소추목적으로 국가기관이 요구하는 경우</li> <li>2. 법원이 영장에 의하여 요구하는 경우</li> <li>3. 세관공무원 상호간에 관세목적상 요구하는 경우</li> </ol>

### (2) 개정이유

조사대상자가 세관에 제출하는 과세자료의 비밀유지제도를 도입하여 기업의 영업상·제조상의 비밀을 엄격히 보호하려는 것임

○ 세관공무원이 특혜관세 심사 및 원산지검증 목적으로 제출 받은 과세자료는 제출자의 사전 동의 없이 타인 제공 금지

※ 동 의무 위반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기업비밀자료의 세관제출에 따르는 수출입업체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게 되어 성실한 납세협력이 기대됨

## 21. 권한의 위임 및 위탁(안 §21)

### (1) 개정내용

한·싱 FTA 협정문	법 률 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 기타 소속기관장에게 위임</li> </ul>

### (2) 개정이유

- 특례법상 세관장의 권한을 관할 출장소장도 수행할 수 있는 위임근거를 마련하여 관세행정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 관세법 제32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서 관세법에 의한 세관장의 권한의 일부를 출장소장 등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도록 규정 하고 있고,
    - 동 규정에 따라 출장소장이 관세의 부과·징수 등 관세관련 제반업무를 집행하고 있음
  - 특례법상 세관장의 권한을 출장소장이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특례법에 명시적인 위임 근거 필요
    - 위임근거 규정이 없는 경우 출장소장에 의한 특례법령 집행은 중대한 하자에 해당될 소지가 있음
- \* 대법원에서 적법한 권한 위임 없이 세관출장소장에 의한 관세부과 처분은 중대한 하자에 해당된다고 판결(대법원 2004.11.26 선고, 2003 두 243 판결)

#### <시행령안(권한의 위임 및 위탁)>

세관장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제외한 권한을 관할 출장소장에게 위임한다.

## 22. 별칙(안 §22)

### (1) 개정내용

한·싱 FTA 협정문	법 률 안
<p><input type="checkbox"/> 협정위반에 대한 처벌(협정 5.1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형사상, 행정상 처벌</li> </ul> <p><input type="checkbox"/> 원산지허위신고 처벌(협정 5.4.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허위신고</li> <li>○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의무위반</li> <li>○ 사전심사 허위자료처벌(협정5.8.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허위자료 제출 또는 자료누락</li> <li>- 사전판정 조건 미이행</li> </ul> </li> </ul>	<p><input type="checkbox"/> 과세자료를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p> <p><input type="checkbox"/>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다만, 과실의 경우 300만원 벌금(2,3호만 적용)</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원산지증빙서류를 허위로 신청발급하였거나 작성·교부한 자</li> <li>2. 용도세율 적용물품의 용도외사용금지 또는 양도금지규정 위반자</li> <li>3. 관세감면 적용물품의 용도외사용금지 또는 양도금지규정 위반자</li> <li>4. 정당한 사유없이 관련서류 미보관자</li> <li>5. 관련서류 허위제출자</li> <li>6. 사전심사자료 허위제출 또는 고의 누락자</li> </ol> <p><input type="checkbox"/> 원산지증빙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여 발급받았거나 작성·교부한 자: 300만원이하의 벌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만, 원산지 오류사항을 수정통보한 자는 제외</li> </ul> <p><input type="checkbox"/> 벌칙위반자에 대하여는 관세법상의 형법규정배제, 조사절차 및 양별면책규정 준용</p>

(2) 개정이유

- 이 법 및 협정의무 위반자에 대한 처벌제도를 도입하여 협정 이행의 실효성 확보와 역내간 수출입물품에 대한 공정한 무역질서 유지를 유지하려는 것임
  - 과세자료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기업비밀 보장
  - 특혜관세의 결정과 관련되는 사항 중 원산지허위증명 등 고의성이 있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 부과
  - 특혜, 과실로 원산지증빙자료를 잘못 작성한 경우에도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관세행정질서 유지
- 별칙규정 적용시 관세법 제279조(양별규정)에 준하여 본인과 사용인에게 양별규정을 적용하되, 별칙 위반자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278조를 준용하여 형법규정을 배제하도록 함
- 이 법 위반자는 관세법 제283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범으로 간주하여 동법 제284조 내지 제319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처분절차에 따르도록 하여 집행상의 혼선방지
  - 관세법 제281조의 양별면책규정을 준용하여 관세법 양별조항과 형평성 유지
    - 관세법에 관한 조사·처분은 세관공무원이 담당(§283)
    - 공소의 요건으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고발(§284)
    - 관세법에 대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통고처분(§311)

관세법의 벌칙조항 비교

관세법	관세특례법
<p>&lt;관세법 제276조(허위신고죄)&gt;</p> <p><input type="checkbox"/> 2천만원 이하의 벌금(과실로 제 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276②)</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부정한 방법으로 적하목록을 작성하였거나 제출한 자</li> <li>2. 신고서류 보관의무 위반자등</li> <li>3. 용도외사용금지 위반자 등</li> <li>4. 세관장의 의무이행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li> </ol> <p><input type="checkbox"/> 1천만원 이하의 벌금(§276③)</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6. 서류의 제출·보고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li> <li>7. 세관장 또는 세관공무원의 조치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li> <li>8. 세관공무원의 장부 또는 자료의 제시요구 또는 제출요구를 거부한 자</li> </ol>	<p><input type="checkbox"/> 2천만원 이하의 벌금</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용도세율 또는 관세감면 적용 물품의 용도외사용금지 또는 양도금지규정 위반자</li> <li>2. 원산지증빙서류를 허위로 신청 발급하였거나 작성·교부한 자 (수정통보한 자는 제외)</li> <li>3. 정당한 사유없이 관련서류 미보관자</li> <li>4. 관련서류 허위제출자</li> <li>5. 사전심사자료 허위제출 또는 고의 누락자</li> </ol> <p>※ 과실로 1호, 2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p>

\* 관세법 제276조(허위신고죄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물품원가 또는 2천만원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3. (생략)
4. 제241조 또는 제24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함에 있어서 제241조 제1항에 규정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자.
5. (생략)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과실로 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적하목록을 작성하였거나 제출한 자
2. 제12조(신고서류의 보관기간) ----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83조제2항(용도세율 적용물품의 용도외사용금지)---의 규정에 위반한 자
4. 제227조(의무이행의 요구)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의 의무이행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과실로 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세관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거나 그 직무의 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한 자
- 2.~5의2 (생략)
6. 제263조(서류의 제출 또는 보고)의 규정에 위반하여 서류의 제출, 보고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7. 제265조(물품 또는 운송수단 검사)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 또는 세관공무원의 조치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
8. 제2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관공무원의 장부 또는 자료의 제시 요구 또는 제출요구를 거부한 자

※ 관세법 제278조(형법규정의 배제)

①이 법에 의한 벌칙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형법 제9조1)· 제10조제2항2)· 제11조3)· 제32조제2항4)· 제38조제1항제2호5)와 제53조6)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형법 제16조를 적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의 유무를 불문한다.

1) 형법 제9조 (형사미성년자)

2) 형법 제10조제2항 : 심신장애자에 대한 刑 輕減

3) 형법 제11조 : 韓啞子에 대한 刑의 輕減

4) 형법 제32조제2항 : 從犯에 대한 刑의 輕減

5) 형법 제38조제1항제2호 : 競合犯에 대한 處罰例

6) 형법 제53조 : 酌量輕減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징역형에 처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 관세법상 조사 및 처분 관련 규정

제283조(관세법)	제303조(압수와 보관)
제284조(공소의 요건)	제304조(압수물품의 폐기)
제285조(관세법에 관한 서류)	제305조(압수조서 등의 작성)
제286조(조사처분에 관한 서류)	제306조(야간집행의 제한)
제287조(조서의 서명)	제307조(조사중의 출입금지)
제288조(서류의 송달)	제308조(신분증명)
제289조(서류송달시의 수령증)	제309조(경찰관의 원조)
제290조(관세법의 조사)	제310조(조사결과의 보고)
제291조(신문)	제311조(통고처분)
제292조(조서작성)	제312조(즉시 고발)
제293조(조서의 대응)	제313조(압수물품의 환부)
제294조(소환)	제314조(통고서의 작성)
제295조(사법경찰권)	제315조(통고서의 송달)
제296조(수색·압수영장)	제316조(통고의 불이행과 고발)
제297조(현행범의 체포)	제317조(일사부재리)
제298조(현행범의 인도)	제318조(무자력고발)
제299조(압수물품의 국고귀속)	제319조(준용)
제300조(임검수색)	
제301조(신변의 수색등)	
제302조(입회)	

### 23. 양벌규정(안 §23)

#### (1) 개정내용

한·싱 FTA 협정문	법 률 안
	<p><input type="checkbox"/> 벌금형에 해당하는 행위(과세자료 처벌조항 제외)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의 대표자에 대하여도 동일 수준의 벌금형 부과</p> <p><input type="checkbox"/> 양벌 규정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281조의 면책 조항 준용</p>

#### (2) 개정이유

- 이 법 및 협정의무 위반자에 대해 양벌규정을 도입하여 협정 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관세법 제279조(양벌규정) 및 제281조(면책)의 규정을 원용하여, 종업원의 관리책임이 있는 법인의 대표자도 동일하게 처벌토록 하여 관세법규의 실효성 도모 및 처벌조항의 형평 유지
- 다만, 대표자 본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는 방도가 없었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면책하여 합리성 유지

## 24. 과태료(안 §24)

### (1) 개정내용

한·싱 FTA 협 정 문	법 률 안
<p>○ 협정상의 의무위반에 행정처벌 가능(협정 5.12)</p>	<p><input type="checkbox"/>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세관장이 요구한 서류를 정당한 사유없이 제출하지 아니한 자</li> <li>2. 세관장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li> </ol> <p><input type="checkbox"/>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용도세율 사용승인 규정을 위반하여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하는 물품을 세율이 낮은 용도에 사용한 자</li> <li>2. 용도세율 적용물품의 양도금지 규정을 위반한 중 세율이 낮은 용도와 동일한 용도에 사용하고 자 하는 자에게 양도 한 자</li> <li>3. 관세감면 적용물품의 양도금지 규정에 위반한 자 중 당해 물품을 직접 수입한 경우에는 관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자</li> <li>4. 원산지증빙서류의 오류내용을 수정신고 하지 아니 한 자</li> </ol>

### (2) 개정이유

이 법 및 협정상의 경미한 의무 또는 질서위반자에 대해 과

태료를 부과하여 협정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세관장의 원산지조사활동 비협조자에 대하여는 1,000만원 이하의 무거운 과태료를 부과하되, 가벼운 질서외무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관세법(§276③)에서는 세관장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조사를 거부할 경우 1,000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이 법에서는 과태료로 전환하여 최근의 형사벌 체계를 행정질서벌 체계로 완화하는 움직임에 부응

- 아울러 체약상대국의 수출자로부터 원산지오류사항 수정통보를 받고도 수정신고하지 않는 수입자에 대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여 성실신고 풍토 조성

<참고>

관세법과 특례법의 과태료 규정 비교

관세법	특례법안
<p><input type="checkbox"/> 1천만원 이하의 벌금(§276③)</p> <p>6. 서류의 제출·보고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p> <p>7. 세관장 또는 세관공무원의 조치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p> <p>8. 세관공무원의 장부 또는 자료의 제시요구 또는 제출요구를 거부한 자</p> <p><input type="checkbox"/> 300만원 이하의 벌금(§276②): 과실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게 된 자</p> <p>1. 부정한 방법으로 적하목록을 작성하였거나 제출한 자</p> <p>2. 신고서류 보관의무 위반자등</p> <p>3. 용도외사용금지 위반자 등</p> <p>4. 세관장의 의무이행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p> <p><input type="checkbox"/>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277①)</p> <p>2. 용도외사용 위반자중 용도세율 적용물품을 세율이 낮은 용도에 사용한 자(법 §83①)</p> <p>3. 용도외사용 위반자중 동일용도 사용자에게 양도한 자(법§83②)</p>	<p><input type="checkbox"/>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p> <p>1. 세관장이 요구한 서류를 정당한 사유없이 제출하지 아니한 자</p> <p>2. 세관장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p> <p><input type="checkbox"/>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p> <p>1. 용도세율 사용승인 규정을 위반하여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하는 물품을 세율이 낮은 용도에 사용한 자</p> <p>2. 용도세율 적용물품의 양도금지 규정을 위반한 중 세율이 낮은 용도와 동일한 용도에 사용하고 자 하는 자에게 양도 한 자</p> <p>3. 관세감면 적용물품의 양도금지 규정에 위반한 자 중 당해 물품을 직접 수입한 경우에는 관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자</p> <p>4. 원산지증빙서류의 오류내용을 수정신고 하지 아니 한 자</p>



<참고>

**관세관계별 벌칙 수준 비교**

구분	관세법		한·칠 관세특례법	FTA 관세특례법안
	처벌수준	처벌유형		
벌금	2000만원 또는 물품원가	수출입허위신고/미신고(\$276 ①4호)		
	2,00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하목록 부정작성</li> <li>· 제출</li> <li>· 용도외사용금지위반</li> <li>· 자료보관의무위반</li> <li>· 수입후의무이행위반</li> <li>· 자율심사결과허위제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도외사용금지위반</li> <li>· 원산지허위증명</li> <li>· 자료보관의무위반</li> <li>· 허위서류제출</li> <li>· 사전심사자료허위제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도외사용금지위반</li> <li>· 원산지허위발급신청 및 작성</li> <li>· 자료보관의무위반</li> <li>· 허위서류제출</li> <li>· 사전심사자료허위제출</li> <li>* 과실범은 과태료로 전환</li> </ul>
	과실 300만원			
	1,00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허위진술, 집행 거부·기피</li> <li>· 허위보고행위</li> <li>· 세관장의 조치 위반, 검사거부·방해·기피</li> <li>· 서류제출미이행·허위보고</li> <li>· 자료제출 요구거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관장 요청서류 미제출자</li> <li>· 세관장의 조사 거부·방해·기피</li> </ul>	* 과태료로 전환
과실 200만원				
3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 비밀유지의무위반

구분	관세법		한·칠 관세특례법	FTA 관세특례법안
	처벌 수준	처벌 유형		
과태료	1,00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관장 요청서류 미제출자</li> <li>· 세관장의 조사거부· 방해· 기피</li> </ul>
	50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도사용승인위반</li> <li>· 원산지증명서 오류미수정신고</li> </ul>
	200만원	· 용도사용승인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도사용승인위반</li> <li>· 원산지증명서오류사항미통보</li> <li>· 원산지증명서오류미수정신고</li> </ul>	
	10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하목록부실작성·제출</li> <li>· 잠정가격미신고</li> <li>· 용도세율사후관리 의무위반</li> </ul>		

## 25. 관세협정의 시행(안 §25)

### (1) 개정내용

협 정 문	법 률 안
	○ 관세협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규정

### (2) 개정이유

- 협정에서 국내법령에 위임한 세부적·기술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수용하여 관세협정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에서 원용

제33조(조세조약의 시행) 조세조약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6. 부칙

### (1) 개정내용

협 정 문	법 률 안
	<input type="checkbox"/> 시행일 ○ 이 법은 2006. 1. 1부터 시행  <input type="checkbox"/> 적용례 ○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수입 또는 수출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2) 개정이유

이 법의 시행일을 명확히 하여 원활한 시행준비 도모

○ 한·싱 FTA 발효일과 연계하여 수정 가능

※ 협정의 효력발생일 : 국회비준동의 및 국내이행 준비 완료  
를 상대국에 통지한 날부터 30일 경과후 발효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원산지증빙서류(안 제2조)

(1) 개정내용

< 法案內容 (§2①5호) >

원산지증빙서류는 수출입물품의 원산지를 입증하는 서류  
 ⇒ 작성자·기재사항·유효기간 등 필요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

한·싱 FTA	시행령(안)
<input type="checkbox"/> 원산지증명서(협정 5.2.4) ○ 수출국의 증명기관에서 발급 · 한국: 세관, 상공회의소 · 싱가포르: 세관 ○ 유효기간 : 12개월 (협정 5.2.2) ○ 증명서 사용언어: 영어 (협정5.2.1, 5.2.6) ○ 증명서의 서식: 2개 서식	<input type="checkbox"/> 원산지증빙서류의 구분 ○ 원산지증명서 ○ 증명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 <input type="checkbox"/> 원산지증명서의 요건 ○ 원산지국가의 세관 또는 관계기관이 발급한 것 ○ 수출자가 자율발급한 것 <input type="checkbox"/>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절차 ○ 증명서작성대장 비치 관리 ○ 영문 작성, 유효기간은 1년 ○ 세부절차는 부령에 위임

(2) 개정이유

협정관세 적용신청에 필요한 원산지증빙서류의 종류·

요건 기타 필요한 절차 마련

o 원산지증명서는 각 계약상대국의 제도와 행정여건의 차이를 고려하여 수출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한 것과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작성한 것을 모두 인정

\* 한-싱 FTA에서는 기관발급제도를 도입하였으나, 한-EFTA FTA에서는 자율증명제도를 도입하였는 바, 원산지증명서는 각국의 행정여건에 따라 FTA 별로 달리 정해지는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시행일부터 수출입신고 하는 분부터 적용.

## 2 싱가포르산 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안 제3조)

### (1) 개정내용

< 法案內容(§4) >

계약상대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의 연도별 세율·적용기간·적용수량 등은 대통령령에 위임

한·싱 FTA	시행령(안)
<input type="checkbox"/> 협정 부속서 관세양허표에 따라 관세철폐 또는 점진적 인하 ○ 협정부속서 3: 품목별 관세 철폐·인하비율 등 규정	<input type="checkbox"/> 협정관세율 ○ 싱가포르산 수입물품에 적용할 관세율 : 별표

### (2) 개정이유

- 한·싱 FTA에서 정하는 관세의 철폐·인하비율 등에 따라 싱가포르산 수입물품에 실제 적용할 각 품목별 세율 및 기간을 정함
- 대상품목: 총 **10,315개 양허품목**(HSK 10단위 기준)
- 인하기준: 협정 발효일부터 즉시 무세화(6,724개 품목), 5년간 연차인하(2,009개 품목), 10년간 연차인하(1,582개 품목)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시행일부터 수입신고 하는 분부터 적용

### 3. 수량별 차등협정관세의 적용(안 제4조)

#### (1) 개정내용

< 法案內容(\$4①) >

- 계약상대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  
⇒ 연도별 세율·적용기간·적용수량 등은 대통령령에 위임

한·싱 FTA 협정	시행령(안)
	<input type="checkbox"/> 적용수량별 차등세율 적용방법 ○ 주무부장관 등의 추천 ○ 추천서는 수입신고수리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 ○ 재경부장관 또는 관세청장의 관계기관 자료제출 요구권

#### (2) 개정이유

- 협정에서 일정 물량별로 상이한 관세율(쿼타세율)이 적용되도록 양허되는 경우에 대비, 그 적용절차 마련
- \* 한·싱 FTA의 경우 쿼타세율이 도입되지 않았으나, 한·EFTA FTA에서는 일부품목(예: 냉동고등어 연간 500톤)에 적용
- 일정쿼타 물량별로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물품의 쿼타 배정은 주무부장관이 관장토록 하고,  
 ※입법선례: 한·칠FTA관세특례법시행령 제2조(협정관세율)제2항
- 수입신고수리전까지 주무부장관의 추천서를 세관에 제출하는 경우에만 낮은 세율을 적용토록 함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시행일부터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4. 긴급관세조치의 절차(안 제5조)

##### (1) 개정내용

< 法案內容(§6) >

- 계약상대국 물품의 수입급증으로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 발생시  
세율인상 또는 연차적 세율인하 정지 가능
- ⇒ 국내피해의 조사 및 긴급관세조치의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

한·싱 FTA 협 정	시행령(안)
<input type="checkbox"/> 국내피해조사(협정 6.4.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사기관: 주무당국</li> <li>○ 조사방법: WTO 세이프가드 협정상의 조사절차 준용(제3조 및 제4조제2항)</li> </ul> <input type="checkbox"/> 조치결정 절차 (협정 6.4.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사개시 상대국 서면통지</li> <li>○ 잠정조치시에도 조사개시 통보</li> <li>○ 조치전 보상협약(30일간)</li> <li>○ 30일 이내 미해결시 조치시행</li> </ul> <input type="checkbox"/> 대항조치(협정 6.4.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요건) 무역보상미합의</li> <li>○ (조치) 상대국의 긴급관세조치와 동등한 수준의 조치</li> </ul>	<input type="checkbox"/> 국내산업피해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사기관: 무역위</li> <li>○ 조사절차: 산피법 제22조의3</li> <li>○ 조사개시통보: 재경부장관</li> </ul> <input type="checkbox"/> 긴급관세조치 건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의기관: 무역위</li> <li>○ 건의요건: 국내산업피해판정</li> <li>○ 구비서류: 조사보고서, 건의이유, 조치내용 및 조치기간 등</li> </ul> <input type="checkbox"/> 긴급관세조치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정기관: 재경부장관</li> <li>○ 사전협약: 상대국정부(30일간)</li> <li>○ 처리기간: 1월내(사전협약기간은 불포함)</li> </ul> <input type="checkbox"/> 대항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요건) 체약상대국에서 사전협약 없이 아국물품에 대해 긴급관세조치를 하는 때</li> <li>○ (조치) 상응수준의 긴급조치</li> </ul>

(2) 개정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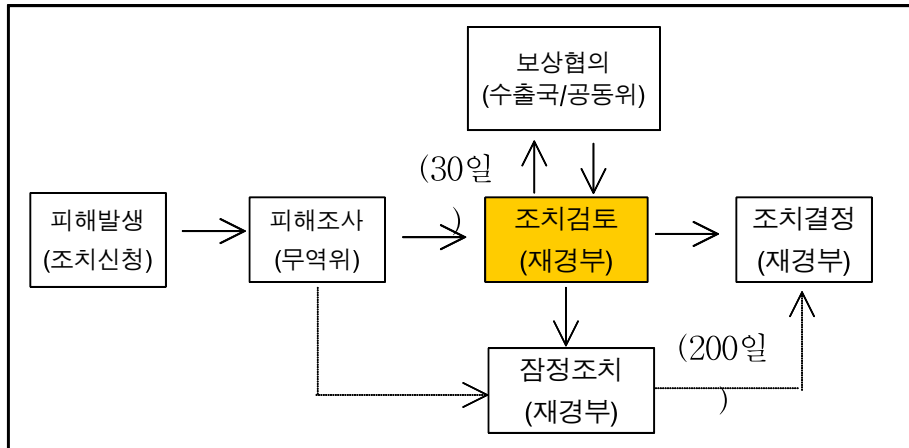
- 신속·투명한 국내산업피해 구제를 위하여 긴급관세조치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마련함
- 무역위원회가 국내산업피해유무를 조사하여 재경부장관에게 건의한 경우 상대국과 사전협약을 거쳐 긴급관세조치의 여부 및 그 내용 결정

- o 계약상대국이 우리나라 정부와 사전협의 없이 우리나라 수출상품에 대해 세율인상 등 긴급관세조치를 한 경우 상응하는 대항조치 절차를 규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시행일부터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긴급관세조치 개념도》



## 5. 잠정긴급관세조치절차(안 제6조)

### (1) 개정내용

< 法案內容(\$7) >

- 국내산업피해 조사기간 중에 발생하는 심각한 피해 방지를 위하여 조사가 종결되기 전 까지 잠정조치 가능  
 ⇒ 잠정긴급관세조치의 결정관련 절차는 대통령령에 위임

한·싱 FTA 협 정	시행령(안)
<input type="checkbox"/> 잠정긴급관세조치절차 (협정 6.4.7) ○ 잠정조치전 상대국 서면통지 ○ 잠정조치 즉시 상대국과 보상 협의 ○ 잠정조치기간: 최대 200일  <input type="checkbox"/> 잠정조치종료 ○ 무피해판정시: 관세환급조치	<input type="checkbox"/> 잠정긴급관세조치 부과건의 ○ 건의자: 무역위 ○ 피건의기관: 재경부장관 ○ 결정기간: 접수일부터 30일 ○ 상대국 통지: 잠정조치전 ○ 보상협의: 잠정조치 즉시  <input type="checkbox"/> 잠정긴급관세조치 종료절차 ○ 세액정산조치 - 긴급관세액 ≥ 잠정긴급관세액: 차액세액 미징수 - 긴급관세액 ≤ 잠정긴급관세액: 차액세액 환급 ○ 무피해 판정시: 잠정긴급관세액 환급조치

### (2) 개정이유

- 국내산업피해 조사기간 중에 발생하는 긴급한 피해의 방지

를 위하여 필요한 잠정조치 시행 절차를 마련함

- 재정부장관은 무역위의 잠정긴급관세조치 건의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잠정조치 여부 및 그 내용을 결정하고, 조치를 시행한 후에 체약상대국 정부와 보상협의
  
- 잠정조치 종료 후 긴급관세조치에 의한 세액과의 차액은 정산조치: 과다세액은 환급, 부족세액은 미징수

※ 한·칠 FTA 관세특례법 제5조제5항, 관세법시행령 제88조제2항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시행일부터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6. 긴급관세조치의 재심사절차(안 제7조)

### (1) 개정내용

< 法案內容(\$6②) >

- 체약상대국 물품의 수입급증으로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세율인하 등 긴급관세조치 가능  
 ⇒ 긴급관세조치의 재심사에 관한 규정은 관세법 제67조(긴급관세에 대한 재심사) 준용

한·싱 FTA 협정	시행령(안)
<input type="checkbox"/> 점진적인 자유화 (협정 6.4.5) ○ 조치기간 1년 이상: 조치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점진적 관세 자유화	<input type="checkbox"/> 재심사시의 검토사항 ○ 조치시행 이후 상황변동여부 ○ 조치의 종료로 인하여 국내 산업피해 존속 여부 ○ 품목분류의 변경 등 그 적용요건의 변동여부

### (2) 개정이유

- 긴급관세조치 시행 이후 재경부장관의 재심사에 필요한 검토사항을 명확히 하여 예측가능성 및 투명성 제고
- 현행 관세법 제67조에서는 재경부장관의 긴급관세조치 재심사에 관한 검토요건이 미비 되어 있어, 보완 필요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시행일부터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7. 싱가포르와의 협정에 의한 긴급관세조치 특례(안 제8조)

### (1) 개정내용

< 法案內容(§6①) >

- 체약상대국 물품의 수입급증으로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세율인상 등 긴급관세조치 가능  
 ⇒ 국내피해의 조사 및 긴급관세조치의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

한·싱 FTA 협 정	시행령(안)
<input type="checkbox"/> 긴급관세조치의 내용(6.4.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가적 관세인하의 정지</li> <li>○ 일정범위의 추가세율 인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정범위: 조치 당일의 MFN세율과 협정발효 직전 MFN세율 중 낮은 세율</li> </ul> </li> </ul> <input type="checkbox"/> 조치기간(6.4.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칙: 2년, 연장: 2년(총 4년) (잠정조치기간 포함)</li> <li>○ 잠정조치기간: 200일(6.4.7)</li> </ul>	<input type="checkbox"/> 긴급관세조치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차적인 관세인하 중지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용세율: 중지조치한 날에 적용되는 협정관세율 적용</li> </ul> </li> <li>○ 세율인상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상범위: 조치당일의 MFN세율(일반실행세율)과 협정발효 전 날의 MFN세율 중 낮은 세율까지 인상</li> </ul> </li> </ul> <input type="checkbox"/> 조치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칙: 2년, 연장: 2년(총 4년)</li> <li>○ 잠정조치기간: 200일</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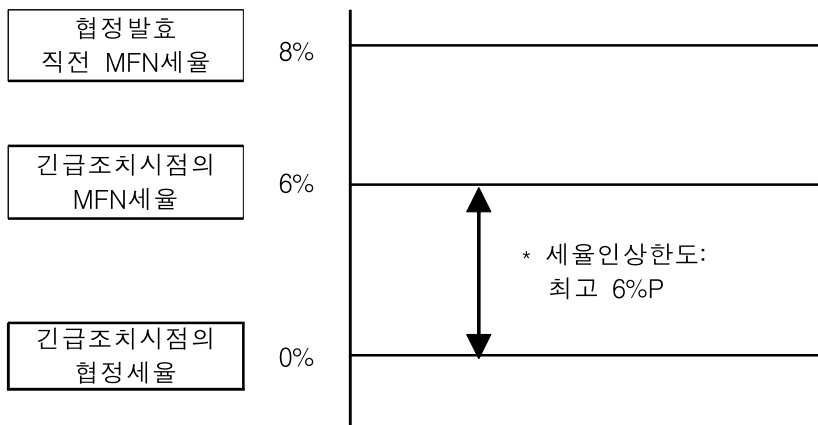
### (2) 개정이유

- 싱가포르와 협정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긴급관세조치에 관한 사항을 특례조항으로 수용하여, 한-싱 협정의 원활한 이행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세율인상 최고한도: 긴급관세조치 당일의 최혜국세율(MFN세율)과 협정발효 직전 MFN세율 중 낮은 세율까지만 세율인상가능

※ 긴급관세의 구체적인 내용, 조치기간 등은 각 FTA 별로 차이가 있어 개별 특례조항 방식 접근이 바람직

《긴급관세조치 세율인상범위 개념도(예시)》



<참고> 주요 FTA별 세이프가드조치 주요내용 비교

구분	WTO 세이프가드	한·칠 FTA	한·싱 FTA	한·EFTA
대상물품	모든 물품	농산물 중 양허품목	양허품목	양허물품
피해조사 관련조항	수입증가, 국내시장 점유율, 판매·생산·고용 등의 변화	조사규정 없음	TO세이프가드 제3조, 제4조제2항	WTO세이프가드 협정상의 조사절차
조치내용	관세율인상, 수량제한, 구조조정촉진	관세인하정지/ 관세율 인상	관세인하정지/ 관세율 인상	관세인하정지/ 관세율 인상
적용기간	4년+4년(8년)	제한 없음	2년+2년(4년)	1년+ 3년(4년)
재발동 제한기간	없음	없음	없음	3년
잠정조치 기간	200일	120일	200일	200일

## 8. 일시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면제(안 제9조)

### (1) 개정내용

< 法案內容(§8) >

- 수입후 2년 이내에 재수출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과 우리나라에서 일시 수출한 후 2년 이내에 재수입하는 물품은 관세면제  
⇒ 면제되는 재수출입기간과 면제절차는 대통령령에 위임

한·싱 FTA 협 정	시행령(안)
<input type="checkbox"/> 수리 또는 가공후 재반입품 (협정 3.7) ○ 관세면제 또는 경감대상 (원산지요건 불필요) - 계약상대국으로 수출된 후 재반입 된 물품 - 계약상대국에서 수리 또는 가공후 재반입된 물품 - 자국에서 수리 또는 가공후 상대국으로 재반출 물품 ○ 감면절차: 자국법령 준용	<input type="checkbox"/> 재수출입물품 관세면제기간 ○ 감면기간: 1년 ○ 감면기간 확인방법: - 계약서, 수출입사유, 물품의 상태및 용도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인정하는 기간 ○ 연장(당초 인정기간을 포함 최고 2년까지 가능)

### (2) 개정이유

- 일시반출입물품의 관세면제 허용기간, 확인방법 등 관세면제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정하여 협정 이행의 실효성 확보 및 납세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 관세면제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연장을 허용하여 무역업계 지원
- 수출입거래계약 등에 의거 실제 확인되는 기간에 한하여 관세면제를 인정하여 남용방지 및 통관질서 유지
- 그 밖에 관세면제에 필요한 일반절차는 관세법시행령을 준용토록 하여 관세행정의 일관성·안정성 유지
  - 수입신고수리전까지 감면신청(관세법시행령 제112조)
  - 재수출기간의 연장신청(관세법시행령 제114조)
  - 재수출면제기간(관세법시행령 제115조)
  - 재수출조건감면물품의 수출 및 가산세 징수(관세법시행령 제116조)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시행일부터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9. 협정관세 적용신청(안 제10조)

### (1) 개정내용

< 法案內容(\$10) >

- 협정관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세관장에게 협정관세의 적용신청 필요  
⇒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에 필요한 절차는 대통령령에 위임

한·싱 FTA 협 정	시행령(안)
<input type="checkbox"/> 협정관세 적용 신청절차 (협정 5.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입신고시 특혜신청서 제출</li> <li>○ 세관 요구시 원산지증빙서류 제출</li> <li>○ 원산지 입증책임: 수입자 (협정 5.3.2)</li> </ul> <input type="checkbox"/> 원산지증명서 제출면제 (협정 5.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화 1천불 이하 물품</li> <li>○ 국내법에 따른 제출면제물품</li> <li>○ 원산지증명요건 회피 목적의 분할수입물품은 제외</li> </ul>	<input type="checkbox"/> 협정관세 신청서의 주요 기재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입자·수출자·생산자·원산지·원산지증명서 구비 여부 등</li> </ul> <input type="checkbox"/> 원산지증빙서류 면제 (관세탈루 우려시에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화 1천불이하 물품</li> <li>○ 동종·동질물품</li> <li>○ 사전심사 받은 물품</li> <li>○ 제조자 등에 의하여 원산지 확인이 가능한 물품</li> </ul> <input type="checkbox"/> 신청서 기재사항 변경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출입자·생산자 관련 정보 변경시 즉시 수정 통보</li> </ul>

## (2) 개정이유

- 협정관세 신청절차를 명확화하고 원산지증빙서류 면제물품을 확대하여 납세편의 제고 및 통관절차 간소화
  - 협정관세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원산지확인에 필요한 정보 위주로 구성(10개 항목)
    - ※ 신청서의 작성·제출은 관세청장이 EDI 방식으로 운영
  - 신청서 기재사항 중 수입자·수출자 및 생산자 관련 정보 변경시 세관장 통보의무 규정
    - 자료요구서, 조사동의요구서가 수출입자등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경우 특혜관세 배제처분이 될 수 있어,
    - 무역업자의 불이익방지 등 납세권익보호 차원에서 주소 등 관련정보 변경시 세관장에게 통지할 필요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시행일부터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10.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안 제11조)

### (1) 개정내용

< 法案內容(\$10③~⑦) >

- 수입신고시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하여 협정관세를 신청하지 못한 자는 수입통관후 1년 이내에 사후신청 가능  
⇒ 사후신청 절차와 이로 인한 세액의 경정청구 및 관세환급 절차는 대통령령에 위임

한·싱 FTA 협 정	시행령(안)
<input type="checkbox"/> 협정관세 사후신청 (협정 5.3.4)  <input type="checkbox"/> 수입신고시 원산지증명서류 미비된 경우에도 다음 요건에 해당할 경우 적용가능 - 수입신고시 특혜신청의사표시 - 국내법령에 따라 관세납부일 부터 일정기간 이내에 원산지 증빙서류 제출	<input type="checkbox"/> 사후신청 구비서류 ○ 협정관세 적용신청서 ○ 경정청구서 ○ 원산지증빙서류  <input type="checkbox"/> 수입신고시 사후신청 의사표시의 방법 ○ 수입신고서에 기재 (기재방법은 관세청장 고시 로 정함)

### (2) 개정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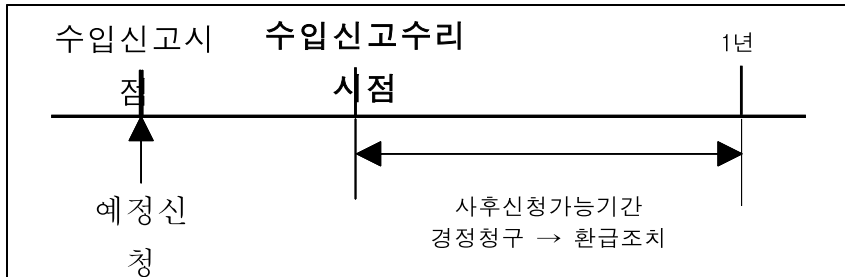
- 수입통관후 협정관세의 사후신청에 따르는 절차를 명확히 하여 대국민 납세편의 및 관세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사후신청시에는 신청서 이외에 세액경정청구서와 원산

진증빙서류를 구비하도록 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시행일부터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협정관세 사후적용 흐름도》



## 11. 원산지증빙서류 수정통보(안 제12조)

### (1) 개정내용

< 法案內容(§11①) >

- 원산지증빙서류에 오류가 있음을 안 수출자는 동 오류사항을  
세관장 및 체약상대국의 수입자에게 각각 통보

협 정	시행령(안)
	<input type="checkbox"/> 오류사항 수정통보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정통보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산지증명서의 일련번호 및 발급일자</li> <li>- 오류내용 및 정정사항 등</li> </ul> </li> <li>○ 수정된 원산지증빙서류</li> </ul>

### (2) 개정이유

- 무역업자의 자율법규준수와 성실신고 유도를 위하여 원산지 오류사항의 수정신고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정함

※ 한-칠, 한-캐 FTA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도를 도입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시행일부터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12. 보관대상 원산지증빙서류 등 (안 제13조)

### (1) 개정내용

< 法案內容(§12) >

- 수입자·수출자 및 생산자는 원산지의 확인 및 협정관세의 적용에 필요한 서류를 5년의 범위 안에서 보관  
⇒ 보관대상서류 및 보관기간은 대통령령에 위임

한·싱 FTA 협 정	시행령(안)
<input type="checkbox"/> 보관대상서류(협정 5.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출자 또는 생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출품의 구매·비용·가격·선적 및 대금지급 관련자료</li> <li>- 수출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재료의 원천·구매·비용·가격 및 대금지급 관련자료</li> <li>- 수출물품의 생산관련 자료</li> </ul> </li> <li>○ 수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산지증명서</li> <li>- 수입관련 수입국 요구자료</li> </ul> </li> </ul> <input type="checkbox"/> 보관기간: 5년 또는 그 이상의 기간(협정 5.5.) <input type="checkbox"/> 전자형태 보관 가능	<input type="checkbox"/> 보관대상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입자: 원산지증명서사본, 운송관련 서류 등</li> <li>○ 수출자: 원재료의 생산·구입증빙서류, 원재료내역서, 재고관리대장 등</li> <li>○ 생산자: 물품공급계약서, 원재료의 생산·구입증빙서류, 원재료내역서 등</li> </ul> <input type="checkbox"/> 보관기간: 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출입자: 수출입신고일부터 5년</li> <li>○ 생산자: 원산지증빙서류를 작성한 날부터 5년</li> </ul> <input type="checkbox"/> 전산자료보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이크로필름</li> <li>○ 광디스크 등 자료전달매체</li> </ul>

(2) 개정이유

- 효율적인 원산지 조사를 위하여 수출입자 및 생산자가 보관해야 하는 증빙서류의 종류와 보관기간을 규정
- 자료보관의무는 벌칙과 관련되어 있어 보관대상서류를 가급적 명확하게 규정

\* 자료보관의무 위반시 법 제22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보관기간은 관세부과제척기간(5년), 즉 과세권의 행사기간과 연계되어 있으므로 5년으로 명시

- 자료보관기간 이내에 세관장이 요구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특혜관세 배제

※ 입법선례: 한·칠 FTA 관세특례법 제12조(자료보관의무)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시행일부터 수출입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13. 체약상대국에 대한 원산지확인요청(안 제14조)

#### (1) 개정내용

< 法案內容(§13①) >

-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협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입물품의 원산지 확인을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요청 가능

한·싱 FTA 협 정	시행령(안)
	<input type="checkbox"/> 상대국 세관에 요청시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先수입자 조사 후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에 원산지 진위여부 확인요청</li> </ul> <input type="checkbox"/> 요청시의 구비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요청 사유</li> <li>○ 원산지결정기준</li> <li>○ 확인결과의 회신기간</li> <li>○ 원산지증빙서류 사본</li> </ul> <input type="checkbox"/> 요청사실 및 확인결과 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지기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li> <li>○ 통지대상자: 수입자</li> <li>○ 통지내용: 원산지확인요청사실과 원산지확인결과 및 결정내용</li> </ul>

#### (2) 개정이유

- 조사절차의 예측가능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하여 체약상

대국의 관세당국에 원산지의 확인을 요청하는데 필요한 절차와 구비서류를 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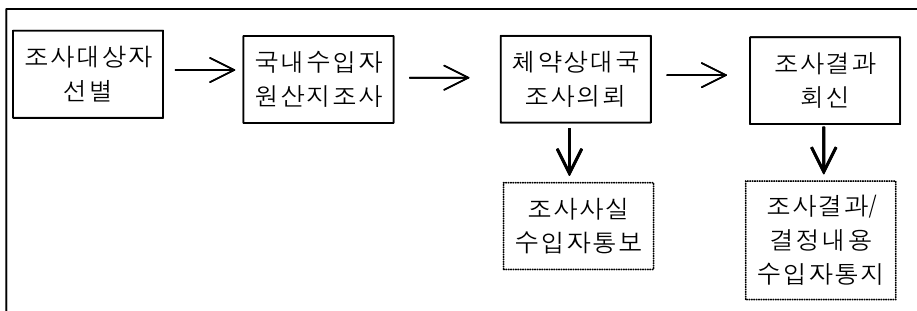
- “수입자조사우선원칙”을 적용, 수입자를 통한 원산지 확인이 곤란한 때에 한하여 체약상대국에 원산지확인 요청
- 원산지확인 요청사실과 체약상대국의 회신내용을 수입자에게 통보토록 하여 수입자의 납세권익 보호

※ 한·EFTA FTA: 수출국의 세관에 원산지의 진위여부를 확인요청하는 제도를 도입 함. 수출국 세관이 10월 이내에 확인결과를 통보하지 아니할 경우 특혜관세 배제가능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시행일부터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체약상대국 원산지조사요청절차 흐름도》



## 14. 수출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조사(안 제15조)

### (1) 개정내용

< 法案內容(§13②) >	
<input type="checkbox"/>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계약상대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수출물품의 원산지 확인을 요청받은 때에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 등을 대상으로 조사 가능
⇒ 수출물품의 원산지조사에 필요한 일반절차 마련 필요	

협 정	시행령(안)
	<input type="checkbox"/> 수출물품의 원산지조사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先서면조사 後현지조사 원칙</li> <li>○ 국내현지조사절차: 관세법 제114조 (관세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준용</li> <li>* 조사개시 7일전 조사통지</li> </ul>

### (2) 개정이유

- 원산지 조작을 통한 우회수출행위를 효율적으로 단속하는데 필요한 수출물품의 원산지조사에 관한 절차를 정함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시행일부터 수출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15. 수입물품의 원산지조사절차(안 제16조)

### (1) 개정내용

< 法案內容(§13②) >

-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여부 확인을 위하여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 가능  
⇒ 수입물품의 원산지조사에 필요한 세부절차 마련 필요

한·싱 FTA 협 정	시행령(안)
<input type="checkbox"/> 단계적 원산지검증(협정 5.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단계: 수입자 원산지증명서요구</li> <li>○ 2단계: 수입자 원산지소명 및 증빙자료 제출요구</li> <li>○ 3단계: 수출자(생산자) 원산지소명 및 증빙자료 제출요구 (체약상대국 관세당국 경유)</li> <li>○ 4단계: 수출자 현지방문조사</li> </ul> <input type="checkbox"/> 원산지현지확인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사예정통지: 조사대상자, 체약상대국 관세당국</li> <li>○ 수출자 사전동의요건</li> <li>○ 조사결과 서면통지</li> </ul>	<input type="checkbox"/> 조사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先서면조사 後현지조사</li> <li>○ 先국내조사 後해외자조사</li> </ul> <input type="checkbox"/> 국내관련자 현지조사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지조사절차: 관세법 제114조 (관세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 신청) 준용</li> <li>* 조사개시 7일전 조사통지</li> </ul>

### (2) 개정이유

- 원산지 조작을 통한 관세탈루행위 및 국내산업피해 방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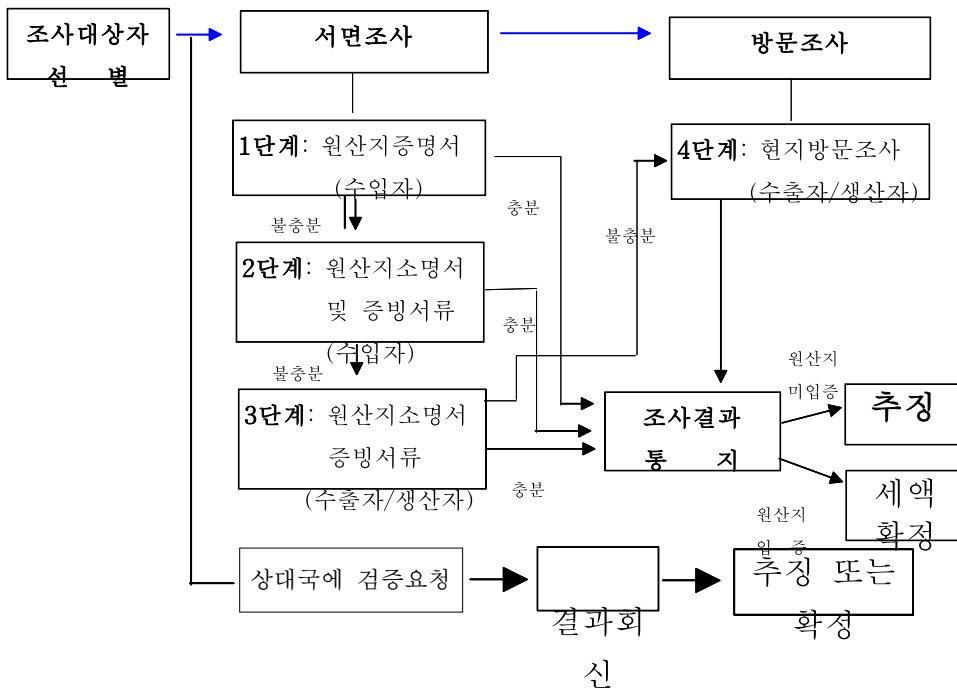
를 위하여 수입물품의 원산지조사에 필요한 절차를 정함

- 비례원칙에 입각, 先서면조사 이후에 현지조사를 착수 하되, 수입자 조사 후 해외수출자 조사를 하도록 규정
- 국내 수입자 등에 대해 현지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개시 7일전에 조사통지, 조사종료 후에는 그 조사결과를 조사대상자에게 통지(관세법 제114조 준용)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시행일부터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수입물품의 원산지검증절차 흐름도》



## 16. 원산지에 관한 조사 연기신청(안 제17조)

### (1) 개정내용

< 法案內容(§13④) >

-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조사통지를 받은 조사대상자가 예정조사기간에 조사 받기 곤란한 때에는 연기 신청 가능
- ⇒ 연기신청에 필요한 절차는 대통령령에 위임

한·싱 FTA 협 정	시행령(안)
<input type="checkbox"/> 실지조사연기(협정 5.7.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기한: 조사통지 수령후 15일 이내</li> <li>○ 연기기간: 60일 이내, 1회에 한하여 허용</li> <li>○ 조사연기통지: 수출당사국의 관세당국</li> </ul> <input type="checkbox"/> 특혜관세의 적용거부 제한(5.7.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사연기만을 이유로 특혜관세 적용을 거부해서는 안됨</li> </ul>	<input type="checkbox"/> 현지조사 연기신청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기한: 조사예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li> <li>○ 신청서류: 조사연기신청서</li> </ul> <input type="checkbox"/> 조사연기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칙: 조사예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사연기통지: 조사대상자 및 계약상대국의 관세당국</li> </ul>

### (2) 개정이유

- 조사대상기업의 경영상 애로 배려 및 성실협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현지조사를 연기할 수 있는 세부절차를 정함
  - 연기신청기한은 조사예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로 하고, 연기기간은 1회에 한하여 원칙적으로 60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하여 동 제도의 남용 가능성 차단

- 조사를 연기한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대상자와 계약상 대국의 관세당국에 통지하도록 하여 조사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함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시행일부터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 수입자 등 국내 조사대상자는 관세법시행령 제140조의 규정에 따라 연기신청 가능

#### 【관세법시행령 제140조(관세조사의 연기신청)】

① 법 제1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화재 기타 재해로 사업상 심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2. 납세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관세조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법 제1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조사의 연기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당해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관세조사의 연기를 받고자 하는 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관세조사의 연기를 받고자 하는 기간
3. 관세조사의 연기를 받고자 하는 사유
4. 기타 필요한 사항

## 17. 원산지에 관한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안 제18조)

### (1) 개정내용

< 法案內容(§13⑧) >

- 조사대상자는 조사결과를 통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이의제기 가능  
 ⇒ 이의제기에 필요한 절차는 대통령령에 위임

한·싱 FTA 협 정	시행령(안)
	<input type="checkbox"/> 이의제기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의신청서</li> <li>○ 이의내용 증빙자료</li> </ul> <input type="checkbox"/> 이의신청 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사기간: 30일 이내, 보정기간은 제외</li> <li>○ 보정기간: 20일 이내</li> <li>○ 결정내용: 신청인 통지</li> </ul>

### (2) 개정이유

- 원산지 조사결과에 대한 재검토 장치를 통하여 조사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통상분쟁의 소지를 예방
- 원산지조사결과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수입자가 부담하며, 수입자는 관세법 제118조(과세전적부심사) 및 제119조(불복의 신청)의 규정에 따라 권리구제 가능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시행일부터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참고> 이의제기제도와 관세법상의 과세적부심 비교

구 분	조사결과 이의신청제도 (특례법)	과세적부심제도 (관세법)
신청대상자	해외조사대상자	국내 수입자(납세의무자)
불복대상	조사결과의 당부	과세예정처분의 당부
신청시기	조사결과서수령일부터 30일	과세전통지수령일부터 30일
기타 권리구제 수단과의 관계	관세법상의 과세적부심, 이 의신청, 심사청구 등 가능	과세적부심 이후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 가능

## 18. 원산지 등에 관한 사전심사(안 제19조)

### (1) 개정내용

< 法案內容(§14①,③) >

- 원산지에 의문이 있는 경우 관세청장에게 사전심사신청 가능,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내용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
- ⇒ 신청서류, 신청제외대상 및 심사내용의 적용이 배제되는 특별한 사유는 대통령령에 위임

한·싱 FTA 협정	시행령(안)
<input type="checkbox"/> 사전심사신청(협정 5.8.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당사국은 사전심사 신청 제도 유지</li> </ul> <input type="checkbox"/> 사전심사 신청반려 (협정 5.8.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산지조사 중인 물품</li> <li>○ 재심 또는 불복청구 물품</li> </ul>	<input type="checkbox"/> 사전심사 신청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해 물품 및 재료의 원산지</li> <li>○ 당해 물품 및 재료의 품목분류, 가격 또는 원가</li> <li>○ 부가가치비율 산정 등</li> </ul> <input type="checkbox"/> 사전심사 신청시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전심사신청서</li> <li>○ 계약서, 원가계산서, 원재료 내역서 등</li> </ul> <input type="checkbox"/> 사전심사 신청 반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정자료 미제출</li> <li>○ 원산지조사 진행 중인 물품</li> <li>○ 불복절차 진행 중인 물품</li> </ul> <input type="checkbox"/> 사전심사기간: 90일 <input type="checkbox"/> 사전심사내용 적용제한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령 개정 또는 사실 변경</li> <li>○ 허위자료 누락</li> <li>○ 법원의 판결</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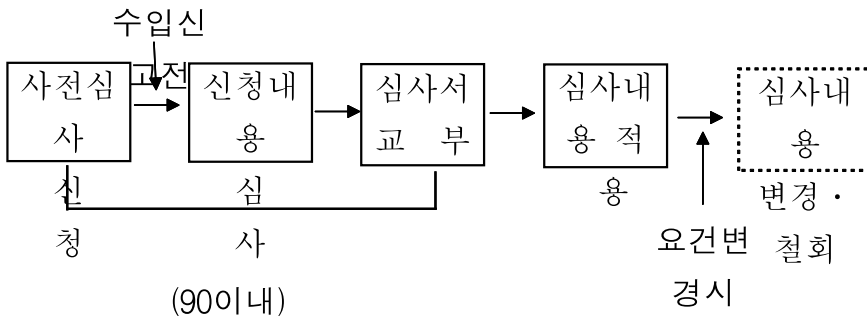
(2) 개정이유

- 무역업자의 비용절감 및 신속한 통관을 위하여 원산지사  
전심사신청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마련함
-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증빙서류를 규정하고, 당해 물품의  
원산지국 등 사전심사 신청사항을 명확히 열거규정
- 원산지조사 중인 물품과 불복청구 중인 물품은 원산지 사  
전심사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여 관세행정의 낭비 방지
- 상황변경, 허위자료 제출 등의 경우 사전심사서의 적용  
을 제한하도록 하여 과세혼란 방지 및 성실신고 유도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시행일부터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사전심사 처리흐름도》



## 19. 사전심사서 내용의 변경(안 §20)

### (1) 개정내용

< 法案內容(§15①,③) >

- 사전심사서의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 또는 상황의 변경 등이 있는 때에는 사전심사서의 내용 변경
- ⇒ 사전심사서 변경사유, 변경사항 심사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

한·싱 FTA 협정	시행령(안)
<input type="checkbox"/> 사전판정 변경·철회 사유 (협정 5.8.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실착오에 의한 판정</li> <li>○ 사실 또는 상황의 변경</li> <li>○ 협정의 개정</li> <li>○ 불복결정 또는 법령의 개정</li> </ul>	<input type="checkbox"/> 사전심사 변경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실관계 또는 상황 변경</li> <li>○ 협정 또는 법령의 개정</li> <li>○ 사실착오</li> <li>○ 신청인의 허위자료 제출</li> <li>○ 법원의 최종결정</li> </ul> <input type="checkbox"/> 사전심사내용 변경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전심사 변경사유 발생시 관세청장에게 변경내역통보</li> </ul> <input type="checkbox"/> 사전심사 변경심사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사권자: 관세청장</li> <li>○ 조치내용: 변경 또는 철회</li> <li>○ 변경통지: 사전심사 신청인</li> </ul>

## (2) 개정이유

- 사전심사서를 교부한 이후에 관세청장이 사전심사의 내용을 직권 변경하는데 필요한 세부절차를 마련하여 사전심사 내용의 변경에 따르는 과세혼란 방지
- 사전심사를 변경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를 열거하여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운영 확보
- 사전심사내용 변경사항에 대한 자율신고제도를 도입, 성실신고기반을 구축하고 관세행정의 효율성을 제고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시행일부터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20. 싱가포르와의 협정에 따른 사전심사서 변경효력의 특례(안 §21)

### (1) 개정내용

< 法案內容(§15①,③) >

- 사전심사서의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 또는 상황의 변경 등이 있는 때에는 사전심사서의 내용 변경  
⇒ 변경 효력 적용유예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

한·싱 FTA 협정	시행령(안)
<input type="checkbox"/> 사전판정 변경효력 유예 (협정 5.8.6) ○ (유예조건) 신청인이 선의로 그 판정에 의존하여 손해를 입었음을 입증하는 경우 ○ (유예기간) 6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input type="checkbox"/> 사전심사 변경효력 유예 ○ 유예조건: 변경된 사전심사 적용으로 인한 손해 발생 입증 ○ 유예기간: 6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다만, 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변경의 경우는 불인정

### (2) 개정이유

- 한-싱 FTA 제5.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심사 변경 효력제도를 수용하고 그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신의성실원칙에 따라 사전심사 내용을 신뢰한 선의의 수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60일간 변경내용의 효력 유예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시행일부터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21. 협정관세의 적용제한(안 제22조)

### (1) 개정내용

< 法案內容(§16①) >

- 협정관세 적용제한 사유에 해당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부과·징수  
⇒ 협정관세 적용제한 사유 중 ‘기타 원산지조사 불능 사유’를  
대통령령에 위임

한·싱 FTA 협정	시행령(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checkbox"/> 협정관세 적용배제 처분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처분내용 사전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세전통지 절차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118조(과세적부심사)를 적용</li> </ul> </li> </ul> </li> <li><input type="checkbox"/> 원산지 조사불능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도·폐업·소재불명 등</li> <li>○ 조사대상자의 조사 거부·방해·기피</li> </ul> </li> </ul>

### (2) 개정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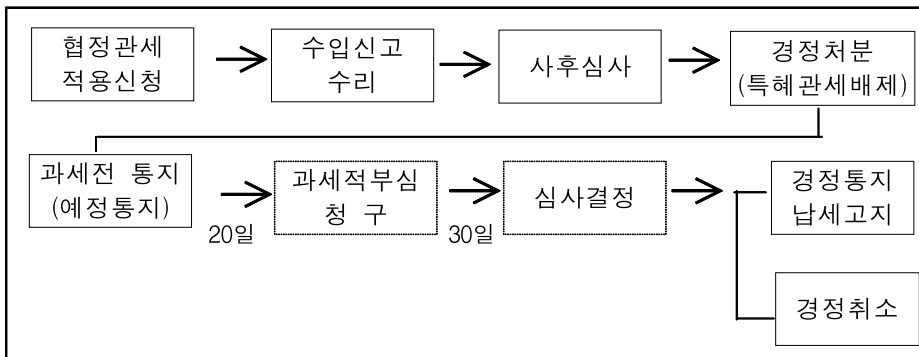
- 협정관세 적용배제로 인한 관세부과처분에 필요한 세부 절차와 협정관세 적용배제 사유 중 법률에서 위임한 ‘원산지 조사불능 사유’를 구체화 함
  - 협정관세 배제처분 시에는 그 내용을 미리 수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 하여 납세권익 보호 및 과세마찰 방지

- 과세전 통지절차 및 과세적부심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 118조 준용하여 관세행정의 일관성 유지
- ‘원산지조사불능’ 사유로 조사대상자의 부도·폐업 또는 소재불명과 조사대상자의 조사 거부·방해·기피를 열거하여 투명성과 예측가능성 확보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시행일부터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협정관세 적용 심사업무 흐름도》



<참고>

**【관세법 제118조(과세전적부심사)】**

제118조 (과세전적부심사) ①세관장은 제38조의3제3항 또는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이나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에 부족한 금액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납세의무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12.30>

1. 통지하고자 하는 날부터 3월 이내에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부

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2.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확정가격의 신고를 한 경우
3. 제3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수리전에 세액심사를 하는 경우로서 그 결과에 따라 부족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4. 제97조제3항 또는 제10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5. 제270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포탈죄로 고발되어 포탈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6. 기타 관세의 징수가 곤란하게 되는 등 사전통지가 부적당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납세의무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관장에게 통지내용에 대한 적법성 여부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 대한 관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를 받은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2.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채택한다는 결정. 다만, 청구의 일부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부를 채택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3. 청구기간을 경과하거나 보정기간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 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⑤제122조제2항·제123조·제126조 및 제130조의 규정은 과세전적부심사

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⑥과세전적부심사의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2. 관세부과 제척기간 기산일(안 제23조)

### (1) 개정내용

< 法案內容(§16②) >

-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납부한 세액과의 차액은 당해 세액을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경과된 때에는 부과 불가  
⇒ “당해 세액을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에 위임

협 정	시행령(안)
	<input type="checkbox"/> 당해 세액을 부과할 수 있는 날 ○ 수입신고수리전 협정관세 적용신청시 ⇒ 적용신청한 날의 다음 날 ○ 수입신고수리일 이후 협정관세 적용신청시: ⇒ 적용신청한 날의 다음날

### (2) 개정이유

- 협정관세 배제처분에 의하여 관세를 추징하는 경우 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을 명확히 하여 과세혼란 방지
- 협정관세를 신청한 날의 다음 날을 원칙으로 하되, 수입신고수리이후에 신청한 경우에는 협정관세를 사후신청한 날의 다음 날로 규정
- ※ 관세법상의 관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원칙적으로 수입신고한 날의 다음 날”로 규정(관세법시행령 제6조) 하고 있으나, 특례법에서는 협정관세의 신청일을 기준으로 기산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시행일부터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23. 협정관세의 적용제한자의 지정 등(안 제24조)

#### (1) 개정내용

< 法案內容(§16③) >

- 세관장은 체약상대국 수출자등이 최근 5년간 2회이상 원산지증빙서류의 주요내용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잘못 작성한 경우 5년의 범위 안에서 협정관세 적용제한  
⇒ 협정관세 적용의 제한 및 해제절차 등은 대통령령에 위임

한·싱 FTA 협정	시행령(안)
<input type="checkbox"/> 협정관세적용정지자 지정 (협정 5.7.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물품: 동종동질물품</li> <li>○ 적용기간: 원산지요건준수 입증시까지</li> <li>○ 조치내용: 협정관세 배제</li> <li>○ 조치내용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보대상자: 수출당사국의 관세당국</li> <li>- 통보자료: 특혜관세 보류 조치 관련 증거와 세부 내역</li> </ul> </li> </ul>	<input type="checkbox"/> 지정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정자: 세관장</li> <li>○ 의견진술기회의 부여: 30일간</li> <li>○ 지정사실 공표: 관보게재, 관세청장 지정 정보통신망, 세관 게시판</li> <li>○ 지정통지: 지정대상자 및 체약상대국 관세당국</li> </ul> <input type="checkbox"/> 효력발생기산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보통신망에 게시한 날</li> </ul> <input type="checkbox"/> 적용제한물품의 심사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입신고수리전 심사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정관세 적용제한물품은 원칙적으로 협정관세의 적용이 제한되나,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수리전에 심사</li> </ul> </li> </ul>

## (2) 개정이유

- 수출국의 원산지불성실증명자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제한 조치절차를 마련하여 불공정 무역행위 방지 및 성실신고풍토 환경 조성 필요
- 적용제한자 지정시에는 사전에 30일간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하여 당사자의 권익보호
- 지정사실은 대외공개 및 대상자에게 통보하여 선의의 제3자 보호와 함께 과세행정의 효율성 제고
- 협정관세 적용제한물품에 대해 예외적으로 협정관세 적용신청이 있는 때에는 수입신고건별로 수입신고수리전 심사원칙을 적용하여 협정관세 적용제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시행일부터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24. 협정관세 적용제한자 지정의 해제(안 제25조)

### (1) 개정내용

< 法案內容(\$16⑤) >

- 세관장은 체약상대국 수출자등이 원산지증빙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였음을 입증하는 경우 적용제한자 지정의 해제가능  
⇒ 협정관세 적용제한 해제절차는 대통령령에 위임

한·싱 FTA 협정	시행령(안)
	<input type="checkbox"/> 협정관세 적용제한자 해제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비서류: 해제신청서와 원산지소명서류</li> <li>○ 신청요건: 지정일부터 1년이상 경과</li> </ul> <input type="checkbox"/> 해제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제자: 세관장</li> <li>○ 해제사실 통지: 신청인과 상대국 세관</li> <li>○ 지정사실 공표: 관보게재, 관세청장 지정 정보통신망, 세관게시판</li> </ul> <input type="checkbox"/> 지정해제의 효력발생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제사실 통지일</li> </ul>

### (2) 개정이유

- 협정관세 적용제한자 해제에 관한 세부절차를 마련하여 관세행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 확보 필요
- 해제한 때에는 지정한 때와 동일한 방식으로 해제내용 통지 및 대외공개 하여 선의의 제3자 보호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시행일부터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25. 협정관세의 적용보류(안 제26조)

### (1) 개정내용

< 法案內容(§17) >

- 세관장은 원산지조사 개시 일부터 조사결과와 통지일 사이에 조사대상물품과 동종동질의 추가 수입신고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의 적용 보류 가능  
 ⇒ 협정관세 적용보류의 절차·방법 등은 대통령령에 위임

한·싱 FTA 협 정	시행령(안)
	<input type="checkbox"/> 협정관세 적용보류 통지 → 수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지서 기재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용보류대상 수입자</li> <li>- 대상물품의 품명·품목번호·원산지</li> <li>- 적용보류기간 및 법적근거</li> <li>- 대상물품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li> </ul> </li> <li><input type="checkbox"/> 협정관세 적용보류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용세율: 일반세율</li> <li>○ 적용기간: 협정관세 적용보류기간</li> </ul> </li> </ul>

### (2) 개정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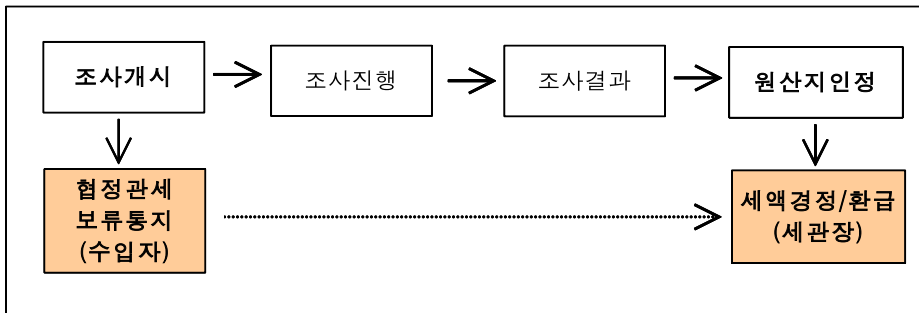
- 원산지조사가 진행 중인 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보류 조치에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여 관세행정의 효율성 및 납세편의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 협정관세 적용보류를 하는 때에는 수입자에게 서면으로

## 보류통지를 하여 과세혼란 방지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시행일부터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협정관세 적용보류 조치 흐름도》



## 26. 상호협력절차(안 제27조)

### (1) 개정내용

< 法案內容(§18①) >

- 관세청장은 협정의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과 협력할 수 있음
- ⇒ 관세당국간 협력의 범위는 대통령령에 위임

한·싱 FTA 협 정	시행령(안)
<input type="checkbox"/> 관세협력의 범위(협정 5.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산지조사활동 행정지원</li> <li>○ 원산지조사관련 정보교환에 필요한 세관공무원 파견</li> <li>○ 서류없는 통관절차를 통한 통관절차의 단순화 및 간소화</li> <li>○ 전자무역환경 조성노력</li> <li>○ 위험관리방식의 통관절차 채택 및 정보교환</li> <li>○ 세관공무원 교육훈련</li> <li>○ 최신관세제도 자료교환</li> <li>○ 관세관련법령의 공개</li> </ul> <input type="checkbox"/> 관세연락관 (협정 5.15, 부속서 5.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무) 협정상 원산지규정, 통관절차 관련 업무협의</li> <li>○ 지정권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 재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자 또는 소속기관</li> <li>- 싱가포르: 싱가포르 관세국장 지정하는 자 또는 소속기관</li> </ul> </li> </ul>	<input type="checkbox"/> 관세협력의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산지확인 상호행정지원</li> <li>○ 원산지 관련법령 교환</li> <li>○ 서류 없는 통관절차 및 전자무역환경 증진</li> <li>○ 위험관리통관기법</li> <li>○ 세관공무원의 교육·훈련</li> <li>○ 원산지부정행위 정보교환</li> <li>○ 기타 관세협이기구 합의사항</li> </ul> <input type="checkbox"/> 관세청장의 협력권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원산지조사협력 세부절차와 관련된 국가간 협조</li> <li>○ 계약상대국 관세당국과 합의권</li> </ul> <input type="checkbox"/> 관세협의를전담관 지정·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정권자: 재경부 장관</li> <li>○ 지정방법: 재경부령에 위임</li> </ul>

(2) 개정이유

- 한·싱 FTA 제5.13조의 규정을 수용하여 계약상대국과 관세협력에 필요한 범위와 절차를 구체화함으로써 효율적인 불공정수출입방지 및 관세제도 발전기반 구축
  - 관세청장으로 하여금 원산지조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 체약상국 관세당국과 협의할 수 있는 협의권 명시

- 관세협의전담관을 지정·운영하여 체약상대국 관세당국과의 원활한 협력 도모

## 27. 관세상호협약의 절차(안 제28조)

### (1) 개정내용

< 法案內容(§19①) >

-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체약상대국으로부터 협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원산지결정 또는 과세처분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경우 재경부장관에게 관세상호협약의 신청 가능  
⇒ 관세협약의 신청에 필요한 절차는 대통령령에 위임

한·싱 FTA 협정	시행령(안)
<input type="checkbox"/> 관세특별위원회(협정 5.15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방 당사국의 관세당국이 특정문제를 제기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국의 전문가 지정</li> <li>- 적절한 시간 이내에 검토</li> <li>- 검토내용과 조치방안 회신</li> </ul> </li> <li>○ 관세특별위원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국 관세연락관 수준에서 해결되지 않는 경우 관세특별위원회 개최·협약</li> </ul> </li> </ul>	<input type="checkbox"/> 관세협약의 신청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세상호협약의 신청서</li> <li>○ 체약상대국의 원산지결정 또는 과세처분통지서</li> <li>○ 체약상대국에 제기한 불복 청구서</li> </ul> <input type="checkbox"/> 관세협약의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체약상대국에 시정조치 요구</li> <li>○ 관세협약기구 개최요구</li> <li>○ 협약결과내용 통지: 협약종료일부터 30일 이내</li> </ul>

### (2) 개정이유

- 체약상대국과 관세상호협약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하여, 현지에 진출한 우리나라 투자기업과 수출상품을 국가가 적극 나서서 보호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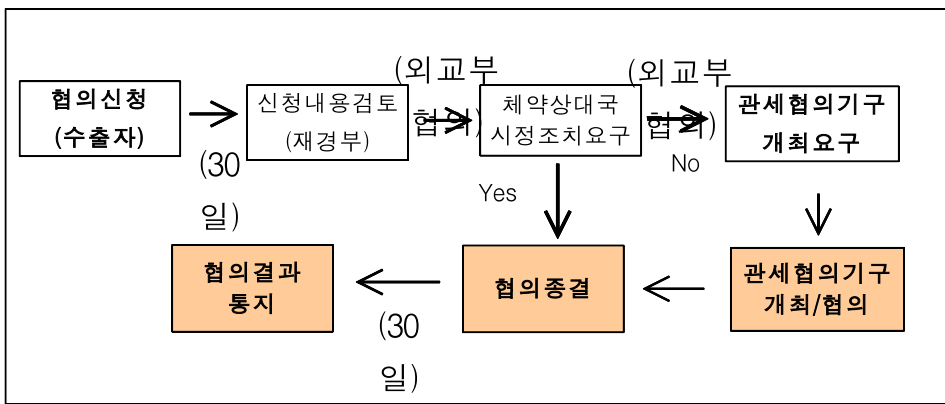
○ 관세협약기구 개최요구 사유

- (1)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이 합리적인 기간 이내에 협의에 응하지 않는 경우
- (2)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이 우리나라의 시정조치 요구를 수락하지 않는 경우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시행일부터 수출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관세상호협약절차 흐름도》



## 28.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안 제29조)

### (1) 개정내용

< 法案內容(§24③) >

세관장이 징수하는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는 대통령령에 위임

협 정	시행령(안)
	<input type="checkbox"/> 과태료 부과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태료 서면납부 통지: 위반사실·과태료금액·이의방법·이의기간 등 명시</li> <li>○ 의견진술기회부여: 10일 이상</li> <li>○ 정상참작: 과태료 금액산정시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참작</li> <li>○ 과태료의 징수절차: 재경부령 위임</li> </ul>

### (2) 개정이유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에 대해서는 관세법시행령 제265조(과태료의 부과)의 규정과 동일한 절차를 적용토록 하여 관세행정의 일관성 유지

#### <관세법시행령 제265조(과태료의 부과)>

- ① 법 제277조의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이의방법·이의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③ 세관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

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 29. 관세법령과의 관계(안 제30조)

### (1) 개정내용

< 法案內容(§3) >

- 싱가포르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물품 및 세율은 별표에 의함

협 정	시행령(안)
	<input type="checkbox"/> 별표의 품목번호 및 품명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li> <li>○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관세법시행령 제98조제1항)</li> </ul> <input type="checkbox"/> 관세법시행령과의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 영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세법시행령 적용</li> </ul>

### (2) 개정이유

- 별표의 관세율표 규정에 필요한 원칙과 관세법시행령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여 해석·운영상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 별표에서 사용하는 품목번호와 품명은 관세법의 별표의 관세율표와 관세법시행령(제98조제1항)의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와 일치시켜 관세행정의 일관성 유지

### 30. 서식의 제정(안 제31조)

#### (1) 개정내용

< 法案內容(§3) >

협 정	시행령(안)
	<input type="checkbox"/> 법 또는 영에서 규정하는 신청서 기타 서식의 제정  <input type="checkbox"/> 관세청장이 정하도록 위임

#### (2) 개정이유

- 법 또는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신청서 기타 서식을 관세청장이 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수출입통관관리가 EDI 전자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급격히 발전하는 전자환경에 신속·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관세청장에게 서식 제정권 위임

※ 관세법시행령 제287조(서식의 제정)에서 원용

### 31. 부칙

#### (1) 개정내용

협 정	시행령(안)
	<p><input type="checkbox"/> 시행일: 한-싱 FTA 발효일</p> <p><input type="checkbox"/> 적용례:            ○ 이 영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수출입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p> <p><input type="checkbox"/> 싱가포르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특례            ○ 이 영 시행일 전 90일 전에 발급된 원산지 증명서 효력 인정(협정 또는 이 영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정)</p>

#### (2) 개정이유

- 이 영 시행에 필요한 시행일, 적용례 및 경과조치를 명확히 규정하여 시행착오를 방지
- 원산지증명서에 관한 경과조치를 마련하여 싱가포르와의 협정 발효일 전에 국내에 수입되어 통관을 기다리고 있는 물품도 협정관세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2005간추린 改正稅法

---

印 刷	2006年	6月	日
發 行	2006年	6月	日
發 行 處	財政經濟部 稅制室 租稅政策課		
印 刷 處	新進企劃(503-6688, 6691)		

---

\* 본 冊子를 複寫出版하고자 하거나 본 내용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財政經濟部 稅制室 租稅政策課(2150-9112)에 事前問議 바랍니다.

\* 본 冊子는 改正된 稅法內容을 설명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본 설명중 改正法令과 상이한 내용이 包含되는 경우에 法令에 우선순위가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